

速記概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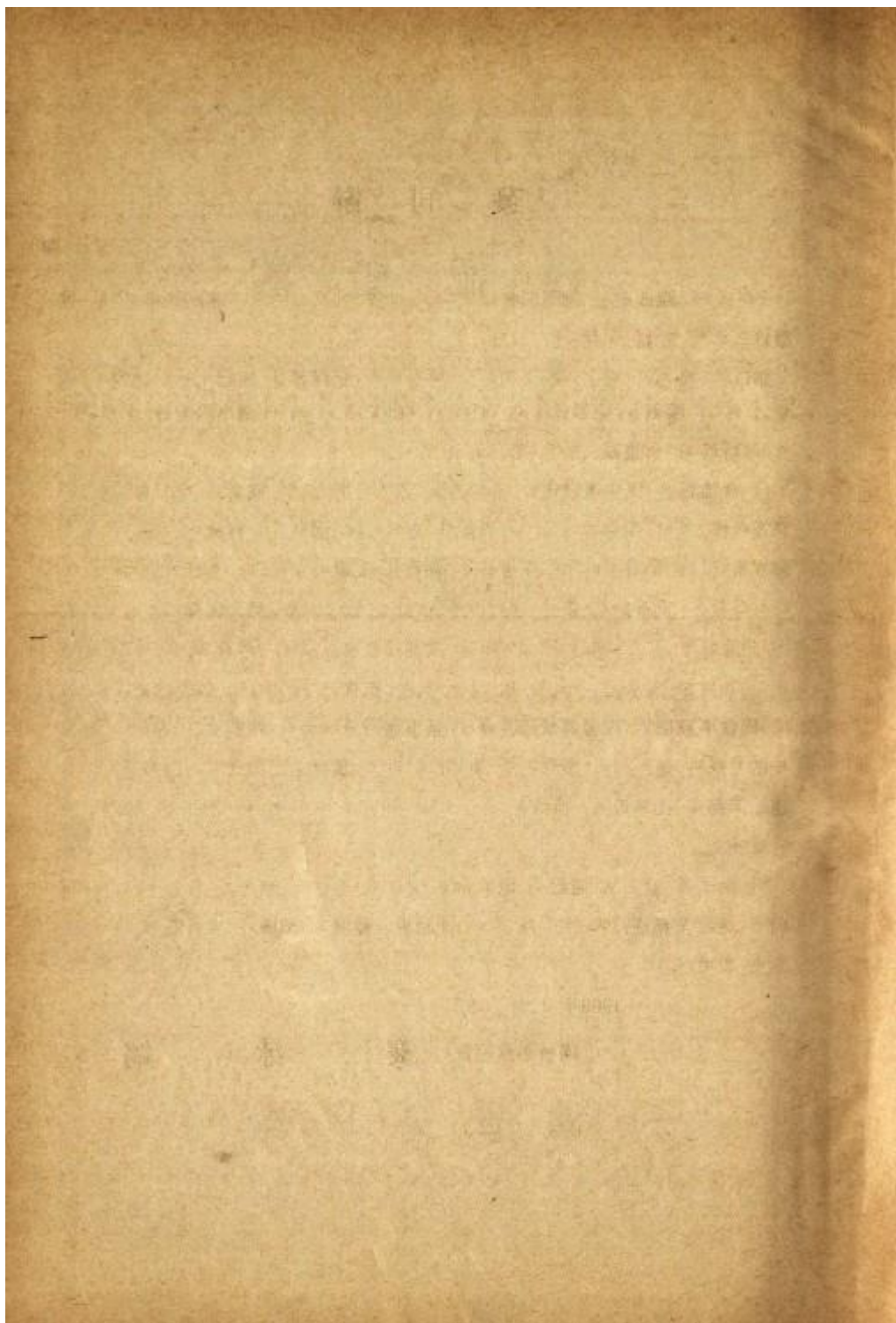
國會事務處

救 世 玉 璣

國 會 法 律 學

速記概觀

國會事務處



發 刊 辭

우리나라 議政史는 制憲國會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速記術에 依한 會議錄으로서 記錄 保存되어 있다.

議員의 發言이 韓字, 韓文句라도 빠질세라 記錄者인 速記士는 聽覺과 視覺 그리고 觸覺을 總動員해서 符號인 速記文字로 모든 議事內容을 靑寫眞처럼 收錄하여 會議錄으로서 發刊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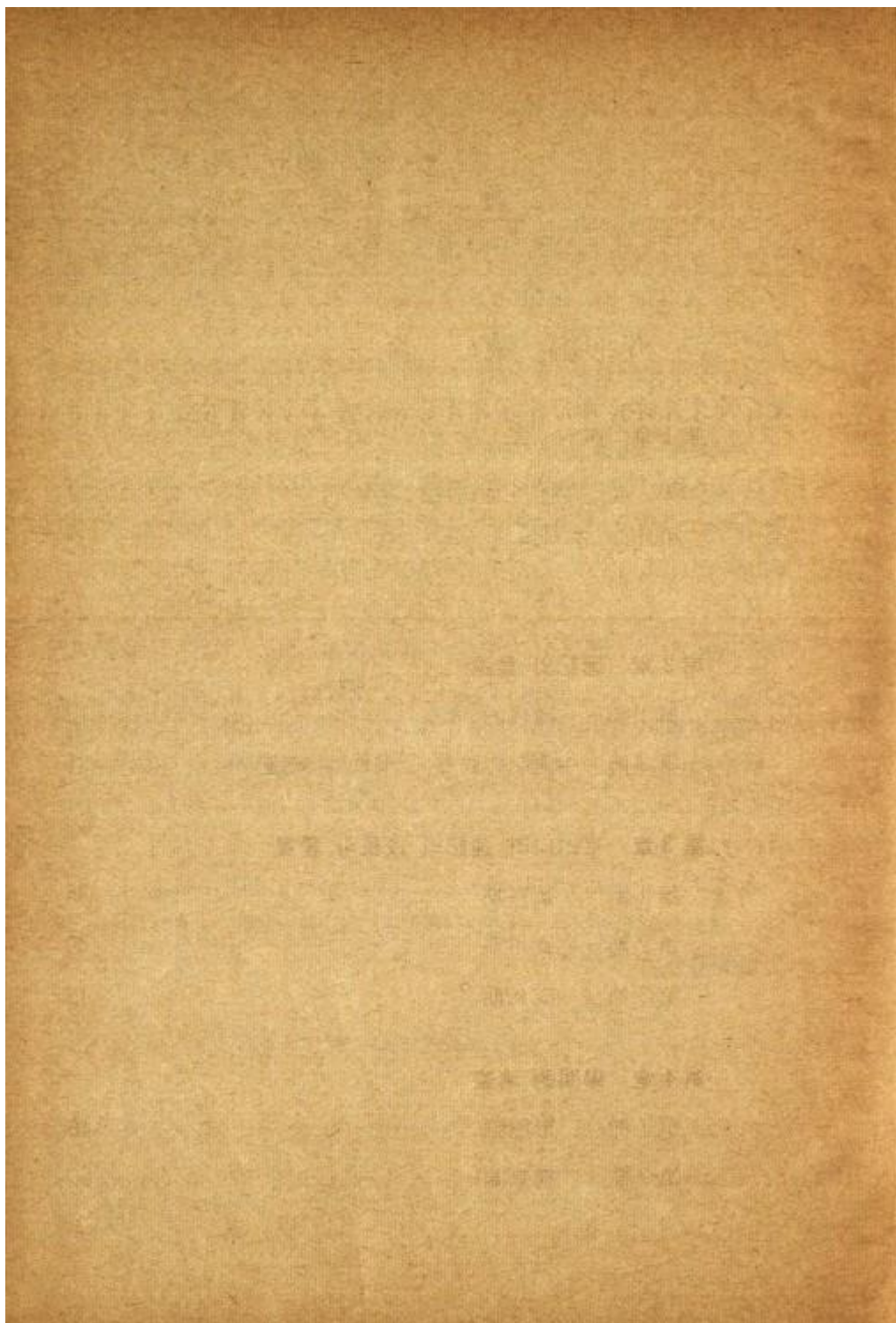
이 會議錄은 民主憲政史의 山證據요 證人이며 또한 國會의 寶典으로서 子孫萬代에 길이 保存되어야 할 貴重한 史料이며 同時에 寶典인 것이며 民主國家에 있어서 이보다 더 所重하고 尊貴한 文獻이란 그리 珍하지 않다.

이와같은 貴重한 文獻이 速記術에 依하지 않고서는 發刊保存되기 어려움은 勿論이거니와, 速記가 그外에도 法律, 社會, 文化, 教育等, 여러 部門에서 活用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에 晚時之感은 있으나 國會事務處內 國會運營研究會의 議事進行分科會의 課題로서 速記에 關한 史的考察과 速記術의 概略의인 事項, 그리고 議會速記法式의 創案過程等을 速記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을 中心으로 研究토록 하여 이 冊字를 發行하게 되었다.

이 冊字가 앞으로 速記를 理解하고 알고자 하는데 參考가 될길 바라며 同時에 速記業務遂行에 伴侶가 되어 速記界 發展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1969年 12月 日

國會事務總長 裴 泳 鎬



速記概觀

目次

第一編 總論

第1章 序說

- 第1節 語文과 速記.....1
- 第2節 速記의 定義.....7
- 第3節 速記와 文化.....9

第2章 速記의 發達史

- 第1節 時代的 考察.....12
- 第2節 速記方式과 需要面의 變遷.....31

第3章 우리나라 速記의 成長과 發展

- 第1節 創案期.....36
- 第2節 實用期.....39
- 第3節 成長期.....42

第4章 學問的 考察

- 第1節 形態論.....46
- 第2節 構造論.....50

○ 第3節 言語論.....54

第5章 機械速記

第1節 機械速記의 發展過程59
第2節 電子計算機에 의한 速記翻文.....68

第二編 速記教育과 그 活用

第1章 速記士와 速記教育

第1節 速記士의 資質89
第2節 速記의 環境條件96
第3節 速記士의 養成.....100

○ 第2章 速記의 活用價值

第1節 記錄과 歷史.....120
第2節 政治와 速記.....121
第3節 言論과 速記.....123
第4節 會議과 速記.....125
第5節 裁判과 速記.....127
第6節 著述과 速記.....131
第7節 秘書와 速記.....132
第8節 生活과 速記.....132

第3章 速記界 將來의 諸問題

第1節 速記方式에 관한 問題135

第2節 速記法式的單一化問題138

① 速記需要의 開發問題142

第三編 國會와 速記

第1章 國會速記의 發展過程

第1節 制憲國會 前後149

第2節 2代國會(6.25) 以後151

第3節 5代國會(4.19) 以後154

第4節 6代國會 以後157

② 第2章 議會速記法式的 創案

第1節 創案의 意義162

第2節 研究過程164

第3節 創案發表181

第4節 速記法式別 基本文字182

第3章 國會의 速記業務

第1節 機構 및 業務分掌202

第2節 會議錄에 關한 規程, 內規 및 要領205

第3節 會議錄 發刊過程226

第4章 外國速記界

第1節 英國242

第2節	白耳義	249
第3節	瑞 西	253
第4節	土耳其	257
第5節	日 本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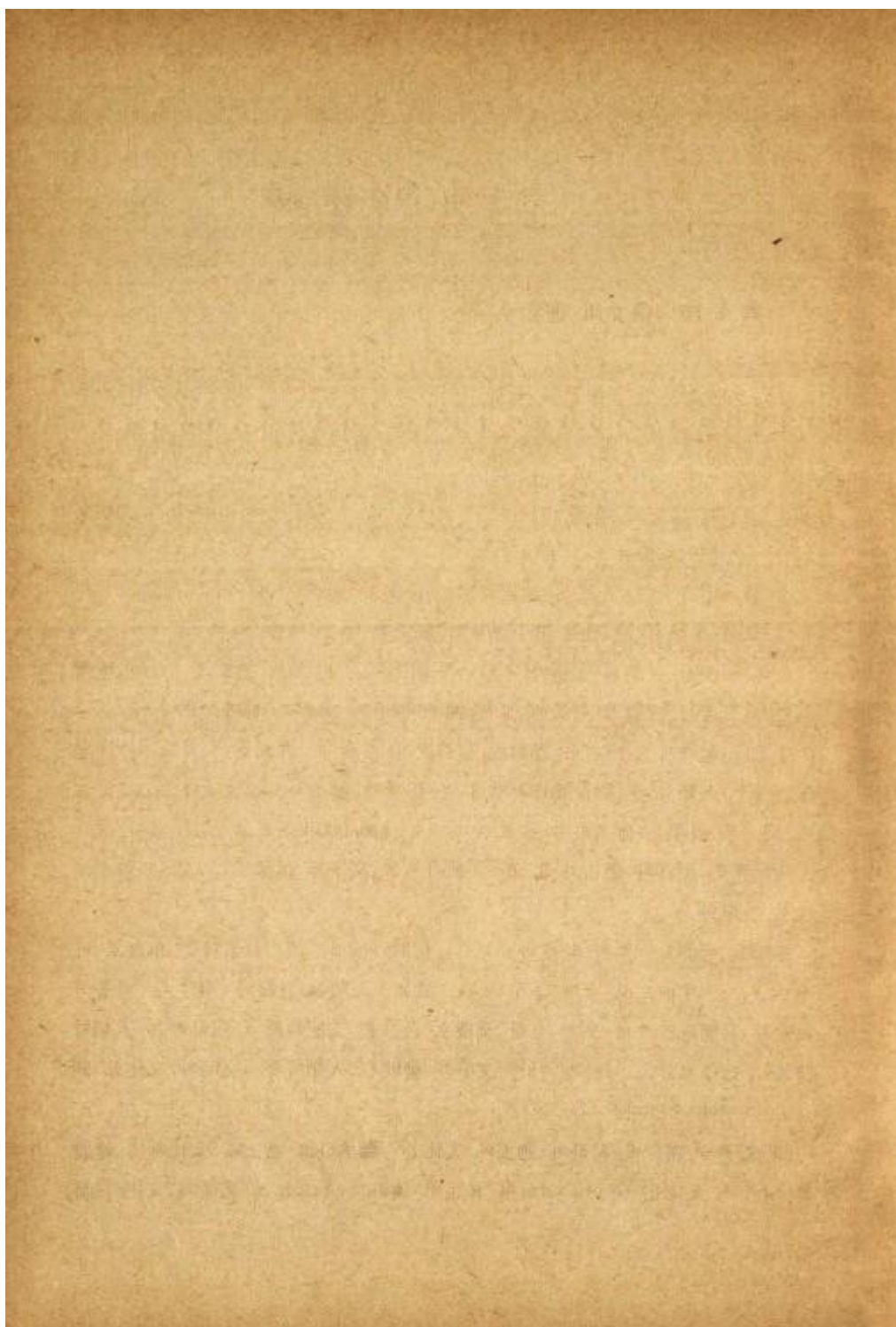
附 錄

1.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沿革	273
2.	國際速記 吳 打字聯盟概要	312
3.	速記用語解說	321
4.	速記關係 人名錄	323

參考文獻目錄

第1編 總 論

- 第1章 序 說
- 第2章 速記의 發達史
- 第3章 우리나라 速記의 成長과 發達
- 第4章 學問的 考察
- 第5章 機械速記



第 1 章 序 說

第 1 節 語文과 速記

速記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考察하면 言語生活에 있어 音聲에 依한 言語表現을 文字에 依한 言語表記로 바꾸는 活動의 總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人類 文明의 發生이 言語의 疏通에서 부터 始作되고 또한 人類 文明의 發展이 文字의 發明에서 이루어졌다는 點을 勸索할때, 語文은 人類 文明에 가장 큰 貢獻을 하여왔다.

言語의 記錄手段으로서의 速記文字는 符號로 形成된 하나의 文字이기때문에 語文과 떨어질 수 없는 相互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선 言語와 文字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速記를 쉽게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그 起源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言語의 起源에 있어서는 感歎說 擬聲說이 있으나 通說은 못되고 다만 地球上에서 人類의 生活이 始作되면서 부터 함께 發生하지 않았나 보고 있으며 文字의 出現은 確實하지 않으나 대개는 約6,000年前으로 보고 있다.

人類歷史 記錄의 最古가 5, 6千年前이므로 文字의 起源도 그 조금 前으로 보는 것이다.

速記의 起源도 「회탈」時代와 「로마」 初期時代에 流行하였다는 事實로 비하여 約 3千年前으로 내다 볼수 있다. 實로 人類는 言語의 發生과 더불어 禽獸와 區別되었으며 또한 이를 契機로 自然을 支配하고 征服하려는 人類의 作業이 始作되었고 나아가 다시 文字의 發明은 人類에게 文明과 文化의 開花를 가져다 주었다.

即 文字의 媒介에 의하여 過去의 文化를 繼承하고 過去의 文化위에 建設된 現代의 文化를 文字에 의하여 後世에 傳하게 됨으로써 文明과 文化의 發

遠을 促進시켰으며 言語의 時間的 限定을 未來까지 길게 延長시켰고 또한 空間上的 幅을 넓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文字는 그것이 發明됨으로 오래 後世에 남길 수 있는 方便은 되었으나 쓰기에는 言語보다 몹시 느린 弱點을 가지고 있다. 이 弱點을 補完해주는 것이 速記術로서 이는 人類가 文化生活을 누리는데 있어 能率을 높여주는 道具가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言語와 文字와 速記에 대하여 學者들이 어떻게 規定을 내리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가. 言 語

言語를 規定하는데 있어서는 學者들마다 多少 見解의 相異는 있지만 거의 같은 概念規定을 하고 있다.

國語大辭典(東亞出版社刊)에서는 言語란 「人類가 말소리로 또는 글자로서 思想感情을 나타내어 傳達하는 活動」이라고 規定짓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李熙昇博士는 좀더 具體的인 說明을 展開한다. 「言語란 音聲 또는 文字를 通하여, 思想感情을 表現 傳達하는 一種의 社會的 活動인 同時에 廣義로는 새의 울음소리 개의 짖는 소리같은 것도 動物의 言語라고 하나 狹義로는 人類 特有的인 것만을 가리킨다.

또한 여기에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 소리를 귀로 들어서 理解하는 音聲 言語와 文字로 써서 나타내어 그것을 읽어서 理解하는 文字言語로 區別되나 普通은 音聲言語를 指稱한다」고까지 說明하고 있다. 이와같이 普通 音聲言語 卽 말을 通常 言語라고 한다.

李崇寧博士는 좀 다른 面에서 言語를 우리에게 理解시키고 있다.

「人類가 思想을 주고받으려는 한 手段으로 言語를 使用하는 것은 常識이므로 勿論이 이 言語를 說明하자면 音節을 形成할 수 있는 音聲을 가지고 人類가 日常生活에 있어서 思想을 傳達하는 것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思想傳達에 있어서는 信號에 依한 傳達이나 動物들의 音聲도 훌륭한 意思表示가 된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人類의 音聲을 意思傳達의 手段으로 擇한 音

聲은 子音과 母音을 區別할 수 있고 또 音節을 形成할 수 있는 複雜하고 體系를 가진 音聲으로서 思想傳達을 하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스위스」의 言語學者인 「소슈르」(F. de Saussure)는 概念(뜻)+聽覺映像(머릿속에서 느껴지는 各各 뜻에 맞는 一定한 소리)이 곧 言語라고 하는 近代化되고 科學的인 分析을 내리고 있다.

事實 言語는 必然的인 것보다는 人定的으로 傳承的으로 成立되어 왔으므로 自然보다는 人間生活에 밀접히 依存되어 왔다. 그런데 人間生活은 環境 遺傳 習慣에 따라 規定되므로 그것이 言語面에 影響을 끼쳐 地上到處에 여러가지 言語를 發生시키고 同一言語도 時代와 함께 變遷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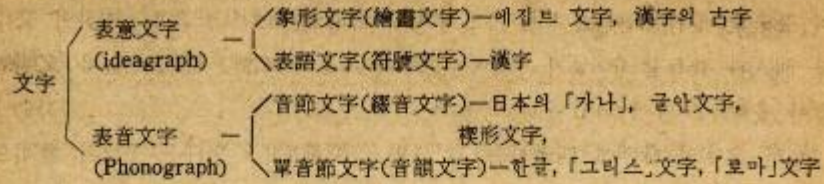
그리하여 世界에는 大分하여 印度·「유럽」語族, 쉐·함語族, 「우랄 알타이」語族, 「차이나」語族, 「오스트로·아시아」語族, 「오스트로에시아」語族, 「오스트레리아」語族, 「아프리카」語族, 「아메리카」土語族, Dravida語族, 「코아시아」語族 등이 있으며 이들 語族들도 다시 複雜하게 分類되어 各樣各색의 言語와 俗語들이 出現되어 各民族, 各地方마다 言語로 因하여 生活의 隔을 이루고 있다.

나. 文 字

文字란 「말이나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어 나타낸 一種의 符號로서 생각이나 느낌의 發表, 傳達 記錄의 手段이 된다」고 李熙昇氏는 國語大辭典에서 規定하고 있고 學園社에서 刊行한 大百科辭典에 劉正烈氏가 쓴 內容을 보면 「人類가 思想을 表現하는 工具가 言語이고 言語에 代置하는 符號 卽 사람이 口로 소리를 내어 귀로 듣는 無形의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有形의 符號가 文字」라고 하는 實質的인 規定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文字의 種類를 들면 가장 原始的인 文字로서는 結繩文字가 있었으나 쓰는 文字가 아니었고 쓰는 것으로는 繪畫文字 象形文字 楔形文字가 있었으며 이들은 古代文字에 屬한다. 大體로 文字는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 發達하였는데 表意文字로는 漢字가 代表的이고 表音文字로는 한글, 「라틴」文字, 日本의 「가나(カナ)」 같은 것이 있다.

文字의 分類



다음으로 文字의 効用을 간단히 들면

첫째 文字로 因하여 過去, 現在, 未來를 連結시킴으로써 歷史가 비롯되었으며,

둘째 文字는 感情을 묘사할 수 있음으로써 文藝가 文字로 因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文字는 學術의 萌芽다. 過去의 觀念에 의하여 未來의 思想을 產出하고 이 思想을 文字로서 記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文字의 諸効用을 보면 文字의 發明은 곧 文化의 源泉이 되는 것이고 文字의 効用은 言語에 比하여 못하지 않다.

世界文化가 不斷히 發達하여 人間의 智慧를 높인 것이 文字에 의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다. 記錄의 歷史와 意義

人間이 記憶에 依支하는에서 記錄을 利用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努力과 研究가 있었던 것이다.

돌을 놓는다든가 나무가지들 꺾어가지고 意思를 傳達하는 方法은 原始記錄의 한 手段이었다.

그러나 人類의 努力에 의한 文字의 發明은 人類史上 最初이며 最大의 革命이요 文字의 發明은 記錄의 始初요 歷史의 始作이기도 한 것이다.

文字에는 象形文字 楔形文字 등이 있었으니 이것을 어디에 쓰고 表示하는 나가 커다란 문제로서 처음에는 나무잎 나무판 雜草인 「파피루스」의 髓를 搗친것이나 羊皮에 쓰다가 그後 粘土를 늘려서 물렁거릴때 글字를 새겨 달리고 그것을 구어서 保存하였다.

어쨌든 人間이 文字를 發明하여 記錄方法을 案出해 내었다는 것은 더 없이 훌륭한 일이나 이는 人間の 머리속의 記憶을 有形化함으로 因하여 文化를 他人과 共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며 이로써 오랜 時代의 높은 文明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文字의 發明에 匹敵하는 記錄史上的 劃期的 事件은 종이의 發明으로서 過去의 記錄手段은 各己 깨지기 쉽고, 나르기 힘들고, 材料를 求하기 힘든 것이 그 缺點이었으나 종이는 記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材料인 것이다.

이 종이의 發明은 中國의 蔡倫이 2世紀初에 나무껍질 삼(麻)같은 植物纖維로 종이를 만들었으니 古代의 높은 中國文化는 여기에 影響을 입은바 큰 것이다.

한편 記錄하는 道具는 종이의 發明以後 12世紀頃 「펜」과 「잉크」가 생겨나고 1760年 獨逸人 「카스파·화버」가 鉛筆을 그리고 1884年 美國人 「워터맨」이 萬年筆을 發明하게 되었고 1445年 獨逸人 「구텐베르크」가 印刷機를 發明함으로써 記錄手段의 擴大 發展을 보게 되었다.

이제 人間은 적은 金額으로 鉛筆과 종이를 求得할 수 있는 時代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先人들의 苦心의 結晶이고 現代人에 물려준 遺産이요 特權으로서 더욱 많은 종지와 鉛筆을 使用하여 記錄을 남기고 文化를 向上시키는 것은 現代人에게 주어진 使命이라 할 것이다.

文明의 媒介者는 記錄이다. 이것은 記錄文化史를 들추어보면 쉽게 首肯될 수 있는 일이다.

人間은 自己의 意思를 다른 사람에게 傳할때에 말과 動作이나 글을 써서 表示하는 方法에 의하는데 이 手段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나 動作은 그때가 지나면 없어지며 또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그것을 보는 것은 그사이밖에 通用이 안되나 써서 表示되는 記錄(近代文化는 記錄分野를 文字에 限하지 않고 音聲(錄音) 映像(錄畫)의 分野에도 擴張하였다)은 언제까지든 남길 수 있고 通用도 普遍化되게 되었다.

이로써 「千歲以後 萬人을 위하여 萬里밖」에 遺憾없이 人間의 意思를 傳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傳達機能은 廣範하고 強力한 것이다. 人間社會의 因緣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結合될 것인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廣範하고 強力한 意思傳達機能을 갖는 記錄이 社會生活에 重要的 意義를 갖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라. 語文과 速記와의 關係

人類의 文化는 그發展過程에 있어서 言語가 發生한때, 文字가 생긴때, 종이가 생긴때, 印刷術이 생긴 그때마다 劃期的인 發展을 하여왔다.

그러나 人類文化史上 言語의 出現이 人智의 產物로서 禽獸와 區別되는 根本的 差異를 가져 오기는 하였으며 亦是 이것만으로는 人類의 思想 感情表現의 手段으로서 많은 不便을 느끼게 되고 不滿을 갖게 되었다. 即 言語는 時間上의 制限, 空間上의 制約을 除去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不便을 없기 위하여 人類는 마침내 文字를 發明하게 되었는데 이 文字의 長點으로서

- ① 無形의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는것.
- ② 永久히 保存할 수 있는것.
- ③ 正確하게 傳達할 수 있는것.
- ④ 종이나 冊이라는 간단한 物件에 多量의 言語를 記錄할 수 있는 것등을 들 수 있다.

勿論 오늘날에는 科學의 힘으로 時間上으로는 「레코드」에 의하여 言語를 傳하고 空間上으로는 「라디오」에 의하여 言語를 傳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들을 모두 찾아 듣기에 不便하고 또 「레코드」次入이나 「라디오」 放送은 상당한 設備가 必要하므로 그 普及이 文字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서 言語는 意思表示上 感情을 直接的으로 傳하는 代身 瞬間的인 發聲을 通하여 그 無形體를 空間에 散逸시켜 버리는 短點이 있고 文字는 意思를 자다듬고 歷然히 論理的이고 體系있게 傳記하는 代身에 言語에 比하여 많은 時間을 虛費하는 것이 短點이라 하겠다. 換言하면 이 文字 亦是 表意文字처럼 매우가 어려운것이 있으며, 思想을 表現하는 데에도 많은 劃을

筆記함으로써 言語速度보다 훨씬 느리고 또한 人間の 暗記의 限界로 말미암
아서 人間の 意思를 제대로 即時 모두 記錄하지 못하는 缺陷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人類는 오래 前부터 言語와 一致하여 직을 수 있는 文字가 없을까
하고 苦心하다가 드디어 言語를 따라 記錄할 수 있는 速記文字를 發明해 낸
것이다.

그리하여 無形의 言語를 有形의 文字로서 捕捉할 수 없는 것을 速記文字
로서는 이를 卽席에서 빠짐없이 捕捉하여 記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以上 叙述한바에 의하여 文字는 個人的 思考를 傳達하고 促進시키고 學問
技術의 研磨에 있어 媒介的 役割을 하여 文化의 獲得과 創造에 必須條件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言語와 文字도 表裏一體의 關係임을 發見하게 되는
바 速記도 또한 上述한 文字의 내가지 長點을 함께 지니면서 이에 더하여 文
字의 不便함을 補充하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第 2 節 速記의 定義

美國의 有名한 百科辭典 The Encyclopedia Americana에서 速記의 定義
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速記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빨리 쓰는 技術이다. 그러나 「스
탠다드」辭典(Standard Dictionary)이 내린 定義가 더 훌륭한 表現으로서
卽 速記라는 것은 적은 筋肉運動으로 모든 言語와 文章을 筆記體인 圖式
(graphic outline)으로 表記하게끔 되어있고 이는 普通筆記(Longhand)와는
다른 것이다.

前者의 定義는 가장 高度로 發達된 形態의 口述體 速記(專門速記)에 대해
서만 正確하게 適用되는 定義이고 一般業務型速記나 個人型 速記(非專門速
記) 같은 굉장히 廣範한 分野에 대해서는 適用力이 弱하다.」

以上 The Encyclopedia Americana에서 내린 定義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마
더로 速記에 대해서 定義를 내리기는 難點이 있다.

그러므로 速記의 定義를 내리는데 있어서 便宜上 廣義의 解釋과 狹義의

解釋으로 區分해서 說明하고자 한다.

가. 廣義로 본 速記

速記를 廣義로 解釋하면 「他人의 言語나 自己의 意思表示를 어떤 特定한 符號(速記文字)로 記錄하고 이를 一般文字化하는 過程의 總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狹義로 본 速記

速記를 狹義로 解釋할 때에는 專門職業速記와 非專門一般速記로 區分할 수 있다.

① 專門職業速記

專門職業速記란 「速記를 專門職業으로 하는 사람이 他人의 發言을 速記術에 의해서 빠짐없이 記錄할 수 있는 技術을 말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7. 速記는 다른 사람의 發言을 그대로 一言一句 빠짐없이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記錄하는 것이다.

8. 速記는 自己의 생각하고 있는 意思를 即時 具體的으로 迅速히 記錄하는 것이다.

가령 日記나 「메모」같은 것도 速記文字로 쓴다면 時間節約이 되고 仔細히 具體的으로 記錄할 수 있으므로 後일에 좋은 參考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 速記란 우리가 日常 쓰는 一般文字로 쓰는 것이 아니라 別途로 考案한 符號文字에 依하여 筆記하는 것이다.

10. 速記는 正確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사람의 發言이나 自己의 意思를 速記하였다 하더라도 不完全한 速記를 하였거나 나중에 速記한 것을 翻文 또는 翻讀할 수 없다면 그것은 落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速記란 以上 네가지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不完全速記이지 完全速記라고 稱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 네가지 要件을 합쳐 速記란 「다른 사람의 發言이나 自己意思를 特定の 符號文字로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正確하게 筆記하여 一般文字

化하는 活動의 總稱이다」라고 速記의 定義를 내릴 수 있다.

② 非專門一般速記

「非專門一般速記는 速記를 專門職業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日常生活(日記, 메모, 受講等)에 있어서 또는 自己의 業務에 있어서(秘書速記等) 速記術을 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絶對的인 要件이 不完全한 要點記錄이라 하더라도 速記術에 의한 記錄이어야 한다. 一般文字에 의한 要點記錄은 略記라고는 할 수 있으며 速記는 아니다.

第 3 節 速記와 文化

地球上에는 700餘에 달하는 言語가 있고 또한 50餘種의 文字가 있다. 卽
아직까지 「말」은 있어도 文字가 없는 語族이 650餘 語族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또한 이 文字를 쓰는 50餘 民族中에서도 速記를 考案하여 實用하는 種族과 그러하지 못한 種族이 있다. 따라서 速記를 考案하지 못한 種族은 未開族에 屬할 것이며 速記를 考案하여 實用하는 社會는 文明社會 나아가서는 文化社會라고도 稱할 수 있다.

卽 速記의 存在 與否는 一民族의 文明度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도 볼 수 있다. 勿論 文明度란 여러가지 面에서 測定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文字의 文化的 價値에서 記述해본 것이다.

우리 民族은 歷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 自主生活을 侵害받을 位置와 條件에 놓여있으면서도 民族精神을 生命으로 알고 지켜온 덕이 이 速記界에서도 殊異히 證明된바 있 으니 舊韓末 日本의 侵略政策으로 乙巳保護條約이 調印되고 國運이 기울자 美國 「하와이」로 건너간 僑胞 朴如日氏의 손으로 1909年에 「朝鮮速記法」을 考案發表한 以來 上海等 亡命地에서 不斷히 速記가 研究發表되어 韓民族의 矜持와 實力을 誇示하고 文化民族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하였던 것이다.

文字와 같이 어려운 環境과 處地下에서도 꾸준히 研究한 功勞이 있어 議會民

主主義國家로서 그 나라의 議會始初부터 速記錄이 남아있는 나라는 世界的으로 우리 大韓民國과 美國 그리고 日本國이라고 알려져있다. 다른 先進國들은 그 나라 議會政治 草創期에 速記를 採擇할만한 與件이 具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制憲國會 開會初일부터 速記界의 先驅者들 손에 의하여 그 記錄을 生生하게 남겨놓고 있으니 이것은 後世에 傳하기에도 자랑할만한 業績인 것이다.

實로 速記는 高度의 文化社會에서나 胚胎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速記가 훌륭한 文化財라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現代는 「스피드」와 能率의 時代라고 한다.

歐美先進國과 우리나라의 文化的 隔差의 原因을 우리는 文字의 「겹」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歐美에서는 10分間 發言한 內容을 30分이면 文書로 作成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0分間의 15倍인 2時間30分이라는 時間을 虛費함으로써 歐美에 比하여 5倍의 時間을 浪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間浪費를 덜기 爲한 方法으로서 漢字를 廢止하자는 方案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면 現代에 있어서 「스피드」에 알맞는 記錄方式이란 어떤 것일까? 速記文字야말로 近代文化의 發展에 따라 誕生하고 成長한 文明의 利器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速記術을 제대로 活用하기만 한다면 時間的인 利得은 勿論 政治 經濟 社會 言論 學術등 諸記錄 및 이의 保存과 甚至於 個人的 私生活에까지도 널리 應用될 수 있는 便利한 技術인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누구나 갖추어야 할 文化人의 必須條件처럼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速記가 지니고 있는 意義를 十分 覺혀서 活用 普及시킨다면 生活의 幅을 더욱 넓혀 文化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할 수 있는 것이다.

第 2 章 速記의 發達史

言語와 文字의 利用으로 文化와 文明이 發達됨에 따라 人類의 慾求는 한층 높아져 言語速度가 各나라의 文字의 記錄能力보다 4~6倍나 빠르다에서 오는 不便을 解消하기 위하여 言語速度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簡略히 그리고 正確하게 表記할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速記術이 孕胎하게 된 動機라 하겠다.

勿論 速記는 一般 文字의 起源보다 늦기는 하되, 人類文化의 發生과 더불어 오랜 歷史를 지녔음에는 틀림이 없다.

即 速記術의 발자취는 考古文書學에 의하여 아득한 古代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特히 考古物蒐集家들은 象形文字와 이것을 聯關시키려고 努力을 하여 왔고 또 紀元前(B. C)千年 「페르샤」(Persia)人과 「에집트」(Egypt)人 그리고 「에브류」(Hebrew)人들이 速記術을 使用한 바 있다는 것을 立證하려고 努力하였다.

그런데 初期에 希臘人들은 講義를 筆記하기 위해서나, 「피티언」(Pythean, 「델피」의 「아폴로」 神殿이 있는 곳) 神殿, 「네미어」(Nemca)祭, 그리고 「올림픽」(Olympic) 競技場에서 朗誦되던 詩를 保存하기 위해서 略記法을 使用하였는데 이들 原本은 오늘날까지 「로마」에 있는 「바티칸」(Vatican) 圖書館이나 「파리」의 國立圖書館, 英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또한 1884年 希臘 「아크로·폴리스」의 廢墟에서 代理石破片에 碑文이 새겨져 있는 것을 發見하였는데 그 碑文에 쓰여있는 符號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올리는 文章임이 判讀되어 이것이 가장 오래된 速記에 관한 史料가 아닌가 이렇게 一般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後 古代 「로마」(Roma)時代에는 「티로」(Tiro)의 略記法이 14世紀까지 普及되어 왔으나 이는 速記學에 있어서의 記錄方法上으로 보아 重要單語마다 符號가 附與되는 略記의 形態를 免치 못하는 것이 었다.

9 近世時代(14世紀~1837年以前)는 世界史的으로 英國의 産業革命으로 因한 歐美諸國의 經濟的 發展 및 經濟生活의 多樣化 歐洲諸國에의 文藝復興과 人本主義의 到來等 文明과 文化의 開花期였는데 當時 速記界도 이에 副應하여 더욱 發展된 「브라이트」(Timothy Bright) 速記法式(1588年創案)과 「테일러」(Taylor) 速記法式(1786年) 創案이 代表的으로 登場하였다.

그러나 이들 諸速記法式도 現代 會議用 速記分野(參照：第1節, 라. 現代)에 比하면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서 지금의 事務用速記分野(參照：第1節, 라. 現代)에 不遇하였다.

0 現代速記時代(1837年 以後)에 들어와 1837年, 英國사람 「이사크·핏만」(Isaac Pitman)에 의하여 비로소 言語를 同時에 記錄 할 수 있는 速記法式이 創案되어 이 速記法式이 世界各國에 應用되었다.

이는 곧 表音速記術으로서 速記界에 一大 革新을 가져왔고 그 結果 人類文化發展에 功獻을 하게된 快事였다고도 볼 수 있다.

以上 論及한 바와같이 速記術은 이렇게 오래 前부터 人類가 考察하여 쓴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또 世界文化史와 並行하여 發展되어 왔다는 史實도 發見하게 된다.

그러면 速記發達の 歷史的 過程을 時代順으로 나누어 世界各國에 있어서의 創案과 普及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이어 速記法式의 變遷과 需要面으로 본 變遷을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第 1 節 時代的 考察

가. 上古代(B.C. 2世紀以前)

이미 序說에서 論述한 바와같이 B.C 10世紀頃 「페루사」, 「에질트」, 「헤브류」에서, 그리고 古代 希臘에서 速記術이 使用되었을 것이라는 考證이 두엇 하나 아직까지 그 確實한 體系나 論證은 稀薄하므로 여기에서는 論及을 避하고자 한다.

나. 古 代(희랍 「로마」時代, B.C 2世紀~A. D14世紀)

古代란 2世紀부터 A. D14世紀까지 주로 희랍末期와 「로마」時代로 볼 수 있으며 若干의 體系를 갖춘 速記法式이 最初로 記錄에 남기로는 「로마」의 雄辯術이 繁盛했던 B.C 1世紀頃부터였다.

B.C 63년에 當時 政治家이며 雄辯家인 「시세로」(Cicero, B.C 106~B.C 43年)의 解放奴隸 書生이었던 「티로」(Marcus Tullius Tiro)가 처음으로 速記法式(略記法)을 考案 使用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自己 스승의 演說을 自己自身이 考案한 速記法式에 의해서 略記하였다. 이 「티로」의 略記法이 점차 速記에 대한 確立된 名稱으로 되자 그는 速記術의 創始者로 推戴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符號法(Notae Tironia, 略記法)은 「시세로」 「세네카」(Seneca) 및 「로마」 元老院(Roman Senate House)議員들의 演說을 記錄하는데 使用되었고 또한 「로마」 時代의 諸 學校에서 그 略記法을 가르쳤으며 諸 皇帝들도 이를 배웠고 一般人들에게도 널리 普及되었다.

희랍의 歷史家인 「플루타크」(Plutarch, 46~120)가 쓴 『젊은 「케이토」(Cato, 「로마」의 軍人, 政治家 「스토아」 哲學者)의 生涯記』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엿볼 수 있다.

卽 「시세로」(Cicero)는 B.C 63年 12月 25日 元老院에서 「로마」의 政治家로서 反逆者인 「카타라인」(Catiline, B.C 95~A. D 46)의 運命에 關한 投票를 앞두고 彈劾演說을 할 때 諸部署에 「노타리」(Notari-速記士)를 配置시켜서 「시저」와 「케이토」의 發言을 速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有名한 政治家이며 文人後見者였던 「미스너스」(Maecenas)는 若干의 速記術改善策을 紹介했으며 「디온·캐시우스」(Dion Cassius)는 그의 解放奴隸인 「아퀴라」(Aquila)를 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速記術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當時 「로마」는 희랍으로부터 學問과 藝術을 導入하고 있었으므로 「티로」의 略記法도 희랍에서 傳來된 應用物이 아닌가 하는 推測이 있다.

「로마」速記의 特性은 數 많은 語彙마다 個個의 符號가 있기때문에 1萬數千의 表記法을 習得 해야하는 困難으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10年 가가

은 時日을 消費하여야만 되었다.

그래서 當時 哲學者인 「세네카」(Seneca. B.C 4年~A. D 65年)는 모두 5,000餘個로 表記法을 改良 시켰던 것이다. 以上 敘述한 「티로」(Tiro) 「세네카」 및 그外 人들 의 速記文字는 17世紀初 「스캐링거」(Scalinger)가 모두 蒐集해서 1603年 「하이델버그」(Heidelberg)에서 刊行된 「야누스 그루테루스」(Janus Gruterus)大作에 附錄으로 挿入하였다.

1817年 獨逸의 著名한 學者인 「유릿히」(Ulrich)가 「티로」(Tiro)의 略記法을 分析한바에 의하면 「로마」時代의 速記는 비록 記憶에 依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19世紀 初葉에 流行하였던 實用的이면서 體系가 없는 速記法式과 類似한 即 實用 目的을 위한 速記術이었으며 그와같은 速記法式은 例를들면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 第38節에서 「찰스·디킨스」(Charles Dickens)가 봤듯이 自身이 썼을때 自身의 經驗으로 略記했던 것과 같은 方式이다.

또한 「네로」(Nero) 皇帝時代에 某將軍이 速記士에 관하여 잘막한 警句를 남겨 두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Currant verba licet, manus est velocior illis.

그 當時 社會各分野에 速記가 普及된 事實을 들면 「아우구스투스」(Augustus)皇帝는 「스투니우스」(Suetonius)를 시켜서 그의 孫子들에게 速記術을 가르쳤으며 「티투스」(Titus) 皇帝도 아주 能熟한 速記士였다는 것이다.

1903年 「카이로」(Cairo) 南方 100哩 地點에서 「그렌펠」(Grenfell)教授와 「헛트」(Hunt)教授에 의해서 發見된 古代紙葉속에는 다음과 같은 史實이 記錄되어 있다.

速記士(Tachygraphy)와의 契約에 依하여 120 「드라크마」(drachmæ. 24弗 상당)를 내고 奴隸少年들이 A. B.(「헤르류」紀元) 137년에 創案된 速記를 배울수 있었는데 먼저 40「드라크마」는 卽席에서 支拂하고 40「드라크마」는 그 少年들의 技術이 滿足한 만큼 熟練되었다는 證據가 두렸을때 支拂되며 나머지 40「드라크마」는 熟練速記士가 되었을때 支拂 된다는 內容이 었다.

46年동안 「프랑크」王國의 王이었고 또한 814年 그가 死亡하기 以前 14年間

「로마」의 皇帝였던 「서라마」(Charlemagne)는 보기드문 상당한 學識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또한 「티로」의 略記法을 使用하는데 있어 탁월한 才能을 보여준 사람이다.

速記는 初期 基督教人들에 依해서도 많이 使用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틴 「포울」(Paul)은 書士들, 特히 速記士로 활동한 「티치커스」(Tychicus)와 筆士로 활약한 「네시머스」(Onesimus)와 같은 「콜로시아」(Colossia) 사람들에 게 몇가지의 그의 使徒書翰을 받아쓰게 한 것이 考證되었다.

또한 3世紀에 「오리젠」(Origen)이 『舊約聖書에 關한 註釋』(Commentaries on the Scriptures)을 準備함에 있어서 速記士로 하여금 自己의 口述을 받아 쓰게끔 한 事實도 있다.

4世紀末葉에 詩人 「오소누스」(Ausonius)는 그가 通常의 言語速度보다 빠르게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速記하고, 나아가 그가 詩的 許容(詩에 있어서 詩的 效果를 올리기 위하여 韻律, 文法, 論理, 事實 따위에 關하여 破格 또는 逸脫이 許容되는 自由)으로 表現하는 口述速度보다 빨리 받아 쓸수 있는 能力을 가진 어떤 젊은 速記士를 칭찬하고 또 詩로써 當時 速記士들의 技術을 찬양하였다.

그의 같은 時代에 聖 「오귀스틴」(Augustine)은 「카타제」(Carthage)에서 開辦된 監理敎의 會社를 召集하였는데 그 會社에서는 8명의 速記士들이 採用되어 2名씩 交代로 勤務하였다. 以後 「로마」帝國의 滅亡과 더불어 速記術도 차츰 잊혀지고 僧院에서 약간 使用할 정도였으나 亦是 「티로」의 略記法만은 계속 그 後로도 數世紀동안 使用되었다.

다. 近 世(14世紀~1837年 「릿트넨」式 發表以前)

近世란 14世紀末 藝術文化上的 革新運動인 文藝復興으로 부터 英國의 産業革命(17世紀~18世紀) 佛蘭西 革命의 초용들이를 거쳐 文明과 科學의 發達로 18世紀啓蒙主義와 初期 實用主義에 이르기까지의 時代의 背景을 뒤로 한 近世를 包含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文明과 文化의 많은 變遷으로 말미암아 既存 速記術의 向上과 새로운 速記法式의 創案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

需要도 各 分野別로 많아지기 始作하였다.

먼저 이를 各國別로 分類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① 英 國

英國은 現代速記의 產地라고 볼수 있다. 近代화된 最初의 速記著書인 「記號：記號에 의한 簡略，迅速，秘密速記法」(Characterie: an Arte of Shorte, Swifte & Secrete Writing by Character)이 1588년에 醫師며 牧師이고 또한 考古學者인 「티모더·브라이트」(Timothy Bright, 1550~1615)博士에 의하여 「런던」에서 刊行되었는데 이는 「브라이트」博士가 考古學을 研究하다가 「티로」의 速記文字를 發見하여 이를 根據로 創案한 것이다.

이어 1602년에 國教派牧師인 「윌리스」(Willis)에 의하여 「윌리스」式이 出刊됨으로써 비로소 實用化되었으며 그後 50年間에 걸쳐 13種類의 速記法式이 出刊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中の 多數가 數回의 再版을 거듭하였다.

이들의 速記法式은 綴字法을 利用한 것으로 多數의 默音綴字를 除한 通常의 綴字를 使用한 것이었는데 이 中 잘 알려진 것의 하나로서 「토마스·셸톤」(Thomas Shelton)의 速記法式이 1626년에 刊行되었으며 이 速記法式을 利用하여 「사무엘·펙스」(Samuel Pepys)는 日記를 썼던 것이다.

이로부터 約 2世紀後에 著名한 英國作家 「찰스·디킨스」가 速記를 익혀 法廷과 議會에서 速記士로 活動하여 一時 生計를 維持한 事實이 있다.

體系的으로 整理되고 가장 오래된 現存 英國速記法式은 「거니」(Gurney)法式인데 이는 「메이슨」(Mason)에 의하여 1672년에 創案되어 1750年 「토마스·거니」(Thomas Gurney)에 의해서 改良되어 「거니」의 速記法式이 裁判速記에 使用되었다.

事實 英國의 初期 速記法式의 거개가 綴字法 또는 「알파벳트」(Alphabet, 字母)를 利用한 것이기는 하나 發音을 記錄하는 方式은 繼續 人氣를 차지하였다.

그뒤 1736年 「필립·기브스」(Phillip Gibbs)牧師가 드디어 最初로 上述한바 「알파벳트」式의 速記術을 廢棄하고 母音을 長短으로 區分하여 表記한 表音速記術을 創案하였다.

이어 1767년에 「바이롬」(Byrom)式, 1780년에 「메로우」(Maror)式이 繼續發表되어 新聞關係에 進出하였으며 特히 1786년에 「옥스포드」大學의 哲學教授인 「테일러」에 의하여 發表된 「테일러」(S. Taylor)式은 가장 成功的으로 大陸諸國의 言語에 應用된 速記法式으로서 有名하다.

即 「테일러」式은 佛蘭西, 獨逸,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語等に 應用되어 威勢를 떨쳤다.

以後 同法式의 附屬刊行物은 「오델」(Odell), 「하딩」(Harding)等에 의하여 계속 刊行되었다. 그리고 速記가 公式的으로 採擇되기는 1740年 英國 法院에서 最初로 速記士를 任命함으로써 始作하였으며 英國에서 速記가 公認받게 된 例는 1789年의 일이다.

當時 英國 下院은 「워렌·하스팅」(Warren Hasting)을 訊問하는 途中 發言臺에 速記士를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버크」(Burke)氏가 行한 陳述을 速記「노트」를 보고 正確하게 朗讀하도록 한 結果 이에 의하여 殺人 被疑者인 「엘리자·임페이」(Elijah Impey)卿을 起訴함에 있어서 「버크」氏가 過度한 訴訟指示를 하였다는 事實이 밝혀졌던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議會 議事錄을 發刊하기 始作한 것은 1803年의 일이며 이는 「헨서어드」(Hansard)協會에 의하여 發刊되었는바 이 議事錄 發刊形式이 나중에 英國이나 英國殖民地代議機關의 一般的인 報告形式 (公文樣式)이 되었다. 이 「헨서어드」 刊行物은 新聞記事用 記錄을 編輯한 것에다가 特別記錄을 하여 補充한 것으로서 이 準公式的인 演說文은 다시 議員에게 提出되어 修正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協會는 下院의 財政的 뒷받침을 받고 運營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方式은 前述한 바 있듯이 「뉴질랜드」와 같은 殖民地等에서 採擇되고 있으며 「캐나다」議會도 英國議會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方法이 쓰여지고 있다.

그 當時에는 英國議會에서의 公式的인 速記는 分科委員會 會議記錄에 局限되었으며 「거니」式과 그 後에 「깃트맨」式이 政府의 公認速記로서 認定받아 使用되었다.

② 佛 蘭 西 (byol) sanon(1) (bye-sa-ro) bye-sa-ro

佛蘭西의 速記術은 英國보다 約 60年 늦은 1651年에 「보사루」(Jacques Cosard)의 「Methode pour escrire aussie vite guon parle」라는 速記著書가 最初로 出刊됨으로써 發展을 보게 되었다.

1790년에는 英國의 「테일러」式을 應用한 速記法式이 「베르망」(Bertin)에 依하여 發表되었으며 1787년에는 Thevenot가 「타키그라피」(迅速速記)라는 速記法式을 發明하였으며 또한 1813年 「프레페안」(C.Prépean) 은 總래의 速記法式의 長點만을 取하여 佛蘭西에 가장 適合한 速記法式을 創案하였고 1822년에는 「에메·파리」(Aiméparis)式이 發表되었다. 以後 1826年에 와서는 「프레보」(Prevost) 가 「테일러」式을 應用하여 「프레보」式을 發表하고서 1870年까지 上院의 速記監督을 하였다.

③ 獨 逸 (du) (ye) (ye)

獨逸에서 가장 오래인 速記刊行物은 1679年 出刊된 「람차이」(Ramisay)式 速記著書이며 그後 英國 速記術의 影響을 받아 1801년에는 「단차르」(Danzar)가 英國의 「테일러」式을 應用한 速記 著書를 出刊하였다. 이어서 1834年 「바바리아」(Bavaria : 獨逸南部의 州)의 長官秘書인 「프란츠·샤필·가벨스버거」(Franz Xaviel Gabelsberger)는 기록(籙)과 筆記體를 利用한 獨特한 速記法式을 創案 發表하였는데 그는 처음에 私用的 目的으로 考案한 것이 1819年에 議會의 招請을 받게 되어 이를 完成하게 되었는 것이다.

④ 美 國 (me) (ye) (ye)

美國에 있어서 速記術의 使用은 英國의 速記術使用에 比하여 20年 遲린 事는 아니었으며 美國에 共和制가 實施되었을 때에는 이미 「테일러」式이 紹介되어 있었다.

1788년에 美合衆國 憲法批准을 審議하기 위하여 召集된 「머자니아」會議은 「데이빗·로버트슨」(David Robertson)의 驚歎할만한 速記力量에 依해서 速記錄이 作成되었고 1903년에 美合衆國 全國 速記士協會(National Shorthand Reporters' Association)는 初代 國會 第1次會議의 記錄者이며 下院의

公式速記士였던 「토마스·로이드」(Thomas Lloyd)를 記念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있는 「에거스틴」 教會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碑文을 建立하였다.

『作家 軍人 愛國者 「토마스 로이드」大尉 美國 速記界의 始祖 1756年8月14日~1827年 1月 9日』

⑤ 「스페인」 「스페인」亦是 英國의 「테일러」式을 應用한 速記法式이 1800年 最初로 「마티」(Marti)에 依해서 發表되고 나서 1802년에는 勅令에 依하여 速記學 講座가 「마드리드」 大學校에 新設되어 「마티」가 그 教授職에 任命되었다.

그後 1810年 「카디즈」(Cadiz, 스페인 議會)는 最初로 議事 速記錄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또한 「마티」速記法式은 그의 子孫들에 의하여 1828年에 「폴류갈」語와 「이테리」語에 應用 傳播되었다.

⑥ 「이 테 리」

「테일러」式을 應用한 「마티」速記法式이 「마티」의 子孫에 의하여 1828年 「이테리」에 應用 發表되었으며 그後 19世紀初 「이테리」語에 直接 應用했는데 뒤에 「델피노」(Delpino)에 의하여 改良을 보았다.

⑦ 其 他 諸國의 「이테리」(H. 葡萄牙語: Havia) 「이테리」(1837年 「이테리」) 「폴류갈」은 1828年 「이테리」(H. da Marti)의 子孫에 의하여 「마티」速記法式의 「폴류갈」語에 應用發表되었으며 19世紀初 「페레이라」(Pereira)도 「테일러」式을 「폴류갈」語에 應用하였다.

그리고 「멕시코」나 南美 諸國에 對한 速記 紹介는 上記한 諸國의 速記術 採擇이 있는 後에 이루어졌다.

라. 現代 (1837年 「이테리」式以後) 國英 應用對 「이테리」

⑧ 現代速記의 近況 本章에서 現代를 英國 「이사크·릿트넬」의 「表音速記術」(Stenographic Sound Hand)이 發表된 1837年以後로 定한 것은 이 速記法式이 現代表音速記術의 發展에 新紀元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David Ross (1837年) 即 「릿트넬」은 言語의 音響을 科學的으로 分類해서 이 資料에 의하여 速記術을 創案하였음은 勿論 迅速히 쓸 수 있는 간단한 符號인 速記文字를 考

案하여 口述體速記를 可能하게 함으로써 現代會議用速記의 변모를 갖추게 한 것이다.

實로 「릿트맨」式以後로 特記할만한 것은 人間の 言語를 그 速度에 關係없이 速記術로서 거의 完全히 記錄하여 文字化할 수 있다는 事實이며 또 科學文明의 發達로 因하여 錄音機같은 速記補助機들이 나타남과 同時에 打字速記機 「렐리·타이프」 「폼퓨터」等 諸科學의 利器들이 登場하여 手筆速記를 威脅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先進諸國에서도 打字速記機의 實効性이 그다지 評價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고 「렐리·타이프」亦是 經費와 技術等 諸般 與件으로 因하여 會議用速記에 利用할 程度로까지 實用化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 先進諸國에 의하여 「폼퓨터」의 開發이 앞으로 注目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事情으로는 아직도 尙殘한 段階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當分은 手筆速記가 繼續 社會各分野에서 活用되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章에서는 主로 手筆速記에 關한 歷史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說明하려 한다.

即 現代速記는 會議用, 事務用 및 個人用의 세가지 分野로 나누어져 各各 發達되고 있으므로 以上の 세가지를 分野別로 各各 詳述하겠다.

7. 會議用 速記分野(專門速記)

이 分野를 擔當한 速記法式은 모든 一般의 口述體速記와 專門職業速記를 包含하며 上述한 세가지 分野의 速記術中 가장 發展되고 高速화된 速記法式으로서 每分間 150單語에서 300單語까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各國에서 使用되고 있는 裁判速記 또는 議會 議事速記 및 演說體速記는 곧 이 速記法式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의 代表的인 速記法式으로서는 「릿트맨」式을 들 수 있으며 美國에 만도 最近에 5,000名以上の 速記士가 이 會議用 速記能力을 保持하고 있다.

8. 事務用速記分野(非專門速記)

이 分野의 速記法式들은 分當 90單語乃至 150單語의 速記能力을 不過 몇 個月內에 習得시키는 法式이다.

그리하여 商業的 業務나 一般 事務用으로 널리 使用되는 것으로 美國의

⑧ 「그레그」식이 代表的이다.

또한 이 速記術의 習得者가 1910년에 33萬이던 것이 1919년에는 50萬으로 늘어났다는 確實한 統計에 의하여 그 普及의 容易함이 證明되었다.

ㄷ. 個人用 速記分野(非專門速記)

個人用 速記法式은 個人 私私의 「메모」나 日記等に 使用되는 法式으로서 數없이 많은 速記法式이 發表되었으나 最初의 것은 1870年代 「린즈레이」의 「迅速表記」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으며 當時 考案된 「듀이」식은 아직껏 現存되고 있다.

近來에 와서 이 個人用 速記法式은 經濟的 發達과 社會的 複雜性으로 因하여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漸次로 發展되고 있으며 特히 「一般文字式 速記」라는 題下의 새로운 速記分野가 登場하고 있다. 이것은 現存 「알파벳트」文字를 그대로 略化하여 使用하고 거기에다가 略法을 若干 考案 加味하여 補完한 程度에 그칠 것으로서 몇週內에 習得하여 利用할수 있는 利點으로 그 普及이 눈에 著게 增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形態의 速筆法은 1787年 「시몬·조지·보들리」(Simon George Bordley)가 쓴 「카드무스 브리타니쿠스」(Cadmus Bristannicus)서 發見할 수 있다.

② 現代速記의 各國別發達過程

그러면 現代의 速記가 發達되어 온 過程을 東西洋으로 區分 各國別로 論述하고자 한다.

7. 英國

現代에 와서도 英國은 美國과 더불어 速記術의 尖端을 걸고 있다.

1837年 「배쓰」(Bath) 市 出身인 「이사크·핏트맨」(Isaac Pitman)이 「表音速記術」이라는 著書를 發表하였음은 이미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를 계기로 世界速記術의 漸進的인 發展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이 表音原則은 1602年 「존·윌리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英國速記에 適用되어 점차 進展을 보다가 1837년에 이르러 「이사크·핏트맨」이 完全한 土嚮을 세워 表音速記를 考案해 낸 것이다.

即 英語에는 26個의 文字로 表示되는 43個의 各各 獨立된 音이 있는데 이

③ 彼の 獨立된 線を 「이사크·핏트맨」은 直線 또는 曲線의 단순한 幾何學的 線을 가지고 가볍게 나는 소리는 가는 線, 무겁게 올리는 소리는 굵은 線으로 子音을 表示하고 母音은 直曲線의 字頭, 字中間, 字尾 또는 子音의 字頭 字尾에 點을 찍거나 半圓, 圓, 고리形, 갈고리形으로 表示토록 한 것이다.

現代 速記法式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이사크·핏트맨」法式(Pitman system)을 좀더 具體的으로 紹介하면, 英語를 使用하는 國家에 있어서 會議用 專門的 職業速記는 「이사크·핏트맨」의 表音原則을 使用하여 創案한 速記 法式으로부터 비롯되니 이로서 「빅토리아」(Victoria)女王은 「이사크·핏트맨」에게 그의 卓越한 業績을 認定하여 1894年 騎士(knight)의 爵位를 授與하였다.

1887年 「런던」에서는 「핏트맨」式의 50年祭, 「브라이트」式의 300年祭를 紀

(Isaac Pitman) 基 本 文 字

破裂音(子音) 4~5mm		連續音(子音) 4~5mm 00~03	
細線	太線	細線	太線
P \	B \	F \	V \
T	D	TH {	TH {
CH /	J /	S }	Z }
K —	G —	SH /	ZH /
鼻音 M — (細線)		N — (細線)	NH — (太線)
流音 L / (")		R \ or /	
結合語 W / (")		Y /	氣息語 H / /
長母音 (位置)		短母音 (位置)	
1. AH =tah		ā =pat	
2. EH =tay		ē =pet	
3. EE =tea		i =pit	
1. AW =taw		ō =not	
2. OH =toe		û =nut	
3. OO =too		ōō =foot	
重母音(位置) ↓	^ =OW	' =OI	! =ú

念하는 第1回 國際速記會議가 있었는데 이 行事에서 優秀한 速記士들이 世界의 文化人들을 驚歎케 하는 才能을 示範을 하였다

「이사크」卿은 「앵글로·색슨」文化가 浸透된 모든 나라에 이 「핏트맨」式 速記가 導入되고 난 直後인 1897年 逝去하였는데 生存當時 그는 自己의 兄弟들과 美國人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特히 그의 同생 「벤·핏트맨」(Benn Pitman)의 도움이 더욱 컸다.

別表는 「이사크·핏트맨」速記敎本(Course in Isaac Pitman Shortand)에 있는 「이사크·핏트맨」法式의 基本文字이다.

上記와같은 記法은 모두 英語의 音을 表示하는 것이며 여기에 略法이 附加되어 手筆로써 能히 口述을 좇아 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사크·핏트맨」卿이 速記文字를 創案하고서 實務者들과 有能한 教師들의 도움으로 다시 改良했을 때는 다음과같은 三重的인 目的을 가졌다.

1. 非專門速記를 願하는 사람에게는 몇週內에 간단하고 쉽게 습득시킴 1分當 50~60單語를 速記하게 한것.

2. 企業人 行政官 醫師 著作者 科學者 其他의 사람들에게는 몇個月內의 習得으로서 分當 100單語 程度를 速記할 수 있게 한것.

3. 必要할 경우 分當 300單語 程度의 速記까지 할 수 있는 會議用速記術 (專門速記)의 確立.

特히 여기에서 세 번째인 會議用 速記術의 成功이 速記術의 普及에 두런한 業績을 남겼다는 點이다.

「핏트맨」의 速記術은 美國을 비롯한 英語 國家群에서 使用되나 그리고 英語外에도 「스페인」語, 「네덜란드」語, 「말타가시」語等에 應用되고 있다.

또한 濠洲, 「뉴질랜드」및 印度等을 包含한 東半球에서 有名하여 每年 25萬名 以上이 習得하고 있다.

1902년에는 「에드워드·젠티릿」(Edward Gantlett)가 「日本語表音速記法」(Phonographica Japonica)이라는 題下로 日本語에 應用했으며 韓國의 速記도 亦是 幾何線派인 「핏트맨」그림의 影響을 받아서 個個 單말의 精密한 標識보다도 그 輪廓만을 간단히 表示하는 記法을 使用하고 있다.

印度에서도 「판잡」大學校의 「나비나」(Navina)教授가 이를 應用하여 「힌두」語(Hindu Characters)에 대한 새로운 速記法式을 創案한 바 있다.

이 「이사크·릿트렌」式에 根據를 둔 變形된 諸速記法式에는 「엘리아스·롱그레이」(Elias Longley)式, 「앤드류·제이·그라함」(Andrew J. Graham)式, 「제임스·이·민슨」(James·E·Munson)式, 「벤·릿트렌」式 등이 있다.

또 한가지 「릿트렌」式에 대한 例를 들면 英國議會 記者席에서 使用되고 있는 速記法式에 대한 1914年の 調査에서 137名의 速記者中 128名이 「릿트렌」式을 使用하고 「테일라」式이 4名, 「거니」式이 2名 그리고 「슬로안·듀프로와에」(Sloan—Duployan Sytem)式이 3名으로 나타났다.

現在(1960年代) 英國速記界에 있어서는 出版物 保護法에 依據 「이사크·릿트렌」式이 支配的으로 많이 使用되며 그다음이 「벤·릿트렌」式과 「그라함」式이다.

英國에서는 이 외에 1920年初 「윌리엄·윅킹함」에 의하여 「簡略速記」(Brachygraphie post-write)가 創案되어 草書派로서 進出하였으나 「그레그」式보다 優秀한지는 疑問視되고 있다.

나. 美國

美國에도 英國에서 「릿트렌」式이 創案된지 바로 몇年 되지 아니하여 「릿트렌」式이 普及되기 始作하였다

특히 「이사크·릿트렌」의 親弟인 「벤·릿트렌」은 1853年 渡美하여 「신시내티」에다 速記學院을 設立하고 出版社를 開業했는데 이 出版社는 오늘날까지도 盛業中에 있다.

50年동안 自己兄이 創案한 速記術을 普及하고 發展시키는데 專念해 온 「벤·릿트렌」은 1903年 「신시내티」市에서 全國 速記士協會主催로 開催된 그의 50年祭에 의해서 그의 功績이 널리 알려졌다.

그後 이 「릿트렌」式의 變形된 速記術 卽, 1849年에 創案된 「엘리아스·롱그레이」式, 1853年에 「벤·릿트렌」式 그리고 「앤드류·제이·그라함」式 및 1867年에 創案된 「제임스·이·민슨」式이 美國에 널리 普及되어 있으며 1858年에 「그라함」氏는 「標準速記術」이라는 著書를 내놓았다.

이 외에 1864년에 「린즈리 (Lindsley)식, 1871년에는 「번즈」(Burnz)식이
각각 創案發表되었다.

그後 特記할 만한 點은 1888년에 「존·로버트·그레그」(Jhon Robert Gregg)가 英語 表音速記術인 「輕線速記法」(Light Line Ponography)이라는 冊을
發刊한 것인데 이 速記法式은 다른 어느 速記法式보다 美國의 많은 學校에
서 배우고 있으며 速記士志望生들에 의하여 익혀지고 있다. 그리고 世界의
많은 나라에서 冊으로 發刊되었으며 實際로 習得되고 있다.

이 「그레그」식의 大原理는 表音대로 單語를 表示하며 어느 것이든지 가느
다란 線으로써 表記하는 것이다. 美國에서 速記에 關한 公式的인 使用이 國
會, 法院과 實業界의 需要에 의하여 擴大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1848年 美國의 上院은 質疑와 討論等 會議를 記錄하기 위해서 速記士와 契
約을 締結하였으며 그 이듬해 下院도 마찬가지로 契約을 締結하여 議事錄을
作成하였다. 그런데 1848年以前에는 討論의 內容을 拔萃作成한 程度에 그
쳤다.

1878년에는 各州議會도 上下院이 速記士와 契約締結하는 方法을 採擇하여
會議錄을 作成하였는데 이때부터 全美議會는 速記士에 의한 議事錄發刊을
個人契約으로부터 政府의 公式發刊所로 變更하여 刊行하기 始作하였다. 當
時 上下兩院은 각기 5名의 速記士班을 두고 各人에게 年間 5,000弗을 支拂
하였다.

이에 附加해서 下院은 公式的으로 委員會速記士班까지도 編成하였다.

速記에 關한 文獻은 再版을 除外하고 1951年 現在 約 1萬6,000種에 達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英語速記分野에 關하여 가장 貴重한 功獻을 한 사람
은 「유리어스·앙자인·록크웰」(Julius Ensign Rockwell)로서 그의 著書는
政府에 의하여 美文敎省 回報第2號(1884年)와 第1號(1893年)에 실려져 刊行
을 보았다.

그런데 後者에는 1602년에 「윌라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創案된 速記文字
로부터 1882年 「페닌」(pernin)에 의해서 應用된 「듀프로이」식에 이르기까
지 112個法式에 達하는 英語速記文字가 再收錄되어 있다.

美國의 代表的인 速記士協會는 全國速記士協會(The National Shorthand Reporters' Association)로서 이協會는 35個州, 2個의 屬領, 「콜롬비아」區(Colombia區, Washington D.C)에 있는 速記士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州에는 그 執行委員會가 있다. (年代未詳)

그런데 이協會의 注目할만한 事業으로서는 「速記의 標準化를 위한 努力」이 있다. 即 1909년에 同協會는 「速記를 철저한 科學的(學問的)인 根據에 바탕을 둔 會議用(口述體)速記術의 標準化」(to standardize verbatim Shorthand reporting, putting it on a thoroughly scientific basis)委員會를 設置하고 모든 「릿트맨」速記法式에 通用되고 있는 이들 速記文字의 諸原則을 研究하기 위하여 美國과 「카나다」의 有能한 一部 速記士를 動員해서 10年間 이 힘은 事業을 無報酬로 推進하였다. 그들은 「릿트맨」速記法式을 口述體速記目的을 위해서 이때까지 考案된 것으로는 가장 完全한 것으로 만들려는 意慾下에 速記便法과 單語와 語句의 比較 選擇을 重點的으로 研究해 왔다. 同委員會의 調查結果는 1922년부터 1924년까지 開催된 全國 速記士協會의 第23次 乃至 第25次 年次大會의 會議錄에서 찾아 볼수 있다.

獨逸은 「릿트맨」法式보다는 1834年 「프랑즈·사빌·가벨스버거」 Franz Xavier Gabelsberger)에 의하여 創案된 筆記體 「로마」字에 準하여 斜線을 使用하는 草書派速記인 「가벨스버거」速記法式이 훨씬 널리 普及되었다. 또 이 「가벨스버거」式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러시아」 「덴마크」 「노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지움」 「체르비아」 「루마니아」에 傳播되어 使用되었다.

1841年 「윌헬름·스톨즈」(Wilhelm stolze)가 創案한 法式이 「프러시아」議會에서 使用을 보았는데 이는 獨逸에서 公式的으로 使用되는 「가벨스버거」式에 대한 唯一한 例外였다.

「러시아」에서는 「가벨스버거」式의 한 變形이 帝國議會上院과 佛蘭西, 白耳義 등의 最高法院格인 破棄院(Court of Cassation) 그리고 其他 諸法院에서 公式的으로 使用되었다.

그後 1887년에 「슈데이」(Schrey)式(=슈틀케式을 改良) 1924년에 統一式(Einheitskurz Schrift)等이 繼續 草書形 速記法式으로서 發表되었다.

르. 佛 蘭 西

佛蘭西의 現代速記法式으로서 1878년에 「듀로네」(Albert Delauney)가 「쁘레보」式에 修正을 加하여 「쁘레보·듀로네」速記法이라고 改稱한 法式이 發表되어 使用되고 있으며 또 1862년에 創案된 「듀프로이」(Abbe Duploye)速記法式도 使用되고 있는데 이들 兩速記法式은 佛語 使用國에 있어서는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코사부」式, 「네르망」式, 「프레페안」式, 「쁘레보」式, 「듀프로이」式等 諸法式은 共通의 圓이나 갈고리 曲線을 利用한 幾何學的인 原理에 根據를 두고 있다.

리. 伊 太 利

19世紀初 「넬피노」가 英國의 「테일러」式을 改良하였으며 이 速記法式은 「이태리」下院의 速記士들이 使用하였다. 勿論 그 前에 「아만반티」도 「테일러」式을 「이태리」語에 應用한 바 있다. 그後 「노에」(Noe)는 獨逸의 「가멜스버거」式을 「이태리」語에 應用하였는데 위에 여러 사람들이 修正을 加하여 널리 使用되고 있다.

미. 韓 國

다음 章에서 바로 우리나라 速記의 成長과 發展過程을 論述 하기에 本章에서는 省略한다.

나. 日 本

日本語의 「히라가나」도 一種의 速記形態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西洋流의 速記形態가 明治維新後 歐美文化의 紹介된 데에서 부터 始作되었다.

그중에 盛岡人 田鎖網紀(1854~1938)는 「깃트렌」系의 「그라함」(Graham)式을 應用考案하여 1882年(明治15年 10月 28日) 東京에서 日本傍聽記錄法 講習會를 열었다.

그 修了生으로서 若林珪藏(1857~1938) 林 茂淳(1862~1942)等이 있어 若林

가 「郵便報知」의 「自申新聞」에 對한 談判을 速記한 것이 實用化的 始初였다.

그後 速記의 利用分野는 口述, 講演, 地方議會等에 미치었으나 特히 三遊亭圓朝述 「怪談牡丹燈籠」(1884年)에서 始作된 講談速記는 널리 世人에 알려지고 또한 言文一致의 推進力이 되었다.

當時의 最大目標는 帝國議會의 速記였으나 이것도 金子堅太郎(初代貴族院書記官長)의 英斷에 依해서 第一議會(1890年)부터 實現되어 日本憲政史의 큰 功績이 되었다.

그 功績이 認定되어 田鎖에게는 1894年에 「藍綬褒章」이 授與되고 이어 1896年에는 年金 300圓 終身下賜까지도 行하여지게 되었다.

그後 1897年(明治30年)에는 貴族院과 衆議院 兩院의 官制에 速記技手制度가 插入되어 速記士의 地位도 向上되었다.

1899年에는 長距離電話의 開通이 있음으로써 新聞通信方面에도 크게 進出하였다.

1918年(大正7年)에는 貴族院, 衆議院 兩院에 各各 專門速記士養成所가 設置되었는데 이것이 現在의 衆議院速記者養成所 및 參議院速記者養成所인 것이다.

1920年에는 「日本速記協會」가 誕生되어 速記界發展의 推進力이 되었다.

1922年에는 改正刑事訴訟法(第65條), 1926年(大正15年)에는 改正民事訴訟法(第148條)에 速記의 項이 插入되어 裁判速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雜誌는 從來의 演說, 講演外에 새로이 座談會를 取扱하게 되었고 談話를 모으고 本人의 檢閱을 거쳐는等 執筆을 하기 爲하는데에도 速記를 利用하게 되었다.

1950年에는 職階制에 關聯해서 人事院에서도 速記記錄職의 內容을 公告하여 그 特殊性을 明白하게 하였다. 그러나 實業界에의 進出이나 日常生活에의 活用은 現在에도 顯著하게 推展되고 있다.

또한 速記法式에 있어서도 많은 研究者에 依해서 改良되었다. 其中 主要한 것은 熊崎式(熊崎健一郎, 1906年), 中根式(中根正親, 1914年), 早稻田式(川口

涉, 1931年), 衆議院式, 參議院式 등으로 어느것이나 幾何線派에 屬한 것이다 또한 打字速記方式인 速「타이프」(川上見, 1944年)는 最高裁判所書記官研究所에 採擇되어 法廷速記者(裁判所速記官)에게 사용되고 있다.

○. 中國

中國의 速記歷史에 關한 文獻이나 資料는 多少 있을것이나 入手하지 못하였고 다만 東洋의 速記法式들이 거의 西歐의 速記法式을 應用하여 創案하다 시피 中國 또한 西歐의 影響을 받아 發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뿐이다.

1908年 봄에 日本人 熊崎健一郎은 中國語速記에 關하여 쓴 原稿를 同年 9月에 中國政府에 보내자 中國政府로부터 研究 普及依頼의 招請까지 받게 되었으나 當時 新聞記者(時事新報社記者)의 職을 떠날수 없다 하여 이에 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中國政府에서는 1895年 中國人 蔡錫勇이 創案한 「傳音快字」速記法式을 採擇하여 使用하였다. 以後 蔡錫勇은 北平에 速記學校를 設立하여 이의 普及에 힘썼다. 또한 이 「傳音快字」速記法式은 1910年 4月 15日 中國의 政治官報에 發表되었고 뒤이어 各新聞에 轉載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스. 土耳其(Turkey)

速記術은 議會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높은 發展을 하게 된다. 土耳其는 1876年 改革運動의 成功으로 立憲國家가 樹立되기 前까지는 速記方式을 갖지 않았는데 1877年 「土耳其」議會가 樹立되고부터 그 記錄保存을 爲하여 速記에 對한 關心을 갖기 始作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土耳其語 發言을 佛語로 翻譯記錄하기 위해서 速記士를 雇傭하였지만 이 作業은 失敗하였다. 當時 議員들은 빈약한 速記로 因하여 內容을 줄이거나 느리게 發言할 것을 要請받았지만 이러한 規則이 討論過程에서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亦是 議會에서는 發言을 그 速度에 關係 없이 받아 쓰는 高度의 速記術이 要求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土耳其 議會에서는 速記機械를 發明하고자 試圖했는데 이것도 無爲로 끝났다. 다만 「자벨스버거」速記法式이 「그룬바움」(Grünbaum)에 의하여

서 土耳其語로 應用考索되었을 따름이다.

그後 1923年 共和制의 發足과 同時에 初代 大統領에 就任한 「무스타파·게달·파샤」는 모든 方面에 걸쳐 舊制度의 改革에 着手했는데 그중 1928년에 施行한 文字改革이 가장 特記할만한 業績이었다.

이로 因하여 「아라비아」文字 代身 新「라틴」字母가 採用되고 帝國時代의 言語였던 「오스만」語의 語彙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이 文字改革과 거의 같은 時期에 「이스탄불」사람 「아브랄·데나로이양」은 「프레보·듀로네」(Prevost · Delauney)式과 「듀프로이」(Duploye, 佛語速記法)式을 土耳其語에 適用하고자 試圖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成功을 거두어 1942년까지 土耳其 國民議會 事務局에서 使用되고 또한 國立商業高等學校等에서도 이 速記法式을 가르쳤다.

1942年 速記士 教授委員會는 「깃트렌」式을 添加하여 改良을 하였는데 이 改良法式이 1955년까지에 걸쳐 점차 널리 普及이 되었다.

또 最近에는 「그레그」式(Gregg, 美語速記法)의 採用이 새로이 檢討되고 있는 바 現在 몇곳의 書記官養成所에서 實驗的으로 「깃트렌」式을 主로한 在來式에 添加해서 「그레그」式이 教授되고 있다.

마. 其他

最近에는 一般 文字式 速記가 發達하여 「알파벳트」를 많이 使用하여 表記하고 있는데 이런 速記法式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略語速記法(Abbreviatrix, 1945年), 「베인」式速記法(Baine's Typed Short-hand, 1917年), 「카터」式速記法(Carter Briefhand, 1957年), 「유크너」式 「알파벳트」速記法(Forkner Alphabet, 1955年), 「게르스텐」(Gersten)式 「알파벳트」速記法(1949年), 高速의 普通쓰기法(Hy Speed Longhand, 1932年), 速筆法(Quickhand, 1953年), 速筆法(Speed hand, 1952年), 速筆法(Speed writing, 1923年 및 1951年), 速記法(Stenoscript, 1955年), 速記法(Steno speed, 1953年) 및 「진만」式 速記法(Zinman, 1954年) 등이 있다.

1787年 「시몬·조지·보들리」(Simon George Bordley)가 쓴 「카드무스·브리타니쿠스」(Cadmus Britannicus)에 의하면 이 一般文字式 速記는 세가지의

速記法式으로 分類되어 있다고 說明한다.

첫째로 「느린 速記法」(Slower Shorthand)이라 稱하는 이 경우는 「알파벳트」의 文字를 약간 變形하여 使用한 것이고,

둘째번의 迅速筆記法(Swift Shorthand)은 原稿用 速記이며,

세째의 것은 「音樂速記」라고 한다.

上記한 諸文字式 速記에서 主張하는 有利한 長點은 「알파벳트」綴字가 빠
우는 쪽에게 친숙해 있어서 배우기가 쉽고 다른 速記法에 비해 짧은 期間에
익힐 수 있으며 翻文이 容易하다는 것이다. 한편 不利한 點은 速度가 限定
되어 있다는 것이 큰 弱點으로 되어 있다.

특히 英國에서는 1952年 「씨·티·루더워드」(C. T. Rutherford)가 發明한
「速筆法」(Speedhand)이 最近에 차츰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이 速筆
法은 손이나 打字機로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5時間이던 習得할 수
있는 것이다.

第 2 節 速記方式과 需要面의 變遷

가. 速記方式

速記文學는 世界各國文字의 變遷과 함께 發展되어 왔으며 또한 그 記法이
各國 言語와 相關關係를 이루면서 變遷되어 왔다.

그러하여 歷史上 數없이 많은 速記法式이 明滅되었지만 巨觀的으로 概觀
할 때 速記文學構造는 歷史속에서 幾다란 脈流들이 두터이 흘러 왔다.

이 脈流를 史的立場에서 研究考察하고자 한다.

現代에 이르러 速記術은 매우 發達되어 「正確한 表記 (Stenography), 迅速
한 記錄 (Tachygraphy)과 簡略한 表記 (Brachygraphy)로」라는 速記術의

3大命題를 모두 滿足시키는 速記法式이 이다하지만, 古代나 中世에 있어서는
記法上으로 簡略하게 表記하는 程度나 正確한 表記 程度에만 그쳤던 것이다.

그러하여 古代 「로마」時代에는 速記라고 해야 現在의 略記에 해당하는 것
이 있으며 近世時代에 와서도 事務用速記(參照：第1節 라, 現代)에 不過했던

것이다.

그래서 本章에서는 그時代를 勸案하여 略記時代, 表音速記時代, 「알파벳트」 (一般文字式) 速記時代로 大別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① 略記時代

이는 古代에서 부터 表音速記術發明(1874年)以前으로 볼 수 있으며 代表的 法式은 다음과 같다.

7. 「티로」式

紀元前 53年 「로마」時代에 「로마」의 「티로」가 發明한 略記法으로 各字, 單語마다 符號가 붙는 原始的 速記法式이다.

1. 符號式(Characterie)

이에는 1588年 英國의 「브라이트」博士의 速記法式과 1626年 英國의 「셀튼」의 速記法式을 들수 있는데 이 速記法式은 英語의 「알파벳트」에 있어 點音 綴字를 除한 通常의 綴字法을 利用한 것으로 比較的 迅速한 記法이었으나 亦是 지금의 略記形態를 免치 못한 것이다.

② 表音速記時代

1736年 「필립·기브스」의 表音速記術의 創案으로부터 오늘날까지를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各 流派를 들수 있다.

7. 正圓派(幾何線派)

表音原則을 바탕으로 幾何學의 表示方法을 採擇 모든 言語를 線의 方向, 曲直 또는 濃淡(粗太)으로 表示한 것으로서 名實相符한 現代 口述體(會議用) 速記流派이다.

代表的인 速記法式으로는 英國의 「필립·기브스」의 表音速記法(1736年)과 「테일러」式(1786年) 및 「이사크·윙트맨」式(1837年)이며 佛蘭西의 「코사투」式(1651年), Thévenot式(1787年) 및 「브테코·듀모네」式(1878年)이 있고 이 대리의 「파리」式(1803年), 그리고 美國 濠洲 印度 日本 韓國等은 모두 正圓派의 原則을 應用한 것으로 「윙트맨」系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1. 斜線派(草書派)

이는 獨逸에서 流行한 速記流派로서 筆記體 「로마」字에 準한 斜線을 使用

한 것이다

代表的인 速記法式으로는 獨逸의 「가벤스버거」式(1834年)과 「스물제」式(1841年)이 있고 「이테리」의 「노에」(Noé)式(1802年), 英國의 「윌리엄·윌킨함」式(1920年)이 있다.

ㄷ. 橢圓派(半草書派)

이는 正圓派와 斜線派를 折衷한 速記流派로서 曲線을 主流로 하고 모두 淡線(細線)으로 表記하는 것이 特徵이다. 代表的인 速記法式으로는 美國의 「그레그」式(1888年)이 있다.

③ 「알파벳트」式 速記時代(文字派)

이는 現代表音速記 時代에 있어서 요즈음 流行하기 始作한 速記流派인데 英語「알파벳트」의 簡略形에다 몇個의 共通의 略法을 附加시킨 것으로 主로 英·美에서 盛行하고 있다.

勿論 이것은 會議用 速記라고는 할 수 없으며 事務用, 個人用 速記 程度에 그치는 것이나 習得하기에 便利한 點이 있다. 代表的인 速記法式으로는 1917年 「비인」式(1917年), 「카터」式(1957年)이 있는데 特히 英國의 「루더워드」는 「알파벳트」式 速記法을 創案(1952年)함과 同時에 이 速記法을 英文 打字機에도 15時間 동안만 習得하면 應用할 수 있게한 것으로 有名하다.

나. 需要面의 變遷

現代에 와서 速記의 用途는 立法機關의 議事進行記錄, 裁判所의 裁判記錄, 言論機關에서의 取材用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그 代表的인 需要處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歷史적으로 본 이 側面的 考察도 그 年代를 前節(時代的考察)에서와 같이 分類하여 다루기로 한다.

① 古代

主로 元老院會議(立法, 司法) 宗教會議 또는 口述의 받아쓰기, 演說 또는 講義에서 速記를 利用했으며 여기에는 「티로」式이 거의 代表的으로 使用되었고 다만 A·D 30年경 「로마」의 「제네카」가 「타로」式을 改良하여 宗教關係의 速記를 하였다.

② 中近世

僧院會議, 裁判, 新聞關係, 議會等에 速記가 大部分 利用되었으며 各需要에 對하여 活用된 代表的 速記法式은 다음과 같다.

7. 僧院會議

「일티스」式(1602年)

나. 裁判速記

「에이슨」式(1678年)

「자니」式(1750年)

「테일러」式(1786年)

다. 新聞關係

「마이틀」式(1767年)

「에로우」式(1780年)

「테일러」式(1786年)

르. 議會速記

英國에서는 1803년에 速記方式을 使用하여 「헨서어드協會가 議會議事錄을 發刊하게 되었다」고 英國의 「테일러」式의 應用法式이 「유럽」諸國의 議會에서 使用되었다. 「스페인」議會는 1810년에 「마티」式을 採用하였고 「이태리」下院에서는 19世紀初에 「델피노」式을, 그리고 佛蘭西議會는 「프레보」式, 「듀프 로이」式 등을 採用하였다.

③ 現代

7. 專門速記

議會, 裁判, 株主總會, 演說, 記事取材, 其他 實業界에 實用되는 專門的 速記術로서 代表的인 速記法式은

英國의 「깃트넬」式(1837年)

美國의 「그레그」式(1888年)等이다.

나. 非專門速記

日常生活에 必要한 個人的 메모, 日記, 講義의 拔萃速記, 記事取材에 利用되는 것으로 一般文字式速記(參照 第1節 다. 現代)가 이에 해당 된다.

第3章 우리나라 速記의 成長과 發展

우리말 速記의 發展過程을 살핌에 있어서 于先 우리말의 發生과 發展過程을 더듬어 보지 않을수 없다. 文字가 생겨나기 以前의 上古代에 있어서 우리의 先祖들이 어떤 形態로든 言語以外的 記述方法을 터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推測은 있을수 있으나 現在 그것을 考證할만한 資料가 없다.

우리 나라에 歷史的으로 文字가 들어오기는 公式的인 記錄上으로는 地政學上으로 우리 나라의 位置가 漢民族과 接하여 있어 그들과의 交流가 빈번한 까닭에 비록 그것이 다른 民族의 文字이나 漢字를 輸入하게 되어 高句麗 太祖28年에 漢字書의 처음 出現을 보아 이 漢字가 南方으로 傳播되어 言語는 固有의 言語를 使用하였으나 文字만은 다른 民族文字인 表意文字 卽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우리 固有文字의 創製를 가로막고 늦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漢字가 文字로서 他人에게 意思傳達의 役割은 可能하였으나 배우고 쓰기에 어렵고 말의 記錄, 描寫가 不可能함에 따라 新羅 神文王때의 學者 薛聰이 漢字中에서 우리 말을 記錄하는데 적당한 字를 주면서 漢字와 並用하였던 바 이것이 곧 吏讀의 出現인 것이다.

卽 例들들어 우리말의 「을」을 「乙」로 「과」를 「果」로 「바라」를 「望」으로 「알」을 「知」 「바」를 「所」등이 그것이며 이 吏讀의 使用은 新羅時代부터 高麗朝를 거쳐 李朝에까지 이르렀으니 李朝初에 와서 漢字에 ㅅ를 달때에 吏讀文字를 利用하게 되자 이의 不便을 除去하고자 吏讀文字를 그대로 使用하지 않고 漢字의 特定한 劃을 따서 簡略하게 略記體를 使用하여 쓰게 된 것이다.

그 例를 아래에 적어보던

1. 正字	可	爲飛	爲稻	是尼羅
本文	鵬鳴가	能言하나	不能飛鳥하며	不離禽獸이니라

에 到達하는 것인바, 우리나라의 速記는 發案後에 있어 日帝의 植民地라는 政治的, 社會的 環境의 不自由로 말미암아 長期間 發展을 보지 못하고 挫折되 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速記를 그 發達史의 史의 考察해 보면 우리나라 의 近代政治史에 依據하여 1945年 8月 15日 解放을 基點으로 그前과 後로 나누어 8.15前을 創案發表期로 보고 8.15後를 實用期와 成長期로 區分하여 論及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8·15解放前에는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에 依해서 우리말 自體가 受難을 겪었으니 우리의 글이 發達할 수 없었을 뿐 아 니라 그러한 環境속에서 速記는 더욱이 發達할 수 있는 素地가 없었던 것이 다. 그러나 우리의 先覺者들은 그와같은 政治的 環境下에서나마 6,7가지의 速記法式을 研究考案 發表를 했던 것이나 不幸히도 普及과 繼承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던져진 씨앗이 싹이 트이지 못하고 뿌리박지 못한채 말라버린 結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時期를 大別하여 日帝 36年間의 史實을 先覺期, 發表期, 萎縮期, 3期로 나눌수 있으니 先覺期라 함은 慶尙道出身인 朴如日氏가 1904年 韓國을 떠나 「하와이」로 건너가서 1909년에 우리나라 史上 처음으로 朝鮮速記法을 創案하 여 當地에서 發刊되는 韓國新聞 「신한민보」에 發表하였으며, 그뒤 己未獨立 運動이 있은지 3年後인 1923년에 亡命地인 上海에서 「金○○」이 出刊한 文 法書 第2附錄에 실린 「날적말적기」(날계 卽 따르게 지는다는 뜻에서 取한것) 등이 우리말 速記法創案의 先鞭을 친것이되니 이 時期를 先覺期라고 보고,

이어서 1925년에 朝鮮日報 方台煥氏의 勸諭로 渡日하여 日本의 田鑽式을 研究한 方翼煥, 李源祥 兩氏의 共同發表, 1927년에 金한터氏의 發表, 同年에 嚴 正友氏의 發表가 있었고 1935년에 姜毅遠氏의 案이 東亞日報에 發表되었는 데 이 時期를 發表期라고 볼 수 있다. 그뒤에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에 따 라 우리말 新聞의 停刊處分, 中日戰爭, 第2次世界大戰을 차루는 동안 速記法 式의 創案은 且置하고 이미 發表된 速記法式의 研究, 普及, 繼承이 完全 中 斷되었으니 이 時期를 萎縮期라고 볼 수 있다.

8·15解放前까지 速記의 創案實態 및 速記界의 움직임을 文獻上에 發表된 것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09年 朴如日氏가 美州 「하와이」에서 朝鮮速記法을 創案, 「시카고」에서 速記學講義와 同時에 美國에서 發刊되는 韓國新聞 「신한민보」에 發表하였다. 그뒤 1920년에 印度南쪽의 「마인」이라는 곳에 移住하여 書籍出版에 着手하였다가 一身上 事情으로 中途에서 中止하였다.

그의 速記法式은 幾何線派이며 點에서 始原하여 文字를 機成한다. 卽 點, 直線, 曲線과 線의 長短 및 濃淡으로 文字의 變化를 이룬다.

○1923年 金○○이 亡命地 上海에서 出刊한 文法書(김도 조선말본) 第2 附錄에 「날적달적기」라는 이름의 速記法式을 考案 發表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英國의 「부라이프」式처럼 水平 各小線 子音에다가 垂直 各線 母音을 適用한 附號文字로 機成된 速記法式이다.

○1925年 7月 1日과 2日附의 時代日報紙上에 方翼煥, 李源祥 兩氏의 共同 考案으로 「朝鮮語速記術」이 發表되었다.

이 速記法式은 日本의 田鎖式과 같이 한 子音線에 各方向이 있는 大小橢圓으로 된 母音을 加하는 速記法式이다.

○1927年 1月號 月刊誌 「新朝鮮」에 金한터氏가 「우리말速記法」을 考案發表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한子音線에다가 右方向小線 或은 小橢圓을 加하는 것으로서 이 速記法式의 特色은 記錄線의 下向性을 막기 爲하여 子音線中 下向에는 小文字문이고 大文字가 없는 것이 特色이다.

○1927年 7, 8月 兩號 月刊誌 「東光」에 嚴正友氏가 「朝鮮速記術」을 發表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한글 子音線形에 가까운 各方向曲線을 子音으로하고 各方向大小直線을 母音으로 하여 初聲復用으로 終聲을 쓰는 速記法式이다.

○1934年 2月刊 東萊高普 校友會誌에 學生 金勇虎氏가 「朝鮮速記法」을 掲載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橫書가 아니라 縱書式으로서 우리 速記史上에 奇異한 速記法式이다.

○1935年 6月 18日부터 7月 28日까지 29회에 나누어 東亞日報紙上에 姜駿遠氏가 「朝鮮語速記術講解」를 連載하였다.

이 速記法式은 單劃式 橢圓派로 美國의 「그레그」式과 類似하며 子音은 線, 母音은 方向으로 一字를 이루며 받침은 字頭, 助詞는 字尾로 機成되어 있다.

第2節 實用記

近代政治形態의 國家에는 대개 議會가 있으며 議會가 있는 國家는 大部分 速記術을 活用하고 있다. 日帝의 植民地下에서 우리나라 國語는 抹殺되었고 따라서 우리말 速記 亦是 發芽期에서 깃발인채 成長하지 못하다가 8·15解放을 맞이하여 비로소 우리나라 速記도 햇빛을 보기 始作하였다.

前節에서 論한 바와같이 解放以前에 發表된 速記法式은 大部分이 研究過程에서 中斷되었을 뿐만아니라 創案者 自身이 海外에서 歸國치 못한 事情等으로 말미암아 거의 實用을 보지못하고 말았다.

8·15解放後에 새로운 考案發表된 速記法式과 우리나라 速記界 實用初期의 過程을 한데 묶어 年代順으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 1946年6月20日 張基泰氏가 逸波式速記法을 서울신문 外 各新聞에 解放後最初로 考案發表하였다.

○ 1946年6月末日頃에는 速記文化의 普及, 發展, 研究를 위한 速記人의 集團體인 「朝鮮語速記學會」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結成을 보았다. 同會長에 姜駿遠氏, 副會長에 朴寅泰氏가 被選되었고 아울러 各新聞에 報道됨으로써 社會各方面에 우리말速記의 全貌를 나타내게 되어 全國各地에 散在된 速記人 間의 連絡과 共同發表의 機會도 갖게 되었다.

○ 1946年8月3日에는 한글가르쓰기協會 速記部主催로 朝鮮神學校에서 速記建設에 대한 懇談會를 開催하였는데 同席上에서 비로소 各創案者의 自己速記法式紹介가 있었다. 參席者는 張基泰, 姜駿遠, 朴寅泰, 朴鍾沆 諸氏로서 當時는 創案한 段階에 不遇하였으므로 同人 間에 批判의 餘地가 많았던 것이다.

○ 1946年8月7日에는 朝鮮語速記學會와 別途로 張基泰氏가 主幹인 「朝鮮速記文化協會」가 發足하여 協會의 첫事業으로 速記事務分野와 速記士養成事業에 置重하기로 하였다. 速記事務는 閔載禎氏(晉論人)의 많은 協助로 活潑히 進行되었고 速記士養成事業은 張基泰氏 自身の 非常한 努力과 犧牲으로 우

리나라 最初로 規模있는 養成機關을 設立하여 1946年9月11日 「逸波式速記士養成所」라는 看板을 내걸고 發足하였다. 當時 入所生은 45名, 校舍는 東大門 區昌信洞所在의 昌信學院을 臨時校舍로 使用하였으며 授業은 夜間授業으로 하였다.

○ 1946年 9月20日에는 當時 美軍政廳이 立法諮問機關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設置하게 되어 여기에 速記를 採擇하고자 速記士採用廣告가 美軍政廳人事行政處로부터 公告되었다. 이에 對處하기 爲하여 朝鮮語速記學會와 朝鮮速記文化協會는 數次에 亘하여 協議를 거듭하였으나 實務possible한 速記士의 數가 너무나 적은 狀態이니만큼 負擔된 速記業務를 堪當키 困難한 實情으로 速記 本來의 使命을 完遂할 수 없을 것이라는 論이 支配的이어서 그 態度決定을 一時 躊躇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어질 速記實務의 機會를 그대로 拋棄해 버릴수 없는 實情이니만큼 모든 苦難을 克服하고 速記人의 任務를 誠心껏 盡力할 것을 信條로 삼고 그 職務를 擔當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0月1日附로 姜駿遠 朴寅泰 朴準泰 朴鍾浣 金天漢, 츄늦게 李龍吉氏等 6名은 待遇를 優待해 준것과 速記士養成 機關設置의 方途를 講究하여 賃賃을 條件으로 過渡立法議院의 速記業務를 擔當하기로 하고 아울러 7名의 速記養成員을 採用하여 姜駿遠式 速記를 教授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말 速記陣은 1946年12月12日 午後 1時 金奎植 博士外 52議員이 參席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備會議에서부터 그 活動을 開始하였으나 우리말 速記實用의 巨步를 내딛은 歷史的 瞬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速記實務陣 6人은 大部分 日本語速記를 하던 분으로서 解放과 同時에 비로소 우리말 速記를 各自 研究途中에 있던 까닭에 完全히 體系있는 速記法式의 整理를 보지 못한채 實務에 臨하였으므로 技術面에 있어서 未備한 뿐 아니라 人員의 不足으로 擔當業務를 完遂하기에는 너무나 無理가 많아 當時 速記士中 朴準泰氏는 過勞로 因하여 執務時間中 事務室에서 卒倒하기 에 이르렀으며 끝내 蘇生하지 못하고 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最善의 盡力을 傾注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執務遂行에 完璧을 期

하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同 過渡立法議院 第106次 會議에서 速記의 存廢문제가 論議되어 同議院에서는 速記를 一時 廢止하고 一般職員으로 하여금 略記를 시켜 形式的인 記錄을 한때도 있었으나 이는 모든 社會活動이 草創期의 陣痛過程을 겪지 않을 수 없는 宿命을 지니고 있는만큼 우리 速記界도 例外일 수 없다는 立證으로 記錄될 수 있을 것이다.

○ 1946年10月12日에는 週刊「學生新聞」에 朴 松氏 主幹인 「朝鮮速記者聯盟」 結成廣告와 아울러 10月19日부터 6日間 同學生新聞에 「朝鮮語速記에 關한 研究」라 하여 朴 松氏의 初聲 12字가 發館되었다. 後에 韓國速記로 改稱하여 中區 桃洞에 있는 太平旅館에서 韓國速記專門學館을 設立하였다.

○ 1946年12月25日에는 朝鮮教育研究會刊行으로 朴鍾浣氏著 「朝鮮速記」가 出版되었다.

○ 1947年7月에는 朴寅泰氏가 「中央式」이라는 速記法式으로 中央速記學院을 設立하였다.

○ 이지음 張基泰氏는 立法議院等 實務面에는 置重하지 않고 오직 後輩養成에만 專心專力한 結果 1948年3月10日에는 9名의 第1期修了生을 社會에 輩出하였는데 中의 數人은 後에 우리나라 速記界의 中樞人物로서 新界 發展을 위하여 功勞가 많았으니 우리나라 速記史에 特記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 1948年4月에는 姜駿速氏가 「서울式速記法」이라 稱하여 서울速記專門學館을 安岩洞에서 設立하였다.

○ 1948年9月에는 金天漢氏가 高麗式速記法이라 稱하여 孝昌洞에 高麗速記學院을 設立하였다.

○ 1948年 8月에는 李東根氏가 「解放速記」라 稱하여 乙支路4街에서 解放速記學院을 設立하였다. 後에 「東邦速記」라고 改稱하였다.

○ 1950年2月3日에는 金世鍾氏가 「世鍾速記法」을 發表하였으며 主로 湖南地方의 重要都市에서 養成事業에 盡力하였다.

第3節 成長期

外國速記界의 걸어온 발자취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速記界도 그 基盤을 議會에다 뿌리를 박고 서서히 成長 發展하여 온 것이다.

194年 第2次大戰의 終了로 解放을 맞아 우리말 우리글을 다시 찾음으로써 速記에 대한 研究도 햇볕을 보아 各法式의 創案研究가 活發하여 졌으며 1947年12月12日 開院을 본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6名의 速記士를 採用하여 速記法에 의한 速記錄을 作成하게 되고 따라서 社會的, 時代的으로 速記의 重要性和 必要性이 漸次 高潮되어 小規模로나마 數個의 民間養成機關의 開設을 보게 되었고 1948年5月10日 總選舉로 構成된 大韓民國 國會의 開院을 契機로 우리나라 速記의 앞날에 밝은 展望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중 1950年6月25日 뜻하지않은 北傀의 南侵으로 그나마 몇名안되는 速記士中 被拉, 越北, 死亡한 者가 있어 速記界는 다시한번 受難을 當하여야만 되었다. 政府가, 釜山으로 一時 後退함에 따라 避難首都 釜山에서 근근히 國會의 速記業務는 그 命脈을 維持하여 왔으나 在職中인 速記士마저 他職으로의 轉職者가 續出하여 避難地에서의 養成機關이 없는 關係上 缺員補充의 艱辛을 塔혀 있던 中 民營으로 1951年9月 高麗速記學院이 再開設되고 國會議員 및 有志者의 協助로 1951年12月 國會內에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國費養成機關인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가 設立되었고 또한 이어서 1952年10月에는 大邱에 東邦速記學院이 再開設 되었다.

이로서 新人速記士의 發掘의 契機가 이루어져 國會에서의 缺員과 增員이 漸進的으로 이루어졌으며 國會에서의 速記士의 活動이 차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言論機關에서의 速記士의 必要性이 要求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當時에는 最大需要機關인 國會에서 必要로하는 人員의 確保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어서 國會在職速記士들이 各言論機關等에 2重 3重으로 兼職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이 있는바 그 例를 들면, 東洋通信社 鄭源道(公報處도兼職) 張惠根, 駐韓美國公報院(US I S)과 公報處에 金鎮基, 大東新聞

國際新聞, 經濟通信에 金天漢, 中央放送局, 時事通信, 世界貿易通信에 柳浩龍, 韓奎勳, 中央通信, 海軍政訓局에 李東淳, 經濟通信에 楊佑顯 등이 國會速記士로 있으면서 言論機關에서 活躍하였다.

1953年 釜山에서 서울로 遷都함에 따라 國會는 勿論 各速記士養成機關도 遷都하여 계속 速記士의 養成에 힘써왔고 國會의 業務量도 增加하여 國會速記士도 1955년에는 36名, 1958년에는 51名, 1960년에는 民議院 61名, 參議院 42名 計 103名으로 大幅 增加를 보게 되었고 地方議會의 出現으로 多數의 速記士가 進出하였다.

그러나 아직 落後性을 免치 못한 우리나라 速記界는 그需要處의 開發이 없어 國會, 地方議會 그리고 一部言論機關에서밖에 活躍하지 못하였다.

비록 活動舞臺는 비좁으나 速記人口의 급격한 增加는 速記人 스스로의 集合體를 構成하게 하여 96人的 速記人으로 1955년 10월 13일 大韓速記學術協會의 創立總會를 거쳐 發足を 보게 된 것이다.

이렇듯 험하고 어려운 環境속에서나마 끊임없이 자라나 成年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 速記界는 1961년 5월 16일 軍事革命으로 國會가 解散되고 軍政이 實施됨에 따라 다시한번 悲運을 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軍事政府下에서도 11名의 速記士가 當時立法機關의 役割을 하던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速記業務를 擔當하여 왔으며 1963年 12月 17日 民政移讓으로 第三共和國樹立과 함께 우리 速記界도 다시 活路를 찾게 되어 當時 國會速記士의 數는 56名으로 되었다.

그리고 1966년 12월 10일 速記人의 興望과 國會議事局長 權孝燮氏의 積極的인 後援과 協助로 大韓速記協會를 再建하였다.

그리고 漸次 速記에 對한 一般의 認識이 높아져 行政府, 國營企業體, 銀行, 一部 個人企業體까지도 速記士를 採用하기에 이르렀으나 民間養成機關은 經營難으로 모두 門을 닫게 되고 東邦速記學院만이 남게되어 亦是 後進의 養成이 時急한 문제로 擡頭되게 되어 다시 國費養成機關을 國會內에 設立, 名稱을 國會速記士養成所로 하였고 同養成所內에 發言速度의 高速化로 因한 새로운 速記法式의 創案이 要請되어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를 1968年 5月 20日 設置

하여 9인의 研究委員이 1年間의 研究 끝에 새로 議會速記法式을 創案, 1969年 3月부터 同養成所에서 教授法式으로 採擇하여 教授하게 되었다.

한편 全國速記人的 唯一한 團體인 大韓速記協會는 1969年4月14日 速記人 들의 오랜 宿願이던 社團法人 許可를 文化公報部로부터 얻었으니 이제 成年 이 된 우리나라 速記界發展의 跳躍의 契機를 이룩하였다 하겠다.

그리고 20世紀 科學文明의 發達は 世界를 한 울타리로 묶게 되어 過去의 鎖國的 우물안 개구리의 思考方式을 깨뜨리고 距離를 短縮시키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速記界도 그 視野를 넓히게 되는 契機를 갖게 되었다.

卽 國會事務處의 職員 訓練計劃에 따라 1968年3月15일부터 4月3일까지 20日間에 걸쳐 速記第1係長 金鎮基氏가 日本國議會制度를 視察研究코자 渡日하여 一世紀에 가까운 오랜 速記歷史를 지닌 日本速記界를 視察 研究하였고 또한 1969年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速記第2係長 鄭源道氏가 中國, 泰國,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을 視察하게 됨으로써 外國速記界에 關한 資料蒐集을 함으로써 外國速記界와의 提携를 하게 될 架橋를 構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速記의 歷史가 20餘年이라는 짧은 歷史를 갖고있으나 우리 보다 앞선 先進諸國의 速記界와의 交流가 이루어짐으로써 뒤떨어진 隔差를 좁히는 한 契機가 마련된 것이다.

第4章 學問的 考察

第1章 序說에서 速記의 定義를 다른 사람의 發言이나 自己意思를 特定の 符號文字로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正確하게 筆記하고 一般文字化하는 活動의 總稱이라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速記活動에 使用하는 手段을 「速記方式」, 速記方式에 依하여 速記를 하는 技術을 「速記術」, 그 完成된 狀態의 것을 「速記錄」이라 稱하고 이에 關連하여 實際로 速記錄을 作成하는 業務를 「速記實務」, 이 速記實務를 行하는 사람을 「速記士」, 速記士를 養成하는 教育을 「速記教育」 그리고 速記에 의해서 만들어진 文化를 「速記文化」라고 할때 速記와 關連된 以上の 모든 部門을 歷史的으로 그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比較分析하여 體系化하고 그 속에서 보어나온 未來의 可能性을 찾기 위한 研究가 넓은 意味에서 「速記學」이라고 할 수 있겠다.

速記學을 形成하는 內容은 形態論, 構造論, 言語論으로서 그 根幹은 速記方式에 關한 形態論과 速記文字 構成原理에 關한 構造論인 것이다.

이 速記方式을 速記形態라고도 하는데 速記方式은 크게 두가지로 大別할 수가 있다.

하나는 手筆速記方式이고 또 하나는 機械速記方式인 것이다.

卽 速記活動에 있어서 어떤 手段을 使用하여 速記活動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速記活動이 손으로 쓰여졌다면 이는 手筆速記方式이라고 하며, 機械의 操作 乃至 機械自體의 活動에 의하여 速記하였다면 이는 機械速記方式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後述하는 速記의 學問的인 面에서 考察하면 形態論에 該當하는 部分이며 이보다 더 細分하여 文字構成原理를 研究考察하는 것이 構造論인 것이다.

手筆速記方式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네가지 流派로 나눌수 있으니 正圓派, 斜線派, 橢圓派, 文字派로서 分類되며 또 機械速記에 있어서도 두가지로 나누

어 打字速記와 錄音速記로 分類된다.

이렇게 分類된 것을 速記流派라고 하며 각기 創案된 速記術은 어느것이냐 莫論하고 어느 流派에 든지 屬하게 되는것으로 創案된 速記術은 創案者에 따라 각기 ○○法式 ××法式이라고 불리어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第1節 形態論(速記方式)

速記方式은 初期時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 까지 많은 變遷이 있어왔고 특히 現代에 이르러서는 各言語에 따라 數十數百種에 이르는 各樣各色的 形態로 存在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이 科學時代에 있어서 와는 너무나 異例的으로 어느 科學에 있어서나 前提條件이 되는 評價基準이나 比較分析이 없이 심지어는 用語의 定義, 用語의 統一조차도 없이 速記術이라는 것이 하나의 經驗的인 技術로서 發展해 왔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가. 速記方式의 原始的 形態

速記方式의 原始的 形態는 一般人이 普通使用하고 있는 筆記에 있어서 좀더 그 能率을 올리려고 할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卽, 單位時間內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文字를 筆記하고자 해서 쓰여지는 것으로서, 草書體나 省劃體를 使用하는 것, 卽, 스스로 읽을 수 있는 範圍內에서 最大限으로 草書化하고, 省劃하고 또는 省略하는 것, 한걸음 나아가서 自己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符號를 섞어서 使用하는 것을 들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人間의 意思傳達方法이 人間의 慾求와 文化發展에 따라 必然적으로 發展해 온 過程이다. 손짓 발짓에서 言語로, 言語에서 다시 保存性과 傳達性을 가진 文字로 거기에서 한걸음 벗어나 一般文字로서는 人間의 正常的인 發言을 記錄할 수 없다는데에서 言語速度와 一致한 記錄方法인 速記方式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는 點이다. 換言하면 우리말의 言語速度를 따라 記錄하자면 10分間에 2,000音字에서 4,000音字까지를 써야 하는데 一般文字에 의한 通常的인 記錄能力이란 國漢文 混用으로 10分間에 500字에서 700字의 程度가 그 限界點이다. (이에 對한 根據는 國會速記士 40名을 對象으로 制限時間內에 國漢文混用으로 筆記케한 結果 1分間 70字 5名, 60字 28名, 50字 7名이 라는 統計에 의한 것이다).

이와같은 關係를 一般文字가 처음으로 使用되기 시작했을 때로 週及해서 본다면 兩者의 差異는 더욱 甚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當時에는 言語의 速度는 比較的 느렸으리라 보지만 文字를 構成하든 劃線은 대단히 複雜하여 그것을 받아쓰는 데는 더욱 不便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文字 自體는 사람의 말이 끝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音聲에 依한 言語表現을 表記하고자 해서 發生된 것이지만 瞬間적으로 사라지는 이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速度에 一致하여 받아 적을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자리에서 받아 쓰고자 하는 意慾이 일어나서 앞서 말한 바와같은 速記의 原始的 形態가 試圖되고 거기에서 一步進歩된 形態로 速記文字라고 하는 特殊符號文字가 考案되면서 이것이 符號體系速記方式의 起源이 되었다.

나. 符號體系速記方式

一般的으로 速記라 할 때에는 이 符號體系(速記文字)速記方式에 의한 速記 活動을 뜻하고 있으며 速記의 概念規定도 亦是 그렇다.

이러한 意味에서 現存하는 最古의 速記方式은 古代希臘語用의 Acropolis 式을 들고 있다. 이러한 速記方式은 一般文字의 成立後 그 一般文字를 參考로 해서 一般文字보다 간단한 線으로 짜인 符號의 體系라는 形態로 出發한 것이다.

그 後 漸次 速記라는 活動이 必要하게 되어 그 手段으로서 速記方式이 考察되고 나아가 「點의 移動에 의하여 線을 긋는다」는 記線速記方式의 形態로 完成되어온 것은 다른 文化面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歷史的 背景이 作用하고 있다.

다. 速記方式의 三大基本要素

速記方式이 速記라는 窮極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構成하는 速記文字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基本的인 條件을 滿足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速度에 따라 表記할 수 있을 것. 쓰기 쉬운
 - 나. 表記된 것이 後에 一般文字化될 수 있도록 翻文할 수 있을 것. 읽기 쉬운
 - 다. 이들 速記文字들이 努力에 의하여 記憶 使用될 수 있을 것. 외우기 쉬운
- 이러한 세가지 條件은 一般的으로 「쓰기 쉽고, 읽기 쉽고, 외우기 쉬운」 이라는 말로 表現되고 있으나 이들은 어느것이나 서로 相反된 形態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 가령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簡單하고 쓰기 쉬운 線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되나 이점을 좀 無理하면 똑같은 形이 많게 되어 외우기 어렵게 되고, 高速度인 경우 흐트러져서 翻文하기 어렵게 된다.
-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各各 特徵이 있는 여러가지 形態의 線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여기에 重點을 두면 線이 複雜하여져서 쓰기 어렵게

되고 種類가 많아져서 외우기 어렵게 된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使用하는 線이 相互關聯되어 全體的으로 體系가 서 있지 않으면 안되겠으나, 言語自體가 數學의 原理와 같이 體系가 正確히 서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線의 使用에 無理가 생겨 쓰기 어렵고 읽기 어렵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速記文字에 어떠한 線을 利用할 것인가에 대한 線의 研究가 行해지는 한편 그 速記文字의 對象인 言語에 대한 그리고 文字에 대한 研究가 行해지고 여기에 맞추어 이들 速記文字를 如何히 體系化하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法則에 關한 研究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研究는 一般文字의 경우에도 若干 試圖되어 왔으나 一般文字의 경우에는 그 社會性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그 文字體系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부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 進化는 事實上 遲遲不振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言語에 대해서 數多한 文字體系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大部分 一定時代 一種類の 形態를 이루었다.

이에 反해서 速記文字는 여러가지 流派로 나뉘어 發展되어 왔고 또 1言語에 대하여 數多한 速記法式이 出現되어 盛衰를 거듭하여 왔다.

勿論 모든 學問分野에서 그렇듯이 速記文字의 경우도 絶對 最善 最良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것을 目標로 많은 研究를 하여 改良되고 또 새로운 創案 되었다.

「라틴」語의 速記方式이라고 推測되는 「라로」의 略記法이 速記術의 嚆矢라고 普通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唯一 絶對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近代語의 速記法式은 英國人 「티모디·브라이트」가 「라틴」語 速記法式을 再檢討해서 1588年 「런던」에서 英語速記法이라 하여 發表한 데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後 英語用의 速記法式만 해도 그 數가 3百餘種에 이르고 있다.

또한 日本의 경우는 1882年(明治15年) 田鎖綱紀에 依하여 美國의 「그라함」式을 본따 만들어낸 것이 最初인데 지금 日本에서 使用되고 있는 速記法式은 무려 70餘種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餘種의 速記法式이 發表되어 왔다.

라. 機械速記方式

앞서 얘기한 符號體系速記方式은 古代希臘에 그 起源을 둔 사람의 손에 의한 記線式의 速記方式을 통털어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機械速記方式이 나오기 前까지는 唯一한 速記方式이었다.

그러나 近代 機械文明의 發展은 손에 의하여서만 記錄이 可能하던 文字의 表記가 「타이프라이터」라는 機械에 의하여 能率的인 表記가 可能케 되어 이것이 速記方式에 까지 利用케 되었으며, 사람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 原形대로 保存, 再生시킬 수 있는 錄音機의 發明은 지금까지는 手筆速記方式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補助器具로서 使用되어 왔으나, 研究改良의 結果 一部에서는 錄音速記方式으로 使用되기까지에 이르렀다.

① 打字速記

「타이프라이터」의 原理를 利用한 打字速記는 1827年 佛人 「코노」의 『Machine Tachygraphiue』가 最初의 것으로 그後 몇사람에 의한 實驗을 거쳐 1911年 美國人 「와드·스본·아일랜드」의 「Stenotype」에 이르러 符號體系速記方式과 겨룰 수 있는 程度의 實用化가 되었다.

② 錄音速記

錄音機에 의하여 錄音된 「테이프」를 「스프릿처」(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機械)를 써서 直接 一般文字로 베끼는 記錄方法이다.

前에 美國에서 手筆速記와 錄音速記를 競爭시켜 比較하였으나 그 結果는 手筆速記가 壓倒的으로 勝利하였다고 한다.

第2節 構造論(流派 및 法式論)

速記活動의 基本은 速記文字에 있으며 그 速記文字의 構造가 速記法式으로서 音聲學 그리고 그나라 文字構成體系와의 關係에서 얼마나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體系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該當 言語文字의 構造와 關聯

하여 分析檢討하는 研究가 速記學의 基本課題라고 본다.

速記文字의 構造는 그 基本이 劃線體系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劃線이라 함은 符號體系速記方式에 있어서 그 速記文字의 形式으로서 利用하고 있는 소위 「線」을 말하는 것으로 一般적으로 無限한 種類의 實際 쓰여지고 있는 具體的인 線을 線條라 하고 이에 대하여 특히 언필條件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는 有限의 理想的 「線」을 劃線이라 하여 兩者를 區別하는 것이다.

이 劃線體系라는 立場에서 一般文字를 관찰하면 「로마」字의 筆記體는 斜線을 基礎로 하여 使用했고, 漢字의 筆記體는 永字八法을 基礎로 하여 使用하고 있다. 古代速記方式은 一般文字를 參考로 간단한 線으로 짜보려고 했기 때문에, 一般文字에서 使用하고 있는 劃線을 一應體系로서 整理하여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諸劃線을 利用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一般文字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速記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많은 種類의 線中 되도록 간단하고 記錄便宜한 線을 配當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一般文字와의 關聯을 떠나 獨自的인 立場에서 劃線體系를 發見하여 그 構成要素로서의 各劃線을 利用하는 편이 便利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劃線體系가 發見되어 符號體系速記方式의 分類도 여기에서 可能케 되었다.

이를 大別하면 正圓派(幾何線派), 斜線派(草書派), 精圓派(半草書派), 一般文字派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正圓派(幾何線派)

正圓派는 자(尺)와 「컴파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幾何學의 線을 利用코자 한 것이기 때문에 幾何線派라고도 한다.

即 正圓을 等分하여 그 等分된 圓의 둘레와 等分한 直線들을 基礎로 하여 여기에 「點」, 「圓」, 「橢圓」, 「장고리」 등의 點劃을 併用한다. 그 特徵은 各劃線이 幾何學的性質에 의하여 分類될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利用할 수 있는 劃線을 容易하게 抽出해낼 수가 있어 學習에 있어서 상당히 理解하기 쉽다는 것이 定說이다.

歴史的으로는 1720年代에 나타난 「라이플」式에서 始作, 1837年 「핏트맨」式과 「듀프로이」式에 이르러 大成했다.

우리나라의 速記法式들은 大部分 이 正圓派인 「핏트맨」式의 原理를 利用한 것이다.

나. 斜線派(草書派)

正圓派가 利用可能한 割線을 抽出하여 使用코자 한데 대하여 記錄便宜한 線만을 抽出하여 使用코자 한 것이 이 斜線派이다.

卽 「로마」字의 筆記體를 整理 右上의 斜線과 左下의 斜線을 基礎로 그 斜線의 字頭나 字尾에 「갈고리」나 圓의 點劃을 붙여 整理한 것이다.

그 特徵은 日常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로마」字의 筆記運動을 그대로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쓰기 쉽다는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로마」字를 常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學習上 오히려 歧途 點이 缺陷으로 指摘되고 있다. 歴史的으로는 1802年 Noe式(伊太利) 1808年 Thibierge式(佛語) 등에 의하여 試圖되고 1834年 「가벨스버거」式(獨)에 이르러 一應 大成하여 특히 獨逸을 中心으로 發展하였다.

다. 橢圓派(半草書派)

正圓派 及 斜線派에 대해서 이 兩者를 折衷한 立場에 있는 것이 橢圓派이다.

橢圓派는 「콤파스」로 그리는 幾何線의인 正圓代身, 오른손으로 그리는 橢圓的인 自然圓을 使用코자 한 것이다. 卽 水平, 左下向, 右上向 三種의 直線과 그 各各을 弦으로하는 自然圓 所謂 自然線을 線劃의 基礎로 하여 여기에 圓과 「갈고리」를 併用하고 있다. 그 特徵으로서는 正圓派와 같이 各割線이 一應 幾何學的의 性質에 의하여 分類됨과 同時에 斜線派와 같이 實際로 오른손으로 쓰기 쉬운 線을 使用하기 때문에 正圓派와 斜線派의 各長點을 有効하게 利用할 수 있다는 點이다. 正圓派가 幾何線派, 斜線派가 草書派라고도 불리는데 橢圓派를 半草書派라고 하는 것도 이런 理由 때문이다. 그러나 歴史的으

로는 正圓派의 系統을 있는 것이다.

即 正圓派의 劃線이 實際로 쓰이는 過程에서 조금씩 試圖되어 1886年「메로우」式(英語), 1888年「그네그」式(英語) 等に 이르러 全面的으로 使用된 것이다.

라. 文字派

이 文字派의 劃線體系는 前記한 세가지 流派와 그 形式을 달리하고 있다. 速記方式의 發展過程上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原始的인 方式에 屬하는 것으로 一般文字의 劃線을 重要視, 一般文字의 草書化 또는 省劃化한 것을 그대로 使用코자 하는 方式이다. 따라서 實際로 쓰이는 劃線은 다르다 하더라도 速記方式의 發展過程上으로 볼 때에는 가장 먼저 나타난 形態다. 歐美에 있어서 正圓派가 나타나기 前의 速記方式은 大部分 이력한 系統이었다.

이 文字派의 特徵은 一般文字의 劃線的 普遍性을 既習知識으로서 利用하기 때문에 記憶하기 쉽고 읽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런 점이 近代의 劃線體系가 發見되어 使用된 以後에도 文字派의 劃線體系가 使用되는 魅力의 하나이다.

이 文字派는 특히 近年에 이르러 歐美쪽에서 所謂 「알과벨 速記法」이나 「Speed hand」 또는 「Speed writing」이니 하는 이름으로 盛行되고 있고, 이웃 日本의 경우에도 明治年代에 田鎖系의 實務者들에 의하여 一部 試圖가 되었고 그後로 여기에 近代의 速記方式의 要素를 加味한 여러가지 速記法式이 나왔다.

以上 速記文字 構造上으로 본 네가지 形態에 대한 說明을 略述하였으나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劃線體系를 가진 構造나 하는 點에 이르면 各各 一長一短이 있어 斷言키 어렵다. 따라서 前述한 어떤 流派의 劃線體系를 採擇하느냐에 따라 速記法式의 優劣이 決定된다고 보다는 記錄可能한 劃線을 言語構造上的 科學的인 統計資料에 의하여 合理的으로 如何히 配列하느냐에 따라 그 優劣이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 速記文字構造 研究의 基礎로서 劃線論外에 言語論이 있어 이 兩者의 關係를 規定하는 것으로서 速記文字의

法則論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第3節 言語論

가. 言語學上으로 본 速記文字의 發展過程

速記文字를 實際로 運用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귀로 들으면서 이를 速記文字에 의하여 記錄하고 뒤에 그 速記文字를 읽으면서 一般文字化하는 것이 即 速記活動이다. 따라서 速記文字가 어떠한 內容을 表現하는 그를 基礎로 나중에 文字化했을 경우 最初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 그대로 文字化되면 된다는 論據가 成立된다. 여기서 言語와 關聯 速記文字를 어떠한 形態로서 表記할 것인가에 關한 여러가지 說이 擧頭되고 있다. 그것은 結局 劃線을 形式으로 하는 個個의 速記文字가 어떠한 形態로서 어떻게 表示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여기에서 速記文字의 立場에서 본 言語論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數種의 說이 있으나 大別하면 表字說, 表音說, 表語說, 表意說로 나눌 수 있다.

① 表字說

表字說은 速記文字의 形態를 普通文字가 나타내는 要素와 同一한 것으로 하려는 思考方式이다. 即,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대로 一般文字로는 받아 쓰기 困難하므로 速記文字로 받아쓰자는 것이니 速記文字를 一般文字의 代用이면 된다는 說로서 所謂 原始的의 速記方法 即 文字派가 이 立場을 取한 것이다.

② 表音說

表音說은 近代速記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릿트면」式이 取하는 立場으로 音聲學的의 立場에서 言語의 表音의 原則에 重點을 두고 速記文字를 構成하자는 思考方式이다.

이웃 日本에서도 初期에 이 表音說에 置重 어떤 말아든지 그 發音에 따라 쓰는 것을 理想으로 삼았으나 速記文字를 表音的으로 使用한다는 것은 다만

맞춤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各 言語表現마다 모두 表記하게 되는 것이다. (例, 「가」 「까」 「카」와 같은 ㅏ도 ㅑ도 ㅓ도 各各 다 表記함)

그 결과 이 表音速記로서는 表記速度의 위속을 가져오게 하여 言語速度와 一致한 速記를 하기에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速記文字가 그 役割을 다 하는데는 文字의 表記처럼 音의 表記를 充實하게 區別하여 나타낼 必要는 없고 言語에 있어서 劃線을 같이 써도 區別하여 읽을 수 있게만 하여 나타내면 된다. (例 「가」 「까」 「카」와 같은 ㅏ에 대하여 「가」로 表記하여 「가」 「까」 「카」로 翻文하는 것 따위로서 이는 翻文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라야 한다)는 方向으로 기울게 되어 表語說로 發展하게 되었다.

③ 表語說 *2가지의 개념이 있나* *수준 > 근세 표기*

表語說은 表音說自體의 缺陷이 점차 認識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速記活動이 窮極的으로 나중에 文字化하는데 目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틀리는 것을 ㅏ대로 忠實하게 表記하는 것보다 그 뜻을 理解하면서 받아쓰는 것이 效果의 이라는데에 結論을 얻어 近代速記들이 모두 이 表音說에서 表語說로 發展해 갔다.

④ 表意說

이는 表語說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同一한 意味의 말은 同一한 速記文字로 表記 (例, 「사람」과 「인간」이란 單語를 「사람」이라는 速記文字 하나로서 表記하는 것 따위) 해도 된다는 說인데 이것은 速記가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대로 文字化한다는 面이 強調되는 限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文字化된 것의 그 表現(文體的인 面)이라는 面이 強調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文字化된 것이 文體的으로 整理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表意說이 나올 수 있는 根據가 있다.

速記活動이란 人間活動中 言語活動에 直結되는 活動이다. 따라서 言語가 成立된 다음에 文字가 成立되었고 文字가 成立된 다음에 速記가 發生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言語의 研究와 速記의 研究는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특히 速記文字와 그나라의 國語와의 關係는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나. 우리말의 速記文字構成上的 難點

言語는 思想傳達의 道具이며 社會區劃의 單位이고 社會의 產物이기 때문에 言語는 그 社會의 精神이요, 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社會는 歷史的으로 基本性格을 가지며 이를 生命으로하여 發展하는 것이다.

社會의 部分的 特性은 時代的 地域的 與件에 따라 變轉할 수 있어도 그 核心的 基本要素에는 根本的 變化가 없기 마련이다. 言語도 마찬가지로 社會의 性格을 지니기 때문에 그 歷史性에 따라 生成, 轉化, 死滅하기는 하나 이는 그 一部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基本的 核心要素에는 變動이 없다.

이렇게 歷史的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 나라의 言語現象이 複雜하면 그 나라 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多端하며 言語現象과 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多端할 수록 이에 絶對的인 影響을 받아 그 나라 速記文字의 構成도 複雜多端하게 됨은 必然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곧 速記文字構成의 難易가 그 나라 言語文字의 現象에 左右된다는 緣由하기도 한다.

速記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基本音節의 문제로서, 音節이란 單語 또는 單語의 一部分 이루는 發音의 單位로서 單音은 音韻組織을 最大限으로 分析하여 抽象된 音質의 單位에 不過할 뿐 言語活動에 있어서 現實的인 最少單位는 亦是 音節이다. 言語는 대개 音量의 크고 작은 音이 섞이고 바뀌어서 連續되고 여기에 「텐션」(Tension: 發音機關의 諸筋肉의 努力)의 弛緩으로 말미암은 音의 強弱이 交替되기 때문에 一種의 「리듬」이 생기는데 이 分節된 「리듬」의 單位가 音節이다. 音節의 境界는 民族의 言語習慣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印度·유럽語에서는 子音만으로도 한 音節의 形成이 可能하나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母音을 必要로 한다.

또한 英語의 「Strike」나 獨語의 「Stein」은 한 音節이지만 우리말에서는 4音節 및 3音節을 形成한다.

그러면 우리말의 基本音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우리말 速記文字의 構成上的 難點에 대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우리와 같은 系統의 言語로서 日本語와 比較하여 볼때에 日本語의 基本音節은 音的으로 不過 47音이고 拗音 21音과 濁音 21音을 合해도 不過 89個音 밖에 되지 않는데 比하여 우리말의 音節은 近 1,300音節에 達하며 더욱이 우리말은 音字가 子母音의 2音合用보다 子音 母音 받침의 3音合用音의 使用이 매우 많다.

參考로 우리말의 音節構造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 | | |
|----------------|----------|
| 1) 母音 | 「오」, 「이」 |
| 2) 子音+母音 | 「나」, 「라」 |
| 3) 母音+子音 | 「암」 |
| 4) 子音+母音+받침 | 「죽」 |
| 5) 半母音+母音 | 「예」, 「요」 |
| 6) 半母音+母音 | 「웨」, 「워」 |
| 7) 子音+母音+流音+받침 | 「탁」, 「외」 |

또한 音節別分布도 1音節語가 26.2%, 2音節語가 49.5%, 3音節語가 19.5%, 4音節語가 4.8%로 2音節語가 半을 차지하여 우리말이 多音節語임을 알 수 있으며 文化가 發展하고 言語表現이 複雜해짐에 따라 多音節語의 發達은 不可避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말母音의 類似音의 문제를 살펴보면 音韻學上 우리말의 母音은 그 變化가 尤甚하다.

母音을 陽母音(ㅏ, ㅑ), 陰母音(ㅓ, ㅕ, ㅗ, ㅛ), 中母音(ㅣ)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中母音을 陽, 陰母音에 合用하여 ㅙ, ㅜ, ㅝ, ㅞ, ㅟ를 이루고 또한 陽 母音을 相互合用 ㅘ, 陰母音을 合用 ㅚ 그리고 三重의 母音合用으로 ㅟ, ㅞ까지 現用된다.

그리고 사람이나 地域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달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아조), 굼벵이(굼병이), 꿩지(도야지, 뉘지), 아기(에기), 반들다(멘들다), 재미(자미) 등이 그것이며 發聲上 類似하게 聽取되는 경우가甚하니 그것을 分類羅列하면

正音 ㅏ, ㅓ, ㅕ, ㅣ, ㅙ, ㅜ, ㅝ, ㅞ,

類似音 가, 기, 이, 거, 구, 케, 키, 게, 세, 등으로 正確한 發音을 日常生活에 나타내기란 힘든 것이다.

다음에 音韻變化의 문제도 있고 우리말의 特性이라 할 수 있는 助詞(吐)의 存在는 速記文字의 形式上 좋은 記號를 助詞(吐)에 띄얏기는 弊端이 생기고 자칫 言語上에 있어서 助詞(吐)를 略해 버리는 例가 許多하여 文章化에 있어 隘路가 많고 方言 또한 이에 못지 않게 速記에 커다란 隘路가 되고 있다.

以上에서 본바 言語學上 우리말의 基本音節이 많고 또한 子母 2音合用보다 子, 母, 받침의 3音合用이 많이 使用되며 우리말이 多音節語이며 母音의 類似音의 문제등 우리말을 速記文字化하는에는 許多한 難點이 많은 것이다.

第5章 機械速記

第1節 機械速記의 發展過程

가. 發展過程

速記方式에는 手筆速記方式과 機械速記方式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다. 卽 速記過程에 있어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速記가 이루어졌느냐 또는 機械에 의하여 速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것이 手筆速記나 機械速記나 하는 것을 區別하게 된다.

手筆速記方式에 있어서도 이들 두가지로 分類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첫째, 사람의 손에 의하여 速記되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翻文하는 것, 둘째, 사람의 손에 의하여 速記되고 打字機를 利用하여 翻文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손으로 速記한다는 것은 같고 다만 翻文을 무엇을 利用하여 하였느냐 하는 것만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機械速記方式에는 어떠한 形態로 分類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것을 分類하여 보면

첫째 機械에 의하여 速記되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翻文하는 것,

둘째 機械에 의하여 速記되고 打字機를 利用하여 翻文하는 것,

셋째 機械에 의하여 速記되고 機械에 의하여 翻文하는 것 等이다.

여기에서 우선 集約될 수 있는 것이 機械速記는 速記方式이 手筆이 아닌 機械가 손의 操作에 의하든가, 또는 機械自體의 活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翻文過程에 있어서의 打字機等 機械를 利用하는 것은 단지 翻文時의 人間의 勞力과 虛費되는 時間을 節約하고자 하는 努力의 一端인 것이기 때

문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機械速記方式이란 機械의 操作으로 다른 사람의 發言이나 自己 意思를 一定한 符號 또는 音幅에 의하여 速記하는 方式이라고 定義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實用되고 있는 機械速記方式에는 打字速記와 錄音速記가 있으며 이는 앞에서 分類한 바에 의한다면 打字速記는 機械를 利用하여 速記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錄音速記는 機械에 의하여 速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速記하는 用具에 따라 手筆速記와 機械速記를 區分해 본다면 前者가 用紙와 筆記具(연필·펜)라는 간단하고 값싼 道具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後者は 훨씬 高價한 機械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不利한 點이 있으나 美國과 같이 手筆速記方式과 機械速記方式(打字速記, 錄音速記)이 並行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머지 않아 곧 實現될 展望이 밝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機械速記에 관한 分野는 荒蕪地요, 處女地로 남아있고 研究段階에도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다만 手筆速記의 補助手段으로 錄音機가 利用되고 있을 뿐이므로 本章에서는 先進國의 現況을 살피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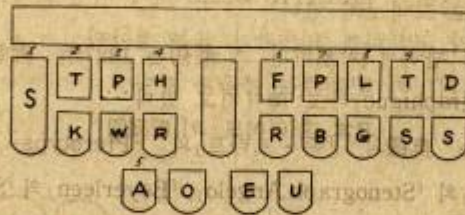
우선 打字速記에 관하여 考察하면 그 最初는 1827年 佛蘭西人 「고노」의 「Machine Tachygraphique」라고 傳해지고 있다.

그後에 있어서는 英國의 「존·프라트」의 「Pterotype」 美國에 있어서의 「M. Bartholemew」의 「Stenograph Angelo」, 「Beyerleen」의 「Stenotypograph」 「M. Hardy」의 「Stenotyper」 등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1911年 美國人 「워드·스톤·아일랜드」의 Stenotype에 따라서 手筆速記方式과 競爭할 수 있을 만큼 實用化가 되었다. 이 機械는 四段으로 並列된 「키」이다. 「릿치에 소드」로 操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配列은 펜알줄의 中央에 조금알게 AOEU의 四개의 「키」가 있으며 다음段에 「※」의 「키」를 中心으로 왼쪽에 SKWR 오른쪽에 RBGSS 그다음 段에도 마찬가지로 「※」의 「키」를 中心으로 왼쪽에 STPH 오른쪽에 FPLTD가 前段과 마찬가지로 並列되어

있다. (左段의 S와 中央의 「※」는 前段과 계속해서 각각 하나의 「키」로 되어 있다) 最後 列에 있어서의 「키」는 옆으로 기다랗게 하나로 되어 있다. 數字를 칠때에 「쉬프트·키」의 役割을 한다. 이 「쉬프트·키」以外的 「키」全部를 한꺼번에 누르면 확대모양의 종이에 원면쪽에서부터 一列로 STKP WHRAO ※ EUFRPBLGTSDS로 並列되고 「쉬프트·키」와 함께 全部를 누르면 12K3W4R5OEU6R7B8G9 SDS로 並列되며 어느것이나 늘린손가락을 놓으면 종이가 一段自動으로 내들어간다. 이 「키」의 並列法은 왼쪽에서 語頭子음 中央이 母音 右側이 語尾子음이며 양쪽손의 손가락을 使用 「START」라고 하는 1音節이 한꺼번에 칠수있도록 組立되어 있다. 基礎文字로서는 각 「키」가 각각 音을 나타내는 외에 「L」은 HR, 「N」은 TPH와 같은 方式으로 複合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단 略字로서는 were가 W, in이 TPH, accept가 SEP, ing가 G, as well as가 SWELS, 이와같이 一應 定해져 있다 따라서 全體를 통해서 보면 手筆速記方式 Gregg式의 研究成果가 巧妙하게 利用되어 있는 셈이다.

英字 「스테노·타이프」의 「키」 配列圖는 다음과 같다.

스테노 타이프 키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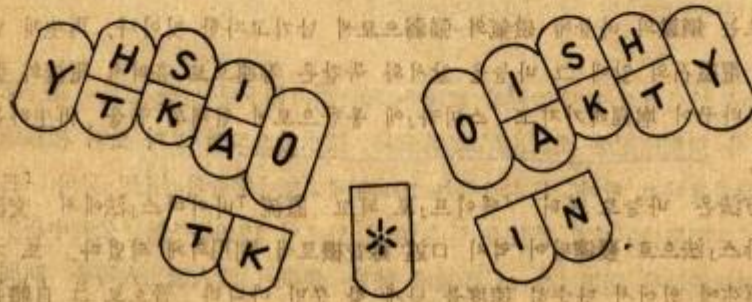
日本에 있어서의 打字速記의 實現은 聯合國占領下에 있을 當時 聯合軍司令部에서 裁判速記를 機械速記로 하도록 指示함으로써 보다 빨리 機械速記가 開發되었다고 한다. 日本에서는 1944년에 로마字會의 川上 晃이 「日本語用의 速記機」라 해서 特許를 얻은 것이 있으며 1949년부터 「公判中心主義의 刑事訴訟法이 通過되고 그 手續에 관한 規則이 證人鑑定人等を 訊問할 때에는 速記하도록 될으로써 2年間の 實用을 爲한 研究와 3年間の 訓練期間

을 거쳐 1953年 1月부터 法廷에서 打字速記를 使用하게 되었다.

日本の 打字 速記式中 成功을 거둔것은 Stenotype의 原理를 日本語의 正
 으로 翻案하여 새로이 日本語를 위한 機械를 만든 川上 晃氏의 速「타이프」이
 다. 이 機械는 盤 앞쪽의 中央에 TKIN의 4개의 「키」가 있고 其他의 「키」는
 中央의 表示를 中心으로 왼편에 三群, 오른쪽에 三群이 줄지어 있다. 그 配
 列은 左端이 Y 그 오른쪽이 펜처음에 TK 저편쪽에 H.S 그 오른쪽에 A 저
 쪽편에 I로 오른쪽에 또 O로 되어 있다. 오른쪽은 右端이 Y이고 이와 對照
 的으로 줄지어 있다(Y와 O와는 各各 二等分の 길이로 되어 있다). 全部의
 「키」를 한번에 누르면 확대형의 종이에 YTKSAIORTK ※ INOLASKHTY
 로 並列되고 종이가 一段 감겨지도록 되어 있다. 이 並列方法은 左側의 子音
 과 母音으로 (力)를 KA와 같이 一音節, 中央의 TKIN은 漢字音系의 끝글 其
 他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基礎文字로서는 各字가 각각의 글을 나타내는
 外에 R은 TK, D는 THKS, 와 같이 複合語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것들을 「로마」字 綴字法과 같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略字로서는 조사
 [(で)으로서]를 TK, [(にも)에도]가 TIN, 등과 같이 하고 [(あります) 있
 습니다]는 YOTK, [(私) 私] TKSATK 등으로 찍게 되어 있다. 여기도 手筆速
 記方式의 研究成果가 교묘하게 利用되어 있는 셈이다.

日本·速「타이프」의 「키」配列圖는 다음과 같다.

日本 速「타이프」키 配列圖



「유립」에서 여태까지 使用되어온 二個의 代表的인 機械는 佛蘭西製의 Granjean과 英國製의 「팰런타이프」(palantype) 두가지가 있는데 英國製인 「팰런타이프」는 略號를 찍는다가보다는 소리나는대로 그 音을 찍으며 따라서 各語의 單語들은 이 機械를 取扱해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各語 알 수 있게 되어있다.

다음으로 錄音速記方式에 대하여 說明하면 이것은 1877年 美國人 Edison에 의해 所謂 蓄音機가 發明됨으로써 새로운 紀元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後 蓄音機의 原理를 利用하여 錄音機가 發明되었고 이것은 바로 音聲에 의한 言語의 表現을 錄取하여 後에 再生함으로써 앞서와 같은 錄取時의 音이 나오는 것이다.

이 機械를 利用하면 音聲에 의한 音의 表現을 錄取하여 後에 조금씩 再生시키면서 一般文字로 받아쓰으로써 速記라고 하는 活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後에도 계속해서 機械의 起動 停止 反復 등의 操作을 變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改良하는 등 여러가지 速記의 目的을 위하여 改良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Ediphone이라든지 Dictaphone 등의 이른바 口述的 錄音機인 것이다.

日本에서는 川口久市氏가 Dictaphone을 利用 日本語의 速記를 實際로 해 본일이 있으나 普及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音의 振動을 溝의 波로서 保存하는 方法에 對하여 磁氣의 強弱으로써 保存코자한 것이 1097年 Valdemar Poulsen에 의해서 一應 完成된 新 方法이다. 그것은 「마이크로폰」으로 받아들인 音波를 電流의 強弱으로 바꾸어 增幅해가지고 電磁石을 通하여 等速으로 흐르는 鋼鐵의 바늘에 磁氣의 強弱으로써 남기고자한 것이다. 再生에 있어서는 電磁石의 앞에 그 바늘을 앞서와 똑같은 等速으로 돌려서 電流의 強弱으로 바꾸어 增幅해가지고 「스피커」에 통함으로써 원형의 音을 再生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바늘로 부터 「테이프」로 되고 直流 「바이아스」法에서 交流 「바이아스」法으로 發達되어 역시 口述 錄音機로서 利用되게 되었다. 또 各語에 再生에 있어서 단순히 速度를 낮게 할 뿐만 아니라 音으로 그 自體를 周波數를 補波하여 그 音에서도 音聲으로써 聽取할 수 있도록 하는 裝置도

만들어 졌다.

이것에 依하면 錄音時의 半 또는 3分の1의 速度로 再生함도 可能하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高橋鐵雄氏가 이 「테이프 레코더」를 使用 日本語의 速記를 實際로 해서 成功을 거두고 있다 한다.

특히 歐美에 있어서 錄音速記가 成功하게 된것은 能率 좋은 「타이프 라이터」를 兼用했기 때문이다. 「타이프 라이터」는 1873년 美國人 Christopher Latham Sholes의 案에 의해서 始作되었으나 그 後 急速하게 發達하여 드디어 速記文字에 依한 速記의 翻文에 널리 利用된 機械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口述錄音機와 並用 여기에서 速記文字를 使用하지 않는 速記方式(錄音速記)이 쓰이게 될 셈이다. 日本에 있어서도 이러한 種類의 「타이프 라이터」로써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 「가나모지 타이프 라이터」가 있다.

이것은 大正 12年 山下芳太郎氏의 案에 의해서 Underwood가 製作한 것이 처음으로서 그 後 이를 中心으로 活用되었으나 속면되면 速度로 모아서 日本語의 速記 그 自體도 可能하다고 까지 하였다.

여기에서 이 「가나모지 타이프 라이터」와 錄音機와를 並用한 것이 前記 高橋氏의 錄音速記이다. 즉 錄音한 것을 어느 程度減速하여 再生하고 必要에 따라 停止시켜가면서 「가나모지 타이프 라이터」로 打字하여 바로 印刷所에 돌려 漢字와 日本語를 섞은 글로 植字하는가 또는 翻文하는 사람이 漢字와 日本語로 쓰고 改書하는 過程에 의해서 處理하는 셈이다.

따라서 普通의 發言 그대로 錄音機에 의하여 錄音한 다음 이것을 一般文字로 받아 쓸수 있도록 再生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 速記文字를 使用하지 않더라도 速記라고 하는 活動이 可能케 될 것이다. 이것이 錄音速記를 남게한 것이다.

打字速記가 手筆速記方式과 마찬가지로 發音을 聽取하여 速記文字化한 다음 翻文할 것을 豫定하고 있는대 對하여 錄音速記는 錄音하여 再生한 것을 聽取하면서 바로 翻文하는 것이다.

즉 마찬가지로 機械速記方式으로써 一貫되고 있지만 打字速記는 手筆速記方式에 가까운 것이고 錄音速記는 그것들과 아주 判異한 方法을 取하고 있

따는 것에 各各의 特徵이 있는 셈이다.

以上の 記述에서 想定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分類한 機械에 의하여 速記되고 機械에 의하여 翻文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徹頭徹尾한 機械化문제이다.

手筆速記의 번거로움을 덜고자하는 試圖에서 打字速記가 發明되고 이의 短點을 補完코자 하는 努力에서 錄音速記가 登場하게 되었는데 速記한 後의 過程인 翻文할 때의 번거로움에 대하여 手筆翻文의 改良策으로 나온 것이 「타이프 라이터」에 의한 翻文이나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두드리는 操作이 加해짐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美國의 경우 特殊錄音機가 있어 速記士가 速記原文대로 朗讀 錄音하여 그 「테이프」를 政府印刷局에 移送하면 「테이프」에 의하여 植字되어 印刷가 된다고 傳聞되고 있으나 詳細한 內容은 入手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여기에서 前述한 錄音速記에 의한 速記를 하여 이것을 美國에서 現在 取하고 있는 翻文方式을 連結시킴으로써 어떠한 機械速記方式이 可能해 지지 않을까 하는 方法論도 提起될 수 있다.

이러한 速記方法論에 近似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는 事實로서, 日本에서 이 打字速記에 의하여 速記한 것을 電子計算機를 利用하여 翻文을 試圖한 「STEPS」即「電子計算機에 의한 速記符號解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은 打字速記로 일단 打字한 原文을 다시 電子計算機가 解讀할 수 있게 「편취」(「카드」나 「테이프」에 구멍을 뚫는 것)하여 電子計算機에 넣으면 電子計算機內의 記憶裝置에 依하여 一般文章으로 打字되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校正過程을 거칠 必要도 없는 完全한 文章이 되지 못하므로 電子計算機에 依하여 自動적으로 打字된 文章으로는 不完全하기 때문에 여기에 人間이 다시 校正한다. 그래서 半自動的인 二次 翻文이 되어야 完全한 文章이 되는데 그것도 日本語가 순 「가다가나」로 적혀 나온다. 이 程度로서 얼마만큼 實用性이 있는지는 疑問이며 發展의 序曲에 不過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手筆速記와의 比較

지금까지 機械速記에 대하여 考察하였거니와 그러면 手筆速記方式의 諸般

隘路點을 打開하기 위한 努力의 結晶으로서 打字速記 그리고 錄音速記로 發展되고 있으나 이와같이 改變發展되고 있는 先進諸國에 있어서도 唯 手筆速記方式에서 機械速記方式으로 全的인 方向轉換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疑問은 機械速記方式과 手筆速記方式을 比較함으로써 方向轉換의 어려움은 自明해 지리라고 본다.

① 打字速記와 手筆速記

打字速記와 手筆速記를 比較해 보면

첫째로 速度面에서 볼때에는 유럽의 경우는 手筆速記보다 打字速記가 낫다고 한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速度面의 優劣은 分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翻文에 있어서는 原文을 보고 쓰거나 「타이핑(typing)」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이나 手筆速記에 있어서 速記原文은 쓴 本人밖에 읽을 수 없는데 反하여 打字速記는 打字速記의 略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打字速記가 裁判에 利用되는 경우 日本처럼 翻文하지 않고 原文만 붙여도 充分한 證據價値가 있다는 利點이 생긴다.

셋째로 배우는 期間 즉 教育期間은 어느쪽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유럽은 나라마다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日本의 경우 타같이 2年의 教育期間을 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네째 誤聽과 誤讀의 餘地가 있는것은 타같은 條件이며 다만 打字速記는 이미 적은 原文을 校正하기 어려우나 手筆은 그것이 쉬우며 또한 打字速記는 보다 定型化되어 있어서 사투리나 特異한 言語를 쓰더라도 一應標準語化해서 「타이핑」하게 된다. 이 方面은 手筆速記인 경우에는 方言이진 辭典에 없는 말이진 自由自在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때문에 手筆速記가 더 正確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手筆速記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떤 條件에서도 速記할 수 있으나 打字速記는 高價인 打字速記機를 휴대하여야 하며 打字速記機를 놓고 적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한다. 이런 면으로 볼때에는 手筆速記가 훨씬 經

濟的이고 便利하다고 하겠다.

이것에 打字速記는 電子計算機等과 連結시켜서 機械化할 수 있는 素地가 豊富하다. 그러나 手筆速記는 쓰고 읽는 過程이 사람 그것도 쓴 本人에게 局限되어있으므로 機械化할 수 있는 餘地는 없다고 본다.

② 錄音速記와 手筆速記

速記士가 아닌 사람이 錄音機에 의해서 錄音한 「테이프」를 「스프릿처」(스프릿처를 느끼게 하는 機械)를 써서 直接 一般文字로 써낸다는 것은 可能한 것이며 그것에 從事하는 사람을 錄記士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方法이 이미 實用化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문제는 速記士와의 能率의 差異이다. 前에 美國에 있어서는 實際의 法廷實況에 대하여 速記文字에 의한 速記와 「테이프·레코드」로 부터 直接 「타이프」로 옮기는 方法과를 競爭시켜서 그것과 比較하여 본적이 있으나 結果는 壓倒的으로 前者의 勝利로 끝났다고 한다.

後者の 경우는 正規發音으로 끼지않는 發音 或은 雜音과의 混入같은 것이 있어서 「聽取不能」의 個所가 多어져서 結局 人間의 六感에 의한 選擇聽取能力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證明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귀머리리는 唇의 움직임만으로 發音을 譯解하나 一般人에 있어서도 六感에 의한 環境利用이라고 하는 것이 理解에 있어서 多分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發音內容 그대로의 全文速記가 必要한 경우, 또는 高價이며 携帶條件이 까다로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誤聽誤記의 訂正의 不能과 選擇聽取의 不可能, 視覺의 不利用, 被損 및 故障의 憂慮 등의 不利한 條件 때문에 機械速記分野가 점점 精巧化하여 完全에 가까워지고는 있으나 手筆速記의 일을 完全히 代行하게 된다고는 期待할 수 없이 依然 手筆速記는 手筆速記로서의 領域을 지켜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第 2 節 電子計算機에 依한 速記讀文

1966年 7月에 日本에서는 「電子計算機에 依한 速記符號의 解讀 프로그램(STEPS)에 對하여」라는 研究文을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電子計算機에 依한 速記符號의 解讀 「프로그램」(STEPS)에 對하여

愛知工業大學經營工學科 助教授 大倉信治

大倉經營計算研究所 所員 細江龍三

머 리 말

이 研究報告는 機械를 使用하여 速記者가 作成한 速記符號로 된 速記錄을 電子計算機를 使用하여 一般 日本文字로 解讀하기 위한 電子計算機「프로그램」作成에 關한 報告이다.

따라서 報告의 前半은 「機械에 依한 速記術」과 그것에 쓰이는 速記專用 「타이프 라이터」, 「速타이프」 및 「速타이프」專用 速記符號의 諸規約을 說明하고 後半에는 電子計算機에 依한 速記符號解讀「프로그램」의 構成과 아울러 解讀結果의 出力에 對하여 概要를 說明하였다.

사람이 口에 오르는 口語體의 말이라는 것은 文字로 譯여지고 文章의 體裁를 갖춘 말과는 그 「뉴앙스」, 構造, 用語法等 各點에 있어서 本質의 相異點이 있으며 特히 日本社會에 있어서는 俗말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文章으로는 어렵다는等 口語體의 말과 文章으로 된 말과의 사이에는 深淵이 存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研究도 實은 數年來 日本社會에서 어떠한 言語가 日常會話中에 어떠한 頻度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 中에서도 各種 事務業務 또는 指令 統制等 各種 報告制度나 指令 傳達等의 企業內 情報活動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

는가 또 그 反對로 使用되고 있는 日本語自體의 特性이 어떤 形態로 情報活動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기 爲하여 日常會話의 速記錄을 「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는 것이 本來의 目的이었던 것이다.

간혹 電子計算機에 機械言語로 바뀌이기 쉬운 速記符號를 使用한 速記術은 없는 것인가 하고 여러 問에 調査해온 筆者等은 약 2年前 速「타이프」研究所長 佐伯功介氏에 依한 速「타이프」의 紹介를 받고 그 後 同氏의 協力を 얻어서 우리들이 目標로 삼아온 研究의 第1過程으로서 「速記符號의 自動解讀」의 段階에까지 研究를 終了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速記術은 人間이 하는 것인 以上 그 어떤것을 가지고도 速記符號의 解讀 및 文章化에 많은 時間과 勞力이 消費되는 것을 알고 우리들 本來의 研究의 한 過程의 成果 그것이 微力하나마 조금이라도 社會에 補益된다는 事實을 알고 今回 研究의 實用可能面을 公表하기로 決心한 것이다.

그렇지만 本「프로그램」에 依한 電子計算機의 使用도 結局은 그 以前에 速「타이프」에 依한 速記術이 있어야 비로소 實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音聲「타이프라이터」같이 電子計算機가 自動的으로 言語를 들어가지고 文章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들이 完成한 것처럼 떠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지나친 誤解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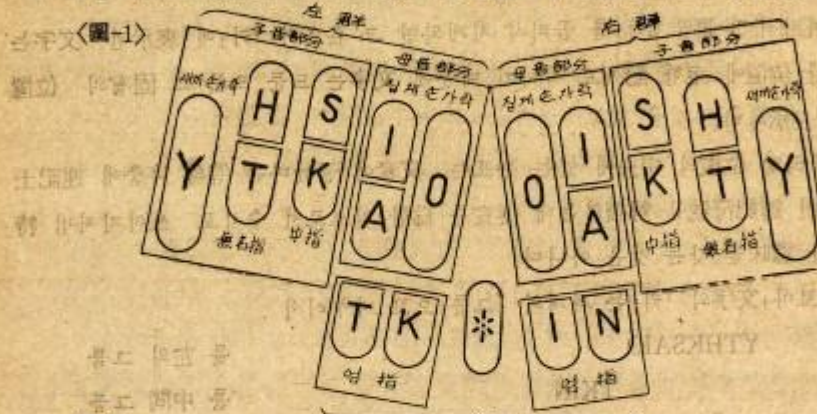
우리들은 今後 速「타이프」에 依한 速記術의 健全한 發展을 電子計算機「소프트·웨어」技術者로서 祈願함과 함께 우리들의 研究에 깊은 理解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실 佐伯功介氏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가. 速「타이프」의 說明

① 速「타이프」란?

速「타이프」는 速記專用으로 만들어진 小型「타이프라이터」이다. 「키」는 21 鍵盤式이고 그림과 같이 獨特한 配列이 된 「모마」字가 「타이핑」된다. 이것을 치게 되면 普通의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會議室이나 法廷 등에서 使用하기에 適當하게 되어 있다. 또 「타이핑」에 쓰이는 用紙는 좁고 길게 달려있어서 이것을 機械 밑에 넣어둔다. 用紙는 「키」를 칠

페다다 自動的으로 1 行씩 넘어가며 손을 쓰지 않아도 적당한 크기로 차곡차곡 집어서 기체에 붙어있는 실함에 들어가도록 構造가 되어있다. 「키」는 「음전」이나 「피아노」의 鍵盤처럼 한꺼번에 몇개든지 必要한 만큼 同時에 칠수가 있고 「타이핑」된 1 行中에는 몇字的 「로마」字가 찍히는데 이 「로마」字의 組織과 配列에 依해서 하나의 語句가 「로마」字로 組織된 速記符號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에 依하여 1 分間 180 單語에서 熟練者는 230 單語까지의 빠른 예기도 速記士가 듣기만했다면 正確하게 速記할 수가 있는 것이다.



(圖-2)

a	i	u	e	o	ya	yu	yo	ó	yú	yó	ai	ei	
ka	ki	ku	ke	ko	kya	kyu	kyo	kú	kó	kyú	kyó	kai	kei
sa	si	su	se	so	sya	syu	syo	sū	só	syú	syó	sai	sei
ta	tī	tū	tē	tó	tya	tyu	tyo	tū	tó	tyú	tyó	tai	tei
na	ni	nū	ne	no	mya	myu	myo	nū	mó	myú	myó	nai	nei
ma	mi	mū	me	mo	mya	myu	myo	mū	mó	myú	myó	mai	mei
ra	ri	rū	re	ro	rya	ryu	ryo	rū	ró	ryú	ryó	rai	rei
wa													
ga	gi	gu	ge	go	gya	gyu	gyo	gū	gó	gyú	gyó	gai	gei
za	zi	zu	ze	zo	zya	zyu	zyo	zū	zó	zyú	zyó	zai	zei
da													
ba	bi	bu	be	bo	bya	byu	byo	bū	bó	byú	byó	bai	bei
pa	pi	pu	pe	po	pya	pyu	pyo	pū	pó	pyú	pyó	pai	pei
haneru on (n), tumaru on													

② 「키」의 配列

「키」는 第1圖와 같이 特殊配列되어 있는데 그 「키」들을 치게되면 圖2에 表示되어 있는 글자가 적힌다.

앞에서도 說明한바와 같이 「키」는 몇個든지 同時に 칠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萬若 全部의 「키」를 同時に 치면 아래와 같은 한行의 文字가 同時に 적힌다.

YTHKSAIOTK ※ INOIASKHTY

따라서 몇個의 「키」를 골라서 치게되면 그 各各의 「키」에 表示된 文字는 定한 位置에 定한 配列로 적히기 때문에 文字는 드문 드문 그 固有의 位置에 表示된다.

적혀진 位置의 中央에 있는 ※표는 文章이 끝났다는 등의 나중에서 速記士가 친 速記符號를 解讀하는데 便宜를 爲한 것으로서 수시로 쓰여지지만 特別한 意味를 갖는 것은 아니다.

「로마」文字의 「키」는 체계의 「그름」으로 나누어서

YTHKSAIO

를 左의 그름

TKIN

를 中間 그름

AIOSKHTY

를 右의 그름

이라고 約束하고 있다.

③ 速「타이프」의 速記符號

速「타이프」에 依해서 速記符號를 打字하는 器具는 前節에서 說明한 바와 같으나 이제 具體的으로 이 器具를 써서 速記士는 어떻게 말이나 音節을 速記하는가 하는 것을 說明해 보자.

사람의 귀에 잡히는 말은 日本말인 경우 반드시 「아이우에오」 50음의 「가나」(カナ)文字로 나타내며 또 各各의 「가나」文字는 「로마」字의 子音記號 K.S.T.等等 母音符號 A.I.U.E.O.의 結合으로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速「타이프」에서는 이와같이 말을 한음씩 分解해서 말하자면 「가나」文字만으로 쓰는 것과 같이 速記하는 方法을 「基本」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主로 固有名詞 또는 다음에 說明하는 慣用語句以外的 語句를 表現

하는데 쓰인다.

이에 反해서 日本語中에 極히 頻번하게 쓰이는 語句 卽 「わたくし」, 「いろいろな」 「...であります」 등을 일일이 一音씩 打字해서는 速記의 速度를 鈍化시키기 때문에 速記함에 있어서 「키」를 한번 칠때 몇個의 「로마」字를 結合打字해서 「いろいろな」라고 하는 語句를 表現하는 것으로 約束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게 되면 「いろいろな」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다섯字의 「가나」 혹은 여덟字의 「로마」字로 分解해서 하나 하나씩 「키」를 눌러 쓰는 것보다 合理的이다.

이와 같이 約 500種類의 慣用語句를 「로마」字의 結合으로 表現하는 約束이 있는데 速「타이프」에서는 이것을 「略號」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간단하게 「基本」 및 「略號」의 規則을 說明하고자 한다.

나. 速「타이프」符號의 構成

① 基本의 表現法

第1圖를 잘보면 左와 右의 「그름」은 中央을 中心으로 「로마」字가 對照的으로 配置되어 있는데 子音部分과 母音部分의 몇個의 「키」를 結合시켜 치면 第1圖와 같이 基本에 屬하는 모든 記號를 적을 수 있다.

例컨대 「키」 「A」 「I」 「O」는 單獨으로 한個의 母音을 表示한다.

符 號	읽는 法
A	ア (A)
I	イ (I)
O	オ (O)

「키」中에 있는 母音은 母音符號의 結合으로서 表示한다.

符 號	읽는 法
IO	ウ(單獨의 「ウ」 또는 長音으로서의 「ウ」)
A O	エ
A I	オー(「オ」의 長音)

이와같이 結合된 符號는 하나의 새로운 文字로 보아도 된다.
 例를들면 I와 O의 結合을 「ウ」로 約束하고 한個의 文字로 맞추어서 「イ
 才」라고는 읽지 않는다.

「T」「H」「K」「S」는 單獨으로 한個의 子音を 表示한다.

符 號	읽는 法
K	ク (K)
T	ツ (T)
S	ス (S)
H	フ (H)

(註) K.T.S.H가 單獨으로 表示된 경우에는 KU, TU와 같이 「U」를 붙이지 않아도 각각 クツ와 같이 읽는다. 以下 같다.

또 母音과 마찬가지로 「키」에 없는 音은 다음과 같이 몇個의 子音符號를 結合시켜서 表示한다.

符 號	읽는 法
T K	ル (R)
H S	ヌ (N)
HK	グ (G)
T S	ズ (Z)
KS	ム (M)
TH	ブ (B)
THK	プ (P)
THKS	ド (D)

(註) 앞에서 説明한 바와같이 T.K.H.S 등에 「U」를 붙이지 않아도 ル, ヌ, 등으로 읽는다.

그리고 一般의 音節은 子音과 母音을 結合해서 表示한다. 그 法則은

符 號	읽는 法
K	ク エ
KA	カ

K I	キ
K O	コ
K IO	クッ(註)
KA O	ケ
KAI	コ

(註) K. IO(=KU)의 경우 「ク」가 아니고 「クー」라고 하는 긴소리를 낸다.

이와같이 해서 左와 右의 「그룹」은 對照的인 配列로 되어있기 때문에 左右의 拇指를 除한 4個씩의 손가락을 結合시켜 움직이게 되면 적어도 左右 合해서 二個의 音節이 한꺼번에 打字되게 된다.

② 가운데 中「그룹」이 表示하는 音

또 中의 「그룹」에 屬하는 「T」 「K」 「I」 「N」의 「키」를 單獨 또는 結合해서 使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7個의 音이 表示되게 된다.

符 號	입는 法
I	イ
K	ク
KI	キ
T	ツ
T I	チ
N	はねる音(ン)
T N	つまる音(ツ)

日本語에서는 音과 音사이의 發音이라든가 捉音이라 불리우는 「가나」文字 에서는 「ッ」 「ン」 등으로 表示되는 音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例컨대 「勝手」 「速效」 등에는 「ッ」의 音이 들어가고 「灰素」 「困苦」 등에는 「ン」의 音이 들어있다.

그래서 各各 「カッテ」 「ソッコー」 또 「タンツ」 「ユンク」로 各各 한音節을 構成하고 있다.

速「타이프」는 日本語의 이 音節을 한單位로 하여 速記符號를 打字하는 것이다. 그 例를 두세個를 들어보자.

符 號	읽는 법
S O T N I K	ソツキ (速記)
ソ ツ キ	
K A O T N I A K	ケッコー(結構)
ケ ッ コー	
T A O NO T	テント (Tent)
テ ン ト	

③ 略號의 表示法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速記符號를 치는 作業을 合理化시키기 爲하여 速「타이프」에서는 略號를 쓴다.

略號는 7. 略하는 말의 形式, ㄴ. 各各 日本語中에서 쓰이는 樣式, ㄷ. 速「타이프」에 있어서의 略號의 結合方法等에 따라서 다시 幾個의 類形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 略號는 「基本」을 가지고 構成한 音節과는 다른形의 「모음」字의 結合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 때문에 基本의 音節과 略號와는 一部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混同이 되지 않도록 約束이 되어있다.

略號를 크게 나누면 中の 「그룹」만을 利用하는 略號, 左 또는 右의 「그룹」만을 利用하는 略號 및 左右 두 「그룹」을 結合해서 表示하는 兩手略號의 三種類로 된다. 이것을 順序대로 說明하자.

7. 中の 「그룹」의 略號

例	符 號	읽는 法
	T	ニ
	K	ガ
	TK	テ

이와같이 主로 日本語의 助詞를 速記할 때 쓰인다.

ㄴ. 한便의 略號

例	符 號	읽는 法
	T KSAI	モシ
	A TK	アル
	H A TK	ハナ

이 略號는 左 또는 右의 簡便單을 利用하여 打字한다. 「쓰지않은 다른 簡便單을 利用하여 다른 簡便 略號나 基本을 同時에 치서 略號로 表示된 慣用語句와 基本音節을 結合해서 表示할 수 있다.

例컨대 위의 例中 「ハナ」는 花(하나)라는 것을 表示하는데 쓰여지는 同時에 어떤 때에는 基本에 있어서의 「レ」를 後續시켜 「ハナレ」라는 發音에서 離座敷(하나테)라는 뜻을 가진 單語를 만들수도 있다.

ㄷ. 兩手の 略號

例	符 號	읽는 法
	I SKHTY	イロイロナ
	H A O I K TY	ハタラク
	A I K TY	アマリ
	KA K	ケッキョク

이와같이 양쪽손의 손가락을 同時에 움직여서 左, 中 및 右의 「그룹」에 屬하는 「로마」字를 一行에 打字해서 一個의 意味를 表現하는데에 쓰인다. (即 여러가지 意味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 速「타이프」에 依한 速記解讀「프로그램」

① 「시스템」(組織)의 概要

앞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速「타이프」를 가지고 速記를 하게 되면 그 記錄은 前述한 것과 같은 「로마」字의 結合된 符號로 表示된다.

따라서 뒤에 速記錄을 一般文字로 고쳐서 文章化할 때에는 이들 速記符號에 精通한 사람이 符號를 解讀해서 一般文字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 作業을 「速記符號의 解讀」(또는 翻文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하는바 이것은 熟練者라도 實際의 速記時間의 約 8倍乃至 10倍의 時間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速記符號를 解讀하는데 一切 人間의 勞力을 介入시키지 않는 方法은 없는 것인가 하고 約 2年間に 걸쳐서 研究開發한 것이 「電子計算機에 依한 速記符號解讀프로그램」 STEPS(速타이프·트랜스레이션·프로그램)

램·시스템)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시스템」은 速「타이프」로 速記된 符號로 電子計算機를 作자하고 高速度로 解讀하고자 作成한 것이다.

즉 速「타이프」로 打字된 符號를 「索引表」로서 電子計算機內의 記憶裝置에 記憶된 特殊한 辭典中에서 그에 맞는 「가나」文字를 高速度로 索引해서 打字하는 「프로그램·시스템」이다.

이 STEPS는 使用하는 電子計算機의 「메이카」機種에 限定하지 않고 現存하는 日本產 小型電子計算機로도 充分히 活用할 수 있으며 特히 「經濟的으로 速記錄의 解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開發한 것이다.

이번의 基礎實驗에서는 愛知工業大學所有의 日本電氣製 NEAC 2203 電子計算機基礎裝置(計算機本體, 操作卓, 光電式 테프讀取機, 콘솔타이프라이터, 各 1臺)를 使用하였다.

NEAC 2203 基礎裝置라고 하면 겨우 2,000「와트」의 記憶裝置밖에 갖지 않은 「時代物」인지도 모르나 이와같은 電子計算機로서도 使用可能한 「프로그램·시스템」인 점이 곧 STEPS의 經濟的인 長點이라고 해도 좋다.

以下 이 STEPS의 構成을 간단히 表示하면 第3圖와 같은 「차트」로 整理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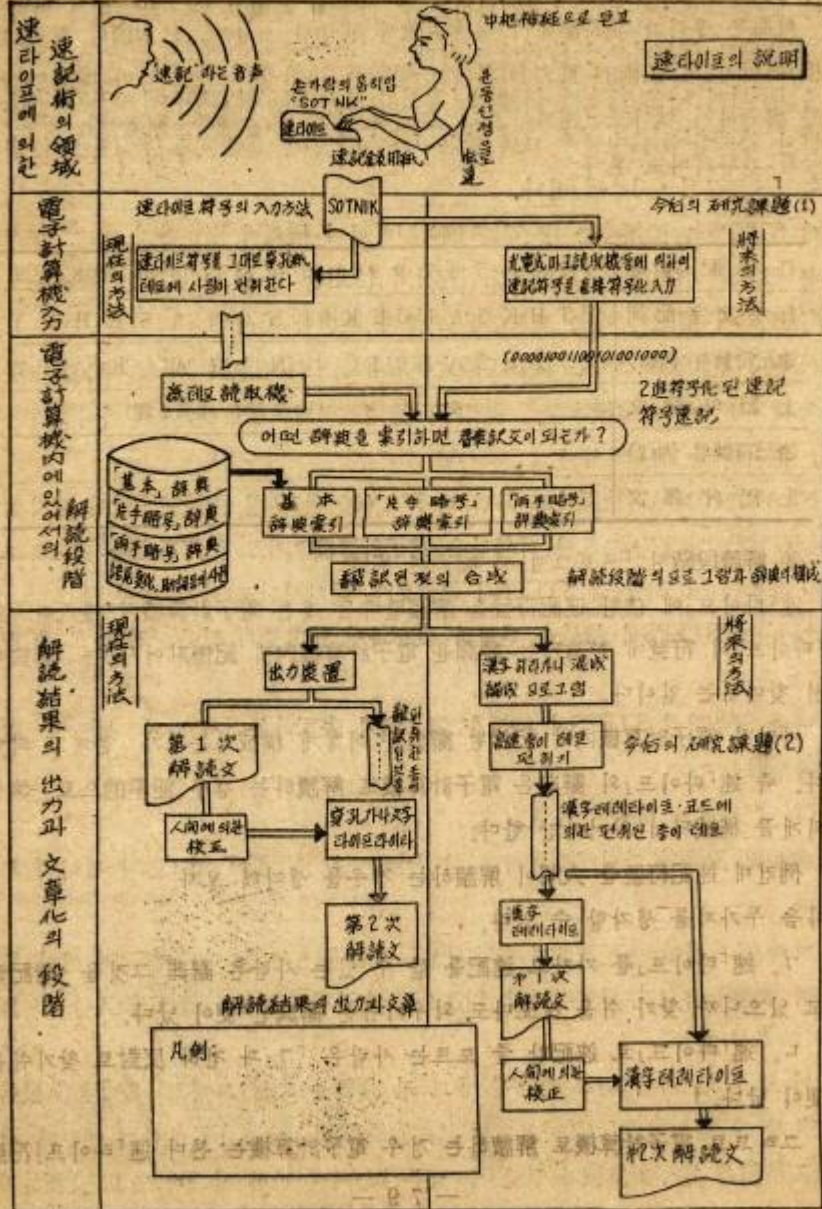
다음 節부터의 STEPS의 構成을 第3圖에 表示하는 「차트」의 順으로 說明하겠다.

② 速「타이프」符號의 投入方法
前項의 說明과 같이 速「타이프」의 符號는 打字用紙에 第4圖와 같이 打字된다.

따라서 어떠한 速記符號가 打字되었는가는 固有의 「로마」字配列의 어떤 位置의 文字들이 打字되었는가의 判定으로 充分한 電子計算機에 投入할 수 있는 情報가 된다.

이 경우 速「타이프」로 打字된 좁고 긴 用紙를 그냥 그대로 電子計算機에 投入할 수 있으면 理想的이겠지만 基礎實驗段階에서는 不可能하기 때문에 이 投入情報를 電子計算機가 읽을 수 있는 媒介物(「원취」된 「테프」로 交換하기

<圖 3>



을 알고 있을 理가 없으니 卍의 「ㄴ」과 마찬가지로 찾기 쉬운 辭典을 要求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配慮로서 만들어진 電子計算機內的 辭典에 對하여 좀더 詳細히 說明해 보자. 例를 들면 650에 가까운 速「타이프」符號의 辭典을 한글로 만들어 놓았다면 電子計算機는 그 辭典의 一쪽서부터 차례로 投入된 符號에 該當하는 譯語를 골라가는 것으로서 그 記號가 辭典의 最初方向에 있는 경우는 좋으나 마지막 部分에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時間이 걸리게 된다.

또 너무 辭典을 細分해 놓으면 譯語의 索引에 必要한 辭典自體를 찾는에 相當한 時間이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STEPS에 있어서는 이 兩者의 缺點을 補完코자 非常한 高度技法을 使用해서 辭典을 分類하고 있다. (情報理論의 「코딩」에의 應用理論 등을 썼다)

이 辭典의 構成은 大略 다음의 세 가지로 된다.

7. 基本辭典

ㄴ. 片手略號辭典

ㄷ. 兩手略號辭典

위 세 가지를 各各 符號上의 規則에 依據 다시 數種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나 위 세 가지 中에는 한 個의 速記符號를 한 「그룹」의 譯語 「그룹」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 符號에 對하여 그 翻譯이 한 가지로만 되지 않는 것도 말이 있다.

STEPS는 앞에 說明한 것과 같은 辭典을 索引하기 爲한 「프로그램」이 作成되어 있다.

즉 速「타이프」의 符號가 投入되면 그 符號의 譯語를 찾기 爲해서는 위 세 가지 辭典中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가를 決定하고 다음에 그 辭典中에서도 어떤 譯語「그룹」에 屬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보다 詳細하게 決定한다.

그안에서 그 符號가 한 가지 譯語로만 읽히는 것은 그냥 골라내고 몇 個의 譯語로 읽을 수 있는 것은 「테블·루크·업」(Table Look Up)法 等に 依한 索引表에서 譯語를 골라낸다.

④ 解讀結果와 文章化

앞節에서 說明한 것과 같이 速記符號에 對應하는 譯語가 찾아지면 電子計算機는 이것을 自動적으로 一定한 樣式으로 出力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電子計算機에 投入된 速記符號를 그대로 一言一句解讀해 내게 되면 果然 完全한 文章으로 되는가 하는 點이다.

우리는 理論上 또는 經驗上 投入된 速記符號의 直譯이 곧 完全한 文章으로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原因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7. 速記中에 發生하는 錯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速記를 하는 以上 誤聽, 發言의 錯誤 速記符號의 誤打는 생기는 것이 當然하고 特히 發言者가 速記士의 常識을 超越하는 專門語, 外來語等を 使用하는 경우, 심한 사투리로 얘기하는 경우 또 常識에 지나치는 빠른 말 등이 그 原因이 된다.

나. 速「타이프」符號 自體의 문제

「速타이프」로 치는 「略號」中 어떤것은 「基本」으로도 解讀可能한 것이若干있고 또 速記符號中 「あります」「であります」「のであります」가 同一符號로 되어있고 「で」와 「ので」는 사람이 解讀하는 경우 前後 文章을 보아서 읽게 되어있다.

이와같이 前後事情으로 融通할 수 있는 것은 電子計算機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公知의 事實일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STEPS에서는 解讀文字의 出力과 出力된 文字의 文章化와는 別途로 보아서 前者를 第一次解讀文 後者를 第二次解讀文이라고 하여 第一次解讀文은 完全히 電子計算機로 自動적으로 된 것이고 第二次解讀文은 人間의 判斷을 介入시킨 半自動的인 것이다.

第5圖는 出力된 第一次解讀文의 文字며 內容은 第18回 東京오림픽大會의 開會式에 對한 NHK의 實況中繼放送이다.

文字의 配列을 보면 알겠지만 文章이라고 할 수 없을 程度로 읽게 되어있는 公式文書로 해도 좋다고 할만한 훌륭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것을 判讀해서 사람의 손으로 文章을 만들려면 結局 電子計算

〔図 5〕

サン カ キュウジユウ ヨンカ(X) コク^ナナセ
ン ロッピ^ハヤ(X) ク ニン(ノ) セカイ
ノ ワコオトノ チカラ ト
ビノ バレイド イキヨ(X) センシユイレル(X)
ダンノ(ノ) ニユウジヨオ コオシン カイシア
アリマス
センシユサレル(X) ダンノ(ノ) センキオ(X) ワ オリ
ン ビック(ノ) ハッショオ(X) ノ チ
ギ^ハリ シヤ^アアリマス コンジ(X) ニ シロ
ク ジユウジ ガウカレ

〔図 6〕

サンカ キュウジユウ ヨンカ コク ナナセンロクジユウニン セカイノ
ワコオトノ
チカラト ビノバレイド イヨイヨ センシユダンノ ニユウジヨオ コオシン
カイシア アリマス
センシユダンノ セントオワ オリンピック ハッショオノチ ギリシヤア
アリマス
コンジニ シロク ジュウジ ガウカピアガッタ ギリシヤ コッキガ
イマ ニッポンノ トオキヨオノ メインスタジアム ノトラックノ レンガ
ノイロニ
アザヤカナ コントラストオ ミセテ シルエットオ オトシテ オリマス
キシユワ セイカリレイノ ダイイチ ソオシヤ ジヨオジ マルセロス
センシユ
オリンピック オ ウンダ クニノ ホロリト アカルク モエル ミナミ
ヨオロッパノ タイヨオ
アオク フカイ エイゲ カイノ ミズオ シヨオチヨオスル カノヨオナ
コッキオ セントオニ
ギリシヤ ヤンシユダン ニジユウシチニン ノ ニユウジヨオ デス

機로 高速解讀하는 意味를 잃는다. 電子計算機는 第一次解讀文을 出力할 때 第5圖에 나타난 것과 같은 文字를 穿孔 종이「테이프」에 「편취」해서 同時 出力한다. 즉 第5圖 第1行에서 第3行까지의 文字는 종이 「테이프」위에

サンカ キユウジュウ ヨンカノコクナセ シロツヒヤノクニンノ セカイノウ
コート……

이와같이 「편취」된다.

여기에서 人間은 第一次解讀文을 눈으로 읽고 不必要한 (ノ)를 削除 速記上 마트린 文字를 追加해서 電子計算機에서 出力된 「편취」된 종이 「테이프」를 읽어가면서 修正을 加하면 좋다. 이 方式을 쓰게 되면 「오펜베타」(「가나모지·타이프」 또는 「테레타이프」의 타이피스트로 充分)는 校正된 第1次解讀文을 보면서 다시 淨書「타이핑」을 하는게 比하여 約 3~5割 정도 時間을 短縮시킬 수 있다.

第6圖는 이와같이 修正을 加한 第二次解讀文인데 內容은 第5圖의 것을 修正한 것이고 이미 完全한 文章으로 되어 있다.

라. 今後의 研究課題

今回 基礎實驗의 當初目的은 거의 達成되어 解決된 것이지만 今後 이 STEPS를 實用하기 爲해서는 다음 두가지 點을 研究의 中心으로 할 必要가 있다.

第1은 速「타이프」로 打字된 速記符號를 電子計算機에 投入할 때 이것을 다시 종이「테이프」에 「편취」하지 않고 速「타이프」로 打字된 原文 그 自體를 電子計算機가 自動적으로 解讀할 수 있게 一種의 「코드」 變換機를 研究開發할 것이 必要하다.

말하자면 光電式「마아크」讀取機 등의 機械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

이 점에 關해서는 目下 愛知工業大學大倉研究室에서도 開發中에 있으나 그것보다도 日本國의 電子計算機「에이카」에 依하여 生産技術적으로 開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第2는 電子計算機에 依한 解讀結果를 「漢字」「히라가나」를 섞은 文章으

로 出力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의 第5圖 第6圖로 明白히 된 것과 같이 電子計算機가 「가다가나」文章으로 밖에 打字되지 않는 缺點이 있으나 今後의 研究에 依하여 「권취」하는 「테이프」에 漢字「테레타이프 코드」를 써서 漢字 및 「히라가나」의 「코드」를 出力해서 그 「테이프」를 漢字「테레타이프」에 읽혀서 漢字를 섞은 「히라가나」의 文章으로 해서 日常 日本語로서 읽기 쉬운 文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漢字는 어디까지나 一音節에 一漢字가 對應하는 것에 限定될 것이다.

한個의 單語에 對해서 몇가지의 漢字가 들어맞는 경우 즉 「ハシ」라 해도 「橋」나 「端」 또는 「箸」가 對應하는 것은 電子計算機에 依한 機械的判斷이 어려운 것이어서 「히라가나」만으로 出力되게 될 것이다.

以上 그點 外에 速「타이프」를 實際 使用하는 利用者別로 速「타이프」記號의 使用頻度를 調査 그것을 가지고 辭典索引時間을 보다 高速化시키고 전혀 使用하지 않는 記號를 除去하고 그래서 速記를 利用하는 部門別로 자주 쓰여지는 語句(즉 法廷에서 쓰이는 裁判用語, 學會에서 쓰이는 學術用語 等)를 새로운 略號로 登錄하여 速「타이프」利用者別로 辭典을 電子計算機內에 두어 두게 하는 것도 今後의 研究課題로서 重要な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今後 社會의 發展에 따라서 速記는 法廷 議會 報道 言論等 그 末端까지 浸透해가야만 할 本質的的使命이 있으며 그에 문에 速記原文의 解讀을 爲하여 電子計算機가 利用될 것은 크게 바람직한 일로 믿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電子計算機의 利用「코스트」이며 어떠한 融通性 있는 高皮의 「프로그램」을 開發해도 그 「프로그램」을 使用해서 速記原文의 解讀에 當하는 電子計算機의 使用料가 1人當 數百 數千圓이 된다면 도리어 人海戰術 쪽이 有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STEPS를 公表하는 까닭은 日本國의 社會的 事情에 비추어 最低 價格으로 使用할 수 있는 小型日本國產 電子計算機로도 利用可能하게끔 記憶用量 判斷等 諸機能을 「풀」로 活用해서 또 電子計算機의 特히 하기 어려운

「融通性」의 問題點에 대해서는 合理的으로 人間의 能力을 介入시키고 同時에 電子計算機의 能力을 低下시키지 않도록 配慮한 「프로그램」이 그대로 實驗적으로 成功해서 完成시킨 것이다.

今後 STEPS를 實用하기 爲해서는 日本國產電子計算機「메이카」가 實際製造하고 있는 小型電子計算機를 가지고 實用實驗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STEPS의 實際 使用에는 現在로는 東京芝浦電氣 日本電氣 日立製作所 및 富士通信機製造의 各「메이카」가 製造하고 있는 小型電子計算機가 各各 가장 適當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附言하는 바이다.

用舌 仁 抵膏燻5箇藜 藜 5 葉

育姓5箇藜 仁土5箇藜 章 1 葉
前費用密 145箇藜 章 2 葉
顯問藜 仁來料 界5箇藜 章 3 葉

第 2 編 速記教育과 그 活用

- 第 1 章 速記士와 速記教育
- 第 2 章 速記의 活用價值
- 第 3 章 速記界 將來의 諸問題

第 1 章 速記士와 速記教育

第 1 節 速記士의 資質

巧術者

速記士는 人間生活의 幅 넓은 言語活動에 있어서 言語의 速度와 一致할 수 있는 記錄方法을 習得한 技能者이므로 「스피드」化 되어가는 社會의 要求에 따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部門에 걸친 多方面의 討論을 一言一句 빠짐 없이 記錄하여 大衆에게 傳達하는 媒介的 任務는 勿論 生存競爭의 相反된 利害關係로 달이암아 惹起되는 論爭의 場바구니에서도 어김없는 有力한 證據力의 保存者로서 事實上 速記士에게 負荷된 社會的인 任務는 큰 것이다.

「世上에서 가장 公平한 것은 國王과 議長과 裁判官과 速記士이다」라고 하는 英國의 俗言은 速記의 證據力을 나타낸 代表的 表現이라고 할수있다.

가. 速記士

速記士의 定義를 내리는에는 于先 專門職業速記士와 非專門一般速記士로 나눌수 있다.

一般의으로 速記士라고 하면 專門職業速記士만을 일컬으며 非專門一般速記士는 速記를 日常生活活動에 利用하고 그 便利를 享有하고 있는 層이다.

① 專門職業速記士

速記士는 專門速記를 할수있는 能力의 所有者 卽 1年以上의 速記術 研修와 數年間의 專門의 그리고 經驗的인 速記의 實務過程을 거쳐 發言內容의 專門性 如何를 莫論하고 特定の 符號文字로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正確하게 筆記하고 一般文字化 할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를 通稱한다.

② 非專門一般速記士

非專門一般速記士는 高速度를 要하지 않는 速記로서 6個月 以內의 短期課程

의 習得으로 自己의 日常生活이나 業務能率의 効率的인 向上과 記錄上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活用하는 卽 秘書速記 通信受信速記 筆記速記 「여모」速記 事業書翰文의 받아쓰기 等等 一般的으로 가장 많이 活用할수 있는 速記 能力者로서 速記를 專門職業으로 하지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나. 資質과 敎養

어느 職業이고 問에 그職業에 要求되는 資質과 敎養이 있듯이 速記士에게도 갖추어야할 資質과 敎養은 있는 것이다. 그러면 速記士에게 要求되는 資質과 敎養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有能한 速記術과 豊富한 經驗

둘째 넓은 常識과 明哲한 頭腦

셋째 文章力을 들수있다.

이 세가지가 相互 調和된 總和에 의해서 비로소 完璧한 速記가 可能한 것이다. 卽 아무리 有能한 速記術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豊富한 常識 (明哲한 頭腦)과 훌륭한 文章力을 갖고있지 못하다면 發言內容을 正確하게 理解하여 記錄하고 올바르게 譯文할수 없게 되기때문인 것이다.

速記士의 경우 發言이 지나치게 빠르다. 理解할 수 없다. 들리지않는다고 하는 困難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速記士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苦痛이 있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경우 참으로 쓸수 없을것이다. 들리지 않을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認定할때 內容의 不充實이 速記士에게 責任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速記士 自身이 그內容에 대한 豫備知識의 不足에서 오는 경우가 許多하다.

어느 學術講演에서 速記를 擔當하였을 경우 主題에 관한 著書を 읽지않았고 그 學說에 대하여 들은바 없이도 能히 完全한 速記를 遂行한 實例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電話로 通話할 경우 狀態가 不良하여 잘 들리지 않을때 通話內容에 대한 知識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수 없으나 相對方이 얘기 하고자하는 用件에 대하여 推測이 간다면 쉽게 그 要領을 얻을수 있는것과 같다고 할것이다.

該博한 知識과 豊富한 常識을 갖고있는 速記士라면 잘 들리지않는 發言이
라 하더라도 能히 全部를 聽取하는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知識과 見聞을 보다 크게 넓혀 나간다면 理解와 推測과 判斷에
의해서 可聽能力 範圍內에서의 速記는 可能할 것이다.

스스로 自身이 多方面에 걸친 經驗과 知識을 갖고 있다면 남이 들지못하
는 정도의 發言도 들을수있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內容도 알수있기 때문
에 記錄이 可能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能力은 特殊한 技術의 研磨와 訓練
의 證佐이기도 한 것이다.

速記士가 가지는 多方面의 經驗과 知識이란 速記業務 遂行에 있어서 記錄
을 돕는 實際적인 核心이되는 要素인 것이다.

假令 어떤 사람의 發言을 速記한다고 하였을때 그發言의 內容이 무엇을 意
味하고 어떤 理念과 思想을 開陳하는 것인지 批判이나 是非할 必要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發言의 內容을 理解하고 發言者의 意思를 把握할수 없다면
完全記錄은 不可能하게 될 수도 있다. 이面에서 특히 附記할 것은 千態萬象
의 語彙와 地方方言 지나친 外來語나 漢文이 주는 困難이다. 孔子와 孟子,
論語에서 때로는 詩傳 書傳까지 登場하고 各國의 外來語는 勿論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部門의 專門用語, 工業專門家만이 쓰는 特殊한 機械名 醫學에
서 藥品名으로부터 病名까지 심지어는 宗教에 있어서 各宗派의 敎理뿐만 아
니라 西洋의 神話에 이르기까지 또는 發言者의 創作用語等 그範圍는 實로
無窮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能力있는 專門職業速記士는 遺憾없이 그職務을 遂
行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速記士만큼 日常에 있어서 各方面에 걸쳐서 새로
운 知識에 接하는 機會의 缺乏을 받는者도 없다. 一般에 있어서는 經濟人은
經濟만으로, 法律家は 法律만으로, 技術者는 그 部門에 있어서의 技術만을 各
各 限定된 一箇領域에 있어서 體驗하고 知識을 쌓게되어 다른것을 들볼 餘
裕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比較해서 速記士는 多方面에 걸쳐서 體驗하고 온갖 知識에 接觸하
고 넓은 사회의 窓을 통해서 豊富한 知識을 獲得할 機會를 만드는 일이 많

은 것이다. 이러한 知識이 하나하나로 分立해서 단순한 博識으로 끝나고 달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體驗을 쌓아올려서 하나로 뭉쳐서 그것을 貫徹하는 實踐力만큼 두려운것은 없는것이다. 이런 豊富한 常識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가장 正確하게 가장 緻密하게 가장 機敏하게 推理 判斷할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是非曲直의 문제에 對해서는 妥協을 모르는 嚴한 面을 갖고 있다.

이렇듯 廣範한 部門의 專門인 知識과 發言者의 多樣한 言語의 驅使에도 不拘하고 速記士에게 負荷된 記錄의 使命을 完全하게 遂行하기 위하여는 速記士는 速記術의 修練時에 기우렸던 忍耐과 努力을 實務時에도 계속리하지 않고 無限한 知識의 注入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다. 速記士의 資格要件

現代社會의 發展은 그 社會를 機成하고 있는 個個人의 資格要件이 充分히 갖추어져 있느냐의 與否에 左右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文化, 經濟 및 法律의 俱現도 이에 副應한다고 본다.

더욱이 速記士와 같이 社會의 公益과 關聯되는 職에 從事하는 사람의 資格要件 具備 與否는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한 것이어서 그 資格의 本바탕과 표준이되는 條件을 設定하고 施行하고자 하는때는 慎重한 研究와 檢討가 加해져야 할것이어서 本章에서 速記士의 資格要件을 論하기란 매우 힘든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速記士는 前述한 速記士의 「資質과 教養」에서 言及된바와 같이 天賦的인 素質과 多角的이고 豊富한 知識이 具備되어야 한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現在 우리나라의 速記士 資格檢定 實態와 外國의 速記士 資格檢定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리나라의 速記士 資格檢定實態

우리나라의 速記文化는 速記가 創始된지 日淺하기 때문에 우리의 社會的 現實은 速記의 活用이 多樣化된 現實社會에서 速記가 文化面에 이바지할 수 있는 公益性을 足히 認識하고 있지 못한 까닭으로 아직까지 速記士의 資格檢定에 對한 公認制度 即 國家的인 考試制 乃至 關係部處의 速記士의 資格檢

定基準마저도 設定되어 있지 않은 實情에 있다.

다만 現在 速記士 需要의 80%以下를 차지하고 있는 國會事務處의 人事 規則에 「第63條(各種任用 試驗科目) ① 3級以上 4級 및 5級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과 特別採用試驗, 特別昇進試驗, 轉職試驗 및 3級 公開競爭昇進試驗의 科目은 別表 5와 같다」와 同 第72條(4級乙類公開競爭採用試驗應試資格)에 있어서 第2項 「初級大學(다만 速記職公務員에 대하여는 高等學校) 卒業者 및 卒業豫定者 또는 法令에 依하여 이와 同等以上の 學歷을 가졌다고 認定되는 者」라고한 上記 2個의 條文에 依한 國會速記職任用試驗基準(別

(別表 1)

級 別	職 群		行 政
	職 別		
級 別	科 目		速 記
3級乙類 公開競爭採用試驗	第1次試驗科目		憲法, 實技, 行政法, 英語
	第2次 試驗科 目	必須科目	行政學, 經濟學, 速記學
		選擇科目	民法總則, 政治學, 社會學, 教育學, 心理學, 統計學(中1科目)
4級公開競爭採用試驗	第1次試驗科目		實技(演說), 實技(論說)
	第2次 試驗科 目	必須科目	憲法, 行政法, 行政學原論, 一般常識
		選擇科目	
5級公開競爭採用試驗	第1次試驗科目		實技(演說), 實技(論說)
	第2次 試驗科 目	必須科目	國語, 國史, 法制大意, 一般常識
		選擇科目	經濟大意, 數學, 英語(中1科目)
3級特別採用試驗	第1次科目		憲法, 行政法
3級特別昇進試驗	第2次科目		行政學, 速記學
3級公開競爭昇進試驗	第1次科目		憲法, 行政法
3級轉職試驗	第2次科目		行政學, 速記學
4級特別採用試驗	第1次科目		實技(演說), 實技(論說)
4級特別昇進試驗	第2次科目		行政法, 行政學原論
4級公開競爭昇進試驗	第1次科目		憲法, 行政法
4級轉職試驗	第2次科目		行政學, 速記學
5級特別採用試驗	第1次科目		實技(演說), 實技(論說)
5級轉職試驗	第2次科目		法制大意, 經濟大意

4·5級第1次試驗科目 (2) 200點滿點에 180點以上 得點者만을 合格者로 한다.

(別表 2)

급	속	도	면	문	시	간	정	확	도
1 급	3,200자 이상(10분간)		150분	이내			95점	이상	
2 급	3,000자 이상(")		"				"		
3 급	2,700자 이상(")		"				"		
4 급	2,400자 이상(")		"				"		
5 급	2,000자 이상(")		"				"		

上記 各級別 95점 이상 得點者에 限해서 資格證을 發付한다.

表 1)과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速記士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程 第 8 條 (會員資格) 「速記技能 2級以上으로서 協會所定의 義務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라고 하여 會員의 資格을 規定하고 있고 同第11條(檢定基準) 「1級 2級 3級 4級 5級으로 定하고 內容은 別表 1에 의한다.(參照: 別表2)라고 한 이 두개의 規定뿐인데 國會事務處 人事規則 第63條의 別表 試驗科目의 內容을 보면 速記士 任用試驗에 있어서 實技라는 이름으로 速記術 試驗을 1次試驗으로하고 筆記試驗인 一般學科目을 2次試驗으로 實施하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速記士 採用試驗의 合格順位가 筆記試驗인 一般學科目의 得點順位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本末이 顛倒된 感을 주고 있다.

또한 前述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速記士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程도 何等에 法的 뒷받침이 없는 同法人 自體內의 規定이며 또한 오늘날까지 社會的인 諸般 與件과 同協會의 事情으로 因하여 一次도 技能檢定試驗이 實施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다만, 早晚間 技能檢定制도가 實施되어 本軌道에 오르게 되면 社會的인 公信力도 漸次 維持될 것이다.

② 日本國의 速記士 資格檢定實態

日本國議會의 速記職 採用基準을 보면 參議院은 速記士의 採用을 一般公募에 依하지아니하고 參議院 速記士養成所 出身만으로 採用하고 있고 衆議院에 있어서는 一般公募에 依해서 速記士를 採用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衆議院 速記士養成所 出身이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되고 있다. 日本의 衆參兩院 速記職 採用 試驗基準은 別表 3과 같다.

上記 別表에서 보드시의 日本國 議會의 速記職 採用試驗에 있어서는 우리

(別表 3)

衆·參兩院速記士試驗基準

職 種	回數	速 度	許容失點	朗 讀 內 容
補 助 速 記 士	2 回	10 分 間 2,900字內外	3 %	國會會議錄
		10 分 間 2,900字內外	"	"
速記士補	3 回	10 分 間 3,200字內外	2 %	國會會議錄
		10 分 間 3,200字內外	"	國會會議錄 또는 一般講演等
		10 分 間 3,400字內外	"	國會會議錄

나라와는 正反對로 速記術試驗에 重點을 두고 一般科目은 試驗科目에서 除外되어 있다. 이것은 議會速記士養成所 生徒 募集要綱에 있어서 參議院速記士養成所規則 第3條 「本所의 入所生徒는 新制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者로서 滿20歲 以下の 者中 入所試驗을 行하여 이를 認定한다」와 衆議院速記士養成所規則 第4條 「本所의 入所資格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서 入所試驗 또는 體格檢査에 合格한者에 限한다」 1項 「高等學校를 卒業한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 이와같이 兩院 共히 高卒以上の 學歷者로서 入所試驗의 應試資格을 賦與하고 2年間の 教學과정에서 經濟, 漢文, 法律, 英語, 佛語, 法律用語, 實務知識, 樣式例, 轉記(書取), 文字(漢語), 漢語(地名), 表記法(現代日本文學史, 文章), 速記史, 社會, 新聞, 國語, 速記學, 時事用語, 體操等 速記實務에 必要한 多角的인 一般科目을 同養成所에서 全部 履修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社團法人 日本 速記協會의 速記士 技能審査基準을 보면 日本文部省의 後援을 얻어 速記技能檢定을 全國 主要 8個都市以上에서 實施하고 있어 그權威를 確固히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의 速記技能審査基準은 別表 4와 같다.

(別表 4) 速記技能審査基準

級	程 度	領 域	内 容	許容失點
5級	「노트」나「메모」에 速記를 利用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翻 文 正確度 } 知識	分速 12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內에 普通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 程度. 翻文에 있어서 辭典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6%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程度.	24字以內
4級	서순論說이나 原稿를 速記로 活用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翻 文 正確度 } 知識	分速 18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內에 普通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 程度. 翻文에 있어서 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程度.	27字以內
3級	論說 電話를 速記할 수 있고 翻文을 도울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翻 文 正確度 } 知識	分速 24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內에 보통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 程度. 翻文에 있어서 辭典 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程度.	36字以內
2級	會議·座談·講演의 速記를 補佐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翻 文 正確度 } 知識	分速 280字를 基準하여 10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130分以內에 보통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 程度. 翻文에 있어서 辭典 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8%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程度.	56字以內
1級	會議 座談 講演을 單獨으로 速記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翻 文 正確度 } 知識	分速 320字를 基準하여 10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130分以內에 보통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 程度. 翻文에 있어서 辭典 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8%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程度.	64字以內

第 2 節 速記의 環境條件

速記의 環境條件이라고 하면, 速記士가 速記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速記하는 場所와 發言者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卽, 어떠한 環境과 條件下에서 速記를 하는 것이 速記하는데 가장 適當한 環境氣의 問題인 것이다. 速記業務는 本質이 發言內容의 一言一句의 漏落도 이를 許容하지 않는

完全한 記錄에 使命이 있는 것이므로 會議場의 環境은 가장 容易하게 記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造成되어야 한다.

1 分間에 平均 300 音字 以上을 記錄하여야 하기 때문에 精神力의 集中은 勿論 敏捷한 손의 움직임이 要求되어 會議場의 霧圍氣는 精神力의 集中이 이루어지고 發言內容을 正確하게 聽取할수 있도록 靜肅하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席近處에서 雜談이나 騷亂이 일어난다든가 門의 開閉音 등으로 聽取하는데 또는 精神力集中에 조금이라도 支障을 준다면 完璧한 速記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速記는 손의 疾 빠른 움직임에 의해서 記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記錄場所의 溫度가 손의 動作에 支障을 주게되면 纖細한 線으로 構成된 速記文字의 記錄은 不自由스러운 손의 動作으로 正確한 記錄을 얻에 어려움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速記士를 어느 位置에 자리를 定하게 할것인가 하는 것으로 速記席은 會議場中心의 司會者 가까이에 設置하는것이 正常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速記는 단순히 귀로만 듣고 速記하는것이 아니고 人間이 갖고있는 六感을 全部 動員해서 記錄하는 것으로 會議全體가 몸으로 把握되지 않으면 完全한 速記는 할수없는 것이다. 들리기만 하면 速記는 可能한 것이라면 會議場으로부터 「스피커」의 「코드」를 끊어서 別室에서 速記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는 完全한 速記를 할수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理想的인 速記席이란 會議場 어느 곳에서 發言하더라도 聽取可能하고 會議場을 한 눈으로 살펴키에 容易한 位置여야 하는 것이다

理想的인 速記席의 位置를 圖示하면 別表와 같다.

다음에는 發言에 관한 問題로서 가장 問題되는것이 人間能力의 限界를 逸脫한 普通常識으로는 想定할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人間의 記錄能力으로는 미칠수 없는 狀態를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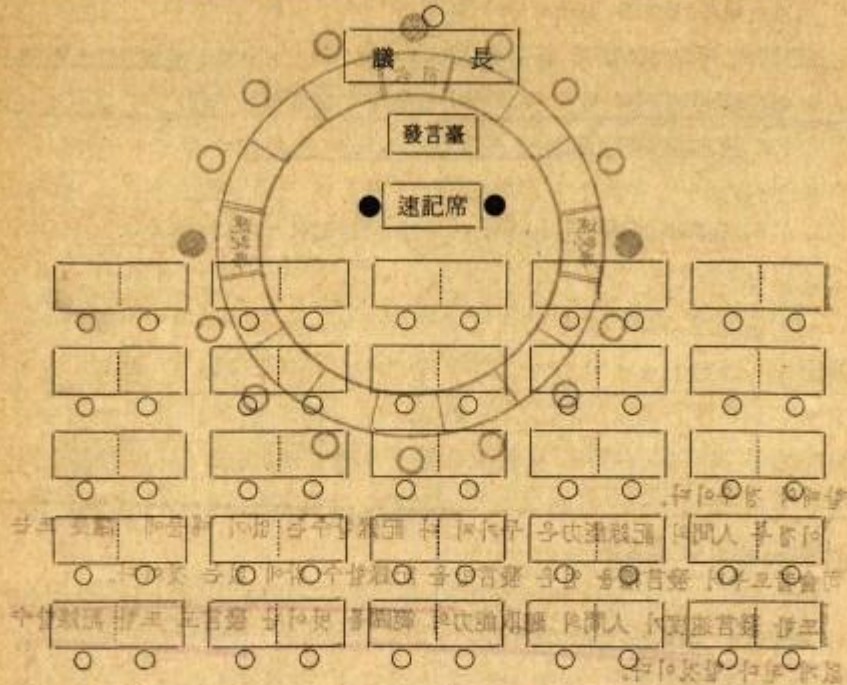
同時發言이 那例로서 會議席上에서 어떤 事案에 대하여 贊反의 激烈한 論爭이 展開되었을때 한편이 發言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反駁發言을

(別表)

理想的인 速記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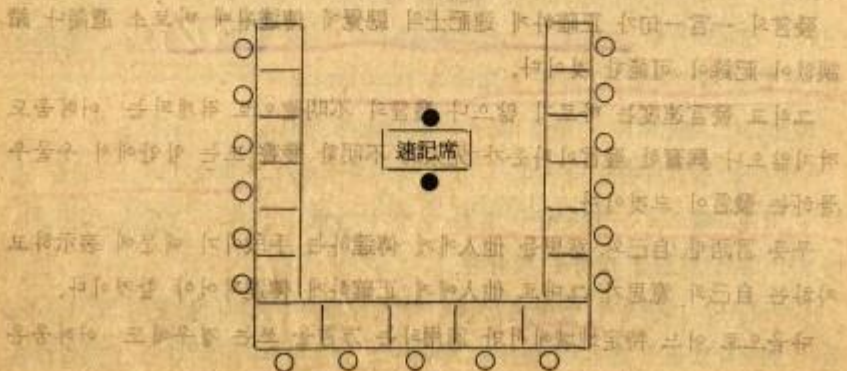
(小會議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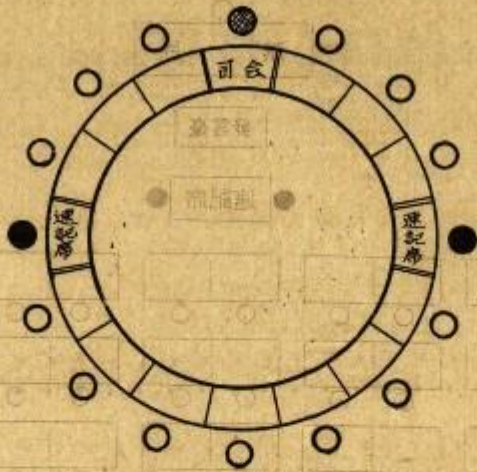
(大會議場의 경우)



兩大工小會議場의 경우

司會





할때의 경우이다.

이경우 人間의 記錄能力은 두가지 다 記錄할수는 없기 때문에 議長 또는 司會者로부터 發言權을 얻은 發言만을 記錄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發言速度가 人間의 聽取能力의 範圍를 벗어난 發言도 또한 記錄할수 없게 된다 할것이다.

運動競技의 放送中繼에 있어서 「어나운서」의 中繼內容을 聽取者가 그 大綱은 聽取하여 理解가 可能하나 中繼內容의 一言一句를 正確하게 聽取하기 어 려운것이 한 좋은 例라 할것이다.

發言의 一言一句가 正確하게 速記士의 聽覺에 傳達될때 비로소 遺漏나 錯 誤없이 記錄이 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發言速度는 빠르지 않으나 發音의 不明確으로 겪게되는 어려움도 적지않으니 興奮한 發言이라든가 先天的 不明한 發聲 또는 입안에서 우물우 물하는 發音이 그것이다.

무릇 言語란 自己의 意思를 他人에게 傳達하는 手段이기 때문에 表示하고 受하는 自己의 意思가 그대로 他人에게 正確하게 傳達되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어느 特定地域에서만 通用되는 方言을 쓰는 경우에도 어려움은

있는것으로 辭典을 찾든가 發言者에게 問議하는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의 方言을 實例를 들면

(註: 이例는 主로 國會速記錄에서 拔萃한 것임)

「…… 나는 불버서 당해 일골을 못들었셔다」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나는 부끄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못들었소이다」

「그기 도대체 뭐 하능징고 했더니……」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그것이 도대체 뭐 하는것이냐 했더니」

「저 머시기 려성라구에……」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저 뒤 려가지고……」

「되들 이렇거나 저렇거나 도리없기 꺾센」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모두 볼 이렇거나 저렇거나 도리없기때문에」

「이것을 응동치기로 計算해봐도」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이것을 대략 計算해 보아도」

「키브 車를 타고 「카브」를 휘 돌아서 고봉페기를 뺏다 올라가는데」 이것을 표준말로 고치면 「질차를 타고 「키브」를 휘 돌아서 언덕을 뺏겨 올라가는데……」

以外에도 「데머사니」 「짜게 짜게」 「그레실라루니」等等 速記士들을 당황하게 하는 方言들은 無數히 많은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數多한 速記業務上에 겪게되는 어려움이 一般人으로서는 들을수 없고 듣기 힘들고 理解가 안되는 경우라도 速記士는 이런 어려움들을 克服하고 남이 理解못하는 그리고 들을수없는 發言일지라도 理解 聽取하여 完備한 記錄을 함에 그價價가 發揮되는 것이다.

이러한 難題의 克服은 速記士自身的 技術의 不斷한 研磨와 오랜동안에 쌓안은 經驗과 訓練의 結果로서 단순히 눈과 귀와 손에의한 速記만이 아니고 六感を 全部 動員하여 記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第3節 速記士의 養成

가. 우리나라 速記士養成의 歷史와 實態

우리나라 速記士養成의 歷史는 바로 우리말 速記의 歷史를 말한다.
前編 우리말 速記의 成長과 發展에서 記述하였듯이 우리말 速記法의 創案

이 胚胎되기 始作한 것은 韓日合邦으로 日帝가 우리나라에 毒牙를 내밀던 때 부터이다.

그後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으로 말미암아 그 實用을 보지못한채 지내오다가 1945年 8月15日解放을 맞게되어 우리말 速記도 빛을 보게되었다.

그러나 當時에는 日本語速記 可能者가 몇사람있을 뿐 우리말 速記士는 단 한사람도 없는 實情이었다. 當時는 비단 速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出發을 하지 않을수 없는 與件이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速記에 있어서는 우선 實用的인 우리말 速記의 創案이 時急한 當面한 課題였다. 그리하여 主로 日本語速記를 習得한 몇몇분들이 刻苦의 努力끝에 몇가지 速記法式을 創案 發表하게 되었다. (參照「우리나라 速記의 成長과發展」)

이렇게 하여 몇가지 速記法式들이 創案된 後 多少의 混線과 陣痛을 겪으면서도 養成과 普及을 위한 事業들이 進行되어 1946年 9月 11日 逸波式創案者 逸波 張基泰氏에 의하여 「逸波式速記士養成所」라는 看板아래 東大門區昌信洞所在 昌信學院을 臨時校舍로 하여 速記士 養成에의 첫발을 내어디딜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速記士의 養成이 그 出發을 보게되었다.

이를 嚆矢로 하여 浮沈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速記士 養成의 實態를 各速記法式別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逸波式 (創案者 張基泰)

1946. 9. 11. 「逸波式速記學概論」을 出版함과 同時에 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 設立하여 1950. 6. 25動亂으로 中斷될때까지 3期를 輩出.

1949. 2. 20. 國防部內에 陸軍速記士養成所를 設置(李圭洪, 金鍾萬兩人教授).

1951. 12. 1. 避難首都 釜山에서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우리나라 最初의 教育法에 의한 一年制 高等技術學校로서 民議院事務處直屬機關으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設立 國費로 速記士를 養成 1960. 5. 16 軍事革命으로 國會가 解散될때까지 10회에 걸쳐 卒業生 313名을 養成輩出. 趙實 吳史賢 吳勳 黃士 鄭熙 李仁 李仁 李仁

1956. 서울高等學校, 善隣商業高等學校, 梨花女子大學校 등에서 速記 教授.

1968. 3. 15. 國會事務處內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同 法式을 教授하였으나
1969年3月 議會速記法式的 創案으로 教授法式을 變更하게 됨에
따라 中斷.

1969. 5. 새로 整理된 逸波式 「實用速記」를 獨學者를 爲해 出刊.

◎高麗式 (創案者 金天漢)

1948. 9. 高麗速記專門學院을 龍山區孝昌洞에 開設 養成中 6. 25動亂으로 中斷.

1951. 9. 避難首都 釜山에서 同學院續開.

1953. 5. 釜山學院을 分院으로 殘置하고 서울橋南洞에 高麗速記技術學院으로 改稱하여 開院.

1954. 11. 同學院에 우리나라 最初로 速記通信教育部를 附設.

1958. 9. 開院10周年紀念 講習會를 開催.

1965. 4. 學院位置를 西大門區 大峴洞으로 移轉.

1966. 3. 事情에 의하여 閉院(第1期부터 第46期까지 230名 輩出).

1968. 3. 國會事務處內 速記士養成所에 高麗式班을 設置 教授하였으나
1969. 3. 議會速記法式的 創案으로 高麗法式 教授中斷.

1953. 陸軍高級副官學校에서 速記教育.

1953. 9. 善隣商業高等學校에서 "

1956. 7. 市立서울成人學校에서 " (現在까지)

1956. 11. 陸本政訓監室政訓將校 "

1957. 5. 昌德女子高等學校에서 "

1957. 8. 馬山成人學校에서 "

1959. 3. 誠信女子高等學校에서 速記教育.

◎東邦式 (創案者 李東根)

1948. 8. 解放速記學院을 設立 速記士를 養成中 1949. 9 東邦速記學院으로 改稱하여 1950. 6. 25動亂時까지 養成하다 中斷.

1952. 7. 單行本 「速記學講義」를 出刊.

1952. 10. 大邱에 同學院 再設立.

1956. 3. 「速記學講義錄」發行.
 1959. 10. 大邱 同學院을 서울로 復歸.
 1964. 5. 「東邦速記教本」發行.
 第1期부터 第169期까지(4個月速成科包含) 總1,693名 輩出

◎姜駁速式(一名 서울式)(創案者 姜駁速)

1946. 6. 朝鮮語速記學會結成, 速記士養成.
 1948. 4. 서울速記專門學院을 設立하여 養成中 1950. 6. 25. 動亂으로 閉院.
 1964. 梨花女子大學校 慶熙大學校에서 速記講義.

◎世鍾式(創案者 金世鍾)

1951. 全州, 光州에 世鍾速記學院을 設立하여 速記士를 養成.
 1952. 裡里, 大田, 釜山, 馬山, 木浦에 世鍾速記學院을 設立.
 1955. 서울, 仁川에 世鍾速記學院을 設立.

◎韓國式(舊朝鮮式)(創案者 朴 松)

1947. 서울驛前 太平旅館에서 朝鮮速記學館을 開設한後 18期生을 輩出, 1950. 6. 25動亂으로 中斷.
 1954. 서울收復과 함께 世宗路 教育會館에 韓國速記學館을 開設 後에 韓國聯合速記學院으로 改稱.

以上 養成機關의 消長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25前까지는 7個所의 養成所가 있었으나 6. 25動亂으로 中斷되었다가 還都後 再建된것이 5個所로서 2個所가 줄어들었고 5. 16直後에는 速記士의 唯一한 需要處였다고 할 수 있는 民參兩院을 비롯하여 各地方議會의 解散으로 우리 速記界는 一大受難을 겪게 됨으로써 그나마 命脈을 이어오던 養成機關들은 완전히 門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速波式養成所의 代身格이며 唯一한 國費速記士養成機關인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도 國會解散과 더불어 自動적으로 解散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民政移讓이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速記界의 活路가 열렸으나 門을 연 養成機關은 東邦速記學院하나 뿐이고 餘他는 再起不能의 狀態에 빠지고 말았으며 實質적으로 速記士의 需要自體도 各級地方議會가 여전히 構成되지 않음으로써 國會速記士에 局限된 狀態였고 養成機關의 消滅은 新進速

記士의 養成은 「올스득」에 가까운 狀態로 몰아 넣었다. 그러던 中間 어찌하여 數多한 養成機關이 一時에 門을 닫고 消滅되게 되었는데 그 原因을 살펴 보면 速記術의 習得이 短期의 敎育으로 完成되는 技術이 아니고 長期間의 高된 修練이 要求되어 그의 習得希望者가 稀少하고 그 結果는 民間養成機關을 經營難에 빠뜨리게 하는 要因이 되었으며 雪上加霜으로 5.16軍事革命으로 民參兩院을 비롯한 各級議會의 解散은 그 餘지할아도 좁은 우리나라 速記士의 需要處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長期間의 高된 修練이 必要한 어려운 技術을 刻苦의 努力끝에 履修하더라도 就業할 곳이 없으니 習得希望者가 自然 줄게 되어 養成機關은 門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民政移讓으로 國會가 다시 開院되어 當分間은 既成速記士들로 充當되었으나 後進을 養成 輩出하지 못하였으므로 國會速記士의 自然退職率을 내줄 길이 없는 極한 情形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하여 必然的으로 닥쳐온 速記士의 供給 不足을 打開하기 위하여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의 後身이라 할 「國會速記士養成所」가 國會內에 設置되어 2 個班으로 編成 1個班은 逸波式, 1個班은 高麗式으로 하여 1968. 3. 10.에 開講함으로써 다시금 國費養成의 길을 더 넓게 되었는데 同養成所의 設置規程과 學則內規 및 前身인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의 概要, 國會速記士養成所의 運營現況은 다음과 같다

國會速記士養成所設置規程^(1968. 2. 3)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國會速記士養成所 (이하 “養成所”라 한다)의 設置基準과 기타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設立目的) 速記에 관한 專門的인 技術과 理論을 敎授 研究하며 將次 國會에 從事할 速記士를 養成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內에 養成소를 둔다.

第3條 (入學資格) 養成所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第4條 (修業年限) 養成所의 修業年限은 1年으로 한다.

第5條 (授業日數) 養成所의 授業日數는 230日이상으로 한다.

第6條 (授業時間) 養成所의 授業時間은 17時 30分부터 20時 30分까지로 한다. 다만 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7條 (教科目) 養成所의 教科目은 專攻科目과 教養科目으로 나누며 그課程은 다음과 같다.

1. 專攻科目: 速記學, 速記術
2. 教養科目: 國語, 法制大意, 經濟大意

第8條 (任員) 養成所에 所長 1人, 副所長 1人, 教務主任 1人과 講師 및 事務職員을 若干名 及び 事務總長이 國會公務員中에서 이를 委屬한다.

第9條 (職務) ①所長은 養成所을 統理한다.

②副所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教務主任은 養成所의 教務行政 및 一般行政을 擔當한다.

第10條 (試驗) 所長은 所定の 修業期間의 100分の 90이상의 授業을 받은者에 대하여 修了試驗을 實施한다.

다만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隨時 試驗을 實施할 수 있다.

第11條 (修了證) 學業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所定の 試驗에 合格한 者에게는 修了證을 授與한다.

第12條 (委任規定) 養成所 任員에 대한 手當과 기타 養成所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事務總長이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68年 2月 3日부터 施行한다.

國會速記士養成所學則內規^(1968. 2. 14)_(總長 決裁)

第1條 (設置) 國會速記士養成所(이하 “養成所”라 한다)는 國會事務處內에 둔다.

第2條 (修業年限) 養成所의 修業年限은 1年으로 한다.

第3條 (授業時間) 養成所의 授業時間은 17時30分부터 20時30分까지로 한다.

第4條 (專攻科) 養成所에 速記專攻科를 두며 議會速記法式을 教授한다.

第5條 (入學資格) 養成所에 入學할 수있는 者는 35歲以下의 男女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

1.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卒業豫定者
2. 大學入學資格檢定考試에 合格한 者
3. 外國에서 12年이상의 教育課程을 卒業한 者

第6條 (授業料) 授業料는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7條 (學級) 養成所의 學級은 2學級이내로 한다.

第8條 (定員) 養成所의 學生定員은 每學級當 50人으로 한다.

第9條 (科目 및 時間) 養成所의 學科目 및 時間配定 比率은 다음에 의한다.

速記學 週 14時間

國語 " 1 "

法制大意 " 1 "

經濟大意 " 1 "

一般常識 " 1 "

第10條 (授業日數) 養成所의 授業日數는 230日 이상으로 한다.

第11條 (學年) 養成所의 學年은 2期로 나누어 다음에 의한다.

第1學期는 3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第2學期는 9月 1日부터 翌年 2月 28日까지로 한다.

第12條 (休業) 養成所의 休業은 다음과 같다.

1. 國慶日, 公休日 및 臨時公休日
2. 夏期休暇(8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3. 冬期休暇(12月 25日부터 翌年 1月 24日까지)

다만 위 各號外에 天災, 地變 기타 急迫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臨時休業을

할수 있다)

그러나 休業中이라도 必要가 있을때에는 實習을 課할수 있다.

第13條 (學年課程) 養成所의 全學年課程의 履修는 學年末의 成績을 考查하여 認定한다.

第14條 (修了證書授與) 養成所長은 全學年의 課程을 履修하였다고 認定한 者에게 修了證書를 授與한다.

第15條 (入學許可) 養成所에 入學하려는 者는 所定의 節次에 의한 入學願書 및 寫眞을 添附하여 出願하여야 한다.

다만 提出된 書類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17條 (誓約書) 養成所에 入學을 許可받은 者는 따로이 定한 節次에 의하여 保證人連署의 誓約書를 養成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8條 (休學) 學生이 疾病 기타 不得已한 事情에 의하여 休學하려 할 때에는 그 事由를 갖추어 保證人連署로서 養成所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19條 (外國人의 入學) 外國人으로서 養成所에 入學을 希望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入學資格이 있는 者에 限하여 入學을 許可할 수 있다.

第20條 (表彰) 養成所長은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 表彰할 수 있다.

第21條 (懲戒) 養成所長이 教育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學生에게 懲戒를 科할 수 있다. 懲戒는 그 程度에 따라 謹慎, 停學, 退學으로 한다.

第22條 (退學) 學生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때에는 退學을 命할 수 있다.

1. 品行이 不良하여 改悛의 情이 없다고 認定되는 者
2. 學業成績이 劣等하여 就業의 可望이 없다고 認定되는 者
3. 正當한 事由없이 75日以上 出席을 하지 아니하여 學業을 怠慢하게한 者
4. 政治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거나 學生本分에 어긋나는 集團的 行動으로 授業을 妨害한 者

附 則

① 이 學則은 1968年 2月15日부터 施行한다.

② 이 學則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養成所長이 定한다.

前國會速記學校(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概要

1. 開設 1951. 12. 1.
2. 閉校 1961. 8. 31.
3. 認可廳 文教部長官.
4. 費用 國會豫算에서 支出.
5. 履修年限 1年.
6. 入學資格 高等學校卒業以上者.
7. 募集人員 60名.
8. 授業時間(夜間) 自 午後 5時30分. 至 " 8時30分.

機 構 表

職 名	官 名	擔當科目
校 長	民議院 事務總長	
副 校 長	事務次長	
校 監	議事局長	
庶務主任	速記課長	國 語
校務主任	總務局長	
學生主任	法制調查局長	法 律
訓育主任	圖書館長	政 治
教 師	速記係長	速 記
"	"	
"	"	
講 師	專門委員	經 濟
庶 務	速記課員	

速 記 授 業 時 間 表

曜日	校時			
	時間	1	2	3
	下午 5.30—6.20	6.30—7.20	7.30—8.30	
月	速 記 法	速 記 法	實 習	文 學
火	"	"	實 習	"
水	法 學 通 論	"	速 記 術	"
木	漢 文 斗 文 法	"	"	"
金	政 治 學	"	速 記 術	文 學
土	經 濟 學	"	速 記 術	"

年度別卒業生數

回数	年月日	卒業生數	備 考
1	1952. 11.	37	
2	1954. 3.	21	學年度조정으로인함
3	1955. 3.	23	
4	1956. 3.	30	
5	1957. 3.	31	
6	1958. 3.	32	
7	1959. 3.	38	
8	1960. 3.	36	
9	1961. 3.	40	
10	1961. 8.	25	5.16혁명으로 단축교육
計		313	

國會速記士養成所の 運營現況

1. 設 立 1968. 2. 3

2. 設立目的: 現在 國內 速記界의 實情은 速記士의 數가 實需要에 不足하며 長期間의 修鍊이 必要한 高度의 技術임에 그 養成輩出이 至難하고 速記士의 處遇面에서 優待치 못하고 있는 關係로 그 技術을 習得하고자 하는 希望者가 稀少할뿐 아니라 養成機關도 運營難으로 因하여 자취를 감추고 現在 1個所만이 出血을 하면서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質的으로 優秀하고 數的으로 많은 速記士를 必要로 하는 國會마저 그 實需要人員을 適期에 充當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앞으로 速記需要處가 增加될 것을 豫想할때 速記士의 養成은 時急한 問題인바 이를 民間養成機關에만 依存할 수 없으므로 過去와 같이 國會事務處內에 速記士養成機構을 設立運營하여 優秀한 速記能力者를 養成 輩出되자 함.

3. 機 構

所 長	河 在 鳩	(議事局長)
副 所 長	劉 龍 珪	(速記課長)
教務主任	金 鍾 基	(速記1係長)
速記學講師	安 仁 榮	(" 3 ")
"	李 東 一	(" 4 ")
"	金 永 善	(" 5 ")
"	金 敬 萬	(速記主事)
"	鄭 宇 鎔	(")
"	李 龍 洙	(")
國語講師	鄭 源 道	(速記2係長)
法制大意講師	禹 在 忠	(圖書館事務官)
經濟大意講師	尹 永 鎬	(委員課事務官)
庶 務	吳 壽 東	

4. 第1回生募集狀況(1968年度)

試 驗 日	1968. 3. 3.
應 試 者	680人.
1次試驗合格者	219人.
最終合格者	60. (男42・女18)

5. 第1回生修了狀況

修 了 式	1969. 2. 15.
修 了 生	28人(男18・女10).
優 等 生	7人.

6. 第2回生募集狀況(1969年度).

試 驗 日	1969. 2. 23.
應 試 者	648人.
1次試驗合格者	328人.
最終合格者	100人(男67・女33). (學級當定員 30人을 50人으로 增員)

다음 專門養成機關이 아닌 他機關에서의 養成實態를 보면 過去에 몇몇 大學과 實業高等學校에서 特講 또는 特別活動으로 速記를 가르치고 있었으나 大部分 그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中斷했으며 現在 首都女子 師範大學과 서울 市立成人學校 速記科 두곳에서만 教授中에 있고 以外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速記大衆化事業의 一環策으로 夏季와 冬季放學을 통하여 年2回의 無料公開講座를 하고 있을 뿐이다.

速記의 大衆化를 위해서 이러한 非專門的 速記士 養成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있으나 大部分의 경우 1週日에 1·2時間정도로 몇個月만 배우면 職業速記士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너무 安易하게 받아들이는 認識不足으로 말미암아 速記의 大衆化는 實效를 거두기 어려운 處地에 있다.

以上 速記士 養成의 實態를 대충 훑어 보았으나 特히 職業速記士의 養成이란 習得過程上的 어려움으로 인하여 養成生의 半數以上이 中途脫落하고 職業速記士로서 就業可能한 速記能力者의 輩出度는 養成期間 1年을 基準으로 했을때 平均 10%程度에 不過했던 것이 그동안의 實績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의 우리 國內養成實態로 볼 때 職業速記士들의 自然難職도 充當하기 힘든 形편인데 다가 앞으로 速記의 普及으로 그 認識度가 높아짐에 따라 有能한 速記士의 需要는 必然的으로 增加 될것이며 더욱이 地方自治制가 實施되어 地方議會가 생기고 法廷立會書記의 速記士代替가 實現되는 경우 現狀態로 보아서는 長期間 供給不足의 現象이 일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勿論 經濟學에서 말하는 需要와 供給의 原則은 여기에도 適用되는 것이므로 供給不足이 생길때 民間養成機關이 活氣를 띠게 되겠지만 事實上 剩餘나 留保(他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速記士)가 없으면서도 需要의 開發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現今의 速記界지만 그에 못지않게 養成에 대해서도 並行하여 充分한 配慮가 要請되고 있다.

나. 外國速記士養成의 實態

外國의 速記士 養成實態에 대해서는 事實上 世界各國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기 힘든 處地에 있다.

다만 이웃 日本의 實態에 대해서는 우리와 여러가지로 가까운 處地에 있고 最近에 그 實態를 視察하고 온바도 있어 比較的 具體的인 實態를 把握하고 있는 셈이다.

① 日本 速記士 養成의 實態

日本은 速記法이 導入된지 80餘年(1882年, 田鎖網紀에 의하여 速記術考案)이라는 긴 歷史를 가지고 있거니와 그 養成面에 있어서도 1882年 10月 28日 田鎖網紀에 의한 「傍聽記錄法」 第1回 速記講習會를 嚆矢로 하여 數많은 速記法들이 創案되면서 同時에 速記士 養成에 힘써 왔으며 衆議院과 參議院, 兩院에서 養成所를 設立 國費養成을 시작하기도 벌써 50餘年(1918年設立)이 나 된다.

대충 그現況을 살펴보면 專屬速記士 養成機關을 가지고 있는 機關만 해도 衆議院과 參議院 그리고 裁判所가 있는데 兩院의 速記士養成所에서는 1,200餘名의 卒業生을 輩出하였고 그 卒業生들의 一部가 國會速記士로 採用되고 그 外의 速記士는 地方議會나 新聞通信社等에 就職을 함으로써 日本 速記界 全般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이 두 養成機關에 대한 施設과 運營實態를 보면

※ 衆議院速記士養成所

施設 教室數 6

그外, 事務室, 會議室, 圖書室, 印刷室, 控室等이 있고 運動場 約 2,600坪

生徒數 (1967年 9月現在)

1學年 10名(男5·女5)

2學年 14名(男5·女9)

研修科 5名(女5)

生徒手當

1學年 3,000圓

2學年 4,000圓

研究科 8,000圓

職員數

(對未詳資 未詳資) 詳載

所長 1, 副所長 1, 教授 4, 講師 4, 事務職 4, (參議院 養成所도 大同小異함)

以上에서 보는바와같이 學生 總計 29名에 지나지리 만큼 화려한 施設을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生徒手當까지 支給하고있으며 履修學科目を 살펴보면 經濟, 漢文, 法律, 英語, 佛語, 法律用語, 實務知識, 樣式例, 轉記(書取), 文字(漢語), 漢語(地名), 表記法(現代日本文學史, 文章), 速記史, 社會, 新聞, 國語, 速記學, 時事用語, 體操.

速記士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教養科目を 거의 網羅하고 있다.

이렇게 화려한 施設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平均 400餘名の 志願者中에서 15名程度의 養成生을 選拔하는 그야말로 精兵主義를 擇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裁判所 速記官의 養成實態를 보면 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에서 모든 研修生에게 速記打字法을 익히게 하여 卒業後에는 全員 裁判所 速記書記官으로 採用 裁判所執務法에 의하여 모든 裁判記錄은 速記打字를 利用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民間養成機關의 實態를 살펴보면 東京에 早稻田速記學校와 中根速記學校, 大阪에 山根速記學校, 神戶에 神戶速記學校, 弘田에 川村速記學校 등이 있으며 이들은 大概 本科 1年과 研究科 1年の 過程을 두고있다.

이中에서도 中根速記法式은 中根速記協會를 組織하여 全國에 支部를 두고 特別히 一般學生에 대한 普及에 努力 文部省의 後援으로 全國高等學校 中根式 速記競技大會를 열고 있다. 또한 가장 큰 規模를 갖춘 早稻田速記法式에서는 早稻田速記普及協會를 組織 「早稻田速記講座」를 刊行 通信教育에 確固한 基盤을 가지고 있다.

最近에는 「라디오」講座까지 하고 있으며 早稻田速記의 通信講義受講志願者가 年間 100萬에 達하고 이中에서 4~50萬名이 계속 受講하고 있다.

日本에서 代表的인 民間速記養成機關인 早稻田速記學校의 運營實態는 다음과 같다.

施設 (規模는 資料未詳)

項目稱

② 歐美諸國의 養成實態

歐羅巴諸國의 養成實態는 各國別로 差異는 있겠으나 大部分의 나라에서 專門養成機關外에 實業高校(商業)의 必須科目으로 採擇, 教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國의 速記는 高度로 發達되어 있어 中學校는 公私立을 莫論하고 一般中學校課程 外에 2年間に 걸쳐 速記, 打字, 商業簿記等의 事務訓練을 받게 되는데 이 2年間の 訓練을 받고나면 小規模의 事務處理를 할수 있다. 그러나 좀더 많은 報酬를 받기 爲해서 大規模 會社에 就職하면 速記士로서는 1分間に 150單語 乃至 300單語를 速記할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事業에 關한 300通의 通信을 處理할수 있어야 한다. 特히 專門速記方面의 일을 하려면 速記에 關한 訓練을 받기前에 最少 2年間の 專門教育을 받아야 하는데 速記士는 無識해서는 待遇를 못받는 形便이다. 正規中學校에서 速記術과 打字術을 가르치는 外에 速記士와 打字員을 養成하는 民間專門學校가 많이 있다.

그런데 專門教育課程을 보면 다음과 같이 4期로 나누어서 訓練시키고있다

第1期

速記: 理論과 初步的 速度練習.

打字: 基礎와 基本的 速度練習.

一般: 商業英語 句讀法 商業通信.

第2期.

速記: 速度練習 翻文.

打字: 1分間 50~60單語 打字練習.

一般: 簿記 商法.

第3期.

速記: 單語에 대한 速度練習(高速度).

打字: 實地練習(1分間 70單語).

第4期.

實際事務訓練(3~5週의 秘書役訓練).

內容: 書類分類法, 通信, 電話交換, 接待大意의 맡아쓰기, 事務用 機械,

器具使用(計算機, 謄寫機, 簿記具, 郵便用器具, 日付器 等)

이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 速記術이란 技術이 아니라 완전히 事務의 必須條件이 되고있는 것이다.

다. 速記士養成上の 問題點

速記士(특히 專門職業速記)란 高度의 精神力과 廣範圍한 知識 그리고 最少限 1年以上의 高된 修練이 없이는 안되는 職業이다. 그러므로 그 養成上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水準문제

養成生의 水準문제는 職業速記士의 養成인 경우 깊은 專門知識은 없더라도 最少限 모든 分野에 걸친 發言者들의 發言을 理解할수 있을만한 知的 水準은 갖추어야 한다.

速記士가 具備해야할 知識에 對해서는 어려운 熟達過程을 克服하여 速記術自體에 있어서의 能力은 具備하였더라도 實務面에 있어서 實際로 社會의 要求에 卽應할수 있는 名實相符한 專門速記士가 되기 爲해서는 發言에 있어서 千態萬象의 語套와 地方地方의 方言 그리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諸分野의 專門用語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孔子, 孟子, 佛經과 「바이블」, 「그리스」의 神話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科學的인 分野에서 化學物質名 乃至 各種 機器名 또는 微生物名에서부터 物理的 學術名稱에 이르기까지 記錄해야 되고 一般人으로서는 잘 聽取되지 않는 遠距離에서의 發言도 날날이 發言者의 表情을 읽어 가면서라도 그 發言의 內容을 迅速히 「캐치」하여 記錄의 使命을 遺漏없이 遂行할 수 있는 能力以上の 能力이 專門速記士에게는 具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多角的인 常識이 具備되고 어려운 速記業務의 圓熟한 遂行을 위해서는 專門速記士는 長期間의 經驗과 모든 分野에 걸친 豐富한 常識과 多方面의 專門的인 知識의 陶冶가 있어야 함은 必須的인 事이다. 왜냐하면 發言者를 選擇한다거나 發言者의 發言內容을 自己水準에 맞추어 記錄할수는 없는만큼 發言者의 發言內容을 理解하지 못했을 때에는 記

錄自體가 不可能한 뿐만 아니라 記錄했다 하더라도 速記한 內容을 完全無缺하게 翻讀 또는 翻文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養成生의 知的水準은 大卒以上の 學歷을 갖는 것이 理想的이겠으나 現實的으로는 大部分이 高卒程度의 學歷이다. 그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原因은 速記士의 適性문제하고 깊은 關係가 있다.

② 適性문제

어떤 職에도 그러 하겠지만 速記士에게 具備되어야 할 要素는 先天的인 素質 卽 適性인 것이다.

速記職에 있어서 先天的 素質이 要請되는 理由는 速記文字의 構成이 點의 位置와 線의 長, 短, 方向, 曲, 直의 區別, 太, 細線의 區別에 이르기까지 纖細한 符號文字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速記術의 熟達過程은 다른 어떤 學術과 같이 公式이나 法則의 理解 習得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身體的條件으로 듣고, 보고, 써야 하기 때문에 視覺, 聽覺, 그리고 손이 온전해야 하고, 손의 關節과 筋肉이 柔軟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記憶力의 優秀하고 精神集中力이 強하고 1年以上의 高된 修練過程에서 脫落하지 않기 위해서는 不斷한 努力과 남다른 忍耐力이 있어야 하며 침착하고 纖細한 性品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理想論으로 말하면 科學的인 適性檢査에 의하여 養成生을 募集함으로써 養成上에 있어서 보다 效率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適性문제로 考慮하여야 할 것은 男女와 年齡의 문제다.

우선 男女의 適性문제를 놓고 볼 때 이 職業의 性格上 비교적 精神集中力이 強하고 섬세한 感覺을 가지고 있으며 손의 關節과 筋肉이 부드러운 女性에게 適合한 職業인 것처럼 보이나 그동안 養成上의 體驗에 의하면 單純한 初步段階에 있어서는 女性이 男性보다 優位하나 複雜한 高等略法의 應用을 요하는 高速度 段階에 이르러면 一般的으로 男性에 뒤떨어지는 現象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短期過程에 의한 非職業一般速記(특히 秘書速記)가 女性에게는 보다 適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에 養成生의 年齡문제인데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速記士라는 職業이

高度의 記憶力과 精神集中力, 그리고 손의 關節 筋肉의 柔軟性을 必要로하는 職業인 만큼 記憶力과 集中力이 가장 왕성하다고 볼수 있는 20歲前後의 年齡層이 가장 適合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러나 그 反面에 高校를 갓 卒業한 年齡層의 사람들에게 知識不足이라는 缺陷이 있다. 이는 앞서 言及한 養成生의 水準문제와 서로 相衝되면서 密接한 關係가 있는바 이것은 다음 「養成期間의 문제」에서 좀더 具體的으로 言及하기로 한다.

이외에 여기서 特記할것은 適性面에 있어서도 現在 國會事務處에 勤務하고 있는 89名의 速記士中 30名을 對象으로 調査해본 結果(1969年 9月 현재) 平均 IQ는 129.2로서 優秀한 IQ所有者들이라는 事實이 發見되었다.

上述한 諸般事實을 미루어 보아 專門職業速記能力의 具備란 얼마나 어렵고 先天的인 素質이 要求되는가 하는것을 充分히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養成期間의 문제

速記士의 養成期間은 어느 程度가 適合한가 하는 문제는 그 基準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00名의 養成生이 1年이라는 期間동안 速記術을 習得해서 完全한 速記士를 4~5名 輩出시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適正한 期間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또 그 期間을 2年으로 했을 때 과연 몇명이나 더 輩出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提起되고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速記의 大衆化가 이루어지지 못 하므로 해서 非職業一般速記에 대해서는 一部 私設學院에서 4個月의 短期養成을 하고 있었으나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우리가 速記의 大衆化를 必然的으로 實現해야 할 課題로 보고있는 以上 이 養成期間의 문제도 두가지로 區分해서 正規「코스」(職業專門速記), 短期「코스」(非職業一般速記)로 나누어 考察해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7. 正規「코스」

이 專門的인 職業速記士의 養成은 과거 20餘年의 養成經驗을 통해서 볼 때 2年過程이 理想的이라는 判斷이 선다.

그것은 앞서 「適性문제」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年齡的으로는 高卒直後인

20歲前後가 適合하다고 보나 速記士로서의 갖추어야 할 資質의 不足 때문에 養成上의 效率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인 만큼(우리나라 養成機關에서는 最高 1年) 履修期間을 2年으로 하여 不足한 資質과 敎養은 養成期間에 補完시켜야 할 必要를 切感하고 있다.

이웃나라 日本의 例만 보더라도 國費養成機關인 參議院과 衆議院의 「速記士養成所」에서는 養成期間을 2年으로 하여 速記術과 더불어 徹底한 敎養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參照：外國速記士養成實態 日本編)

나. 短期「코스」

이 短期「코스」는 앞으로 速記의 大衆化가 必然的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나의 문제點 乃至는 研究課題로 提示한다. 따라서 方法和 期間문제等 신중하고도 충분한 研究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4個月 乃至 6個月동안의 敎習으로 특히 實業敎育의 一環으로 特別活動時間을 活用하면 좋지않을까 생각된다.

④ 其他의 문제

以上 養成上의 重要한 문제點을 대충 分析하였으나 그 외에도 許多한 問題點들이 있다. 가령 얼핏보기에는 養成上의 問題하고는 直接 關聯이 없는듯 하면서도 養成者側이나 養成生들의 意慾에 絶對적인 作用을 하는 速記士의 需要문제다. ① 가득이나 習得하기가 어려워 養成生의 履修率이 平均 10%(職業速記士로서의 輩出率) 未滿인 處地에 社會의 認識不足 乃至는 需要處의 經濟的 事情等으로 需要가 供給을 따르지 못한 때 養成生은 意慾을 잃어 中途 脫落이 많고 이는 連鎖的으로 養成所가 門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別章에서 좀더 具體的으로 論述을 하겠으나 需要의 不足은 供給의 中斷을 招來케 했고 그 結果는 供給不足이라는 逆現象을 낳게 되어 緊迫한 供給不足(議會速記士)을 解消키 爲해 國費養成을 할 수 밖에 없는 處地에 이르렀다.

第2章 速記의 活用價値

第1節 記錄과 歷史

人間의 思想은 言語에 依하여 表現되므로 言語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또한 言語는 文字와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다. 人間이 自己意思의 表現인 言語를 文字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하여 有形의 符號를 만들어 낸 것이 文字로서 이 文字는 人間相互의 思想을 서로 交換하고 保存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없어서는 안되는 不可缺한 手段인 것이다.

우리 人間이 文字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文字의 媒介에 의하여 지난날의 文化를 繼承, 研究, 發展시키며 또한 過去의 文化 위에 建設된 現代의 文化를 文字에 의하여 未來의 後孫들에게 傳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이미 序說에서 言及한 바이다.

우리가 文字를 만들어 내기 以前 先史時代를 研究함에 있어서의 唯一한 方法은 그 時代의 遺跡, 遺物로서 우리는 이 遺跡, 遺物을 통하여 단지 그려냈으리라고 推定할 따름이며 人類가 文字를 만들어 낸 以後에 이르러므로 前述한 遺跡, 遺物과 그리고 文字에 의하여 記錄된 文獻을 통하여 研究하고 繼承, 發展시키는 것으로, 史料로서는 이들 遺跡, 遺物과 文獻이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史料로서의 文獻 또한 過去의 歷史의 事實을 論理的 修辭學的으로 그 大要만을 文章化하여 다듬은 것으로 여기에는 歷史家의 主觀이 介在될 수 있을 것이고 歷史的 事實의 經緯, 情況等이 낱낱이 記錄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그 具體의 內容을 상세히 把握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過去의 歷史는 主로 君主와 貴族이 다스렸던 王權 政治의 一部面인

을 다루어 왔으나 近世에 이르러서는 歷史에서 다루어지는 幅이 넓어져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多方面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政治面에서도 過去와 달리 近世의 國家들은 民主政體의 方式을 採擇하여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機關을 政治의 產室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議會의 政治活動 過程이나 政治事件을 다루게 되는 議政史라든지, 學術的 部面이나 思想, 藝術, 宗教等 精神文化를 다루는 文化史라든지 人間의 經濟活動을 中心으로 한 經濟史等 多方面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文獻 더욱이 言語記錄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人間이 一般文字로는 아무리 빨리 쓴다고 하여도 人間의 言語速度를 凌駕하여 한 마디 한 句節도 빠짐없이 記錄할 수 있는 方途란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人間의 慾求는 人間의 言語速度에 一致하여 記錄할 수 있는 特殊符號文字의 考案을 서두르게 하였으며 또한 人間의 智慧가 이런 時代的 要求에 應하여 만들어 낸 것이 速記文字라는 것도 이미 前述한바 있다.

이러한 速記文字를 人間이 考案함으로써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方面의 活動過程이나 事件들을 있는 事實 그대로, 正確하게 發言者의 發言內容을 그자리에서 한 마디 한 句節도 빠짐이 없이 記錄하여 文字化 할 수 있게 되었으니, 現在로부터 未來에 남기게 될 各方面의 史料가 되는 모든 言語의 記錄을 速記方式에 의하여 記錄하고 文字化하여 後世에 傳함으로써 後世 사람들이 當時의 狀況을 생생하고 正確하게 認識하고 研究하게 될 것이다.

實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記錄할 수 있는 特殊符號文字로 構成된 速記方式에 의하여 作成된 言語의 記錄이야말로 記錄者의 主觀이 介在되지 않는 正確한 史料로서 名實共히 「산 歷史」라고 하겠다.

第2節 政治와 速記

옛날의 政治란 國王을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王政으로서 國王이 卽 國家의 王命의 곧 法律이라는 王에 의한, 王을 위한, 王의 政治였던 것이다.

當時에는 王命의 出納을 擔當하는 承政院(李朝)이 있어 承政院(名稱의 變更에 따라 宮內部, 秘書監, 秘書院, 奎章閣으로 改稱)의 承旨가 王命이 내리면 王의 口述을 記錄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記錄을 承政院日記(名稱의 變更에 따라 宮內部日記, 秘書監日記, 秘書院日記, 奎章閣日記로 改稱)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記錄들은 當時의 政體로 미루어 內容이나 筆法에 있어 論議의 餘地가 많다고 하겠다.

高麗 仁宗時의 金富弼이 王命을 받들어 三國史記를 撰進하였으나 內容에 있어서는 中國正史流의 體裁를 본받아 事大主義에 사로잡힌 歪曲한 筆法이 많고 普覺國尊 一然이 私私로이 編撰한 三國遺事 또한 形式의 蕪雜함과 引用考證이 拙劣하다는 學說도 있다.

또한 李朝 燕山君때의 史官 金駟孫이 世祖篡位의 不義 등을 史草에 記錄한 것으로 因緣하여 戊午史禍를 불러 일으킨 史實은 有名하다. (註 李丙燕著 「韓國史大觀」參考). 그러나 이들은 모두 史料로서의 價値性을 지닌 史書임에는 틀림없으나 後述하고자 하는 言語의 記錄으로서의 生생한 史料로서는 未洽하지 않을까 한다.

오늘날의 民主主義下에서는 모든 政治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비롯되며 모든 政治活動 또한 國民의 代表가 모인 議會에서 展開된다.

그러므로 現在의 民主政治 制度下에서 議會와 速記와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그 根據로는 生생한 議政史料로서의 記錄인 國會會議錄을 作成함에 있어서 國會法 第64條 第2項에 「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法에 의하여 이를 速記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議로 이를 省略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여 國會에서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會議錄을 作成하는 데는 速記法에 의하여 速記함을 原則으로 하되 이를 省略할 때에는 委員會의 決議를 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同法 第108條 第2項에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의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여 本會議의 會議錄은 如何한 경우에도 速記法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國會會議錄이 왜 必要한 것인가? 그 가장 重要한 理由는 생

생한 議政史料로서 文獻의 구실을 하는 同時에 會議에 관한 唯一한 公的記
錄이며 또 會議에 관한 論爭이 있을 때에는 有力한 證據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委員會의 경우는 當該委員會의 決議가 없는 限, 또한 本會議의 경
우에는 如何한 경우라도 速記士가 없을 때에는 實際上 會議을 開催할 수 없
는 것이며 또한 議員은 自己가 그 會議에 參席하지 못했더라도 各 常任委員
會에서의 豫備審查過程(審查經緯 및 立法經緯)을 當該委員會의 會議錄을 通
하여 소상하게 알 수 있음으로써 本會議에서의 表決에 自己의 意思를 表示
할 수 있으며 그리고 速記法에 의하여 作成된 이 會議錄을 議事進行의 先例
資料로 삼을 수도 있고 또한 發言者間의 紛糾의 실마리를 이 會議錄을 通하
여 밝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國民의 政治的 代表機關인 國會의 모든 議事活動 卽, 會議
過程에 있어서 記錄이 없이는 크나 큰 支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外國에 있어서의 議會速記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다.

日本은 明治23年(1890年) 帝國議會의 成立과 同時에 速記가 採擇되었으며
2次大戰 後에는 그 需要가 急增하여 地方議會를 비롯한 모든 政治分野에는
速記를 活用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美國의 議會에 있어서도 1776年 獨立以來 1848年까지는 議員의 討論內容
의 拔萃文 또는 演說原稿, 特別히 報告한 演說文 全文만을 收錄하였으나,
1848年에 이르러 上院에서 그리고 1849년에는 下院에서 各各 討論과 議事進
行에 대한 口述體速記를 위한 契約을 締結하였고 1873年에 와서 現行의 方
法을 採擇하여 議事錄의 公式的인 刊行을 個人과의 契約으로부터 政府의 印
刷局 直營으로 轉換시켰던 것이다.

이 制度에 의하여 兩院은 各各 5名의 速記士團을 採用하여 이들로 하여
금 議事錄作成을 擔當케 하고 있는 것이다.

第3節 言論과 速記

現代는 『메스콤』의 時代로 『메스·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大衆傳達 卽
一定한 對象을 사람으로부터 많은 數의 받는 사람에게 똑같은 內容을 同時

에 보내는 것으로 「텍스콧」이 占하는 位置는 極히 重要하고 現代人은 그 影響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매스·미디어」(媒體)에는 記錄物(出版物·新聞)이나 映畫, 「레디오」, 「텔레비전」 같은 것이 있다. 前에는 記錄物이 「매스·미디어」로 唯一한 것이었으나 映畫, 「레디오」가 나오고 또 現代에는 「텔레비전」이 가장 強力한 「미디어」로 登場하였다.

「텔레비전」은 귀와 입을 同時に 刺戟하는 일로 해서 아직까지 다른 「미디어」가 갖지 못한 強力한 힘을 發揮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新舊 各「미디어」는 서로 競爭하나 分業 補完하고 서로 進歩하는 特性이 있다. 即 말로 하는 얘기와 글로 쓴 얘기와는 다른 效果가 있기 때문에 強하고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생겨도 남은 「미디어」는 없어지지 않고 各己 自己가 갖고있는 特性을 發揮하여 成長한다 할 것이다.

言論은 讀者에게 情報, 意見, 感觸等을 傳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言論의 機能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뉴스의 傳達과 論說인 것으로 이는 迅速 正確한 報道와 公正한 批判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迅速 正確을 motto로 삼는 言論이 아직까지 一部分에서 新聞製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方法인 速記術에 의한 記事를 作成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人士의 記者會見記事나 어떤 事件의 記事가 新聞에 따라서 內容이 詳細하게 報道되거나 簡略하게 報道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事例가 생기는 理由는 取材하는 記者들의 取材方法이 速記術에 依하여 取材하지 않고 略記方法에 依하여 取材하기 때문에 發言者의 正確한 發言內容을 記錄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現象인 것이다.

또한 「인터뷰」나 聲明發表後에 自己가 한 發言을 事後에 어떤 事情으로 因하여 發言을 否認하는 경우도 往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發言 內容 全文을 速記하였다면 그 速記한 記錄이 有力한 證據力을 지닐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地方 支局에서 本社로 보내는 記事와 海外特派員이나 市內에서 取材 活動中인 記者等이 記事를 電話로 送稿할 경우에 있어서 本社의 受信者가 速記를 하지 않고 一般文字로 記事內容을 받아 쓰는데는 長時間이 所要된다. 이것은 時間의 浪費일 뿐 아니라 莫大한 電話料의 濫費를 招來하며 한편으로 電話線을 長時間 獨占함으로써 다른 電話利用者들에게도 커다란 支障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業務에 速記士를 活用한다면 時間을 節約하여 迅速을 圖謀할 뿐 아니라 經費도 節約됨으로써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日本 言論界에서의 速記活用狀態를 살펴 보면 이미 1910年代에 新聞社의 電話速記가 시작 되었으며 그後 新聞 通信系統에서의 速記活用範圍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그 盛需期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現在 本社 및 全國 支社 支局을 包含하여 150餘名의 速記士를 採用하고 있는 共同通信을 筆頭로 하여 朝日新聞, 每日新聞, 讀賣新聞等은 本社에만 20~30餘名의 速記士가 電話速記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對談이나 座談會에 있어서 速記術을 利用하지 않고 一般文字만으로 記錄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 亦是 發言速度에 미치지 못하는 關係로 發言者의 意圖를 全部 記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速記術을 利用하면 即席에서 迅速 正確하게 記錄할 수 있는 것이다.

第4節 會議와 速記

會議라 함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議論하는 것을 말한다.

民主社會에서는 團體의 意思를 決定하는 方法으로서 會議의 形式을 取하게 되어 그에 따라 會議의 記錄도 또한 重要한 意義를 지니게 되었다.

會議의 種類에 있어서는 크게는 國會의 會議, 國務會議을 비롯하여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各種 會議 또한 各 公私企業體의 株主總會, 理事會, 政黨社會團體의 代議員會, 各種 大會, 講演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이들 會議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事案에 대하여 議論하는 모임이니 만큼 이 모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여서 議論한 經過가 있을 것이며, 이 會議의 顛末에 대하여는 記錄에 남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흔히 會議의 記錄을 會議錄, 議事錄, 速記錄(議事速記錄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서로 엇갈려 使用되고 있다. 速記錄은 速記한 記錄 卽 會議의 經過를 빠짐없이 發言된 대로 記錄한 것으로 速記發明 以來 나온 말이다. 議事錄은 議事의 經過나 結果를 要約하여 記錄한 것으로 이는 普通의 書記가 起草하는 「눈에 의한 記錄」이며 速記錄은 速記士에 의한 「귀에 의한 記錄」이라고 말하여 지고 있다.

會議의 記錄으로서는 議事速記錄보다 議事錄쪽이 公式的인 것이며 證據力도 優先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議長의 署名도 議事錄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議院內의 事務的인 것으로 公刊되는 것이 아니고 公刊되는 것은 速記錄이었다.

公刊되는 速記錄은 「速記法에 의해서」 正確하게 發言內容을 記錄한 것이기 때문에 一般의 關心을 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議事錄과 速記錄으로 兩分되어 오다가 速記錄에 다 若干의 議事錄의 要素를 附加하면 會議記錄으로서 보다 完全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認識되어 速記法에 의하여 速記한 部分과 이제까지의 議事錄의 記載事項을 합쳐 「會議錄」이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議事錄과 速記錄은 없어지고 會議의 記錄으로는 會議錄만이 있게 된 것이 國會에 있어서의 會議錄의 名稱의 來歷이다.

그러나 各種 會議에 있어서 目的, 內容, 會議體에 따라 會議錄, 議事錄, 速記錄等 名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劃一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各種 會議에 있어서 速記는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니 人間의 一般文字로서 他人의 發言을 記錄하는 데 있어서는 人間의 記錄能力에는 限界가 있어 빨리 記錄한다고 하더라도 發言速度와 一致하여 記錄해 낼 道理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速記術에 의하여 會議錄이 作成되지 않은 경우 議決의 結果에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議決當時의 狀況, 經過를 全히 會議錄

을 통하여 알 道理가 없으며 會議經過에 關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가지 困難한 事態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即 公共團體나 公私企業體의 會議錄을 速記術에 의하여 作成하면 當該 團體 內部에서나 또는 關係機關 相互間에 會議內容에 爭訟이 있는 경우 裁判 過程에서 이 會議錄이 有力한 證據가 될 수 있으나 議事結果에 重點을 둔 會議錄만 가지고서는 有力한 證據物로서 採擇할 수가 없는 것임은 두말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當該會議에 參席하지 못한 利害當事者나 直接 間接으로 關聯이 있는 人士들에게 그 會議의 經過와 結果를 周知시키는 데도 會議錄은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며 또한 記錄으로 永久히 保存함으로써 後代의 사람들로 하여금 過去를 昭詳히 觀察할 수 있는 좋은 資料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各種 會議에 있어서 速記術에 依한 會議錄作成의 必要성과 重要性을 發見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現狀況을 살피 볼 때 各種會議에 있어서 速記術에 依하여 會議錄을 作成하고 있는 機關은 極少數에 不過한 實情인 것이다.

그런데 先進外國의 實態를 보면 各種 會議에 있어서 會議錄作成事務를 依賴받아서 이들 速記術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여 주는 速記株式會社 또는 速記事務所가 많으며 심지어 速記術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고 그 會議錄을 印刷하여 納品하고 있는 會社도 있다.

이와 같이 文明의 利器인 速記術을 最大로 活用함으로써 보다 充實하고 有益한 社會活動體制의 構築에 泊車를 加하게 될 것이다.

第5節 裁判과 速記

裁判이란 個人 또는 團體 雙方間의 利害關係의 對立에서 생기는 紛爭等の 最終的 調停 또는 被疑者에 對한 刑事法의 適用等 民主社會에서 個人에 대한 自由의 限界를 마무리하는 國家權力의 行使이다.

그래서 이 裁判에 있어서는 社會通念에 立脚한 公正성과 妥當성을 지켜야 되는바 이는 그래야만 正義와 秩序가 갖추어진 社會가 이룩되겠기 때문이다.

普通 妥當性과 正大함을 지닌 判決이란 各種調書와 公判調書, 그리고 그 證據物에 의하여 나타나며 따라서 이것 亦是 正確하게 記錄 그리고 採擇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各種調書와 公判調書作成은 各 個人의 權利擁護 및 法的 公信力 그리고 雙方間의 利害에 미치는 影響力에 비추어 正確하고 迅速하게 作成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그러하여 實質的으로 各種調書作成權限을 가진 書記는 裁判官의 判決에 至大한 도움을 주는 役割을 擔當한다고 보아야겠다. 그들이 作成한 調書는 被疑者 乃至 判決이 끝난 當事者들을 法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拘束할 만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 調書는 上訴審에 가서도 特히 公判調書는 判決文과 함께 上級法院 擔當判事의 判決에 커다란 힘을 미친다. 더구나 法律審에 있어서야 贅言을 不要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重要的 調書를 作成하는 書記는 어떠한 資質을 갖추어야 하겠는가?

많은 法律을 熟讀해야 겠고 各種調書作成의 技倆이 있어야겠다.

이에 더욱 重要的 點은 道德的 良心이 必要하겠고 證據價値가 있는 많은 陳述을 놓치지 말고 記錄해야 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調書作成의 要領이 濫용하고, 풍부한 法律知識을 가진다 해도 裁判過程에서 惹起되는 各種陳述을 迅速히 따라 쓸 能力이 없다면 이 事實이 그들의 能力밖의 일 卽 그들의 能力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서 書記로서의 所任完遂에 關係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 事務를 擔當한 書記는 法律에 立脚하여 證據力 있는 陳述은 全部 調書에 記錄하여야 그들의 任務을 遂行했다고 본다. 따라서 證據力 있는 陳述을 書記가 따라 쓸 能力이 없어서 公判調書에 記載을 못한다면 困難할 것이며 이런 경우 速記能力이 있다면 그 調書를 詳細하고도 明確하게 記錄하여 裁判過程에서 參考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書記는 公判廷에서 進行되는 各種 陳述을 記錄하여야 겠는데 우리가 普通 常用하는 文字 卽 한글과 漢文으로서는 陳述의 約 5分之 1

정도밖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좀 더 統計的인 根據에 의해서 記述하면 우리 말에 의한 人間의 陳述速度는 每分間 200音字~350音字 程度가 되며 이에 比하여 우리 한글에 의한 筆記란 分當 50音字~70音字 程度가 고작인 것이다.

그러면 速記로서는 어떤가. 速記는 分當 250音字~350音字 程度의 記錄能力을 1年 以上 研修한 者라면 發揮할 수가 있다.

이로서 우리 한글에 의한 筆記로서는 公判調書作成이 거의 어렵게 되었고 速記術의 導入이 不可避하다는 點이 들어났다.

以上과 같은 事案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자.

裁判에 있어서 速記의 使用은 B.C 60年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로마」元老院의 各部에서 「카티린」(Catiline)의 運命에 關한 投票(裁判權行使로서 이때는 3權이 元老院에 集中한 單一體制였음)를 行할 때 「시세로」(Cicero)는 「노타리」(notarii, 速記士)를 配置하여 「시저」(Caesar)와 「케이토」(Cato)의 發言(辯論)을 記錄케 하였다는 事實이 「푸르타르」(Plutarch) 英雄傳, 「케이토」의 生涯」속에 나타나 있으며 또한 이는 歷史家 「살루스트」(Sallust)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시저」와 「케이토」의 發言敎本, 第51章~第53章 까지에 걸쳐 上記內容이 적혀 있다.

그리고 近世에 내려와서는 英國이 1740年 最初로 公式的인 法院速記士를 任命하였는데 여기에 한가지 英國이 速記를 公式的으로 認定하게 된 重要한 例를 附記하고자 한다.

1789年 當時 英國下院이 「워렌·하스팅」(Warren Hasting)을 訊問하는 途中 發言臺에 速記士를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버크」(Burke)氏가 行한 陳述을 正確히 다시 朗讀토록 한 結果에 의하여 「버크」氏는 殺人嫌疑를 받고 있는 「엘리자·임페이」(Elijah Impey) 卿을 起訴하는데 있어 過度한 訴訟指示를 하였다는 事實이 밝혀졌다는 것인바 이는 速記가 正確한 判決에 도움을 준 좋은 事例라고 볼 수 있다.

美國 또한 現今 各級 法院에서 速記와 teletype 로서 調書가 作成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러시아」는 1840年頃부터 「가벨스·버거」式 速記의 應用法式이 公式的으로 最高法院 其他 다른 法院에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關接한 日本도 法院速記士에 의하여 公判調書가 作成되고 있는바 그 現況을 살펴보면 2次大戰 終戰前까지 裁判記錄을 速記法에 의하여 作成코자 한 努力이 失敗하였으나 1945年 終戰과 더불어 美軍政當局의 指示로 速「타이프」라는 機械速記方式을 採用하여 裁判記錄을 擔當하게 되어 東京地方裁判所에만 150餘名 그리고 各 地方裁判所 高等裁判所등에도 많은 速記士가 從事하고 있으며 法院速記士의 養成을 위하여 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를 두고 있다. 이곳의 速記研修生은 卒業後 모두 裁判所 速記官으로 採用되어 이들 速記官은 모두 研修所의 卒業生만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것은 裁判速記의 執務方式이 速記打字의 使用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重要的 理由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現實은 어떤가?

法院에서 公判調書는 速記術을 習得치 않은 法院書記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는 것이며 다만 現行法上으로 民事訴訟法 第148條 第1項, 刑事訴訟法 第56條의 2 第1項, 軍法會議法 第90條에 「當事者 또는 法院이 必要할 때에는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케 하여 調書의 一部로 한다」는 規定이 있어 速記의 必要性을 認定, 間接的으로 法院에 速記士의 公式的 參與를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實務者級(法院行政處) 에 서도 每分當 250音字~350音字의 筆記速度를 가진 速記術을 使用하여 證據價値가 있는 많은 陳述을 놓치지 않고 記錄하는 것이 緊要함을 理解하고 서서히 法院速記士들의 養成문제가 檢討 段階에 있다는 반가운 消息이 들린다.

上述한 諸般 妥當성과 史實, 그리고 外國例을 勸索할 때 우리나라 法院에서도 速記術을 익힌 速記士가 公判調書 및 各種 調書를 迅速 正確하게 作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議會에서 速記錄이 議會史(政治史的)를 꾸미는의 一助를 하듯 速記術에 의하여 作成된 法廷錄도 正義와 秩序가 갖추어진 社會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第6節 著述과 速記

著述家가 著述을 함에 있어서도 일일이 著者 自身이 여러 가지 바쁜 時間 가운데서도 資料를 蒐集, 調査, 研究하고 그 內容이 着想될 때마다 一般文字로 「메모」해 두었다가 다시 整理하여 執筆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동이러한 경우 速記術을 利用하여 著者가 意圖하는 著作內容을 口述하면 速記士가 이것을 速記하도록 함으로써 譯文된 原稿를 著者가 內容을 읽고 添削潤飾할 수 있는 바 이는 實際 著述家가 스스로 執筆하는 경우와 比較할 때 時間上 그리고 肉體的으로 많은 勞力을 輕減하고 自己의 意圖하는 바를 그대로 著述할 수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自己가 著述할 資料를 가지고 講述하는 態度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速記士가 速記하여 譯文하면 바로 그 原稿가 草稿가 되는 것이며 多幸히 그 著述家가 速記를 할 줄 안다고 할 때에는 速記文字로 着想한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것을 整理 譯文하면 훌륭한 原稿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學者나 教授인 경우, 講壇에서 學生들에게 講義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速記士로 하여금 그대로 速記하게 하여 譯文한다면 講義錄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外國에 旅行하고 돌아와서 自己가 旅行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바를 記憶을 더듬으며 口述하는 것도 速記術을 利用하면 더욱 생생하고 훌륭한 紀行文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이미 明治 16年(1882年)에 最初로 著述하는데 速記術을 利用하였으며 그 後로 적지 않게 速記가 著述에 活用되어 오고 있다.

그 具體的인 實例로 作家 「松本清張」은 福岡 隆이라는 速記士 外 1人을 1959년부터 10餘年間 專屬시켜 自己의 口述을 맡아 쓰게 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著述家가 速記를 利用한 例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不過 3, 4回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著述家들이 이와 같이 便利한 速記術을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이로 因하여 著述家가 當하는 勞力과 時間上의 損失이 매우 큰바 이 方面에도 速記를 活用함으로써 앞서 밝힌 精神

的 肉體的 經濟的 諸損失을 더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第7節 秘書와 速記

우리는 가끔 外國映畫에서 企業體의 社長, 重役이 社內에서 書翰, 指示事項, 그날의 豫定日程에 관하여 口述하는 것을 秘書가 卽席에서 記錄하는 場面을 보 수가 있다.

이때 秘書가 速記術을 習得치 않았다면 反復될 수 없는 瞬間的인 上司의 口述을 빠짐없이 記錄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秘書職의 必須條件으로서 速記가 包含되어 있지 않지만 外國에서는 速記가 秘書職에 있어서는 大 用을 수 없는 가장 重要한 具備要件인 것이다.

政治家나 事業家가 業務에 쫓기며 분망한 日程 속에서 自己의 構想과 着想을 卽時 實踐에 옮기도록 指示할 때 또는 演說文 書翰과 같은 文書를 作成할 때, 自己 自身이나 秘書가 일일이 一般文字로 記錄作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럴때 秘書가 速記術을 利用하여 上司의 口述을 速記하여 文字化함으로써 業務를 能率있게 實踐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節約된 時間을 다른 業務에 轉用할 수 있는 機會와 餘裕를 가짐으로써 競爭社會에서 一步 앞설 수 있는 더듬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第8節 生活과 速記

前述한 바와 같이 各種 社會活動에 있어 一般文字로 他人의 發言을 記錄하는데 커다란 不足感을 느끼고 있거니와 우리가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一般文字로서 記錄할 때 많은 不便과 때로는 記錄이 不可能할 경우가 있다.

講習會나 講演會라든지 學校에서 講義를 들을 때나 放送에 있어서 重要內容을 간단히 메모를 하는 경우나 電話, 傳言을 一般文字로 記錄할 때에 있어서 큰 不便을 겪는마 이때 速記를 배웠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손쉽게 記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日記같은 것을 쓸 때에도 速記文字로 日記를

적어 나간다면 第3者가 아무리 그것을 읽어보려 하나 特殊符號文字인 速記文字를 읽을 道理는 없을 것이며 所期하는 秘密性を 保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速記術이 一般에 널리 普及되어 있어 一般官廳이나 實業界에 있어서 事務的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으니 書類나 往復文書의 口述速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學生들이 學校에서 受講함에 있어서 講義內容을 一般文字로 일일이 받아 쓴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그 大要만을 받아 쓰기도 至難한 形편으로 누구나 學窓時節에는 「노트」 整理때문에 많은 苦痛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3, 4個月間速記學의 大要만을 배움으로써 一般文字로서는 받아쓸 수 없는 講義內容을 거의 記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速記한 內容을 우리 말로 다시 譯文하여 「노트」하는 過程을 겪게 됨으로써 自動的으로 復習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어 一舉兩得의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정도의 速記活用을 위하여는 職業人으로서의 修學에 必要한 教育過程까지는 不必要하므로 短期教育으로 充分히 可能하다고 하겠으며 高等學校過程의 特別活動科目으로 採擇하여 教育함으로써 大學에 進學하거나 一般社會에 進出하였을 때에 前述한 바와 같은 많은 도움이 있는 것이다.

특히 大學教育에 있어서 新聞學科나 秘書學科에 있어서는 必須科目으로 採擇 教育하여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으며 또한 文教政策上으로 내어 걸고 있는 一人一技主義에도 符合된다 할 것이다.

參考로 日本의 教育機關에서 速記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實態를 살펴 본다면 高等學校 商業科에 每週 2時間씩 2年間 選擇科目으로 速記를 教育하고 있으며 中學校에서도 選擇科目으로 教育하고 있는 學校가 많고 成人學校의 秘書養成課程에서 教授하고 있는바 一般教育機關에서 教育中인 機關數는 51個機關, 高等學校 232個校, 大學이 14個校가 된다. 또한 文部省後援으로 全國 高等學校 速記競技大會를 열기도 한다.

한편 歐美諸國에 있어서는 現在 速記學이 中學教育課程에 必須的인 教科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過去 서울의 경우 善隣商業, 德壽商業, 大東高, 서울高, 梨花

女大, 慶熙大, 首都女師大, 市立成人學校 등에서 速記學을 特別活動科目으로 採擇 教育中에 있었으나 現在는 諸般 隘路로 中斷되고 있는 狀態이며 오직 首都女師大와 市立成人學校 두곳에서만 速記教育이 계속되고 있는 中이다.

人間の 活動은 言語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니 職業的인진 또는 非職業的인진 現代文化의 便利한 利器인 速記術을 터득하는 것이 各者 個人生活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先進 諸國에 있어서는 速記가 이미 速記士란의 職業的인 特殊技術은 아닌 것이며 文化人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必須的인 要件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하루속히 이룩한 時代가 到來되어야 할 것이며 一人一技主義를 떠나서 生活의 幅을 넓고 넓게 하기 위해서라도 速記術의 習得은 큰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第3章 速記界 將來의 諸問題

第1節 速記方式에 關한 問題

速記의 歷史的 過程과 現況을 檢討할 때 速記術도 人智의 發達 卽 文化 및 科學文明의 發展과 並行하여 發達되어 왔으며 世界 各國에 있어서 自己네의 語文을 가진 民族은 모두 固有의 速記術을 가졌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程度로 速記術은 널리 普及되어 있고 또 長은 歷史를 가지고 있음이 明白해 졌다.

그러므로 豫見컨대 科學技術의 進展으로 드디어 달 征服이라는 人類 待望의 宿題가 達成된 지금 科學의 힘으로 征服되지 않을 學問 乃至 技術分野는 없을 것이라는 豫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 우리 速記界도 앞으로는 「컴퓨터」 方法 또는 그외 어떤 方法에 의하여 革新的인 記錄方法이 到來되리라는 展望도 두렷해 진다. 그러나 人文科學 特히 言語學의 特殊性은 우리 人間自體가 自然히 變造되지 않는 限 先進國家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은 後進性을 안고 있다.

世界의 知性들이 世界 各國의 語文의 相異로 달미암아 惹起되는 場所의 障礙와 意思疏通의 壁을 解消하기 위하여 「에스페란토」語(Esperanto. 「폴렌 드」 Zamenhof가 1887년에 만든 世界 共通語)라는 世界 共用語文을 發明해 내서 使用하기를 主唱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人間은 自身의 國粹主義的 固執, 排他主義의 本能, 傳統에 대한 執念, 政治家의 國家單位 民族主義意識의 高揚 등으로 因하여 各國의 固有語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各國의 速記文字도 「나의 速記文字」, 「우리의 速記文字」인 以上 實用面에서 아주 劃期的이고 革新的인 「컴퓨터」 方法의 速記術이

登場하기 前에는 自己의 固有의 速記文字에 대한 愛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의 手筆이나 機械의 操作에 의한 速記方式을 超越한 「컴퓨터」方法 乃至는 어떤 다른 方法의 採擇은 아마도 人間의 科學技術文明이 高度로 發達하여 그 科學의 힘으로 太陽系를 征服하고 난 後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論據에서 볼 때에 速記界로서는 高速化되어 가는 發言速度에 어떻게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關鍵점으로 提起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當分間은 手筆速記方式의 各 法式을 改良하여 發展시키 方法과 機械操作에 의하여 記錄케 하는 方式을 研究 開發하는 것이 急先하고 展望되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을 하겠다.

가. 速記法式의 改良

速記란 線의 曲直, 長短 그리고 點과 位置를 利用한 한 符號組織이므로 그 組織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立場과 方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組織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말 速記도 現在 約 8種의 速記法式이 있다. 여기에 對한 한결같은 缺陷은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國會內의 速記法式 分布로 보면 3個速記法式의 人員이 거의 全部를 占하고 있으며 多數의 速記能力者를 養成해 낸 것이 더 좋은 速記法式이라는 假定을 하더라도 모두 좀 더 研究開發의 餘地가 많은 것이요 速記를 一般大衆에게 普遍化 시키기에는 不適當한 專門職業 速記인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第3編 第2章에서 說明된 議會速記法式을 國會內 實務陣, 特히 國會速記士 養成所의 講師陣을 中心으로 해서 考案 完成했다. 이것은 多數의 人員이 모여서 또한 우리말 速記實務 經驗者가 모여서 速記法式을 創案한 最初의 作業이며 아직 成果를 測定할 時機는 못되었으나 그 意義는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解放後 그간의 經驗에 비추어 各 部面에 걸친 우리 말의 言語速度는 점점 그 速度가 빨라지는 傾向에 있고 지금도 빨라지고 있다. 비록 議會 速記法式이 越等 좋은 速記法式이요 現在의 言語의 速度와 致하여 充分히 쓸 수 있다고 해도 더욱 研究하여 앞으로에 對備하며 同時에 보다 익히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쉬운 速記法式을 爲한 꾸준한 努力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는 대개의 現存 速記法式에 있어서 1分當 300音字 以上의 速記能力者가 되기에는 速記만을 1年以上 배워야 한다. 1分當 200音字 程度의 速記能力者가 되려고 해도 6個月은 걸린다. 이것이 速記가 大衆化, 普通化 되지 못하는 가장 큰 原因이다. 몇年前에 速記同人 한 사람이 各 新聞社의 記者들을 相對로 速記普及을 爲한 講義를 新聞會館에서 2個月間 가졌던 일이 있다. 그러나 그 講義를 받은 분들이 速記를 利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大韓速記協會에서 放學期間마다 年 2回 無料速記講座를 열고 있다. 1회에 約 四百名 정도가 受講하는데 別로 實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와 같은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그 原因은 專門職業速記士의 養成을 爲하여 考案된 速記法式을 가지고 短期講習을 시킨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1年 以上을 배워야 實用할 수 있게 하여진 速記法式을 短期講習에 쓰기 爲하여 適當히 拔萃하여 講義하기 때문에 短期講習으로는 消化가 안되어 成果를 못내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速記法式의 改良은 다음 두 가지의 方向이 提示된다.

첫째는 날로 高速化하여 가는 言語速度에 對處하여 새로운 職業的 手筆速記法式의 創案이나 또는 現存하는 速記法式의 職業速記를 위한 大幅의인 그 되고 繼續的인 研究 改良이 加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專門的 職業速記로서 이번에 새로이 創案된 議會速記法式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議會法式도 一團의 새로운 速記法式으로 整理는 됐으나 계속 速記의 線거리 혹은 우리말의 組織과 速記의 線을 對比 研究해서 배우기에 더욱 쉽고 熟練 如何에 따라서는 1分當 400音字 까지도 쓸 수 있는 高度의 速記法式의 改良發展을 期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各 專門分野別로 區分 政治, 法律, 經濟, 學術等으로 速記法式을 分類 發展시켜야 될 것이다.

둘째로는 보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우며 3~4週 정도의 短期講習을 받으면 200音字 정도는 1分間에 쓸 수 있게 하는 大衆普及을 위한 速記法式을

別途 開發해서 누구나 손쉽게 배워 日常生活에 利用할 수 있는 速記를 考案 하여 學生層을 비롯한 速記人口의 增加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말 速記가 우리 文化發展에 좀 더 寄與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나. 機械速記分野의 開發

人間의 智慧가 發達하고 모든 物質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人間の 言語速度도 高速度化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使用하고 있는 手筆速記의 記錄方法으로는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記錄하기에 困難을 느끼게 됨에 이 困難을 克服하고자 하는 努力에서 機械速記分野의 研究 開發이 試圖되고 있고 注目を 끌게 되는 所以라고 하겠다.

이 努力의 結果로서 速記打字機라든가 錄音速記機의 發明이 先進諸國에서 이루어지고 實用化를 위하여 꾸준히 實驗되고 있고 一部에서 實用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記錄方法도 研究되고 있으나 第1編 第5章 「機械速記」에서 詳細히 言及되다시피 手筆速記方式에 比하여 長點도 있으나 機械速記方式이 널리 普及 實用化되기에는 機械速記 自體가 지니고 있는 많은 缺陷들이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美國과 日本에서 一部分野에는 實用되고 있는 打字速記機나 錄音速記機에 대한 研究나 實驗조차 試圖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實用에 얼마만한 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分野는 전히 未開拓으로서 남아 있다.

다만 우리도 先進國처럼 이 分野가 開發되어 速記術向上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 文化에 이바지 할 것을 期待하는 것이다.

第2節 速記法式 單一化問題

우리말 速記는 1909年 「하와이」로 移住한 朴如日氏가 當地에서 發刊되는 韓國語新聞 「신한민보」에 「朝鮮語速記法」을 創案 發表한 것을 嚆矢로 그동안 60餘年을 지나는 동안 10餘種의 速記法式이 考案 發表되어 浮沈을 거듭

하였다. 그 浮沈과 發達過程은 「우리말 速記의 發達史」에서 상세히 論述하였거니와 第3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過去の 量產爲主의 速記士 養成에서 그 方向을 轉換시켜 有爲有能한 速記士의 輩出과 發言速度가 高速化하여 가는 趨勢에 對處한 보다 나은 速記法式의 創案, 既存 速記法式의 改良, 速記의 學術的 體系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時代的 要諦에 따라 先進國에서 胎動 試驗中에 있는 機械化速記 乃至는 「컴퓨터」에 의한 速記가 우리에게도 負課될 必然的인 課題이기는 하나 이의 實現이 아직도 遼遠한 宿題인 現段階에서 可能的 最善의 方案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 나은 速記法式의 創案을 위한 既存速記法式의 單一化의 可能性 與否와 이에 따른 몇가지 問題點에 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부듯 모든 學問(經濟學, 政治學, 法律學, 國文學等)이 그렇듯이 어떤 하나의 學說에 對한 學者間의 理論이나 學說의 展開 卽 論理의 展開方法에 對하여 類似 또는 反對의 意見을 달고 있는 學說들이 있듯이 速記文字도 모두가 類似한 符號文字이면서도 各法式 모두 그들의 短點이 숨겨진채 長點만이 表面化되고 있는 現實이다.

表記의 簡便, 正確性과 速度性이라는 點에서 速記學은 打字機와 共通點을 지니고 있으므로 一般的인 理解를 돕기 위하여 國文打字機의 例로 몇 가지 問題點을 들어 본다.

國文打字機의 경우 活字版의 數 그리고 文字의 形態, 母音과 子音의 活字版 配列方法 또 雙발침들의 打字要領等等 無수히 많은 問題點들이 各己 考案者들의 學術的인 論據나 經驗에 의한 主張대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대로의 經驗과 어떠한 考案者대로의 根據있는 統計에 의한 主張임에는 再言의 餘地가 없음과 같이 速記學도 이와 같은, 考案者 個人의 經驗에 의한 主張이 다르고 一般共通으로 認定하는 統計外에 考案者마다 蒐集資料의 相異에 따라, 獨自的인 統計의 根據위에서 各己 形成 發展해 왔기 때문에 그 主張과 論據 및 經驗이 다른 것이다.

速記學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速記文字에 있으며, 이 速記文字

는 言語文字의 構造와 密接한 關係가 있음은 앞에서 詳述하였거니와 速記文字의 構造에 있어서도 正圓派, 斜線派, 橢圓派, 文字派等 4個의 流派가 있어 各流派마다 創案하게 된 基礎와 特徵이 各기 다르며 거기에는 一長一短이 있다. 또한 같은 流派에 屬하더라도 速記法式의 優劣을 判가할 수 있는 要素가 劃線의 言語構造에 따른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配列인데 이 言語構造에 따른 配列如何로 速記法式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4個의 流派로 나누어지고 또한 같은 流派라 할지라도 線의 配列에 따라 달라지는 數多한 速記法式을 어느 法式과 法式 또는 어느 流派와 流派를 統合 單一化 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理由로는 速記文字의 構造上 創案의 基礎가 各기 相異하고 速記學이 數學的 公式의 代入만으로 이루어지는 學問이 아니고 複雜多端한 創案過程에 있어서 創案者에 따른 判斷과 經驗 그리고 引用 統計資料가 서로 相異하기 때문으로서 그것은 第3編 第3章 「議會速記法式의 創案」의 資料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말 子音 母音 받침 등에 있어서 各 資料마다 類度 및 順位가 다르고 線의 分類中 各 線에 대한 創案者 또는 實務經驗者들의 素質과 經驗에 의한 判斷의 相異로 各 線의 記錄便宜等級이 달라지게 되는 結果 거기에는 서로 一長一短이 있게 된다.

그 밖에도 받침의 選擇 및 合用方法 또 速記文字의 變形過程, 略法, 速記文字 構成上의 言語의 合用問題等等 많은 문제點들이 各 法式 모두 長短點의 矛盾을 같이 內包하고 있음은 勿論, 速記의 習得 全過程을 통해 論理整然한 學問的 價値를 찾을 수 있는 定理의 過程에서 速記法式의 單一化란 무수히 많은 重複과 엇갈린 主張을 하고 있다. 速記法式의 單一化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速記界에서만 論議된 것은 아니다. 이는 美國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1922年에서 24년까지 美國 全國 速記士協會에서 Pitman式의 符號와 諸原則을 研究 起點으로 하여 速記의 標準化作業을 試圖하였고 뉴욕洲 速記士協會의 會議錄에 의하면 「모든 重要한 點에 있어서 認知할 수 있을 정도의 最上의 速記法式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重要한 基本形態의 몇 가지는 서로 矛盾되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法式의 相對的인 長點에

關心을 가진 일이 있거나 或은 그 自身이 하나의 速記法式을 考案하기 위해서 애쓴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公平한 사람이라면 最上의 結果란 賢明한 妥協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利點을 犧牲시키지 않고서는 完全한 一個의 利點을 얻을 수 없고 單獨的인 優秀性의 實驗으로 優越性에 對한 一定한 基準이 設定되지 아니하는 跟 健全한 判斷이란 얻을 수 없다」고 記述하고 있는 事實만 보더라도 速記法式의 單一化作業은 許多한 難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非但 速記界 뿐만이 아니고 모든 學問이 大部分 獨善 排他的인 態度를 取하게 되는 것으로 人間의 本能이기도 하다.

各種 速記法式도 「나의 創案에 의한 速記法式」 「내가 研修한 速記法式」인 以上 그 速記法式에 對하여 排他的 執念이 일게 됨은 傳統을 重히 여기고 情性을 固執하는 心理作用으로 人之常情인데 虛心坦懷하게 自己의 短點도 들어내고 남의 批判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相對的인 長點을 肯定할 줄 아는 思考方式이 아쉬우나 人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我執에 빠지게 되어 學術的인 面은 勿論이요 現實面에서도 速記法式의 單一化는 不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以上の 論據에서 學術面과 現實面에서 速記法式의 單一化란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얻었거니와 單一化가 不可能한 現狀態에서 그러면 單一化에 가장 近似한 最善의 方案은 무엇인가? 叙上에서 얻어진 結論을 綜合하면 人爲的 作用에 의한 統合 單一化는 不可能하고 새로운 特出한 速記法式의 創案을 期待하면서 數多한 既存 速記法式이 競爭意識을 가지고 꾸준히 研究, 改良, 發展이 이루어 짐으로써 適者生存의 原則에 따라 不適格하거나 不實한 速記法式은 自然 淘汰되도록 하는 自然現象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速記界의 發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요 速記의 大衆化는 勿論 專門 職業速記, 나아가서는 專門分野別로 分類한 速記法式의 出現에 도움이 될 것이다.

第 3 節 速記需要의 開發問題

우리 나라 現速記界의 實情이 速記需要의 不足으로 速記士의 養成을 鈍化시키는 하나의 要因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 方面에 關心있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國家의 行政이나 企業의 經營에서 節約과 能率을 高唱하고 있다. 그러나 速記가 얼마나 事務의 能率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科學的인 分析이 없는 까닭인지는 몰라도 速記에 대한 認識을 아직 一般的으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말을 卽席에서 그대로 符號文字로서 記錄할 수 있는 速記를 利用하여 專擔速記職員을 두어 가지고 會議錄을 完全히 내고 있는 곳은 國會의 各種 會議과 金融通貨運營委員會會議밖에 없고 기타는 速記를 利用한다고 해도 部分的인 利用에 不過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社會的으로 速記의 用途가 이와 같이 적은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前述한 「速記의 活用價值」에서도 記述하였듯이 國家나 公共團體의 會議, 大企業의 株主總會 등에서 부터 電話를 받는 일에 이르기 까지 速記의 利用範圍는 無限히 넓다.

그러면 여기에서 現在 約 20年의 歷史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 速記의 現況을 把握하고 아울러서 將來의 어떤 나아갈 方向을 모색하기 爲하여 現在의 就業現況을 알아 보기로 한다.

大韓速記協會에서 1969年 10月末 現在로 把握하고 있는 全國 速記士의 就業現況은 다음 別表와 같다.

그러면 다음 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現在 全國에 就業하고 있는 全體 速記士의 43%가 國會事務處에 勤務하고 있으며 이들은 速記만을 專門的으로 擔當하고 있고 나머지가 57%이나 이들은 大部分의 경우 速記와 其他 業務를 兼하고 있거나 다른 職種으로 轉職하고 있다. 이런 實情을 언뜻 보면 速記는 우리 나라의 경우 國會만을 爲해서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實際面에 있어서는 다음 表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部門에서 速記를 하고 있다.

速記士の就業現況

1969. 10. 30 현재

機關名	細部名	人員	機關名	細部名	人員
國家機關	會	91	金融機關	農協中央會	2
	大統領警護室	1	言論 및 報道機關	京 鄉 新 開	1
	大法監	1		時事通信	1
	經濟企劃院	4		朝鮮日報	1
	內務部	1		韓國日報	2
	國防部	2		法曹新聞	1
	農林部	15		京畿新報(仁川)	1
	商工部	1		戰友新聞	1
	建設部	1	軍放送局	1	
	交通部	1	大企業	東洋나이트株式會社	1
	遞信部	1		新進自動車工業株式會社	2
	文化公報部	5		韓國機械株式會社	2
	保健社會部	1		大韓造花株式會社	1
	總務處	1		嶺南運輸株式會社	1
	國土統一部	1	教育機關	서울市教育委員會	1
	中央情報部	4		京畿道教育委員會	1
	中國稅務廳	2		首都師大(講師)	1
	勞動廳	1		明知大學院(講師)	1
	專賣廳	1		國會速記士養成所	8
	遠達廳	1		市立成人學校	1
授護處	1	弘益女子中學校		1	
서울特別市	3	東邦速記學院		5	
京畿道	1	各種團體	勞動組合中央會	1	
釜山	1		基督教長老會	1	
國營企業	韓國電力株式會社		1	基督教純福音會	1
	石炭公社		2	佛教中央宗團	1
	興漁村開發公社		2	玄岩社	1
	道路公社		1	徵文出版社	1
	石油公社		1	語文閣	1
	海外開發公社	1	其他	速記事務室	6
金融機關	韓國銀行	4		其他	2
	產業銀行	1		總計	211名
	外換銀行	1			
	中小企業銀行	2			

註：上記就業現況에는 速記業務에 從事하다가 轉職한 者도 包含되었음.

大部分 職場을 가진 速記士들이 時間當 報酬로 隨時 雇用契約이 되어서 速記의 需要를 充當하고 있는 것이다. 이 就業問題와 아울러 問題가 되는 것은 速記의 專門分野別 開拓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點이다. 아무리 듣는 대로 쓰는 것이 速記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하고는 적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모르는 外國語를 듣고 그 뜻을 잡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法律이면 法律, 經濟면 經濟, 어떤 專攻分野別로 速記技術이 分類 發展되어야만 그 當該部門의 錯誤없는 速記를 해 낼 수 있으며 速記하는 사람도 훨씬 힘들지 않고 수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速記의 普及에 對하여 우선 一般化問題와 專門職業速記人에 關한 問題를 分類하여 檢討하되 後者의 경우 반드시 어떤 專門部門을 갖도록 하여 就業의 幅을 넓혀야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幅이 넓은 利用對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速記에 대한 需要不足의 現象이 나타나느냐 그 理由를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① 첫째로 우리말 速記의 實用性이 없어서 速記需要處에서 速記를 活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國會만 해도 約 80名의 速記職員이 日常의인 執務를 通하여 技術上 充分한 速記의 實用價値를 證明하고 있으며 其他 各機關에서 速記士들이 活躍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速記法式이 實用性 있는 速記法式이라는 反證이기도 한 것이다.

② 둘째로 供給할 수 있는 養成面의 態勢가 되어 있지 않아서 需要가 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重要한 原因은 速記의 科學的 評價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한글 專用論者가 우리 生活을 가장 科學化 하는 것은 한글專用に 있다고 해 가지고 한글專用的 利點을 力說하고 있는 것은 公知의 事實이다. 또 우리가 글을 펜으로 쓰는 것과 打字機로 적는 것과의 事務能率은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行政學에서도 科學的 管理論에서 「테일러·시스템」이니 「컴페어·시스템」이니 해서 業務過程의 科學的 思考가 얼마나 큰 能率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說明하고 있다. 速記를 利用하면 말이나 錄音「테이프」에 담

진말이 가장 빠른 時間에 文字化 될 수 있는 것이다. 經營者의 構想을 以
로 說明하면 그것이 文字化 되어 나오는 것이며 重要問題의 贊反對論이 速記
方式을 利用함으로써 全文이 文字化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行政 또
는 經營責任者의 速記에 대한 科學的 評價 如何에 따라서 利用範圍가 決定될
것이다.

⑨ 둘째는 速記를 너무 固型化 시켜서 생각한다. 速記는 말을 들은 대로 다
쓰는 것이지만 全部 書 能力이 있다는 말이 꼭 全部 써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必要없는 部分은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普通 한時間 速
記한 것이 原稿紙로 約 90枚가 되는데 10枚만이 必要하면 10枚로 壓縮할 수
있는 것이며 市外電話 程度나 받고 社長의 構想을 文字化 시키는 것이라면
1分間의 基準速度인 300音字를 꼭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0音字 程度
의 能力으로 充分한 것이다. 또 速記한 것을 꼭 펜으로 翻文해야만 되는 것
도 아니고 한글專用に 돼서 打字機를 利用하게 되면 速記時間의 3倍 程度로
原稿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時間 동안 얘기한 것이 3時間 동안이
면 打字된 原稿로 完成되는 것이니까 4人이 交代하여 10分間씩 速記했다면
얘기가 끝난 뒤 30분이면 速記錄이 나오는 것이다.

⑩ 勿論 이 경우에는 한글專용과 速記와 打字의 協業이 이루어진 경우의 얘
기다. 그러니까 速記란 어떤 틀에 박힌 固型的인 것이 아니라 利用者의 趣
向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融通性이 豊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⑪ 세째는 豫算이 없음을 얘기하지만 速記士는 速記만하고 다른 것을 못한다
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一定한 素養을 갖춘 데에 그 위에
速記할 수 있는 技術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行政要
員을 採用할 때 速記能力者로서 行政要員을 採用하면 豫算과 관계없이 一舉
兩得이 되는 것이다.

⑫ 言論機關에서 一般記者가 市外通話로 記事를 받는 것을 速記士가 速記로
받음으로써 3分當 100원짜리 市外 電話를 1個月에 600分 節約된다고 假定해
도 2萬원이라는 經費의 節減이 되는 것이다. 또한 人權을 옹호해야 할 責任
이 있는 法院에서는 裁判의 現代化를 爲해서 書記의 斷片的인 主觀的 記錄

에 依支할 것이 아니라 速記한 正確한 記錄을 가지고 最大限 人權을 保護해야 할 것이다. 法院의 경우에는 豫算의 문제를 떠나서 꼭 速記가 利用되어야 할 곳이다.

이와 같이 速記를 꼭 活用해야 할 機關에서 마저 速記에 대한 認識의 不足으로 利用範圍가 좁혀지고 있다. 이것은 速記從事者들의 活動力 不足과 社會的인 傾向이 科學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좀 더 速記를 現實에 맞추어 科學的으로 利用하여 우리 文化發展을 더욱 加速시키도록 速記人이나 一般 社會人의 서로의 理解와 努力이 이루어 집으로써 多方面에 걸쳐 速記가 活用되는 需要의 開發이 可能해 질 것이다.

男 孫 鍾 行 正 譯 本 會 編 第 一 卷
李 維 其 先 生 國 語 會 編 第 二 卷
海 泰 鍾 泰 伊 會 編 第 三 卷
吳 錫 徵 鍾 泰 伊 會 編 第 四 卷

第3編 國會와 速記

- 第1章 國會速記의 發展過程
- 第2章 議會速記法式의 創案
- 第3章 國會의 速記業務
- 第4章 外國速記界

第1章 國會速記의 發展過程

第1節 制憲國會 前後

速記의 活動分野는 文化의 發展과 더불어 多方面에 걸쳐 利用되는 것이며, 特히 議會에 있어서 速記士는 없어서는 안되는 存在이며, 그러기에 議會에서 速記의 比重은 다른 分野보다 더 무겁고 많은 人員이 所要되는 것이다.

于先 우리나라의 議會政治의 始初를 도리켜 보면서 國會에 있어서의 速記의 發展面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1945年 第2次世界大戰의 終了後 우리나라의 國權回復에 앞서 美軍政統治下인 1946年 12月 12日 美軍政의 立法諮問機關인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開院을 보게 되었다.

當時 同立法議院 開院準備機關에서는 百方으로 速記能力者를 徵收하였으나 周知의 事實인 日帝下 우리말의 抹殺政策으로 우리말 速記는 發展의 餘地조차 없었으므로 速記士의 養成이나 研究普及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速記能力者의 發見이란 거의 絶望이었다.

이 情勢下에서 完全치는 못하나마 速記의 研究가 千辛萬苦의 境環속에서 삭이 났다는 事實은 前章에서 자세히 紹介되었으므로 省略하거니와 立法議院의 記錄을 擔當해야 한다는 國家的인 使命感이 앞섰고 따라서 참다운 速記의 研究 發展 普及의 本格的인 機會라 느껴져 日本語 速記를 習得 實用하던 분들이 우리말의 特性을 많이 勘索하여 短時日內에 不足한 것은 段階的으로 補充하기라하고 우리말의 速記를 創案해가지고 當時 姜駿遠, 朴寅泰, 朴準泰, 朴鍾浣, 金天漢 等에게 李龍吉氏等이 立法議院의 記錄을 擔當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民間養成機關이 小規模나마 數個處에 開設되어 自己의 創案한 速記法式의 研究 普及등 創案者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漸次 社會에 速記士를 輩出하기에 이르렀다.

翌年 다시 韓龜水, 金學憲, 金商鎬, 徐廷錄, 朴喜善, 許樹, 李吉鉉, 金鎭基, 金龍完, 鄭源道를 補充增員하여 立法議院末期까지 勤務하였다.

1948年 5月 總選舉로서 우리나라 初代國會인 制憲國회가 同年 6月 25日 開院되었는데 制憲國회의 速記陣容은 主로 立法議院에서 잡은 期間이나마 經驗을 쌓은 速記士들로 構成되었다. 速記長(速記係長)에 姜駿遠, 速記士로서는 朴喜善, 金天漢, 金龍完, 韓龜水, 金鎭基, 金學憲, 徐廷錄, 許樹, 李吉鉉, 金商鎬, 張應根, 鄭源道들로서 憲法 國會法 政府組織法等 時急한 建國作業의 法制定을 爲한 業務量의 山積으로 連日 深夜까지 勤務하였다. 業務量은 많고 速記士는 워낙 少數였었는데 그後 民間養成機關에서의 輩出되는 速記士가 있어 增員을 보게되기는 하였으나 그數가 微微하여 本會議 速記錄만을 作成하는 業務였으며 그것도 印刷配本되기까지는 會議日로부터 10餘日이 넘어야 되는 實情이었다.

1949年 4월에 朴寅奉, 韓奉水, 柳浩龍, 李鍾浩(서울式)가 採用되어 多少 人員이 增加되기는 하였으나 速記錄 發刊日의 遲延은 여전히였으니 速記錄이 늦게 發行되는 原因은 速記士의 翻文의 量이 많아서 3~4日以上 걸려야 끝났고 編輯 印刷課程에서 늦어지게 된 까닭이다.

同年 7月 李鍾浩가 退職하고 새로이 具然東, 柳章熙, 劉載殷, 申景鉉이 採用, 增員되었다.

立法機關의 機能은 年輪이 거듭되면서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고 이로서 立法活動이 漸次 活潑해져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하게 되고 이에 따라 速記界에서도 養成機關의 增設 後輩養成에 拍車를 加하여 갔고 國會內의 速記士들은 1950年 3月 會誌發刊과 速記展示會를 最初로 院內에서 開催하여 議員 및 政府要人에게 速記에 대한 普及 認識에 도움을 주었다.

1949年 8月 4일부터 6日까지 3日間 當時 大統領 李承晚博士와 自由中國 蔣介石總統과 頂上會談은 鎮海에서 開催하였는데 이때 國會速記士로 勤務하던 金鎭基, 許樹 兩氏가 同會談의 速記業務를 擔當하였다. 이는 우리말 速記가 國際會談이나 國際會議에서 쓰여진 最初의 인인 것이다.

1949年 12月 制憲國會末期에 李吉鉉, 許樹가 不祥事로 退職하게 되었다.

制憲國會는 짧은 2年동안이었지만 不過 10餘名의 人員으로 憲法制定과 時急한 建國立法 國政監査 및 複雜한 政局의 事件調査를 爲한 特別調査委員會의 記錄等 비록 未熟한 速記術과 不足되는 人員을 가지고 激務를 무릅쓰고 初代國會 第1次會議로부터 빠짐없이 記錄하여 保存하게 하였다는事實은 全世界的으로 數個國에 不過한바 이 功績이야말로 높이 評價하여야 할 것이며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일이다.

第 2 節 2代國會(6.25)以後

第 2 代國會는 1950年 6月에 開院되었다. 3次會議後 民族의 受難인 6.25動亂을 當하여 速記士들도 各自已 흐터졌다가 9月 28日 首都寧遷으로 다시 들모였다. 모인數는 約半程度로 그中에는 拉致된者, 附逆越北한者, 避身 死亡한者가 있었고 남은 사람은 金天漢, 韓龜永, 徐廷錄, 金顯基, 鄭源道, 張惠根, 韓奉永, 柳浩龍, 金龍完(1週日後 行方不明)뿐으로서 그數로서는 動亂의 收拾을 爲한 莫大한 課業의 任務完遂가 어려운 形便에 놓여 있었으나 참고 견뎌며 遂行하였다. 特히 哀惜하게 된 事實은 避難國會中(1950. 6. 25~9. 28)速記士가 後退하지 못하여 速記錄을 發刊하지 못하였다는 事實은 우리 議政史에 있어서나 速記界로 보아 遺憾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50年 9月28日 收復後 차츰 마비되었던 養成機關이 再整理가 되어 同年 11月에 缺員의 補充을 보게 되었다.

新規採用된 者는 李鍾鎬, 韓奎勲, 尹炳高, 李柱範, 楊佑顯, 李東淳, 蔡惠卿, 李顯熙等으로 議會進出速記法式의 分布에 있어 變動을 가져왔으니 過去 卍을式, 逸波式, 中央式, 高麗式順이 있던것이 逸波式, 서울式, 高麗式, 解放式(現東邦式), 韓國式順으로 變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일이고 戰局의 惡化로 政府는 또다시 1951年 1月 4日 釜山으로 首都를 옮기게 됨에 따라 速記士들도 臨時首都 釜山에 자리를 잡고 不備한 環境속에서나마 맡은 任務를 遂行하게 되었다.

51年 4月에는 韓龜永, 徐廷錄이 退職하였고 同年 5月에는 蔡惠卿이 退職

하고 뒤이어 李鍾鎬, 韓奉永이 退職하였다. 數個月後 退職한 자리를 補充해야 했으나 養成機關이 여러가지 事情으로 全廢되어 新人發掘의 길은 막히고 不得已 他機關에 勤務하던 速記士中에서 尹載秀, 朴元求, 韓奉永이 51年 8월에 任命되어 勤務하게 되었다.

그러던中 國會議員 및 有志로부터 贊助를 얻어 國會內에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文敎部長官認可)를 開設 1951年 12月 1일에 第1期生 約 120名の 新入生을 選拔하여 逸波法式으로 養成하게 되었다.

學習期間은 1年으로서 主로 速記學 및 速記術을 敎習하고 一般敎養科目(國語, 法律, 常識, 經濟)을 合하여 週18時間을 授業하였는데 速記學은 金鎮基, 鄭源道, 張惠根 3人이 交代로 擔當하여 敎授하였다.

52年 11월에 처음으로 卒業生을 輩出하게 되었는데 其中 優秀한 者로서 53年 5월에 林壽洪, 金宗弘, 崔英泰가 速記士로 登用되었다.

釜山에서의 議事堂은 市中劇場 또는 道廳內 武德亭을 使用하고 있었는바 元來 會議用建物이 아닌 關係로 周圍環境이나 또는 速記用 卓子라야 國民學校 學生冊床을 使用하였고 防音에 대한 設備도 全無하며 補助用具(테시바, 錄音器等)도 없어 記錄하기에는 어려운 條件으로써 記錄의 完壁을 期하기 어려운 實情이었다.

53年 서울로 首都가 遷都되어 中央廳을 議事堂으로 使用하게 되어 釜山에서의 執務上 不便한 點이 많이 改善되었다.

速記士는 釜山에서 在職하던 者中에서 金天漢, 朴元求만이 退職하고 그대로 上京하여 勤務하였다.

53年 12월에 盧元鎬가 赴任하였고 뒤이어 54年 4월에 鄭秉澈 同年 12월에는 宋貞浩, 金允洙, 朴貴順, 徐萬福, 金哲淳, 尹壽欽 등이 採用되었다. 이로써 輻輳되었던 業務量을 덜어가며 分擔하게 되었으며 速記錄 發刊日數를 短縮은 시켰으나 翌日發刊까지는 速記士의 數가 尠후도 不足하였다. 課의 業務分擔도 關係에서 3係로 增設 鄭源道, 張惠根, 金鎮基가 係長으로써 補職되었다.

55年 4월에는 金仁寧, 金永善, 全範成이 採用되었고 同年 10월에 李圭洪 11월에 金百坤이 任命되었다.

한편 民營養成機關도 戰局의 好轉으로 後輩養成에 拍車를 加하게 되어 有能한 速記士를 多數 輩出할수 있게 되었으니 速記界도 그 展望이 밝아 왔다.

여기에서 한가지 特記할 事實은 우리나라의 速記가 國際舞臺에 進出하였다는 事實로서 우리나라의 速記士가 外國에서 開催된 國際會議에 나가서 活躍한 것은 1955年 4月 當時 國會速記士인 柳浩龍氏가 Geneve會議의 우리나라 代表團의 隨行員으로서 派遣하게 된것이 國際舞臺에 進出한 最初의 일이었다.

56年 4月에는 崔夔重, 李東一, 金明純, 尹在彬, 孫弘基, 李玢煥, 崔明淑, 韓弘男, 白廷鉉, 金宗煥(今勇), 李永實, 黃圭鎮과 同年 8月에 安仁榮等 많은 人員이 採用되었다.

制源 2代國會 當時의 議事制度가 本會議中心制이어서 모든 議案은 本會議에서 具體적이고 眞摯하게 審議함으로써 速記業務는 本會議만 하고 分科委員會의 速記錄은 作成하지 않았었다.

分科委員會의 速記錄作成이 始作된것은 2代國會末 財政經濟委員會에서 主管하던 豫算決算案의 綜合審査를 國會法の 改正으로 豫算決算委員會를 獨立構成하게 되었을 때부터인바 그 當時 初代 委員長이던 吳偉泳議員이 委員會所管業務의 重要性을 勘案 速記錄作成을 要請하게 되어 이때부터 漸次的으로 當該 分科委員會의 要求가 있을때마다 速記士를 配置하여 速記錄을 作成케 하였던 바 이로써 速記士의 業務量은 점점 增加하게 되었다.

57年 6月에 黃圭鎮의 退職으로 崔龍夏가 들어왔고 量的으로의 業務量의 增加는 必然적으로 人的增加를 隨伴하게 되어 58年2月에는 朴保和, 金永浩, 金泰宜, 李相烈, 梁基興, 徐秉運, 姜萬根, 朴殷煥 同年 4月에 河大煥, 金鍾壽, 全海成, 申世華, 趙東植, 尹炳直 등이 增員 採用되었다. 이와같이 人員의 增加함에 따라 係編成도 再改編을 보게 되었으니 3係에서 4係로 增設하여 4係長에는 李圭洪이 補職되었다.

59年 4月 閏丙高 60年 4月에는 徐長玉, 朴明愛, 金謙善, 金福振, 鄭應采, 金永熙, 元光淵, 楊澈在, 沈鉉洙, 宋基勳, 李瑞熙가 採用되면서 過去 4係이던 制度가 5係로 增設되었고 同 5係長에는 金宗弘이 補職되었다.

人員이 增加됨에 따라 質的인 向上을 期해야 함은 必然之事나 原稿內容의 檢討도 2人 1組가 相互對照하게 되고 係責任者로서 係長이 再檢討를 하게 되었으며 特別委員會 및 國政監査에도 派遣勤務하여 速記士로서의 實力을 遺憾없이 發揮하게 되었다.

1950년부터 60년까지의 國內情勢는 動亂과 그 收拾 및 混亂 등으로 말미암아 速記界도 段階的인 發展에 크나큰 阻害를 받아 成長이 늦추어 졌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事務處幹部의 많은 認識과 努力으로 初期 6名에서 始作된것이 10倍가 넘는 60餘名이라는 速記士를 保有하게끔 成長되어 名實相符한 議政史의 記錄者로서 그리고 速記人으로서 速記術의 研究와 檢討를 할 수 있게되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

第3節 5代國會(4.19)以後

1960年 4.19革命後 制憲以來 最初로 單院制에서 兩院制로 議會가 構成됨에 따라 即刻的으로 速記士의 增員이 要求되게 되었다.

新設된 參議院當局으로부터 速記士의 銓衡을 依頼받은 民議院事務處에서는 公開募集公告를 해서 應試者中 42名의 速記士의 銓衡을 完了하였으나 新規採用된 者中에는 一部 他機關에서의 經驗이 豊富한 實力者도 있었으나 大部分 新人으로서 全的으로 實務를 이들에게 맡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不得已 民議院事務處에 在職中인 速記士와 按配를 해서 實務에 支障이 없도록 速記士의 交流와 班組織을 마쳤다.

民議院의 速記課는 在職中이던 一部人士가 參議院에 轉補됨으로써 鄭源道, 張唐根, 李圭洪, 金宗弘, 李桂範, 이 係長으로 補職되었고 參議院速記課에는 課長에 金鎮基·係長에는 李東淳, 盧元鎬, 韓奉永이 補職되었다.

여기에서 特記할 事實로서 過去 民議院速記課의 責任者인 速記課長은 行政官으로서 勿論 速記에 대한 많은 認識과 理解가 있기는 하였으나 速記人은 아니었다.

그러나 議會制度가 兩院制로 바뀌에 따라 國會 速記士의 數도 民·參兩院

을 합하여 100名을 넘는 大家族을 이루게 되어 速記課의 責任者를 上述한 民議院 速記 3 係長 金鎮基氏가 參議院 速記課長으로 昇進 榮轉케 된 것이다.

그리고 1960年 8月에 5代國會가 開院되면서 國會法이 改正되자 從前의 議決結果에 重點을 두어 作成된 會議錄과 議事內容에 重點을 둔 速記錄으로 二元制의 會議錄을 作成하던 것을 名稱을 會議錄으로하여 兩者를 統合作成케 되었고 또한 國會法에 明文으로 모든 會議에는 速記法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도록 規定하여 本會議 및 分科委員會는 모두 會議錄을 作成케 되었다.

특히 그間 民議院에서는 必要에 따라 分科委員會의 要請으로 作成되는 會議錄이 印刷體制가 아니고 「프린트」로 納品되었으나 參議院이 構成되고 參議院에서 分科委員會의 會議錄을 孔版印刷體制로 轉換함으로써 오늘날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의 會議錄을 印刷體制로 統一시키는 기틀을 잡게 된 것이다.

다음 養成機關으로서는 從來의 民議院內에 있는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가 繼續 後進의 輩出을 爲하여 教育을 하고 있었고 參議院內에는 아직 設立을 보지 못하였다.

民·參兩院에 勤務한 速記士의 名單은 다음과 같으며 在職速記士의 平均年令은 民議院은 25.1歲 參議院은 24.4歲이며 出身速記法式別로 보면 民議院에 있어서는 逸波式 48 高麗式 8, 서울式 1이고 參議院에 있어서는 逸波式 33, 高麗式 7, 東邦式 1, 中央式 1, 서울式 1의 比率로 變하였다.

民 議 院

鄭源道	張惠根	李圭洪	金宗弘	李柱範	尹炳高	楊佑鎮	宋貞浩	金允洙
徐萬福	金仁寧	金百坤	鄭秉淑	金明純	尹在彬	韓弘男	白廷鉉	金宗煥
崔明淑	李玟煥	李永實	崔龍夏	金永善	金永浩	朴保和	李相烈	梁基興
徐秉運	河大煥	全海成	趙東植	吳聖均	朴明愛	鄭應采	金福振	金永熙
元光淵	楊澈在	金謙善	李瓏熙	崔承默	金允東	楊國鎮	李康允	李潤和
權昌茂	朴光澤	金謹泰	李庚萬	金基芳	金東雲	金鍾翰	孫相龍	李龍洙
朴貞植	徐平吉	金英姬	徐長玉					

參議院

李東淳 盧元鎬 韓奉永 安仁榮 崔英泰 朴貴順 尹壽鉉 崔慶重 李東一
孫弘基 金泰宜 姜萬根 朴殷煥 金鍾壽 申世華 尹炳直 閔丙高 黃圭鎮
金顯祐 柳智永 崔孝燮 尹應遠 宋基勲 金炳煥 全永國 任哲淳 金貞淑
鄭允模 沈鉉洙 崔鎮洙 鄭用大 宋基喆 金秀旼 李滿子 洪鍾才 李大春
林偉相 金世卿 韓鍾烈 李起同 宋博文 朴萬基 金定子

1961年 5月 16日 革命이 일어나자 民·參兩院이 解散됨에 따라 速記士들
은 흐려졌고 當時 國家再建最高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기 위하여 4名의 速
記士가 速記業務를 遂行하였다.

그後 1962年 4月에 7名의 速記士를 補強하여 民政移讓時까지 勤務케 하
였다.

國家再建最高會議에는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의 會議體가 있었으며 當時
速記士가 遂行한 業務는 다음과 같다.

- ①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의 速記錄作成
 - ② 各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速記錄作成
 - ③ 最高會議 및 內閣連席會議의 經濟動向報告의 速記錄作成
 - ④ 國政監査 速記錄作成
 - ⑤ 各種 公聽會 및 座談會等의 速記錄作成
 - ⑥ 第5代國會(民·參兩院)의 速記錄製本 等이다.
- 韓國軍事革命史에 依하여 上記한 速記錄作成의 業務處理 現況을 年度別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61年度 開議回數 161 速記時間 497時間 34分 平均時間 3時間 5分
 - ② 1962 年 開議回數 431 速記時間 1621時間 2分 平均時間 3時間 32分
 - ③ 1963 年 開議回數 184 速記時間 185時間 42分 平均時間 2時間 18分
- 上記한 바에 依하여 速記士는 平均 3時間의 速記業務를 擔當한 結果가 지
더 이것을 算出하는 時間을 算出하면 그 業務가 幅變하였음을 알 수 있다.

特記한 일은 當時 民·參兩議院 速記錄의 未製本된 部分을 整理하고 區分

하여 保存用으로서 20部씩 製本, 確保하여 두었던 것이다.

— 초출리 取扱하였던들 6.25動亂時의 缺號와 같이 記錄保存이 中斷될번 하였다. 國家再建最高會議 初期부터 1963年 12月 17日 民政移讓直前까지 速記業務에 從事하였던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初創期에 軍人으로서 申彥植, 黃善明, 崔光錫, 朴大赫, 李炳雲, 崔次吉, 李宗燮 등이 勤務하였으며 그後 申彥植氏가 速記係責任者로 就任하여 李炳雲, 崔光錫, 朴大赫等 4名이 速記業務를 擔當하였다.

그러다가 業務의 幅鑿로 速記士를 募集하여 李柱範, 李東一, 白廷鉉, 崔孝燮, 崔明淑, 李玟煥, 崔錫模 등이 採用되어 1962年 4月 부터 勤務하였고 1963年 봄에 白廷鉉의 退職으로 徐皓正이 새로 採用되어 上記 11名의 速記士가 民政移讓時까지 速記業務를 遂行하였다.

第4節 6代國會以後

民政移讓에 앞서 國會法이 改正되면서 5代國會까지의 本會議 中心制度를 常任委員會 中心制度로 바꾸었으며 表決方法等 여러가지點을 改正하였다.

따라서 12個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業務量이 大幅 增加하게 됨으로써 速記士가 급격히 必要하게 되어 內閣事務處에서는 公開募集銓衡試驗을 施行하여 1963年 12月에 韓鍾烈, 高太仲, 徐萬福, 申昌秀, 柳智永, 蔡康熙, 趙隅石, 黃寅河, 金謙善, 金熙子, 李德九, 金鍾翰, 朱良順, 徐平吉, 鄭宇鎔, 盧承英, 高在欽, 錢石根, 權昌茂, 徐吉泉, 金基英, 金敬萬, 崔滉, 朴光澤, 柳慶淑, 任哲淳, 姜宗遠, 李龍洙, 鄭晶子, 田興福, 李滿子, 崔秉秀, 崔龍夏, 盧莊愚, 趙東植, 戒千永, 金東雲, 金永春, 李起同, 鄭明吉, 宋基結, 林來炫, 金英姬, 高用培, 金永善, 金善模, 徐在錫等 47名이 新規로 採用되었고 最高會議로 부터 넘어 온 9名(朴大赫 退職, 李炳雲 他課轉籍)을 합하여 56名의 速記士를 確保하였다.

出身速記法式別로 보면 逸派式 25名, 高麗式 21名, 東邦式 8名 韓國式 2名의 分布이며 速記係는 4係로서 申彦植 崔孝燮 李東一 金永善이 係長으로서 補職되었다.

64年 4월에 金仁寧 金福振 閔丙高 金永熙 崔藹重 同年 6월에 河大煥 同年 8월에 沈絃洙가 軍服務關係로 늦게 發令을 받았고 65年 2月에는 金允洙, 金鍾壽, 申世華, 全海成, 崔鎭洙, 楊國鎭, 楊澈在, 鄭允模, 梁源龍, 宋博文, 朴萬基, 朴永植, 金善弼等이 새로 增員 採用되었다.

同年 3월에 金鎭基, 安仁榮이 復職되면서 係編成을 金鎭基, 安仁榮, 崔孝燮, 李東一順으로 4係長을 補職하였다.

65年 8월에 尹炳直, 孫弘基 66年 3月 朴保和, 徐秉運이 採用되었고 67年 2월에 崔福任, 李相鎬, 鄭應采, 宋鍾學, 朴冥植, 姜瑞弘等이 採用되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速記가 國際會議에 進出하게 된 事實을 記述하였거니와 우리나라의 速記士가 大舉 國際會議에 參加하여 活動한것은 1966年 9月 2日 서부터 9月 7日까지 6日間 우리나라 서울 「워커 힐」에서 第2次 APU(亞細亞 國會議員聯盟)總會가 開催됨에 따라 APU憲章 第10條Ⅱ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據 16名의 國會速記士들이 同聯盟 事務局의 一員으로 參加하였던 事實이다.

여기에서의 우리말 速記士의 任務는 各國代表들의 發言을 同時通譯에 의하여 우리말로 翻譯發言된 內容을 速記하는 것이었다.

當時 이일의 完全遂行을 위하여 16名의 速記士들은 낮에는 會議에 參席하여 記錄하고 夜間에 밤을 지새우며 翌日會議閉會前에 前次 速記錄을 各國代表에게 配付하여 우리나라 速記의 眞面目을 國內外에 들어내 國威를 宣揚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從來 國會速記士들의 主된 業務가 國會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의 會議錄作成이였으나 國會事務局職制 第6條 5項 2號「速記에 관한 事項」에 依據 國會主管의 各種 公聽會 「세미나」等 速記의 業務도 多樣하게 그 幅이 넓어지게 되었다.

67年 3월에 鄭源道가 復職되면서 係編成을 6個係로 改編하였는데 金鎭基,

鄭源道, 安仁榮, 崔孝燮, 李東一, 金永善의 願으로 係長에 補職되었다.

67年 7月에 다시 申熙東, 李燦鎔, 金秀收, 金源柱, 李潤和, 梁和子, 金泰元, 崔松燮, 廉德薰 9名이 新規採用 되었다.

그러나 數年內의 情勢에 依하여 速記界는 沈滯狀態가 深奧해 甚에 따라 그의 打開策으로서 後輩養成이 先決問題로 되어 當時 事務處 權孝燮議事局長의 指導아래 國會內에 養成機關을 復活 設置키로 推進하여 68年 2月 國會速記士養成所 第1期生을 1, 2班 各 30名을 募集하여 1班은 逸波法式, 2班은 高麗法式을 教授키로 하였고 所長에는 權孝燮議事局長, 副所長에는 劉龍珪速記課長, 敎務主任에는 金鎮基 速記係長이 赴任하고 速記敎授陣은 1班을 安仁榮, 李東一, 金永善이 2班은 崔鎮洙, 金敬萬, 鄭宇鎔이 擔當하였다. 또한 同養成所에서는 現存 速記法式 7, 8個를 比較研究하여 各法式의 優秀한 面을 採擇調和하여 새로운 速記法을 創案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速記當務者 및 關心이 많은 分들에 依하여 오랫동안 論議構想되어오다가 權孝燮議事局長(養成所長) 劉龍珪副所長, 養成所關係者의 努力으로 1968年 5月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內規를 事務總長의 決裁를 얻어 發効하게 되었다. 委員長에는 養成所長, 副委員長에는 副所長, 委員에는 金鎮基(幹事) 鄭源道(幹事) 安仁榮, 李東一金永善, 鄭宇鎔, 崔鎮洙, 金敬萬, 李龍洙가 各各 委嘱되었고 後에 崔錫模가 補强되었다.

研究의 對象으로 資料를 蒐集한 것은 國內 實用速記法式 全部와 日本參議院速記者養成所敎本 早稻田式速記講義錄·美「그레그」式速記法等 많은 外國의 速記法式을 調査하였으며 基本文字의 線을 幾何線으로 採擇하여 數10次의 研究委員會를 거듭하면서 眞摯하게 研究檢討하여 豫定日程대로 作業이 進行되었다.

68年 7月(67年 11月 崔孝燮 退職) 李東一, 金永善, 崔錫模가 事務官으로 昇進되면서 係長의 變動이 있어 4係長에 李東一 5係長 金永善 6係長에 崔錫模가 補職되었으며 庶務에는 金仁宰, 錄音에 崔英泰 그외에 새로이 資料調査와 統計蒐集의 必要性에 依하여 擔當者를 따로이 두기로 하여 錢石根이 그職을 맡기로 하였다.

韓國速記士總數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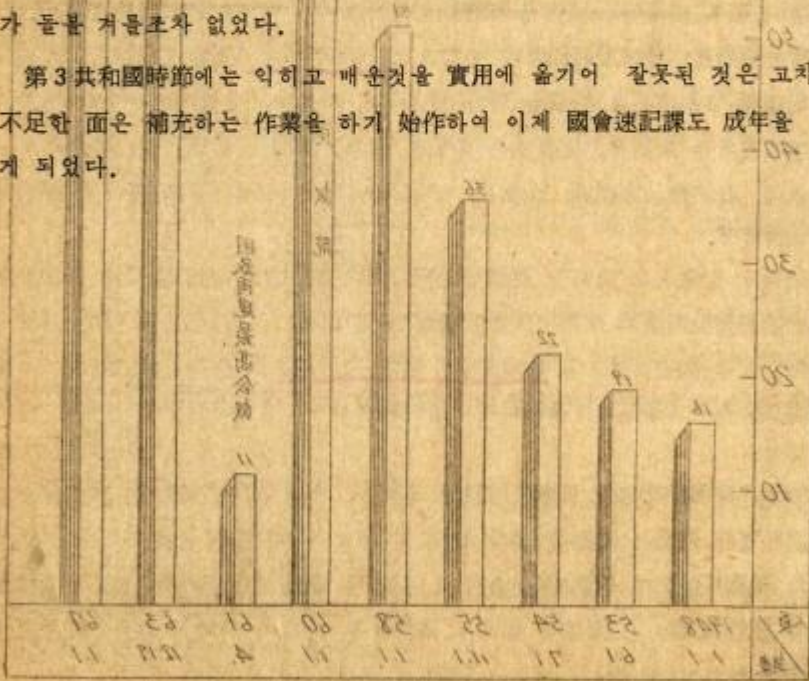
議會速記法式的創案을 1次의으로 끝내고 69年 3月 第2期生부터 授業하게 되었으며 速記講師陣의 變動은 崔鎮洙가 退任하고 李龍洙가 赴任하였다.

69年 6月에 새로이 高隆繁, 玄柄高, 朴大成, 金致元, 河良培, 李永烈, 金根鎭이 新規로 任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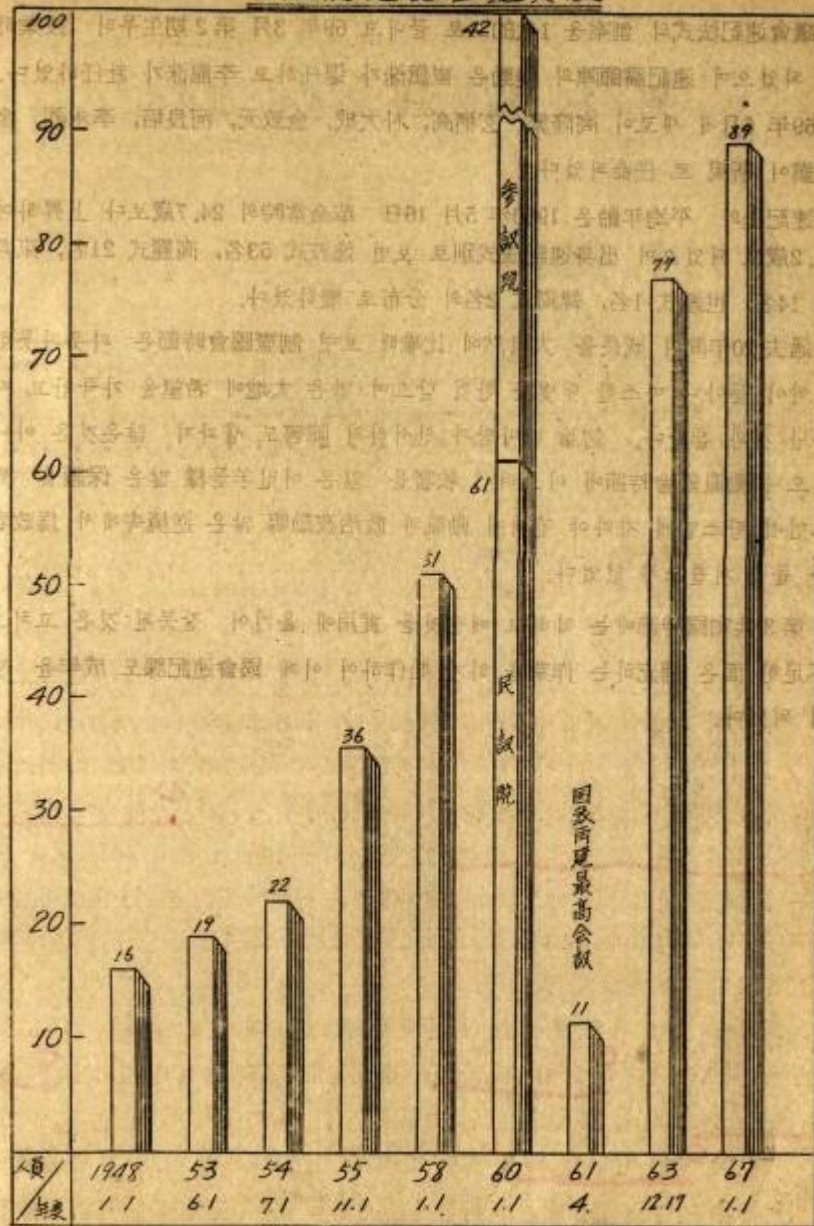
速記士의 平均年齡은 1960年 5月 16日 革命當時의 24.7歲보다 上昇하여 31.2歲로 되었으며 出身速記法式別로 보면 逸波式 53名, 高麗式 21名, 東邦式 14名, 世鍾式 1名, 韓國式 2名의 分布로 變하였다.

過去 20年間의 成長을 大自然에 比喻해 보면 制憲國會時節은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어나 따스한 햇빛을 한껏 받으며 넓은 大地에 希望을 가득안고 자라난 것과 같았다. 勿論 비바람과 찬서리의 障害도 생각지 않은것은 아니었으나 動亂國會時節에 이르러선 牧者를 잃은 어린양들樣 많은 保護를 받으면서 탐스럽게 자라야 될때에 動亂과 政治波動等 많은 逆境속에서 爲政者가 들분 겨를조차 없었다.

第3共和國時節에는 익히고 배운것을 實用에 옮기어 잘못된 것은 고치고 不足한 面은 補充하는 作業을 하기 始作하여 이제 國會速記課도 成年을 맞게 되었다.



年度別速記士定員表



第 2 章 議會速記法式的 創案

第 1 節 創案의 意義

오늘날 우리나라 速記界의 現實情은 速記士의 供給이 實需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速記가 長期間의 研修를 必要로 하는 高度의 技術에 그 習得希望者가 매우 적으며 그 結果 民間養成機關의 維持가 困難하여 大部分의 養成機關이 門을 닫게 됨에 速記士의 養成 輩出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國會速記士의 離職으로 인한 補充이 不可能해 짐에 따라 速記士의 養成이 時急한 문제로 擡頭되어 1968年 2月 3日 國會事務處內에 國費로 養成하는 國會速記士養成所를 設立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現存 國內速記法式中에서 어느 速記法式을 採擇하여 教授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던바, 初年度에는 現在 國會에 가장 많은 數의 速記士를 進出시키고 있는 逸波法式과 高麗法式 이 2個 法式을 採擇하여 1個學級씩 教授함과 同時에 이와 並行하여 새로운 우리나라 議會에 알맞는 獨自的인 速記法式을 創案하여 第2次年度부터 이 議會速記法式을 採擇하여 教授하기로 決定하고 그의 研究作業을 위하여 國會速記士養成所內에 1968年 5月 20日附로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가 設置되어 8人의 研究委員이 研究作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外國에서는 速記의 活用分野를 세 가지 分野로 區分하여 첫째 議會, 法院, 演說등을 주로 다루는 會議用 速記分野와 事業書翰 秘書職 등에서 利用되는 業務用 速記分野 그리고 個人書翰 演說文案作成 「메모」 講義時의 「노트」 등 生活에 쓰이는 個人用 速記分野 등으로 그 執務分野를 따라 速記法式이 區分되나 우리나라의 既存 速記法式은 이러한 執務分野를 勘案, 區分해서 考案된 速記

法式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專門分野의 業務 한가지만을 다루는 데는 研修上에 不必要한 時間 및 勞力의 浪費와 執務時의 不便의 적지않은 것이다.

또한 文化가 發達하고 사람의 頭腦가 發達할수록 사람의 發言速度는 점점 加速化되어 빨라지는 傾向을 띄우게 되는데 既存 速記法式을 가지고는 加速化하는 發言速度에 對處할 수 없음이 豫見되므로 議會에서 專門으로 쓰여질 수 있으며 또한 점점 加速化하는 發言速度에 對應하여 빠른 速度下에서도 記錄이 가능한 새로운 速記法式을 創案하기에 이르렀다.

1968. 5. 20 設置된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의 內規는 아래와 같다.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內規 (1968. 5. 20 總長決裁)

第1條 (目的) 議會速記法式의 制定과 速記學 및 速記技術向上에 관한 研究를 하기 위하여 國會速記士養成所(以下 "養成所"라 한다)에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副委員長 1人 및 委員 若干名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養成所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養成所副所長이 된다.

③委員은 國會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委屬한다.

④委員會에 諮問委員을 若干名 두며 國會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委屬한다.

⑤委員長은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斯界의 權威者를 參考委員으로 招聘할 수 있다.

第3條 (職務) ①委員長은 會務를 掌理하여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여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4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研究한다.

1. 議會速記法式의 制定 및 改良向上에 관한 事項
2. 速記學研究에 관한 事項
3. 기타 速記技術向上 및 速記業務改善에 관한 事項

第5條 (研究對象) 委員會에서 統合 研究할 速記法의 對象은 養成所의 教授法式으로 한다.

第6條 (會議) ①委員會의會議는委員長이 필요하다고認定할 때 이를召集한다.

②委員會의會議는委員 3分の2 이상의出席으로開議하고出席委員 3分の2 이상의贊成으로議決한다.

第7條 (幹事) ①委員會의庶務를處理하기 위하여幹事 2人을 둔다.

②幹事は委員中에서委員長이委屬한다.

附 則

이內規는 1968年 5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節 研究過程

가. 基礎調査

速記가 人間의 音聲에 의한 言語의 表現을 文字에 의한 言語의 表記로 바꾸는 活動의 總稱이라고 한것은 前述한바 있거니와 音聲에 의한 多樣한 言語의 表現과 數많은 文字를 研究하고 理解하지 못하면 새로운 速記法式의 創案이란 어려운 것으로 短時間內에 可能的限 많은 文字를 筆記할 수 있도록 研究 考案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現在 各國의 速記文字를 部分的으로 解體하여 보면 點 또는 線으로 構成되어있는게 이는 大部分의 速記法式이 現代速記의 始祖인 「이삭·윌트맥」式에 根據를 두게된 所以라고 하겠다.

먼저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는 議會速記法式의 創案의 基礎調査에 着手하여 그 基礎調査로서 音節과 單語의 廣範圍한 調査를 實施하였고 또한 可能的 符號와 結合符號의 相對的인 便宜性에 관한것, 그리고 筆記에 관한 經驗的 資料를 蒐集하였다. 實際로 既存速記法式들은 단순히 文敎部에서 調査發

표한 音字의 頻度數調査資料에 依存하여 研究創案되어 온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이는 너무 오래전의 資料이며 또한 主된 調査對象이 各級學校의 教科書를 中心으로 한 頻度調査이기 때문에 (教科書50%, 一般刊行物 50%) 議會演說을 주로 다루는 議會用速記法式으로는 不充分하다. 當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에서는 基本文字의 制定에 先行하여 文敎부의 音字頻度 統計表 및 語彙頻度 統計表 및 首都女子師範大學講師 徐廷國氏가 國語教材를 中心으로 最近 調査研究한 各種 統計와 議會速記法式으로서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國會會議錄을 對象으로 다시 子音과 母音 및 받침의 頻度を 調査하였다.

研究委員會에서 蒐集한 各種 統計와 獨自의으로 調査한 우리말의 音字, 子音, 母音 그리고 받침의 統計는 다음과 같다.

音字 頻度 統計表 (文敎部 調査)

子音 \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7086	32	4389	1044	5754	336	1768	32	3287	2569
ㄴ	4047	90	617	372	1143	11	435	1	5831	6
ㄷ	8605	—	1764	3	4609	—	815	2	2349	197
ㄹ	3692	200	1935	849	2594	51	160	123	2909	1984
ㄴ	4621	—	613	1606	1246	17	2374	—	204	691
ㅁ	3128	8	706	594	1674	—	1941	2	47	609
ㅂ	4523	3	4526	96	1558	31	1309	—	874	2966
ㅅ	3828	1195	9308	2625	2530	1148	3068	454	8376	12506
ㅇ	3130	—	3194	204	1429	55	1511	—	184	4722
ㅈ	803	—	722	124	307	—	409	—	38	1026
ㅊ	63	—	40	59	119	—	8	—	253	127
ㅋ	570	—	390	—	355	—	75	—	236	6
ㆁ	453	—	99	359	150	141	362	19	69	296
ㅇ	9616	108	243	363	1029	111	232	31	378	481

子母音別 頻度 統計表 (文敎部 調査)

子音	頻度 數	順位	母音	頻度 數	順位
ㄱ	26297	2	ㅏ	54165	1
ㄴ	14716	5	ㅑ	1636	9
ㄷ	18344	3	ㅓ	28541	3
ㄹ	14497	6	ㅕ	8298	7
ㄴ	11372	9	ㅗ	24497	5
ㅁ	8709	10	ㅛ	1901	8
ㅂ	15886	4	ㅜ	14467	6
ㅅ	45033	1	ㅠ	664	10
ㅇ	14429	7	ㅡ	25035	4
ㅈ	3429	11	ㅣ	30349	2
ㅊ	669	14			
ㅋ	1632	13			
ㆁ	1948	12			
ㅇ	12592	8			

子音頻度統計 (서정국 調査)

(1968年 現在)

子音 音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ㅇ	
1 音節	349	157	178	3	190	203	224	375	242	80	14	32	48	121	43	57	132	9
2 "	182	85	358	295	102	69	185	278	180	74	6	27	33	118	36	11	91	24
3 "	65	38	353	72	23	17	28	68	60	13	7	8	3	151	6	2	—	3
4 "	7	7	302	18	4	6	3	21	15	1	—	—	—	12	3	—	—	—
計	603	287	1191	388	319	295	440	742	497	168	27	67	84	402	88	70	225	36
順位	3	10	1	7	8	9	5	2	4	11	18	15	13	6	12	14	19	17

母音頻度統計 (서정국 調査)

(1968年 現在)

母音 音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ㅠ	ㅡ	ㅣ				
1 音節	622	146	14	2274	41	104	12325	36	3	21	17240	9	2	37	9	148	1588				
2 "	639	80	15	—	190	34	85	12140	20	1	7	23215	18	—	7	10181	805				
3 "	552	15	3	—	43	8	5	—	51	6	—	10	2	25	5	—	36	—			
4 "	325	1	—	—	4	—	1	15	—	—	1	—	4	—	—	—	5	241			
計	2138	242	32	2511	83	195	25531	62	4	39	42484	32	2	47	19370	2594	—				
順位	1	7	14	20	4	9	8	16	3	10	19	13	12	5	14	20	11	18	6	16	2

받침頻度統計 (서정국 調査)

(1968年 現在)

받침 音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1 音節	148	319	18	223	123	45	56	210	22	14	—	15	17	22	—	—
2 "	132	163	2	144	99	51	44	173	4	6	—	5	3	14	—	—
3 "	21	19	1	26	22	12	4	15	1	1	—	1	—	4	—	—
4 "	3	3	—	2	3	2	1	3	—	—	—	—	—	—	—	—
計	304	504	21	395	247	110	105	401	27	21	—	21	20	10	—	—
順位	4	1	10	3	5	6	7	2	9	10	14	10	13	8	—	—

品詞別頻度 (서정국 調査)

(1968年 現在)

品	詞	頻度	順位
名	詞	1185	1
代	名	27	6
數	詞	17	8
動	詞	657	2
形	詞	186	4
冠	詞	38	5
副	詞	234	3
感	嘆	21	7

音字頻度統計 (研究委員會調査)

(1968年 現在)

子音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ㄱ	342	279	79	372	21	205	11	219	148	6	101	31	35	92	2	—
ㄴ	122	32	14	7	12	—	7	1	399	179	23	1	—	1	—	—
ㄷ	349	—	35	—	179	—	6	—	59	5	164	43	—	62	—	—
ㄹ	89	7	162	35	97	4	8	9	70	77	21	—	2	1	—	—
ㅁ	157	—	17	80	37	1	136	—	—	87	2	1	—	—	4	—
ㅂ	116	—	64	25	77	—	210	—	—	20	11	1	—	—	1	—
ㅅ	174	—	260	2	44	—	33	—	42	223	31	23	—	2	—	2
ㅇ	178	58	184	132	53	93	82	27	433	693	14	379	36	20	37	21
ㅈ	174	—	359	2	37	—	99	—	12	288	42	107	—	—	1	1
ㅊ	44	—	38	1	25	—	11	—	3	82	16	11	—	—	—	5
ㅋ	3	—	1	4	2	—	—	—	7	7	—	10	—	—	—	—
ㆁ	9	—	5	—	29	—	7	—	23	—	17	—	9	—	—	—
ㅅ	25	—	—	6	4	16	6	—	5	7	—	4	6	—	—	—
ㅇ	576	5	32	24	18	1	5	—	—	33	194	—	—	68	24	—

研究委員會調査
(1968年 現在)

逸波式資料
(1966年 現在)

子音頻度統計			母音頻度統計			子音頻度統計			母音頻度統計		
子音	頻度數	順位	母音	頻度數	順位	子音	頻度數	順位	母音	頻度數	順位
ㄱ	1936	2	ㅏ	2358	1	ㄱ	303353	2	ㅏ	46242	1
ㄴ	798	7	ㅑ	102	14	ㄴ	132914	6	ㅑ	1585	14
ㄷ	910	5	ㅓ	1450	3	ㄷ	163840	3	ㅓ	20646	4
ㄹ	582	8	ㅕ	397	9	ㄹ	59742	10	ㅕ	7661	8
ㅁ	522	10	ㅗ	384	5	ㅁ	119579	8	ㅗ	20207	5
ㅂ	525	9	ㅛ	136	13	ㅂ	115414	9	ㅛ	1850	12
ㅅ	836	6	ㅜ	815	6	ㅅ	155515	4	ㅜ	12603	6
ㅇ	2788	1	ㅠ	48	17	ㅇ	733800	1	ㅠ	706	17
ㅈ	1122	3	ㅡ	1272	4	ㅈ	148081	5	ㅡ	25004	3
ㅊ	236	11	ㅣ	1849	2	ㅊ	39878	11	ㅣ	30209	2
ㅋ	34	14	ㅈ	541	8	ㅋ	6463	14	ㅈ	7033	9
ㆁ	99	99	ㅊ	690	7	ㆁ	15095	13	ㅊ	8676	7
ㅇ	79	13	ㅋ	75	15	ㅇ	23364	12	ㅋ	562	18
ㅎ	984	4	ㅌ	188	10	ㅎ	120433	7	ㅌ	1710	13
			ㅍ	156	12				ㅍ	2587	11
			ㅍ	27	18				ㅍ	868	16
			ㅍ	63	16				ㅍ	987	15
			ㅍ	187	11				ㅍ	3088	10

발침頻度調査對比

文 教 部			逸 波 式		研 究 委 員 會	
子 音	頻 度 率	順 位	頻 度 數	順 位	頻 度 數	順 位
ㄱ	15.0%	2	7556	4	471	5
ㄴ	3.5"	10	25444	1	2029	1
ㄷ	7.0"	7	470	10		
ㄹ	0.4"	14	18137	2	922	2
ㅁ	6.2"	8	6243	5	306	6
ㅂ	9.4"	5	2820	7	296	7
ㅅ	13.0"	3	3504	6	509	4
ㅇ	16.0"	1	9905	3	730	3
ㅈ	12.3"	4	372	12		
ㅊ	5.3"	9	283	13		

발침에 있어 類似音聲群은 統合하여 上記 7種으로 縮

ㄱ	0.5%	13	1	14	小調査하였음
ㄷ	1.9"	12	1035	9	
ㄹ	2.6"	11	412	11	
ㄴ	7.2"	16	1039	8	

各資料頻度順位別對比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ㅁ	ㅂ	ㅅ	ㅇ
文 教 部	2	5	3	6	9	10	4	1	7	11	14	13	12	8				
서 정 국	3	10	1	7	8	9	5	2	4	11	18	15	13	6	12	14	19	16
逸 波 式	2	6	3	10	8	9	4	1	5	11	14	13	12	7				
研 究 委	2	7	5	8	10	9	6	1	3	11	14	12	13	4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文 教 部	1	9	3	7	5	8	6	10	4	2								
서 정 국	1	14	4	8	3	12	5	18	6	2	7	9	16	13	10	14	11	16
逸 波 式	1	14	4	8	5	12	6	17	3	2	9	7	18	13	11	16	15	10
研 究 委	1	14	3	9	5	13	6	17	4	2	8	7	15	10	12	18	16	11

발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ㄹ	ㅁ	ㅂ	ㅅ	ㅇ
文 教 部	2	10	7	14	8	5	3	1	4	9	13	12	11	6				
서 정 국	4	1	10	3	5	6	7	2	9	10	14	10	13	8				
逸 波 式	4	1	10	2	5	7	6	3	12	13	14	9	11	8				
研 究 委	5	1		2	6	7	4	3										

前記 徐延國氏의 調査研究의 分析結果는 子音에 있어 「ㄷ」이 一音節에서는 7位이나 綜合順位가 1位인 것은 우리말의 用言의 基本型이 「다」로 끝나는데 緣由하며 「ㄹ」은 一音節에서는 19位로 最下位이나 2音節以下에서는 2~7位를 차지하여 綜合順位가 7位인데 이는 우리民族의 性情과 옛부터 「ㄹ」音을 愛用한데 緣由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ㅇ」이 一音節에서 1位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音節字는 母音으로 시작하는 率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 母音에 있어서 「ㅏ」가 1位로서 全體의 37%를 차지한 것은 우리말에 있어 「ㅏ」가 母音의 代表音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리고 單母音이 複母

쪽의 10배를 넘고 있음도 아울러 發見될 수 있다.

발침에 있어서의 1位는 「ㄴ」이며 발침에는 1音節에서 많이 使用되고있다. 또한 研究委員會에서 調査한 音字頻度에 의한 順位와 文敎部資料인 「音字頻度統計表」에 의한 順位와 大體로 類似하나 「자」行과 「하」行에 있어 文敎部の 資料에 比하여 研究委員會의 資料가 優位에 있음을 發見하게 된것이다. (參照:音字頻度統計)

나. 線의 決定

다음 速記法式의 成敗를 평가할 수 있는 基本三大要素를 아래의 같이 要約할 수 있으니.

첫째 音聲에 의한 言語의 表現이 速度如何를 不拘하고 記錄이 可能할 것.

둘째 速記한 然後에 그 速記文字로서 錯誤없이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셋째 速記文字를 쉽게 記憶하여 習得과 使用이 容易한 것.

以上 세가지로 區分하여 要約될 수 있는바, 이 세가지는 서로가 相反되며, 相關關係를 갖게 되는 것으로 筆記의 速度를 올리기 위하여 쓰기 쉽고 간단한 線으로 하였을 때 똑같거나 類似한 形態의 線이 많아지게 되는 結果 記憶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速記한 然後에 그것을 다시 읽기 쉽게 하기위하여 各己 特徵이 있는 形態의 線을 만들것 같으면 線의 數가 많아지고 複雜하여 쓰기가 어렵고 研修時나 實務時에 記憶하기가 어렵다.

그와 反對로 記憶하기가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體系있는 線을 必要로 하나 言語의 樣態가 體系있고 正確히 整理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體系있게 線을 만들려니 線에 無理가 생겨 쓰기 어렵고 읽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言語와 線에 대한 研究가 必然的으로 行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研究委員會에서는 現存 國內速記法式(逸波, 高麗, 東邦, 世鍾, 韓國 서울등) 및 外國의 速記法式등(日本의 早稻田, 中根, 參議院速記士養成所 美國의 「핏트먼」 및 「그레그」式등) 29個의 基本文字資料를 土臺로 可能한 線을 調査하였다. 參考한 各速記法式別 基本文字는 本章第4節에 掲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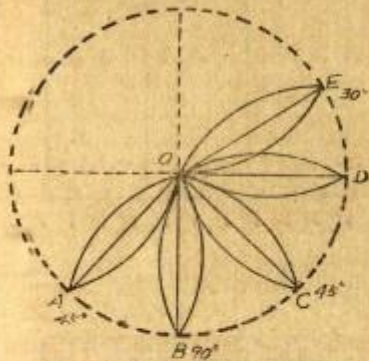
저기에서 얻어진 結論은 記錄possible 線은 오르지 直線과 單純曲線의 半月

形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研究委員會로서는 基本文字의 線을 正圓派(幾何線)로 採擇하고 다음과 같은 原理圖를 作成함으로써 記錄可能한 15個線의 確定을 보게 되었다. (參照: 173頁)

다. 子音의 決定

原 理 圖



線의 決定이 이루어진 다음段階의 作業이 子音의 決定으로써 原理圖에 나온 記錄可能한 15個의 各線을 우리말의 子音에 配列하는 線의 配列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過去 10餘年間 研究委員들의 實務한 經驗에 의한다면 既存 國內 各速記法式的 線의 配列이 現實에 맞지않다는 事實을 發見하게되어 研究委員會에서는 現職 國會速記士 全員을 對象으로 다시 새로이 記錄便宜한 線을 分類하기 위한 調査를 實施하여 各線의 記錄便宜度를 測定하였는데 이는 記錄便宜한 線에 頻度數가 많은 子音을 擇하기 위한 것이었다. 研究委員會에서 國會速記士를 對象으로 測定한 記錄이 便한 線의 調査統計와 研究委員會에서 確定한 線의 等級은 아래와 같다.

各線의 記錄便宜等級 分類 (速記課調査)

1968年 現在

割線	等級			割線	等級		
	A 級	B 級	C 級		A 級	B 級	C 級
	35	6	3		12	20	12
	34	8	2		8	18	18
	28	10	6		9	16	19
	25	15	4		12	12	20
	21	20	4		6	15	23
	6	24	14		8	7	29
	8	23	13		4	2	38
	4	21	19				

註 A級은 가장 便宜한 線이며 B級은 보통 C級은 不便한 線을 말한다.

各線의 記錄便宜等級 分類 (研究委員會調查)

1968年 現在

劃線	等級	A 級	B 級	C 級	劃線	等級	A 級	B 級	C 級
—		4		2	↘		3	1	2
↘		5		1	—			2	4
↗		6			↗		1	3	2
↖			2	4	↖		5	1	3
↙		5		1	↙			3	3
↘↗			6		↘↗		1	3	2
↗↘			6		↗↘				6
↖↗		2	4						

註 A級은 가장 便利한線 B級은 보통 C級은 不便한線

各線의 記錄便宜等級分類 (研究委員會)

等級	方向說明	線의方向	方向說明	線의方向	方向說明	線의方向
1級	OA의直線	↙	OD의直線	→		
2級	OD의上曲線	↘	OA의下曲線	↙	OD의下曲線	↗
3級	OA의上曲線	↗	OB의右曲線	↘	OE의下曲線	↖
4級	OE의直線	↖	OC의上曲線	↗	OE의上曲線	↘
5級	OC의下曲線	↘	OB의垂直線	↓		
6級	OC의直線	↙	OB의左曲線	↖		

註 (原理圖參照)

研究委員會에서 諸統計를 綜合分析하여 確定시킨 것임.

以上에서 確定된 線의 等級에다 基礎資料로 蒐集調査한 音字 및 子音 頻度 統計에 의한 配列을 함으로써 子音의 確定을 보게되는 것인즉 다음으로는 子音의 數를 먼저 確定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言語現象이 複雜할수록 그나라 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多樣하고 文字의 構成과 使用에 따라 速記文字의 構成도 多大한 影響을 받는 것이다.

徐廷國氏가 研究調査한 우리말의 子音에 있어서 音聲學上으로 본 頻度は

아래와 같다.

聲門縮少度別頻度

分類	子音	頻度數			順位
		語頭	語中	計	
平音	ㅂ, ㄷ, ㄴ, ㅅ, ㄱ	89	128	217	1
濁音	ㅃ, ㄸ, ㄹ, ㅆ, ㄺ	44	55	99	2
激音	ㅈ, ㅊ, ㅌ, ㅍ, ㅎ	21	9	30	3
硬音	ㅊ, ㅌ, ㅍ, ㅍ, ㅍ	13	9	22	4

이 資料에 의하면 平음이 1位로 제일 많이 使用되고 다음 濁音 激音 硬音의 順位이며 激音 硬音은 使用도가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上記한 資料와 分析結果에 있어서 擡頭되는 것이 現用 19個의 子音中 速記學上 表語說에 의하여 兼用 가능한 것을 結合시키는 문제이다.

그러하여 使用도가 아주 낮은 激音과 硬音中에서 가능한 子音은 平音에 兼用하도록하여 「ㄱ, (ㄱ, ㅋ) ㄴ, ㄷ,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ㅉ) ㅊ, ㅌ, ㅎ」의 12種으로 子音의 數를 縮少兼用하게 되었다. 우선 子音의 數를 12個로 縮少兼用함으로써 앞서 決定된 15個 記錄 가능한 線中 記錄便宜等級에 따라 頻度數가 많은 子音順으로 配列하여 다음과같이 子音의 確定을 보게 되었다.

確定된 子音의 線 (研究委員會)

子音	線의 方向	方向 說明	子音	線의 方向	方向 說明
ㄱ(ㄱ ㅋ)	↙	OA의 直線	ㅅ(ㅆ)	↘	OD의 上曲線
ㄴ	→	OD의 下曲線	ㅈ(ㅉ)	↙	OA의 下曲線
ㄷ(ㄷ ㄸ)	→	OD의 直線	ㅊ	↘	OC의 上曲線
ㄹ	↙	OA의 上曲線	ㅌ	↘	OC의 下曲線
ㅁ	↗	OE의 下曲線	ㅍ	↘	OB의 右曲線
ㅂ(ㅃ)	↗	OE의 直線			

※ 子音「ㅇ」은 頻度數가 가장 많아 特定한 線을 配定하지 않고 各字마다 記錄容易한 文字를 賦與하였음.

라. 母音의 決定

子音의 決定에 이어 研究委員會는 母音의 選定作業에 들어가 前述한 母音 頻度調査에 대한 研究와 論議를 거듭하였다. 여기에서 先行하여 可能的 速記文字上에 있어서의 母音의 數와 길이와 그 形態를 如何히 할 것인가를 爲하여 國內 各法式別 資料를 調査한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法式別 母音文字 形態의 比較

(1968年 現在)

法 式	逸波式	高麗式	東邦式	서울式	世鐘式	韓國式
母音의 數	9	8	10	6	12	15
母音의 길이	5, 10, 15	5, 10, 20	5, 10, 15	4, 8, 10	3, 9, 12	2, 4, 8, 15
母音의 形態	字尾에 大小圓 角, 갈고리	字尾에 大小圓 橢圓	細太線 字頭에 갈고리	單線	字尾에 大小圓 逆大小圓	字頭, 字尾에 角 또는 字頭에 大小圓

위의 資料에 의하듯이 各法式의 母音의 數와 길이가 各樣 各色으로 8 乃至 15種에 2mm 乃至 20mm까지의 길이와 形態에 있어서도 字頭나 字尾에 大·小圓, 橢圓과 角, 갈고리, 細線, 太線, 直線, 曲線等 多樣한바 있으나 오랫동안 實務한바의 經驗으로 비추어 母音의 數를 可及的 줄이고 高速度下에서는 筆記速度를 높이기 爲하여 文字의 길이를 縮少시키는 것이 妥當하다는 結論을 얻어 4mm, 8mm, 12mm, 3種으로 길이를 局限시키고 形態에 있어서 字尾에다 利用하되 大圓 角 갈고리形態는 記錄上의 不便으로 筆記速度를 늦춘다는 根據에서 基本文字에서는 可及的 이를 避하기로 하였고 다음 母音에 있어서도 現用 21個 母音의 頻度統計를 보더라도 使用度가 많은 母音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ㅝ, ㅞ」 등이며 그외의 것 卽 複母音, 重母音은 使用度가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어서 이들 複母音 重母音의 경우, 흔히 區別하기 困難한 類似音으로 發音되어 이러한 類似한 音으로 發聲되는 母音들을 相互結合하여 兼用하도록 하여 研修時의 不必要한 勞力과 時間의 節約을 꾀하였다.

그러하여 21個의 母音을 兼用한 結果 「ㅏ(ㅑ, ㅓ), ㅑ(ㅕ, ㅗ, ㅛ), ㅓ(ㅜ, ㅠ), ㅕ(ㅝ, ㅞ), ㅗ(ㅛ, ㅜ), ㅛ(ㅠ, ㅡ), ㅜ(ㅠ, ㅡ), ㅠ(ㅡ, ㅣ), ㅡ(ㅣ), ㅣ(ㅝ, ㅞ)」인 7個로 大幅 縮少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우리말에 있어서의 받침이 없는 文字의 記錄은 可能하게 되었으니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確定된 母音의 길이 및 形態

ㅏ(ㅑ, ㅓ)	4mm	例 가 저 교 구 기 개 괴	
ㅓ(ㅕ, ㅡ, ㅗ)	4mm에 字尾小圓		
ㅗ(ㅛ)	8mm에 字尾小圓		
ㅓ(ㅕ)	12mm		
ㅣ(ㅑ, ㅓ)	8mm		
ㅓ(ㅕ, ㅗ, ㅛ)	12mm에 字尾小圓		
ㅓ(ㅕ, ㅗ)	8mm에 字尾大圓		

基本文字

(數字는 mm임)

母音	4	4	8	12	8	12	8
子音	ㅏ	ㅓ	ㅗ	ㅓ	ㅣ	ㅓ	ㅓ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ㅊ							
ㅋ							
ㆁ							

다. 받침의 決定

우리말에 있어서 받침의 總數는 27個로 이렇게 많은 받침을 使用함으로써 그 語彙의 使用率은 상당히 높다.

이와같이 높은 使用率을 가진 27個의 받침을 어떻게 記錄便宜하고 簡潔하게 速記文字化하느냐 하는것이 必然的인 課題로서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文字上으로는 그 받침이 個個의 獨特한 文字를 가지고 있으나 音聲學上으로는 그 發聲에 따라서 文字는 다르나 類似한 聲價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許多히 있으니 速記學上 받침의 構成에 있어서도 이 音聲學上의 類似한 聲價를 지닌 받침은 類似音끼리 兼用하게 됨은 當然하다.

우리말의 받침에 있어서 類似音聲別 部類로 나누어 본바 「ㄱ(ㄱ, ㅋ, ㆁ), ㄴ(ㄴ, ㄹ, ㄺ), ㄷ(ㄷ, ㅌ, ㄴ), ㄹ(ㄹ, ㄺ, ㄻ), ㄴ(ㄴ, ㄹ, ㄺ), ㄷ(ㄷ, ㅌ, ㄴ), ㅇ, ㅎ」等 8個群으로 分類可能하나 이中「ㅎ」받침은 音聲學上의 發聲이 默音이므로 實際는 7個群으로 合用 縮少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다시 音聲學上 發聲은 相異하지만 併用可能한 것을 合用시켜 議會速記法式의 받침은 「ㄱ(ㄱ, ㅋ, ㆁ), ㄴ(ㄴ, ㄹ, ㄺ), ㄷ(ㄷ, ㅌ, ㄴ), ㄹ(ㄹ, ㄺ, ㄻ), ㄴ(ㄴ, ㄹ, ㄺ), ㄷ(ㄷ, ㅌ, ㄴ), ㅇ, ㅎ」을 合用시키고 「ㄴ(ㄴ, ㄹ, ㄺ)」과 「ㄷ(ㄷ, ㅌ, ㄴ)」을 合用시켜 總 5個의 받침으로 줄임으로써 우리말에 있어서 使用率이 높은 받침을 利用하여 적은 勞力으로서 많은 活用效果를 거두도록 하였다.

받침 5種의 頻度 및 等級과 確定된 記法은 다음과 같다.

받침의 頻度 및 等級分類 (研究委員會)

等級	받 침	頻 度	順 位
1 級	ㄴ, ㄷ	2335	1
"	ㄹ, ㄱ	1393	2
2 級	ㅇ	730	3
"	ㅅ	509	4
3 級	ㅂ	296	5

確 定 된 받 침

(研究委員會)

區 分	받 침 記 法	說 明
받 침 ㄱ(ㄱ, ㄲ, ㅋ, ㆁ) ㄷ(ㄷ, ㄸ, ㅌ)		字尾에서 OA의 方向으로 1mm씩침
ㄴ(ㄴ, ㄷ) ㄹ(ㄹ)		字尾에서 OE의 方向으로 1mm씩침
ㅂ(ㅂ, ㅃ, ㅍ)		字尾에서 OB의 方向으로 1mm씩침
ㅅ(ㅅ, ㅆ, ㅈ) ㅊ(ㅊ, ㅌ, ㅍ)	첫字일 때 둘째字 以下일 때 	字頭に 1mm의 直線을 加함 앞字의 字尾에 字頭를 1mm 걸어줌
ㅇ	첫字일 때 둘째字 以下일 때 	字頭に 1mm小圓 앞字의 字尾와 字頭를 相互 1mm 交叉함

바. 其他 諸音의 記法

지금까지의 作業으로 子音 母音 받침의 確定을 보았거니와 前述한 諸原理 만 가지고는 우리말을 모두 完璧하게 速記文字로서 記錄할 수 없으니 卽 兼用 合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固有名詞와 같이 特殊한 意味를 지닐 때에는 別途의 符號를 賦與하여 區別 記錄하여야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子音에 있어서 硬音과 激音 그리고 母音에 있어서 重母音 複母音의 處理가 그것으로서 基本文字의 特定한 位置에 符號를 附加하여 一은 獨立된 速記文字를 갖게 되나 通常은 基本文字를 兼用하고 固有名詞等 特別한 意味를 지닐 때에 만 使用하게 되는 것으로 그 內容은 다음 表와 같다. (參照: 178頁, 179頁)

以上에 記述한 線, 子音, 母音, 받침등 네個의 基本테마를 가지고 各研究委員이 調査研究한 것을 土臺로 前述한 바와같은 經路를 밟아 研究委員 全員의 意見의 一致를 봄으로써 비로소 基本文字의 制定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文字로서의 表記可能한 人間の 發言은 모두 議會式速記文字로서 表記가 可能하게 되었다.

사. 其他 品詞別略法 및 略字의 制定

前項에서 基本文字가 制定된 過程을 詳細히 記述하였거니와 一般文字로서 1분에 60音字 乃至 80音字밖에 記錄할 수 없는 것을 前記한 基本文字로서 1분에 120音字 乃至 130音字의 記錄이 可能하여 졌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1秒에 5音字 乃至 6音字 卽 1분에 300音字 以上の 高速度發言을 速記하기란 不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高速度下에서 基本文字만으로서의 不可能한 記錄方法을 補完하여 記錄可能하게 하는 方法이 이제 記述하고자 하는 變字 各品詞別略法 및 略字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러한 基本文字의 速度上의 未洽點을 解決하기 위한 作業으로서 먼저 文敎部에서 편찬한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頻度調査」와 首都女子師範大學講師 徐廷國氏가 學位論文을 위하여 調査研究한 「國語基本語彙의 研究」中 「學習基本語彙의 目錄」을 中心으로하여 各品詞別 語彙에 대한 頻度を 調査研究하였다. 그 調査研究한 資料를 土臺로 먼저 基本文字中 子音 母音 받침을 合用한 速記文字가운데에서 頻度數는 많으나 記錄이 不便한 文字는 이를 第2의 基本文字格으로 더욱 간편히 새로운 形態의 文字 또는 基本文字中

硬 音 과 激 音

母音 子音	4 ㅏ	4 ㅑ	8 ㅓ	12 ㅕ	8 ㅗ	12 ㅛ	8 ㅜ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活用되지 않는 文字로서 變字를 만들었다.

이는 頻度數가 많은 單語의 經濟性은 그만큼 價値가 있기때문에 重要한것이며 頻度數가 많기때문에 쉽게 記錄할 수 있다는 原理에도 合致되는 것이다.

다음 우리말에 있어서 名詞나 動詞外에 助詞(吐)나 副詞의 役割도 重要하고 使用頻度 또한 높은만큼 이에 對하여도 速記符號中 간편한 文字를 採擇하여 筆記速度를 올리게끔 하기爲하여 當研究委員會에서는 前述한 資料들을 參酌하여 새로운 形態의 文字 또는 基本文字로서 使用되지 않거나 使用되더라도 混用的 憂慮가 없는 文字로서 制定하였다.

또한 動詞 存在詞等의 多樣한 語尾變化에 있어서도 이를 모두 個個의 單語마다 各己 特定符號를 주기에 困難하므로 이를 體系的으로 統一시켜 어떠한 경우라도 이 語尾變化를 適用함으로써 記錄이 可能하도록 하여 研修時에 容易하게 익힐 수 있고 實務時에도 便利하게 하였다.

다음 議會速記法式으로서 두렷한 特徵의 하나는 數詞로서 既存速記法式의 數詞記法은 모두 「아라비아」數字를 그대로 引用하여 使用하고 있으나 「아라비아」數字는 日常常用하고 있다는 利點은 있으나 多劃이어서 筆記速度가 느리기 때문에 數詞의 主要性에 비주어 간절히 單劃으로 새로이 制定하였다.

그리고 이 速記法式이 議會用 速記法式이므로 行政各部處名 各種法律名 特別會計名等 議會에서 빈번히 使用되는 用語를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이를 略法으로 다루었다는 點이다. 이를 略法으로 다루므로써 研修時 養成生 또는 實務速記士의 活用能力에 의하여 얼마든지 名稱變更에 當하더라도 能히 應用可能하게 하였다. 이것은 多劃을 單劃으로 또는 多文字를 單字單劃으로 縮語하여 그 劃數를 尙저히 줄이는 縮語의 原則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研究過程에 있어서 研究委員들이 가장 配慮를 한 것이 速記의 窮極的인 目的은 빨리 받아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記錄해 놓은 速記文字를 다시 正確하게 읽고 一般文字로 譯文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既存 速記法式에서 들어난 諸缺陷 卽 不必要한 添字 誤譯 또는 譯文不能등을 排除코자 無限히 苦心을 한 事實이다.

그러나 너무 短時日內에 이 重大한 課業을 遂行하기엔 甚차고 어려운 作業

이였으므로 多少의 缺陷이 없을 수 없으며 未洽한 點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未備한 點이나 不充分한 點에 對해서는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教育하는 課程에서 들어나는대로 다시 繼續的인 研究와 補完을 加하기로 하였다.

第3節 創案發表

以上으로 議會速記法式을 創案하게 된 動機와 目的 그리고 그 研究過程等에 대하여 言及하였거니와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에서는 總104次에 亘한 研究委員會議를 열고 研究를 거듭한 끝에 議會速記法式的 完成을 보았다.

그리하여 1969年 1月 10日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에서 國會事務總次長以下 事務處 및 圖書館 各局室長의 臨席下에 議會速記法式 創案發表會를 열고 同日'字로 事務總長의 決裁를 얻어 1969年度부터 國會速記士養成所의 教授法式으로 採擇하기에 이른 것이다. 同日 創案發表會에 앞서 研究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한 議決書는 아래와 같다.

議會速記法式創案議決書

議決主文

現在 國內에서 實用되고 있는 速記法式은 逸波, 高麗, 東邦, 서울, 韓國, 世鍾, 中央, 南天法式인 8個法式이 있는바 國會速記士養成所가 1968年度에 發足됨에 따라 同養成所에서의 教授를 위한 議會速記法式을 別添 議會速記法式研究資料에 의하여 創案 實用할것을 議決함.

1969年 1月 10日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

委員長 權 孝 燮

副委員長 劉 龍 珪

委 員 金鎮基 鄭源道 安仁榮 李東一 金永善 李龜洙

鄭宇鎔 金敬萬

諮問委員 李鎬賑 吉基祥 河在鳩 金玉珍

다음에 議會速記法式을 創案하여 1969年 3月 8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教授한 以來 얻어진 評價의 一斷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母音子音 받침의 種類를 混用 可能한 것을 併合 縮少시킴과 同時에 語尾變化를 體系的으로 統一시킴으로서 習學上 負擔을 輕減시켰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勞力과 時間을 練習에 轉用하는 利點의 生김.

나. 基本文字의 長이를 縮임으로서 記筆速度를 높일수 있었다.

다. 既存法式의 添字發生要因을 除去하여 韓文의 正確을 期하도록 한 結果 69年度 中間 試驗結果 68年同期보다 誤謬 添字등의 韓文의 錯誤가 적었다 以上과 같은 教學 前半期의 評價分析을 얻을 수 있었다.

議會速記法式과 既存 國內各速記法式의 基本文字의 構成 및 特徵을 比較함으로서 理解에 도움이 될까하여 蒐集한 資料를 여기에 적어보았다.

各法式別基本文字 및 特徵比較

區 分 \ 法 式	議會式	逸波式	高麗式	東邦式	서울式	世鍾式	韓國式
子 音 의 數	12	13	11	14	9	13	14
母 音 의 數	7	9	8	10	10	12	15
母 音 의 長 이 (mm)	4, 8, 12	5, 10, 15	5, 10, 20	5, 10, 15	4, 8, 10	3, 9, 12	2, 4, 7, 5, 15
母 音 의 形 態	字尾에 大小圓	字尾에 大小圓 갈고리	字尾에 大小橢圓	細, 太, 線 字頭에 갈고리	字頭에 角, 逆角	字尾에 大小圓 逆大小圓	字頭字尾에 角 또는 字頭에 大小圓
받 침 의 數	5	7	7	6		4	7
語 尾 의 變 化	體系的으로 統一化	不規則	不規則	體系化			
添字 發生 要因의 有 無	發生要因의 除去	發生可能	發生可能				
流 派	正圓派	正圓派	正圓派	正橢圓 斜角派	橢圓派	正圓派	正圓派

第 4 節 速記法式別基本文字

逸 波 式

- 創 案 者 : 張基泰
- 創案發表年月日 : 1946年 6月 20日
- 流 派 : 正圓派(幾何線)

基本文字

(數字는 mm)

자음 모음	(10) ㅏ(ㅑ)	(5) ㅓ(ㅕ)	(15) ㅗ(ㅛ)	(10) ㅜ(ㅠ)	(5) ㅡ	(10) ㅣ	(5) ㅝ	(15) ㅞ	(10) ㅟ
ㄱ (ㄲ)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ㄱ in various styles]								
ㄴ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ㄴ in various styles]								
ㄷ (ㄸ)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ㄷ in various styles]								
ㄹ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ㄹ in various styles]								
ㅁ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ㅁ in various styles]								
ㅂ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ㅂ in various styles]								
ㅅ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ㅅ in various styles]								
ㅇ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ㅇ in various styles]								
ㅈ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ㅈ in various styles]								
ㅊ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ㅊ in various styles]								
ㅋ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ㅋ in various styles]								
ㆁ	[Handwritten examples of the letter ㆁ in various styles]								

東 邦 式

- 創 案 者：李東根
- 創案發表年月日：1948年 2月
- 流 派：正, 橢圓折衷派(單劃式)

基 本 文 字

(數字는 mm임)

모음	(5)	(5)	(5)	(5)	(10)	(10)	(10)	(10)	(15)	(15)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Handwritten examples of ㄱ]									
ㄴ	[Handwritten examples of ㄴ]									
ㄷ	[Handwritten examples of ㄷ]									
ㄹ	[Handwritten examples of ㄹ]									
ㅁ	[Handwritten examples of ㅁ]									
ㅂ	[Handwritten examples of ㅂ]									
ㅅ	[Handwritten examples of ㅅ]									
ㅇ	[Handwritten examples of ㅇ]									
ㅈ	[Handwritten examples of ㅈ]									
ㅊ	[Handwritten examples of ㅊ]									
ㅋ	[Handwritten examples of ㅋ]									
ㆁ	[Handwritten examples of ㆁ]									
ㅈ	[Handwritten examples of ㅈ]									

姜 駿 遠 式(서 울 式)

- 創 案 者：姜駿遠
- 創案發表年月日：1935年 6月 18日
- 流 派：橢圓派(單劃式)

基 本 文 字

모음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ㄱ	/	—	\	\		/
ㅋ	/	—	\			/
ㆁ	/	—	\			/
ㅇ	⌒	⌒	⌒	⌒	⌒	⌒
ㅈ	⌒	⌒	⌒	⌒	⌒	⌒
ㅊ	⌒	⌒	⌒	⌒	⌒	⌒
ㅌ	⌒	⌒	⌒	⌒	⌒	⌒
ㄴ	⌒	⌒	⌒	⌒	⌒	⌒
ㄷ	⌒	⌒	⌒	⌒	⌒	⌒

世 鍾 式

- 創 案 者：金世鍾
- 創案發表年月日：1950年 2月 3日
- 流 派：正圓派(幾何線)

基 本 文 字

(數字는 mm임)

모음	9	9	9	12	3	3	12	9	9	12	3	3
자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ㅗ	ㅛ	ㅜ	ㅠ	ㅛ	ㅠ
ㄱ	[Handwritten examples of 'ㄱ' with various strokes]											
ㄴ	[Handwritten examples of 'ㄴ' with various strokes]											
ㄷ	[Handwritten examples of 'ㄷ' with various strokes]											
ㄹ	[Handwritten examples of 'ㄹ' with various strokes]											
ㅁ	[Handwritten examples of 'ㅁ' with various strokes]											
ㅂ	[Handwritten examples of 'ㅂ' with various strokes]											
ㅅ	[Handwritten examples of 'ㅅ' with various strokes]											
ㅇ	[Handwritten examples of 'ㅇ' with various strokes]											
ㅈ	[Handwritten examples of 'ㅈ' with various strokes]											

韓 國 式

- 創 案 者：朴 松
- 創案發表年月日：1946年 10月 19日
- 流 派：正圓派(幾何線)

基 本 文 字

(數字는 mm임)

모음	15	15	4	7.5	4	2	15	7.5	7.5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ㄱ	[Strokes for ㄱ]								
ㄴ	[Strokes for ㄴ]								
ㄷ	[Strokes for ㄷ]								
ㄹ	[Strokes for ㄹ]								
ㅁ	[Strokes for ㅁ]								
ㅂ	[Strokes for ㅂ]								
ㅅ	[Strokes for ㅅ]								
ㅇ	[Strokes for ㅇ]								
ㅈ	[Strokes for ㅈ]								
ㅊ	[Strokes for ㅊ]								
ㅋ	[Strokes for ㅋ]								
ㆁ	[Strokes for ㆁ]								

南 天 式

- 創 案 者：南相天
- 創案發表年月日：1956年 3月 20日
- 流 派：正圓派(幾何線)

基 本 文 字

(數字는 mm일)

모음 자음	10 ㅣ	10 ㅏ	10 ㅣ	10 ㅑ	2.5 ㄴ	2.5 ㄹ	5 ㅍ	5 ㅑ	10 ㅡ	1.25 ㅣ
ㄱ	—	—	—	—	—	—	—	—	—	—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ㄷ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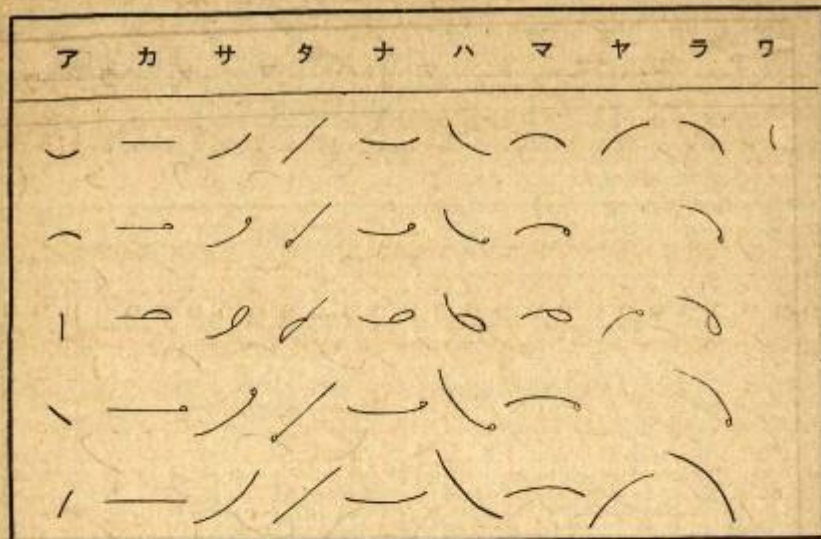
衆議院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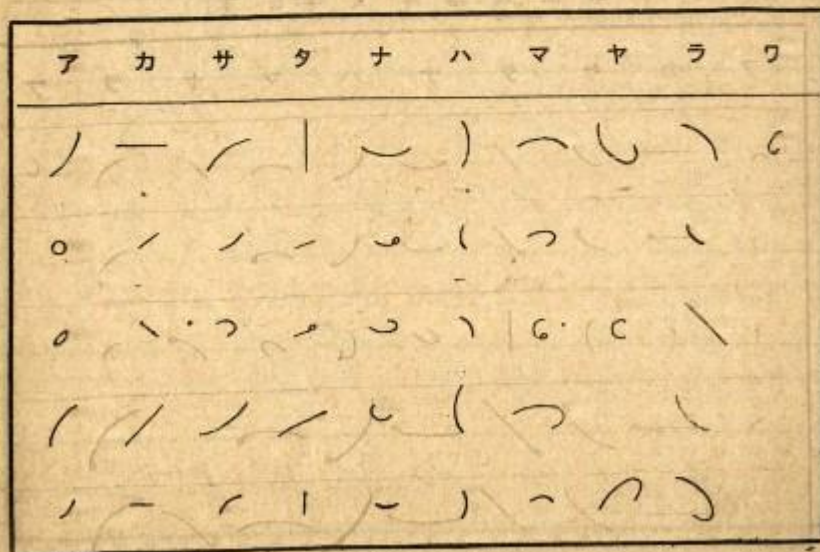
参議院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早稲田式基本文字(日本)



石村式基本文字(日本)



山根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米田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田 鎖 76 年 式 基 本 文 字(日 本)

ア	カ	サ	ッ	ナ	ハ	マ	ヤ	ラ	ワ
∪	—	ノ	ノ	∪	ノ	—	ノ	ノ	∪
∪	—	ノ	ノ	∪	ノ	—	ノ	ノ	∪
∪	—	ノ	ノ	∪	ノ	—	ノ	ノ	∪
∪	—	ノ	ノ	∪	ノ	—	ノ	ノ	∪

田 鎖 式 基 本 文 字(日 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ノ	ノ	—
∪	—)		∪	∪	—	ノ	ノ	∪
∪	—)		∪	∪	—	ノ	ノ	∪
∪	—)		∪	∪	—	ノ	ノ	∪

Gantlett 式 基 本 文 字(日 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武 田 式 基 本 文 字(日 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中根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熊崎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ノ	一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ノ

毛利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國字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ㇰ	ㇱ

牧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ゝ	ー	ノ	/	ゝ	し	へ	へ	へ	へ
っ	ー	ろ	/	ゝ	し	へ	へ	へ	へ
い	ゝ	ろ	/	ゝ	し	へ	へ	へ	へ
へ	ー	ろ	/	ゝ	し	へ	へ	へ	へ
ゝ	ー	ノ	/	ゝ	し	へ	へ	へ	へ

岩村式基本文字(日本)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イ	カ	シ	タ	チ	ハ	マ	ヤ	ラ	ワ
ウ	ク	ス	ツ	ヌ	フ	シ	メ	ル	
エ	ク	セ	フ	子	へ	へ		レ	
オ	ソ	ト	ノ	子	へ	へ		ロ	

三式基本文字(英國)

破裂音(子音) 4~5mm				連續音(子音) 4~5mm					
細線		太線		細線		太線			
P \	B \	F \	V \	T	D	TH (TH (
CH /	J /	S)	Z)	K —	G —	SH /	ZH /		
鼻音 M ˘ (細線)				N ˘ (細線)		NH ˘ (太線)			
流音 L / (")				R \ or /					
結合語 W / (")				Y / 氣息語 H / /					
長母音(位置)				短母音(位置)					
1 AH	=tah	ā		=pat	2 EH	=tay	ē		=pet
3 EE	=tea	ī		=pit	1 AW	=taw	ō		=not
2 OH	=toe	ū		=nut	3 OO	=too	ōō		=foot
重母音(位置) ˘				˘ =ow	˘ =ol	˘ =u			

그레그식 基本文字(美國)

p b t d k g f v ñ ð

↙ ↘ ↙ ↘ — — ↘ ↙ ↘ ↙ ↘ ↙ ↘

s z j 3 g j n ð m r

↘ ↘ ↘ ↘ ↘ ↘ — — — — ↘

l w y h a a: e ê i i:

— ↘ ° ° 0 0 : 0 ° ° ;

θ θ̂ u o u û á é ù ai

° ° ° ° ° ° ° ° ° °

그레그식 系基本文字(터키)

T D N M S C.C J.H P B F

↘ ↘ — — ↘ ↘ ↘ ↘ ↘ ↘ ↘

V K G R L

↘ — — — — ↘

에메·파리식 基本文字(스위스)

f	P	t	r	s	m	k	l	n	v
\		/	/	—)	(—	—	\
b	d	ch	z	j	gh	ll	gn	i	ou
	/	←	→	→	{	—	—	—	—
u	eu	e	a	o	un	in	an	on	
()	—	o	o)	/	o	o	

統一式 基本文字(獨逸)

T	G	B	M	D	F	Z	W	P	H	Ch
/	∪	C	C	C	C	/	C	C	∪	∪
R	K	N	Ng	L	S	i	ü	e	a	u
\	—	~	∪	o	o	/	/	/	/	/
au	ei	ä	o	ö	eu	äu				
/	/	/	/	/	/	/				

듀프로이식 基本文字(佛蘭西)

P	B	T	D	F	V	Q	Gue	L	R	M
		—	—	\	\	/	/	/	/	(
{N {GN	{J {Ch	{S {Z		{a {oi	{o {ou	{é {è	{i {ill	u	eu	
)	—	—		o	o	o	c	/	/	

第3章 國회의 速記業務

第1節 機構 및 業務分掌

國會는 國會法에 依據 모든 會議의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도록 되어 있다. 이 速記法에 依한 會議錄을 作成 配布하기 爲하여 國會事務處는 議事局 안에 速記課를 두고 있으며 速記課에서는 會議場에서의 速記에서부터 原稿作成 編輯, 校正, 配布까지의 業務를 分掌하고 있다.

가. 機 構

國會事務處法 第6條 第3項과 國會事務處職制 第6條 第1, 2, 5, 6項에 依한 速記課의 機構는 다음과 같다.

國會事務處法 第6條第3項 議事局에 議事課, 速記課와 警衛課를 둔다.

國會事務處職制 第6條

第1項 議事局에 議事課, 速記課 및 警衛課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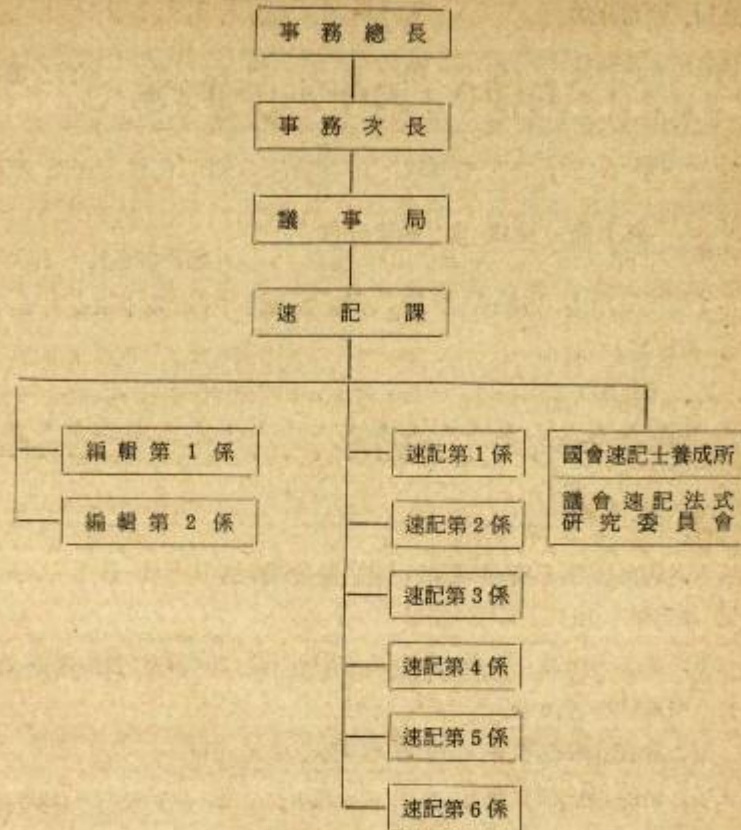
第2項 局長은 行政管理官 또는 行政理事官으로, 副局長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 速記課長은 行政副理事官 速記書記官 또는 行政書記官으로, 기타의 課長은 行政副理事官 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

第5項 速記課는 다음事項을 分掌한다.

1.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 作成, 編輯과 印刷, 配付에 關한 事項.
2. 速記에 關한 事項.

第6項 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速記課에 編輯 第1係, 第2係 및 速記 第1係 내지 第6係를 두며, 編輯 第1, 2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速記 第1係 내지 第6係長은 速記事務官 또는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速記課の機構



速記課定員表

T/O

1969・12・現在

		行政職	速記職	計
2	乙	1		1
3	乙	2	6	8
4	甲	15	41	56
4	乙	11	15	26
5	甲		17	17
5	乙		10	10
計		29	89	118

나. 業務分掌

國會事務處職制 第6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速記課의 事務分掌은 다음과 같다.

1.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作成, 編輯과 印刷, 配付에 관한 事項
2. 速記에 관한 事項

國會規則 第3號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會事務處의 各係別 事務分掌事項中 速記課 編輯係 및 速記係의 各係別 事務分掌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編輯第1係

가. 本會議·法制司法·外務·內務·財政經濟·國防·文教公報委員會의 會議錄 編輯·校正에 관한 事項.

나. 會議錄 配付 및 複製에 관한 事項.

다. 課庶務 및 備品管理에 관한 事項.

라. 課內 他係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編輯第2係

가. 農林·商工·保健社會·交通遞信·建設·國會運營·特別委員會의 會議錄 編輯·校正에 관한 事項.

나. 保存會議錄 管理에 관한 事項.

다. 會議錄製本에 관한 事項.

3. 速記第1係

가. 本會議·法制司法委員會의 速記 및 譯文에 관한 事項.

나. 速記士養成 및 技術向上에 관한 事項.

다. 錄音에 관한 事項.

라. 速記主務 및 副務編成에 관한 事項.

4. 速記第2係

가. 文教公報·保健社會·國會運營委員會의 速記 및 譯文에 관한 事項.

5. 速記第3係

가. 國防·交通遞信·特別委員會의 速記 및 譯文에 관한 事項.

6. 速記第4條

가. 財政經濟·建設委員會의 速記 및 謄文에 관한 事項.

7. 速記第5條

가. 內務·商工委員會의 速記 및 謄文에 관한 事項.

8. 速記第6條

가. 外務·農林委員會의 速記 및 謄文에 관한 事項.

第2節 會議錄에 관한 規程, 內規 및 要領

가. 會議錄取扱規程 (1965. 7. 20)
(第4次憲法委通過)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國會의 會議錄과 委員會會議錄(以下 會議錄이라 한다) 取扱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會議錄의 作成) 國會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64條 및 第108條에 의한 會議錄의 作成에 必要한 事項은 各로 議長이 이를 定한다.

第3條 (議員의 發言補充書) ① 議員이 法 第97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言補充書를 會議錄에 掲載하고자 할 때에는 發言補充書掲載要求書(別紙 第1號書式)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要求를 하고자 할 때에는 散會後 3時間 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條 (參考文書) ① 議員이 法 第109條에 依하여 會議錄에 參考文書를 掲載하고자 할 때에는 參考文書掲載要求書(別紙 第2號 書式)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要求를 하고자 할 때에는 散會後 3時間 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5條 (字句의 訂正) ① 發言한 議員 또는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 및 其他 發言者가 法 第110條에 의한 字句의 訂正을 要求할 때에는 字句訂正要求書(別紙 第3號書式)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議長은 前項의 訂正要求가 있을 때에는 訂正表를 다음 會議錄에 掲載

한다.

第6條 (原稿의 複寫 閱覽) ① 議員 및 其他 發言者가 會議錄의 原稿를 複寫 또는 閱覽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錄原稿複寫(閱覽) 申請書(別紙 第4號 書式)를 議長 또는 當該委員會 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非公開會議의 會議錄 原稿를 複寫 또는 閱覽하고자 할 때에는 前項의 申請書를 提出하여 議長 또는 當該委員會 委員長の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7條 (會議錄의 複製 錄音複寫) ① 議員 및 其他의 者가 會議錄의 複製 (拔萃複寫를 包含한다)와 錄音複寫를 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錄複製(錄音 複寫) 申請書(別紙 第5號書式)를 議長 또는 當該委員會 委員長에게 提出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複製 및 複寫에 所要되는 經費는 그 申請者의 負擔으로 한다.

第8條 (非公開會議錄) 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會議의 會議錄과 法 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을 要한다고 議決한 部分은 이를 印刷하지 아니하고 原稿로 保存한다. 다만 議長 또는 當該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秘密保存의 解除가 있을 때에는 이를 印刷 配付한다.

第9條 (會議錄의 保存) 會議錄은 法 第64條 第3項 및 第108條 第3項에 의한 署名捺印後 이를 正本으로서 永久保存한다.

第10條 (速記原文 原稿 및 錄音 「테이프」의 保存) ① 會議錄의 速記原文 및 原稿의 保存은 會議가 있는 날로부터 1年으로 한다.

② 錄音 「테이프」의 保存은 會議가 있는 날로부터 1月로 한다.

다만 特히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第11條 (會議錄의 配付 頒布) 法 第111條에 의한 會議錄의 配付 頒布의 對象, 範圍, 方法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은 따로 議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附 則

이 規定은 1965年 7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1號書式)

發言補充書掲載要求書

國會議長 貴下
第 回 第 號 會議錄에 別添發言補充書를 掲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申請人 印

(第2號書式)

參考文書掲載要求書

國會議長 貴下
第 回 第 號 會議錄에 別添 參考文書를 掲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申請人 印

(第3號書式)

字句訂正要求書

國會議長 貴下
第 回 第 號 (本會議委員會) 會議錄中 아래와 같이 字句訂正을 依頼하오니 措置바랍니다.

19

申請人 印

訂正事項

面	段	行	誤	正

(第4號書式)

會議錄原稿複寫(閱覽)申請書

國會議長 貴下
委員長

第 回 第 號 (本會議委員會)會議錄의 原稿를 複寫(閱覽)코자 하오니
措置(許可) 바랍니다.

19

申請人

印

(第5號書式)

會議錄複製(錄音複寫)申請書

國會議長 貴下

第 回 第 號 會議錄(錄音테이프)을 部를 複製(複
寫)을 申請하오니 措置바랍니다.

19

申請人

印

나. 會議錄作成에 관한 內規 ^(1965. 11)_(議長決議)

第1條 (目的) 이 內規는 會議錄取扱規程 第2條에 의하여 國會會議錄(이하 本會議錄이라 한다)과 委員會會議錄作成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會議錄) 本會議錄은 別紙樣式(1)에 의하여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議日時
2. 議事日程

3. 付議案件名
4. 開議時間
5. 報告事項
6. 付議案件과 付議時間
7. 議事
8. 表決數
9. 記名投票의 投票者 姓名
10. 會議中止時間과 繼續開議時間
11. 散會時間
12. 出席議員數
13. 出席國務委員 姓名
14. 出席政府委員 姓名
15. 議員의 發言補充書
16. 參考文書
17. 委員會의 報告書
18. 質問書와 答辯書
19. 請願의 提出
20. 기타 國會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 3 條 (開會式) 開會式에 관한 事項은 別紙樣式 (2)에 의하여 마로 會議錄을 作成한다.

第 4 條 (委員會會議錄) ① 委員會會議錄은 別紙樣式 (3)에 의하여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會日時
2. 開會場所
3. 審議案件名
4. 開會時間
5. 報告事項
6. 審査案件과 그 內容

- 7. 議事
- 8. 表決數
- 9. 會議中止時間과 繼續開會時間
- 10. 記錄中止時間과 繼續記錄時間
- 11. 散會時間
- 12. 出席委員姓名
- 13. 委員아닌 出席議員의 姓名
- 14. 出席國務委員姓名
- 15. 出席政府委員姓名
- 16. 出席한 證人·參考人과 請願人의 姓名
- 17. 其他 參席者의 姓名
- 18. 기타 重要事項

② 委員會會議錄의 作成에 關하여는 前項의 規定外에 第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條 (附錄) 會議錄作成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當日 會議錄에 作成 記載할 수 없는 것은 附錄으로 作成 記載한다.

附 則

이 內規는 1965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다. 會議錄作成要領 (國會事務處議事局速記課)

1. 國會法 第7章(第108條~第111條)에 規定된 會議錄은 다음 順序에 依하여 作成하며 同法 第64條에 規定된 常任委員會會議錄 作成도 이에 準한다.

(本會議) 第 號

○開議 年 月 日 (曜日) 午前 時
午後

○議事日程

○付議된 案件

○閉議時間

○報告事項

報告事項은 會議錄 末尾의 報告事項 掲載欄에 掲載한다.

○議長의 議事進行 報告

○付議案件과 그 內容

付議案件이 上程될 때에 參考資料(法律案 修正案條文 改正法律案條文等)를 掲載하며 付議된 案件 開始時間도 掲載한다.



(常任委員會) 第 號

○開會 年 月 日 (曜日)

○會議場所

○審査된 案件

○開會時間

○報告事項

○委員長의 議事進行 報告

○審査案件과 그 內容



○表決數

○記名投票의 投票者姓名

記名投票者의 姓名은 「贊成投票議員·反對投票議員·無効投票議員·棄權議員」으로 區分 掲載한다.

○會議中止時間·繼續閉議(閉會)時間

會議中止時間 或은 記錄中止時間 다음에는 繼續閉議(繼續閉會) 時間 或은 繼續記錄時間을 掲載한다.

午前 }
午後 }

時 分 會議中止

午前 } 時 分 繼續開議(開會)
午後 }

○開議(閉會)後 記錄時의 時間도 記載하며 記錄中止後 散會時(連絡없이 또는 成員未達로 散會하였을 경우)에도 散會時間을 記載함.

午前 } 時 分 記錄中止
午後 }

午前 } 時 分 繼續記錄
午後 }

○散會時間

○出席議員의 數

○出席委員의 姓名(常任委員會)

○委員아닌 出席議員의 姓名(常任委員會)

○出席國務委員과 出席政府委員의 姓名

※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은 行政府 序列順位로 掲載한다.

○證人·參考人의 姓名(常任委員會)

○其他 參席者의 姓名(常任委員會)

※ 議員·國務委員·政府委員·證人·參考人이 아닌者로서 發言한 者.

○議員의 發言補充書

議員의 發言補充書는 議長(委員長)의 決裁를 얻는 데로 掲載함.

※ 議員이 發言途中 또는 發言後 議決 또는 議長(委員長)이 許可한 發言補充書는 다시 議長(委員長)의 決裁를 얻지 않고 當日 關係議事 뒤에 掲載함(第109條 및 第110條).

○參考文書

議員(委員)이 그 發言의 參考에 供한 文書는 國會法 第109條의 規定에 依하여 議長(委員長)의 許可를 얻는 데로 그 議員의 發言이나 會議錄末尾에 掲載함.

○委員會의 報告書

國會法 第61條에 規定된 各 委員會의 審査報告書를 朗讀한 後에는 揭

載하지 아니함.

○質問書와 答辯書

國會法 第116條 第1項과 第2項 및 第3項에 規定된 質問書와 答辯書는 政府로부터 答辯書를 接受하였다고 報告된 날 掲載함.

△ 質問書

△ 答辯書

○其他 議決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議席의 配定과 請願提出(報告事項 앞에 掲載한다) 議席配定表를 掲載함
〔報告事項〕

報告된 報告事項만을 간단하게 記載하며 다음 順序에 의하여 記載함.

○議員

議員의 異動狀況은 다음의 狀況을 記載함.

△ 議員辭職

△ 議員補選

△ 議員死亡

△ 議員除籍

○委員

各 常任委員 및 特別委員의 選任 및 移動狀況을 記載하며 다음 順序에 의한다.

△ 常任(特別)委員選任

△ 常任(特別)委員變更

△ 委員長互選(特別)

△ 幹事互選

○交渉團體

國會法 第35條에 規定된 交渉團體 構成議員의 名單과 移動狀況을 다음 順序에 의하여 記載함.

△ 交渉團體議員名簿提出

△ 交渉團體加入

- △ 交渉團體除名
- 出張
 - 議員과 各 常任委員 및 特別委員의 出張內容을 記載함.
- 請假 및 缺席
 - 國會法 第34條에 依據 國會規則의 規定에 依한 事項에 限하여 記載함
- 政府人事
 - (日) 國務委員과 政府委員 任免關係를 記載함(第112條).
 - △ 國務委員 任免通知
 - △ 政府委員 任免通知
- 法律公布
 - 公布한 法律의 件名 號數 公布年月日을 記載함.
- 議案
 - 議案은 다음 順序에 依하여 記載함.
 - △ 議案提出
 - 法律案 豫算案 同意案 決議案 建議案 等
 - △ 議案廻付(第74條 1,2項 第75條 1,2項 第76條)
 - 議案提出欄에 該當委員會에 廻付하였다고 記載하여도 可함.
 - △ 議案審査
 - 該當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本會議에 付하기로 決議·付하지 않기로 決議 等.
 - △ 本會議付議案(第79條 第1項)
 - △ 議案撤回(第82條)
 - △ 議案移送(第91條)
- 報告書
 - 國會法 第61條에 規定된 各 委員會의 審査報告書가 提出되었다는 事實을 간단히 記載하고 報告書內容은 同議案이 付議된 날 「委員會의 報告書」欄에 記載함.
- 質問書와 答辯書

國會法 第116條 第1項과 第2項에 規定된 質問書와 答辯書는 다음과 같은 欄으로 간단히 記載하며 內容은 答辯書가 政府로부터 提出되었다고 報告된 날 「質問書와 答辯書」欄에 記載함.

△ 質問書

△ 答辯書

○ 請願

請願要旨書(請願者의 住所 姓名 要旨 紹介議員의 姓名 接受年月日)를 記載함.

△ 請願受理

△ 請願審査

○ 書翰

△ 書翰의 發送

△ 書翰接受

○ 電文

△ 電文發送

△ 電文接受

○ 通報

第 回 第 號

國 會 會 議 錄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6 年 月 日 (曜)

議事日程 (第 次 本會議) 年 月 日 (曜) 午前 時開議

- 1.
- 2.
- 3.

付議인 案件

- 1.
- 2.
- 3.

(午前 時 分 開議)

○議長() 第 次 會議을 開議
합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報告를 드리겠
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 案 件 名 —

(午前 ×時 ×分)

○議長() 議事日程 第×項 ×
××法律案을 上程합니다.

審査報告 해 주세요.

○××委員長()

(參照)

- 1. ××法律案 (提出者×××)
- 2. ××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提出者×××)

○議長()

○×××議員

.....(拍手).....

.....(笑聲).....

(「 」하는 이 있음)

(「 」하는 이 많음)

○議長() ××에 대해서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이 있음)	贊成投票議員 ××× ××× ××× ××× ××× ×××
3請 있습니까? (「3請입니다」 하는 이 있음)	反對投票議員 ××× ××× ××× ××× ××× ×××
本件은 10請이 있어야 됩니다. (再請에서 부터 10請까지 있음) (起立表決)	棄權議員 ××× ××× ×××
可에 ○票 否에 ×票로써	無效議員 ××× ××× ×××
(午前 ×時 ×分 會議中止) (午後 ×時 ×分 繼續開議)	○議長() 이것으로써 오늘 會 議는 散會하고 來日 午前 ×時에 再開하겠습니다. (午後 ×時 ×分 散會)
——(案 件 名)—— (午前 ×時 ×分)	○出席議員數 人
○議長() ×××法律案을 上程 합니다. ××委員長 審査報告를 해 주세 요. (××書出對)	○出席國務委員 ××部長官 ×××
○××委員長()	○出席政府委員 ××部次官 ×××
(參照)	××處長 ×××
1. ××法中 改正法律案	××廳長 ×××
2. ××法에 대한 修正案	○議員의 發言補充書 ××案에 對한 發言補充書 (×××議員)
○議長() 이 案은 記名投票로 하겠습니다.	○參考文書 ×××에 對한 參考文書 (×××議員)
(午前 ×時 ×分 投票開始)	○委員會의 報告書 ××法律案 審査報告書 (××委員會)
(午後 ×時 ×分 投票完了)	○質問書와 答辯書

<p>△質問書 ××에 대한 質問書 (提出者 ×××議員外 人)</p> <p>△答辯書 ×××에 대한 答辯者</p>	<p>○法律公布</p> <p>○議案 △議案提出 △議案廻付 △議案審査</p>
<p>○其他 國會의 決議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p> <p>○議席</p>	<p>△本會議付議案 △議案撤回 △議案移送</p>
<p>△議席配定 △議席變更</p> <p>〔報告事項〕</p>	<p>○報告書 ○質問書와 答辯書 △質問書 △答辯書</p>
<p>○議員 △議員辭職 △議員退職 △議員補選 △議員死亡 △議員除籍</p> <p>○委員 △常任(特別)委員選任 △委員長互選(特別) △幹事互選 △常任委員變更</p> <p>○交渉團體 △交渉團體議員名簿提出 △交渉團體加入 △交渉團體除籍</p> <p>○議員의 出張 ○議員請假</p> <p>○政府人事 △國務委員任免通知 △政府委員任免通知</p>	<p>○請願 △請願提出 △請願審査 △請願移送</p> <p>○書翰 △書翰發送 △書翰接受</p> <p>○電文 △電文發送 △電文接受</p> <p>○通報</p>

第 回國會 × × 委員會會議錄 × 卷第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年 月 日 (期 曜)

場 所 × × 委員會

審査된 案件

- 1.
- 2.

(午後 × 時 × 分 開會)

○委員長()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次 會議을 開會합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官()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案 件 名)——

○委員長()

○×××委員.....

(場內騷然)

○××部××局××課長().....

○委員長().....

○××會會長().....

○委員長().....

그러면 專門委員이 宣誓에 必要한 關係法條文을 朗讀해 주세요.
(專門委員 關係法條文 朗讀)

(證人宣誓)

○證人().....

○××部次官().....

○委員長().....	職姓名	×××
.....	住所	×××
.....	○參考人	
(午後 ×時 ×分 記錄中止)	職姓名	×××
(午後 ×時 ×分 繼續記錄)	○其他參席者	
(可會交代)	××部××局長	×××
○委員長代理() ×××에 대하여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會社××理事	×××
(舉手表決)	中央情報部長	×××
(起立表決)	監查院第×局長	×××
可에 ○票 否에 ×票로서		
.....		
(午後 ×時 ×分 會議中止)		
(午後 ×時 ×分 非公開會議)		
○委員長() 오늘 會議는 以上 으로서 散會하겠습니다.		
(午後 ×時 ×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 ×××		
××× ××× ×××		
○出席國務委員		
××部長官	×××	
××部長官	×××	
○出席政府委員		
××部次官	×××	
×××處長	×××	
×××廳長	×××	
○證人		

2. 本會議・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會議錄作成에 있어의 留意事項

① 本會議는 「議員」으로 하고 各 常任委員會를 代表한 경우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代理」로 한다.

② 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 所屬議員은 「委員」으로 하고 常任委員會 委員 아닌 出席議員은 「議員」으로 한다.

③ 發言中 重複되는 部分과 訂正한 部分은 特別한 경우를(強調時) 除外하고는 重複을 避하고 訂正한 部分만을 原稿에 掲載한다.

④ 常任委員 및 特別委員의 議席에서의 發言은 議題와 關聯이 있는 것은 모두 正式發言으로 表示한다.

7. 「再請이요」 「그런 答辯이 어찌 있어」 등은 正式發言으로 取扱치 않음
○ ×××委員 …………… (이렇게 表示치 않아도 됨.)

ㄴ. 本會議의 議席에서의 發言은(議題와 關聯이 있어도) 다음과 같이 表示한다.

(議席에서 ×××議員 ……………)

ㄷ. 本會議에서 議長의 許可없이 壇上에서 發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表示한다.

(議席에서 ×××議員 ……………)

(壇上에서 ×××議員 ……………)

(登壇하면서 ×××議員 「……………」)

⑤ 委員 아닌 出席議員의 表示는 다음과 같이 한다.

○ ×××議員(委員 아닌 出席議員) ……………

⑥ 出席委員과 委員아닌 出席議員의 名單作成은 交涉團體別로 區分한 後 政黨別 가나다順으로 作成한다. (但 委員長은 첫 順位)

⑦ 出席國務委員과 出席政府委員의 名單作成은 政府序列 順位대로 表示한다.

⑧ 其他 參席者・證人・參考人의 表示는 다음과 같이 한다.

(職名을 表示하고 그 밑에 姓名을 表示한다)

××部 ××局 ××課長 ×××

⑨ 國政監查 또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班別로 會議錄을 作成時 班의 長은 「委員長」 또는 「班長」으로 表示한다.

⑩ 會議中止後 繼續開會하여 非公開會議를 하였을 경우, 散會宣布가 없이 流會한 경우(成員未達等으로)에는 事實대로 記錄한다. (例·停會後 成員未達로 續開하지 못한 경우에는 「×時 ×分 會議中止」로서 끝난다)

⑪ 2人이 同時 發言時 政府側은 言權을 얻지 않은 議員의 質問에 答辯하고 議長은 他議員에게 言權을 주었을 경우,

議長이 言權을 준 議員의 發言을 記載함을 原則으로 한다.

⑫ 質疑應答時 「○ ×××委員(계속)」은 不要(委員會)

⑬ 記錄中止하고 그 다음 續開時엔 非公開會議로 들어 갔을 경우,

公開會議部分과 非公開部分을 別途로 區分 作成하여 公開會議는 그 回 次數(其一)로 하며 非公開는 그 回 次數(其二)로 各各 區分 編輯한다.

⑭ 1個 案件이 提案되어 여러 個 修正案이 提出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原案을 記載한 다음에 修正案 提出順으로 記載한다.

⑮ 報告事項欄中 請願提出은 報告事項 앞에 記載한다. (本會議의 경우)

常任委員會는 議案 다음에 正式報告事項으로 記載함.

⑯ 常任委員會에서 連席會議를 開會할 時 會議錄 次數는 主催한 委員會의 次數를 記載한다.

出席한 委員은 委員會別로 記載한다.

※ 例 委員會委員 委員會委員 委員會委員 委員會委員 委員會委員

第××回國會 外務委員會 會議錄(財經·商工과의 連席會議) 第×號 國會事務處

⑰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에서 議員의 發言中 削除部分의 記載要領 (第41回 5次 參照(本會議))

(第43回 6次 參照(財政經濟委員會))

※ 例

○ ×××議員 「……………」

※ 會議錄末尾의 記載要領

本會議錄中 「……………」 部分은 發言取消된 것임. (本會議의 경우)

○ 委員長代理(×××) 「……………」

中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會議錄末尾의 記載要領

本會議錄中 「……………」 部分은 委員長要請으로 削除한 것임. (常任委員會의 경우)

(點線은 굵은 點으로 表示한다)

3.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에 있어서의 記錄 事前·事後 및 記錄上의 留意事項

- ① 첫체組 副務는 開議(開會) 10分前에 時計를 調整한 後 會議場에 持參할 것.
- ② 첫체組는 于先 當日의 會議日程을 記錄하고 끝組는 出席委員(委員會) 및 政府出席者의 名單을 職責別로 正確히 把握 記入할 것.
- ③ 첫체組는 速記時間 前까지 油印物이나 「차트」 原案을 檢討하여 速記準備上의 異常有無를 確認함으로써 執務에 萬全을 期하도록 할 것.
- ④ 議案이 새로 上程될 때(本會議)에는 上程時間을 記入할 것.
- ⑤ 첫組는 翻文을 시작하기 前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正確한 事實上의 開議時間을 記入할 것이며 끝組는 翻文完了後 正確한 散會時間을 記入할 것.
- ⑥ 速記完了後 첫組 副務는 開議時間을 所管係에 遲滯없이 通報하고 所管係는 各係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本會議)
- ⑦ 副務는 開會 即時 主務의 指示下에 開會時間을 所管係에 遲滯없이 通報하고 所管係는 各係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委員會)
- ⑧ 前組와의 交代는 主務의 責任下에 行할 것이며 반드시 本會議에서는

主務끼리 常任委員會에서는 前組 副務와 다음組 主務가 交代하며 交代한 後에도 前組의 主務는 1, 2分 더 繼續하여 記錄할 것.

⑨ 交代時는 主務와 副務가 同時에(本會議) 入場 退場할 것.

⑩ 發言者의 姓名이나 職位 또는 發言內容에 未詳한 部分이 있을 때는 記錄完了直後 確認하고 나올 것.

⑪ 議長 또는 委員長의 發言

「×××議員 말씀하세요」等은 簡單한 發言일지라도 빠짐없이 記錄할 것.

⑫ 連絡이 늦어 開議(開會)된 後에 記錄을 始作하였을 때는 事實대로 다음과 같이 記入할 것.

(午前 ○時 ○○分 記錄開始)
(午後

⑬ 記錄完了後에는 반드시 相互 對照를 끝낸 다음 譯文을 하여야 하며 譯文完了된 原稿는 主務가 再讀 署名한 後 所屬 係長이 檢討後 所管係의 豪帳에 記入하고 編輯係에 넘긴다.

⑭ 原稿는 다음 自己의 擔當時間 前에 提出함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2回以上 速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⑮ 特別委員會 또는 國政監查速記時는 出席委員 政府委員 및 證人·參考人 其他 參席者의 名單을 作成할 것.

⑯ 人名 其他 固有名詞는 반드시 正字로 쓰고 略字나 草書體로 쓰지말 것.

⑰ 原稿作成에 있어 證人·參考人 或은 其他 參席者가 公務員일 때는 그 姓名과 所屬處 職位를 記入하고 一般人인 때에는 「○證人(×××)」式으로 記入할 것이며 其他는 記例대로 할 것.

⑱ 會議進行途中 政府側의 「차트」說明이 있을 時의 記載要領은 「차트」를 全部 記載할 것이며 非公開가 될 時는 記錄中止時間을 記載한다.

4. 漢字使用原則

漢字는 韓國新聞編輯人協會에서 選定한 2,000字를 使用할 것을 原則으로

하의 人名, 地名, 固有名詞인 경우는 例外로 한다.

또한 2,000字 範圍內的 漢字라 할지라도 뜻이 漢文과 거의 關聯이 없다고 認定되는 漢文이나 다음에 例記한 部分은 韓字로 記入한다.

例記: ① 황차 · 어시호 · 어연간 · 대관절 · 금기야 · 수교 · 도배책 · 기워 · 가워 · 생가 · 소위 · 단지 · 지금 · 문제 · 모양 · ××님 等等

② 「히」 또는 「하게」가 붙은 모든 副詞

例: 외삼히 · 공연히 · 자연히 · 적당하게 · 요란하게

③ ……에 ()하여

例: 에 관하여 · 에 준하여 · 에 대하여 · 에 의하여

但 위에 列擧한 原則中에서 同音 異意인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①의 경우 소위(所謂·所爲)

③의 경우에 속하여(續·屬)

5. 數字의 表示原則

例: ※ 年 月 日 時

× 1千9百6拾9年 12月 24日 午後 ○時 18分

○ 1969年 12月 24日 午後 零時 18分

※ 「퍼센트」數와 「페이지」等

× 2拾3% 2拾3 「페이지」

○ 23% 23 「페이지」

※ 金額表示 및 「톤」數 石數 等

× 223,756.34百원 22億3千7百56萬3千4百원

○ 22億 3,756萬 3,400원(億·萬만 記入)

※ 小數點이 있을 경우

× 15點6 156點2

○ 15.6 156.2

※ 不確定 數字를 表示할 경우

× 2 3日 4 50名 7.80萬원

○ 2, 3日 4, 50名 7, 80萬원

※ 記例

- ① 午前 ○時 ○○分 閉議……………(本會議의 경우)
 - 午後 ○時 ○○分 閉會……………(常任委員會의 경우)
 - ② 午前 ○時 ○○分 閉會……………(常任委員會의 경우)
 - 午後 ○時 ○○分 閉會……………(常任委員會의 경우)
- 「上午」 等は 不可

第 3 節 會議錄發刊過程

가. 發刊過程

會議錄作成은 各 會議場에서 速記하는 作業이 基礎가 되며 各 配付處에 配付함으로써 作業이 完了되는 것인데 그 進行過程을 차례로 說明하면

첫째 速記하는 過程은 各 擔當速記係에서 主務와 副務 2人이 1組로 되어 速記하게 된다. 速記를 잘 못하게 되면 모든 作業이 아무리 잘 되어도 不正確한 會議錄이 되고 마는 것이니 이 基礎가 되는 過程을 錯誤없이 하기 爲하여 主務 副務 2人 1組로 速記시키며 本會議와 運營 特別委員會와 같이 翌日에 會議錄을 配付하게 되어 있는 것은 1組가 10分씩 交代하며 其他會議는 20分씩 1組가 速記하게 된다. 이것은 高度의 긴장을 要하는 作業이므로 作業時間이 길어지는 데서 發生될 수 있는 錯誤를 防止하며 또 兼하여 作業量을 分散하기 爲하여 이와 같이 交代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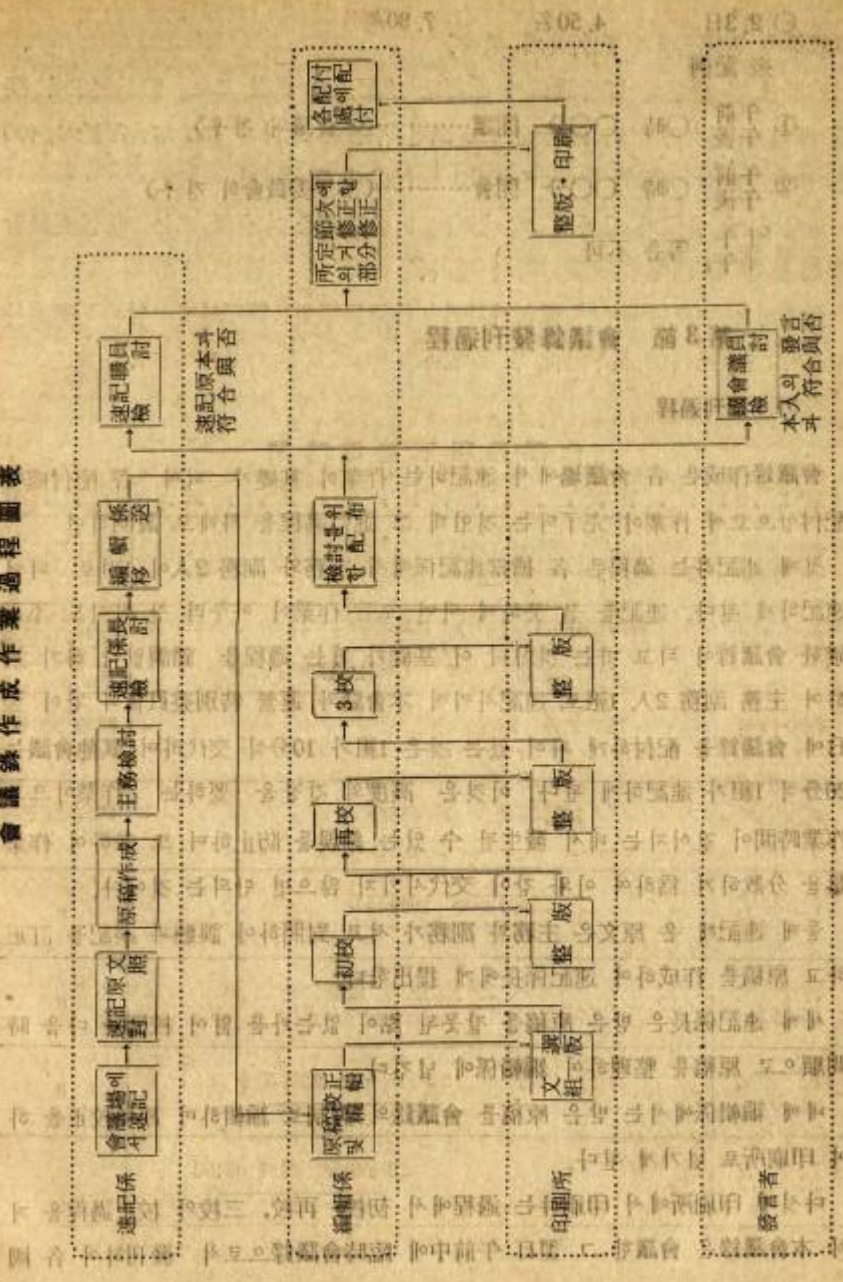
둘째 速記해 온 原文은 主務와 副務가 서로 對照하여 誤聽과 誤記를 訂正하고 原稿를 作成하여 速記係長에게 提出한다.

셋째 速記係長은 받은 原稿를 잘못된 點이 없는가를 읽어 校閱한 다음 時間順으로 原稿를 整理하여 編輯係에 넘긴다.

네째 編輯係에서는 받은 原稿를 會議錄의 體制로 編輯하며 原稿校正을 하여 印刷所로 넘기게 된다.

다섯째 印刷所에서 印刷하는 過程에서 初校, 再校, 三校의 校正過程을 거쳐 本會議錄은 會議한 그 翌日 午前中에 臨時會議錄으로서 發刊하여 各國

會議錄作成作業過程圖表



會議員과 速記士에게 配付하게 된다.

어섯에 各 發言한 國會議員과 記錄한 速記士의 異議 또는 訂正要求를 接受 所定の 節次를 거쳐 最終的으로 高칠 부분을 高쳐가지고 本會議錄 1,400部 常任委員會 會議錄 500部를 印刷 配付處에 配付하게 된다.

일곱째 한 會期가 끝나면 그 會期間의 會議錄을 本會議 또는 常任委員會 別로 正本 및 備置本을 製本하게 된다.

會議錄의 速記에서부터 配付까지의 作業過程을 圖示하면 앞의 圖表와 같으며 作業過程別 基準時間 및 執務別基準 時間은 다음과 같다.

作業過程別基準時間

(本會議)

會議時間 (3 時間)	10時10分 12時50分 13時 ----- -----	
翻文時間 (5時 25分)	10時10分 12時45分 15時35分 ----- ----- (原稿引渡開始時間) (原稿引渡完了時間)	速記10分基準 2時間 35分
編輯時間 (3時 30分)	12時45分 16時15分 -----	原稿 300枚 基準
組版時間 (5時 30分)	13時25分 18時55分 -----	印刷 25 P 基準
初校時間 (2 時間)	16時55分 19時55分 -----	"
再校時間 (3 時間)	19時55分 22時55分 -----	"
校了時間 (45分)	22時55分 23時40分 -----	"
納 品	23時40分 翌日 09:00 -----	

作業過程別基準時間

(委員會)

會議時間 (2 時間)	14時 ————— 16時	
翻文時間 (6時 20分)	14時20分 ————— 翌日12時40分	速記20分基準 (4時間 40分)
編輯時間 (2 時間)	12時40分 ————— 2時40分	原稿 200枚 基準
組版時間 (4 時間)	2時40分 ————— 6時40分	印刷 18P 基準
初校時間 (2 時間)	9時40分 ————— 翌日11時40分	"
整版時間 (3 時間)	11時40分 ————— 14時40分	"
再校時間 (2 時間)	14時40分 ————— 16時40分	"
納 品	翌日 9時	

執務別基準時間表

1. 速記係

1. 本會議・運営・特別委員會(翌日發行)

速記時間 10分間

翻文所要時間

(1) 翻文時間 75分

(2) 原文對照時間 20分

(3) 錄音對照 主務檢討時間 20分

(4) 其他時間	20分
計	135分 (2時間 15分)
速記係長檢討時間	20分
編輯係原稿引渡時間	2時間 35分

※ 例 示

會議時間 3時間(午前 10時~午後 1時)
 原稿引渡開始時間(午前 10時 10分+2時間 35分)=午後 零時 45分
 原稿引渡完了時間(午後 1時+2時間 35分)=午後 3時 35分

① 2. 常任委員會 (翌日에 發行하지 않는 경우)

速記時間	20分間
譯文所要時間	
(1) 原文對照時間	40分
(2) 譯文時間	150分
(3) 主務檢討時間	30分
(4) 其他時間	30分
計	250分 (4時間 10分)
速記係長檢討時間	30分
編輯係原稿引渡時間	4時間 40分

※ 例 示

會議時間 2時間(午後 2時~午後 4時)
 原稿引渡開始時間(午後 2時 20分+4時間 40分) =午後 7時
 原稿引渡完了時間(午後 7時+4時間 40分) =午後11時 40分

2. 編輯係

1. 原稿校正

○ 速記時間 10分間 原稿枚數 17枚 基準

※ $\begin{cases} 1\text{分間 發言速度 } 300\text{字} \times 10\text{分間} = 3,000\text{字} \\ 3,000\text{字} \div 180\text{字} = 16.6\text{枚(原稿紙)} \end{cases}$

- (1) 原稿校正時間 30分 (※ 1枚校正 2分)
- (2) 編輯時間 5分
- (3) 其他時間 5分
- 計 40分

○ 速記時間 1時間 原稿枚數 100枚 基準

- (1) 原稿校正時間 180分
- (2) 編輯時間 30分
- (3) 其他時間 30分
- 計 240分 (4時間)

○ 速記時間 3時間 原稿枚數 300枚 基準

- (1) 原稿校正時間 540分
- (2) 編輯時間 90分
- (3) 其他時間 90分
- 計 720分 (12時間)

※ 例 示

1. 本會議

會議時間 3時間 (午前 10時~午後 1時)

編輯校正開始時間 (午後 零時 45分 + 40分) = 午後 1時 25分

編輯校正完了時間 (午後 3時 35分 + 40分) = 午後 4時 15分

3. 印刷

1. 本會議

(1) 文選・組版時間 (30P 基準)

○ 10P 까지

準備時間 30分

文選時間 60分 ※ 15人作業基準 $\left\{ \begin{array}{l} 1人 1時間當 2/3P \\ 15人 1時間當 10P \end{array} \right.$

組版時間 60分

計 150分 (2時間 30分)

○ 20P 까지

文選時間 60分

計 210分 (3時間 30分)

○ 30P 까지

文選時間 60分

計 270分 (4時間 30分)

(2) 機械校正時間

例 示

會議時間 3時間

(原稿校正)

15枚×7人=105枚(7人校正) 30分間

午後 1時 25分+70分(原稿 100枚 編輯校正時間)=2時 35分(組版 10P
分原稿引渡時間)

午後 2時 35分+2時間 20分(10P 組版所要時間)=午後 4時 55分 (初校
編輯係引渡時間)

午後 4時 55分(原稿引渡完了時間)+2時間(最終 10P組版所要時間)=午
後 6時 55分 (30P 組版完了時間)

午後 6時 55分+1時間(3人基準校正時間“1人 1時間當 3P校正”)=午後
7時 55分(初校完了時間)

(再校)

午後 7時 55分+3時間(3人基準 30P 校正時間“1人 1時間當 3P”校正)=
午後 10時55分

(綜合檢討)

午後 10時 55分+45分=午後 11時 40分

2. 委員會

(1) 文選・組版時間 (20P 基準)

10P 까지

1. 工場往復時間	60分
2. 準備時間	30分
3. 文選時間	60分
4. 組版時間	30分
計	180分 (3時間)

20P 까지

文選時間	60分
計	240分 (4時間)

(2) 校正時間

例 示

(初校)

午後 2時 40分(原稿引渡時間)+4時間(20P에 對한 組版時間)=午後
6時 40分(編輯係引渡時間)

午後 6時 40分+2時間(4人 20P 校正時間)=午後 8時 40分 (初校完
了時間)

(3) 整版時間

1. 工場 往復時間	60分
2. 整版時間	60分
計	120分 (2時間)

※ 整版所要時間

1人 1P 當 10分

3人 1時間基準 18P(3P×6=18P)

(再校)

午後零時 40分+2時間(差替時間)=午後 2時 40分

(初校引受時間) (編輯係引渡時間)

午後 2時 40分+2時間(校正時間)=午後 4時 40分

(OK 完了時間)

나. 會議錄發刊實績

制憲國會 以來 第7代國會 第69會期까지의 國會會議錄 發刊實績은

會議次數 7,455次

發刊面數 200,957面 이다.

이를 會議別로 나누어 보면

本會議 2,585次 86,939面

常任委 4,485次 104,435面

特別委 385次 9,583面 이다.

歷代 國會別 會議錄發刊 實績과 會議錄配付處는 다음 一覽表와 같다.

會議錄發刊實績一覽表

1969. 6. 10 現在

會議別 代 次 面	本 會 議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備 考
	會議次數	發刊面數	會議次數	發刊面數	會議次數	發刊面數	
制 憲	399	8,378	—	—	—	—	常任委 特委는 速記 하지 않았음
2 代	593	10,046	—	—	—	—	"
3 代	612	16,812	438	18,333	91	582	常任委는 重要會議中 速記하였음
4 代	224	8,247	547	23,934	13	1,239	"
5 代	148	6,454	470	10,017	11	685	
6 代	380	23,600	2,336	39,797	167	4,649	
7 代	229	13,402	694	12,354	103	2,428	
計	2,585	86,939	4,485	104,435	385	9,583	

會議錄配付處一覽

(1) 本會議錄

7. 立 法 府 704 ① 國會事務處 및 國會圖書館
 2. 行 政 府 344 ① 中央行政官署 78

	② 檢察廳	46
	③ 各道, 市, 郡, 區	202
	④ 各警察局	18
ㄷ. 司 法 府		71
ㄹ. 言 論 機 關		40
ㅁ. 國營企業體 및 金融機關		36
ㅂ. 國 內 各 圖 書 館		106
ㅅ. 國 外 各 圖 書 館		52
ㅇ. 在 外 公 館		33
ㅈ. 其 他		14
	計	1,400部

(2) 委員會會議錄

ㄱ. 立 法 府	450
ㄴ. 行 政 府	47
ㄷ. 司 法 府	3
	計 500部

다. 委員會會議錄의 翌日發刊方案

現在 國會의 運營이 常任委員會 中心으로 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常任委員會의 會議錄이 翌日에 發刊되고 있지 않아 常任委員會의 議決事項이 本會議에 上程될 때 常任委員會에서의 審議過程을 當該 案件의 審議에 參與하지 못한 議員은 알 수가 없어 國會運營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實情이다.

이 難點을 除去하고자 速記課에서는 1968年 8月에 常任委員會會議錄의 翌日 發刊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前會議會 後 後任委員會 ① 40% 後 立 法
 於 常任委員會 ② 40% 後 行 政

委員會會議錄의 翌日發刊方案

1. 問題와 關聯되는 事項

가. 會議錄은 本會議의 會議結果인 國會會議錄과 委員會의 會議結果인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會議錄으로 區分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國會에서는 通常 本會議는 午前 10時頃에 開會되어 午後 1時頃에 散會하며 常任委員會는 本會議가 散會된 後인 午後에 開會하고 있다.

다. 6代國會에서의 常任委員會의 會議回數 時間等の 統計는 別表 1 및 2와 같다. 또 6代國會 本會議 및 委員會別 會議時間 統計는 別表 3과 같다.

라. 會議錄 發刊過程의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速記課의 編成과 業務分掌 및 T/O上 人員現況은 本章 第1節과 같다.

마. 速記士는 2人 1組가 되어 主務와 副務로 構成하여 同一事項을 同時에 記錄하고 相互間 能力의 切長補短으로서 記錄에 萬全을 期하게 하고 있다.

바. 速記士는 現在 T/O上으로 40個組가 있으며 1個組는 本會議時 10分間씩 交代하고 委員會 會議時는 20分間씩 交代하고 있는바 10分間의 速記는 謄文을 爲하여 120分間이 所要되고 있다.

사. 10分間의 速記는 120分間에 걸쳐 謄文하게 되는 關係上 本會議가 午後 1時頃에 散會할 때는 謄文이 끝나고 原稿를 編輯係 要員이 校正하고 編輯하여 印刷所에 引繼하는 것은 午後 3時 半頃이 되며 이를 印刷所에서 文選하고 植字하고 組版하여 初校를 보게 되는 時間은 通常 6時 以後가 되며 再校, 3校를 거치자면 本會議會議錄 翌日發刊을 爲해서 校正要員은 午後 10時 以後까지 夜間勤務를 하고 있다.

아. 制憲國會 以來 現在까지의 本會議에서의 議員發言 速度 變遷 狀況을 보면 다음 面의 表와 같다.

자. 우리나라 會議錄 發刊作業過程이 體制上 比對한 隣接 日本國議會記錄部 現況을 살펴보면 定員 155名에 本會議의 會議錄은 會議後 24時間內에 配付하고 委員會 會議錄은 通常 1週日 後에 配付하고 있다.

一分間發言速度

代	區分	最高	最低
制	憲	346字	180字
二	代	381	180
三	代	403	200
四	代	418	188
六	代	407	180

2. 討 議

가. 各 常任委員會는 統計的으로 볼 때 同日字 會議開催委員會가 平均 3.4個 委員會가 되며 1個委員會 會議時間은 2時間으로 볼 때 그 날 委員會의 總會議時間은 8~10時間이 되는 바 午前의 本會議 會議錄을 翌日 發刊하고 있는 關係上 現在의 構成과 作業過程으로서 委員會 會議錄을 翌日 發刊하려면 다음과 같은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1) 速記士 및 編輯校正要員增員(別表 4 參照)

(2) 3個委員會 單位로 印刷所를 4個 印刷所로 指定 또는 國會內에 會議錄 印刷施設 具備

나. 委員會中에서 豫決特別委員會의 會議錄은 翌日 發刊되고 있으나 通常 同委員會 開會中에는 本會議 및 各 常任委員會 會議가 없는 關係로 可能한 것이나 會議가 午後 3時 以後까지 繼續된 때는 速記士 및 編輯校正要員이 徹夜勤務를 하고 있다.

다. 現在 速記士 T/O는 40個組(80人)(錄音·調査·3人除外)가 있는바 이 人員의 現狀業務能力은 1個委員會當 15個組(30人)를 基準하여 3個 委員會를 堪當하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4時間 後에야 翻文을 完了하고 있다.

라. 會議錄의 編輯校正은 新聞·雜誌와는 그 性格이 달라 原稿에 依한 것이 아닌 直席發言이기 때문에 內容을 編輯校正要員이 任意로 添加·削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各 分野에 걸친 專門述語라든가 各 外國語, 數字 等に 敏感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要員은 相當期間의 訓練을 要하게 된다.

마. 印刷所는 1日間에 할 수 있는 文選·植字·組版·整版等の 能力이 限

定되어 있고 國會의 會議錄만을 取扱하는 것이 아니고 他印刷物도 取扱하고 있는 關係上 1個印刷所로서는 原稿의 量이 많을 때는 委員會 會議錄의 翌日 發刊을 爲한 印刷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例도 없지 않아 있다.

바. 上記한 바에 依하여 會議錄 發刊을 爲한 方案으로서 別表 4의 人員算 出根據에 依據 速記課 人員을 171名(課長·係長 除外)으로 增員하고 委員會 會議錄 擔當 印刷所를 4個로 하는 方案을 提示할 수 있다.

3. 結 論

現在 本會議는 通常 午前에 開會해서 午後 1時頃に 散會하여 3時間에 걸 (別表 1)

委員會同日開會回數統計表

(運營委除外)

會期別	開會回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39	2	—	3	2	1	1	—	—	—	—	1	—
40	11	6	1	8	3	3	6	1	3	1	—	—
41	5	3	1	3	2	3	—	2	1	—	1	—
42	2	5	3	4	4	3	2	2	—	—	—	—
43	5	6	1	3	1	—	—	—	—	—	—	—
44	8	5	4	2	2	1	1	1	—	—	—	—
(定期會)45	18	9	10	16	6	3	4	1	4	5	1	—
46	1	2	—	—	—	—	—	—	—	—	—	—
47	2	5	4	1	1	—	1	—	—	—	—	—
48	5	6	2	4	3	3	1	—	1	—	—	—
49	3	5	4	1	—	—	—	—	—	—	—	—
50	6	4	6	1	2	1	1	2	—	—	—	—
51	4	3	1	—	—	—	—	—	—	—	—	—
52	4	3	5	2	—	—	—	—	—	—	—	—
(定期會)53	14	7	3	6	4	3	1	3	3	3	—	—
54	4	3	4	1	4	3	—	—	—	—	—	—
55	5	5	4	1	1	1	1	1	1	1	—	—
56	2	1	—	—	2	2	—	—	—	—	—	—
57	6	6	—	3	3	6	3	6	3	—	—	—
(定期會)58	31	15	9	9	9	2	—	3	7	3	—	—
59	3	1	3	2	4	1	—	1	1	—	—	—
60	1	1	2	2	1	2	—	—	—	—	—	—
計	142	101	70	71	53	38	21	23	24	13	3	—

친 會議結果이므로 會議錄을 翌日 發刊하고 있으나 委員會는 統計上으로
 볼때 同日字에 平均 3.4個 委員會가 午後에 同時 開會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速記錄文·原稿編輯·校正·印刷所의 文選·植字·組版等 또한 初校·再校
 ·三校 過程이 時間的으로 翌日 發刊하기에는 現在의 人員構成과 印刷能力
 으로서는 不可能하며 翌日 發刊을 爲해서는 同日字 同時(午後)에 3.4個 委
 員會가 會議을 開催하는 것을 單位로 人員의 增員과 4個 印刷所에서 印刷을
 擔當시켜야 할 것이다.

(別表 2)

委員會會議時間別統計表

(運營委除外)

會議時間 會期別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39	14	13	10	4	—	—	—	—	—	—	—	—
40	24	50	53	30	9	6	6	—	—	—	—	—
41	17	27	30	9	5	—	1	2	—	—	—	—
42	19	27	39	14	6	—	2	—	—	—	—	—
43	9	13	10	4	1	1	—	—	—	—	—	—
44	23	23	28	7	4	1	1	—	—	—	—	—
(定期會)45	38	71	75	39	26	29	10	12	8	6	3	1
46	1	2	2	2	—	4	—	2	—	—	—	—
47	7	6	14	5	6	3	1	—	—	—	—	1
48	10	19	27	27	5	2	1	—	—	—	—	—
49	5	9	8	6	1	—	—	—	—	—	—	—
50	7	18	22	14	7	3	3	—	—	1	—	—
51	3	4	5	—	1	—	—	—	—	—	—	—
52	8	6	7	4	2	—	2	1	—	—	—	—
(定期會)53	28	42	38	28	21	14	8	4	1	2	2	—
54	10	30	19	16	4	2	—	—	—	—	—	—
55	13	16	14	15	6	6	3	—	—	3	—	—
56	3	3	5	7	3	3	—	1	—	—	1	—
57	19	39	53	42	22	8	3	1	1	—	—	—
(定期會)58	60	74	59	35	27	20	4	13	6	1	—	2
59	16	19	16	6	5	2	—	—	—	—	—	—
60	8	14	6	6	—	—	—	—	—	—	—	—
計	342	525	540	320	161	104	45	36	16	14	6	4

(別表 3)

6代國會本會議及委員會別會議時間統計

會議名	總時間	總時間에 對한 比率
本會議	873.37	12.7%
法司	423.30	6.1
外務	253.04	3.8
內務	302.50	4.4
財經	777.50	11.6
國防	320.35	4.7
文公	505.44	7.4
農林	709.25	10.2
商工	399.02	5.8
保社	410.51	5.9
交遞	504.00	7.2
建設	333.00	4.8
運營	335.24	4.9
特委	531.45	7.7
豫決	185.00	2.8
計	6,865.39	100 %

(別表 4)

速記課人員增員算出內譯

1日 4個 委員會가 午後에 同時 開會하는 것을 基準으로 한다.

1. 所要人員

速記士 122人 (現 T/O 83) 編輯校正 49人 (現 T/O 25)
計 171人 (現 T/O 108) (課長 1, 係長 8, 庶務 1 除外)

2. 算出根據

가. 速記士

1個組當 翻文所要時間(10分 速記) 120分
休息時間 10分
委員會往復所要時間 10分
速記前後委員會待期 및 係長檢討 10分
計 150分

150分÷10分=15個組 (1個組 10分間 速記)

15組×2人=30人 (1個組 2人) (1個委員會 人員)

30人×4委員會=120人

計 120人+錄音, 統計 2人=122人 (現 T/O 83)

※ 本會議는 上記人員이 勤務

速記士 1個組가 速記完了後 2時間 30分(150分)이 經過하면 脱稿하
고 다시 速記에 動員할 수 있음.

4. 編輯校正要員

(1) 本會議(會議時間 3時間基準)

報告事項作成	60分
編輯 및 原稿校正	300枚×2分=600分
初 校	30枚×20分=600分
再 校	30枚×20分=600分
三 校	30枚×10分=300分
計	2,160分

2,160分÷400分=5人 (1人 1日 平均 400分 勤務)

(2) 委員會(同日同時 平均 4個委員會 開會)

委員會當 會議時間 3時間

總會議時間 4委×3時間=12時間

總原稿校正 및 編輯	1,200枚×2分=2,400分
初 校	(1,200÷10)×20分=2,400分
	(組版枚)
再 校	(1,200÷10)×20分=2,400分
三 校	(1,200÷10)×10分=1,200分
計	8,400分

8,400分÷400分=21人 (1人 1日平均 400分 勤務)

21人×2 (隔日)=42人

本會議 5人+委員會 42人+庶務, 配付 2人=49人 (現 T/O 25)

第4章 外國速記界

第1節 英國(議會를 中心으로)

英國은 現代議會制度를 가장 먼저 確立한 나라로서 모든 制度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오랜 歷史的 經驗을 쌓아왔다.

英國에 있어서 「헨서어드·스텝」(Hansard Staff)을 살피는 것이 바로 英國 議會의 速記活用을 살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오늘날까지 英國議會의 速記錄은 「헨서어드」速記士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은 公認速記士로서 英國議會의 本會議 및 公法案委員會에 있어서 進行되는 發言을 聽取可能한 것은 모두 記錄하게 되어있다.

英國議會의 速記錄作成 卽 速記士에 의한 速記錄發刊은 約 150년의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있으며 이 議會速記分野는 獨逸이나 日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先進國의 制度나 文物을 받아들여 採擇한 것이 아니고 英國國民의 政治參與 乃至 議會制度確立에 대한 民權鬭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民間에서 自然發生的으로 擧論되고 研究되어 議會로 밀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헨서어드」는 곧 「오피시얼·리포트」(Official Report, 速記錄, 公報)의 代名詞로서 이것을 一般人들은 議會速記錄으로 알고 있으며 이 名稱의 由來는 1803년에 始作되어 1889년에 議會의 速記錄刊行이 文書局에 引繼되기까지 私企業의 形態로 이 速記錄을 發刊販賣하여 온 「헨서어드」家(Hansard family)에서 따온 名稱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헨서어드·스텝」이란 「헨서어드」速記士 卽 國會速記士를 指稱하며 이들 「헨서어드·스텝」은 현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고 「오피

시얼·리포트」를作成하고 있다. 그리고 「랜서어드·멤버」라는 것은 「랜서어드」協會의 諸會員을 가리킨다.

「랜서어드」協會는 1944年 「코넬더·킹·홀」에 의하여 創始된 것으로 各分野別로 議會制度와 諸法律에 관한 모든 參考文獻을 研究하고 編纂하는 權威 있는 學術團體이며 그構成은 「랜서어드」速記士들과 100名이 넘는 議員들 그리고 議會制度를 研究하는 많은 學者들로 構成되어 있고 「파리아멘타리·어페어스」(Parliamentary Affairs)라는 雜誌를 이協會에서 發刊하고 있다. 또한가지 이 「랜서어드·스텝」들은 우리나라의 國會速記士들과는 달리 國會出入記者들과 歷史的으로 紐帶를 가지고 있는바 그들은 最初에 議會的 記錄報道라는 點에서 같은 言論人的 使命을 가지고 記者와 함께 議會的 鬭爭하여 온 經歷을 지니고 있다.

1771年 當時 下院은 院에서 行해진 討論에 對해서 秘密 保障을 完강히 主張해왔다. 이 까닭은 當時만 하더라도 國民의 代表가 모인 代議機關의 王權 奪取를 위한 鬭爭時期였으므로 그 討論의 內容이 君主에게 漏泄이 될 것을 싫어하던 習性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以後로 100年동안 王權보다는 議會的 權限이 擴大되고 集約되어자 討論內容의 公開를 要求하는 國民들의 輿論이 沸騰하게 되었다. 여기에 便乘하여 「존·윌크스」等 言論界에서는 감연히 實名으로 議會記事를 報道하고 나섰다. 또한 이로 因하여 이에 同調한 「런던」市長 및 參事會員 1名이 投獄되기까지 하였으나 議會는 世論에 눌려 新聞側의 勝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議會的 門이 開放되고 議會出入記者들은 記者席에서 議員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取材를 하게 되었다. 이들의 取材活動은 지금의 出入記者들과는 性格이 달라 各議員의 發言內容을 忠實하게 速記術을 利用하여 그대로 써서 發表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最近의 「랜서어드·스텝」들의 業務와 비슷하며 우리나라의 國會速記士들이 꾸미는 會議錄과 類似한 方式이었다.

1803年에 「윌리엄·코메트」는 新聞에서 報道되는 議會的 記事를 獨立시켜 「포리티컬 메지스터」紙를 議會議事專擔新聞으로 出發시켰다. 議事內容에 대한 註를 달고 새로이 編輯하여 議會發言을 全載하여 發刊한 것이 곧 「랜서

어드」의 始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베트」는 이 새로운 「타임」의 議會報告를 8년에 걸쳐 刊行하여 全國으로부터 好評을 받고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였다. 그後 그 自身の 權利를 印刷인이었던 「토마스·카존」에게 讓渡하였다. 「토마스·카존」은 當時 下院議事錄(速記錄이 아니다)의 印刷者인 「루크·헨서어드」의 아들이었다. 以後 그와 그의 子孫에 의하여 約 80年間に 걸쳐 이 「리포트」가 刊行되었다.

1813年 上下 兩院은 公務員으로서 速記士를 任命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하였다. 『議會의 「바」(Bar)나 또는 委員會에 있어서 必要할 경우 證據로서의 記錄을 作成하는 速記士 1名을 任命할 수 있다.』

이로因하여 任命된 사람은 「거니」速記法式을 創案한 「윌리엄·브러더·거니」였으나 議會自體에서 公認速記士를 採用하여 實際로 討議의 內容을 全部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100年後의 일이다.

1831년부터 議會에 있어서 記者席에는 有能한 速記士出身 議會出入記者들로 充 차게 되어 當時에 「헨서어드」紙는 記者席에 速記士를 派遣하지 않고 各新聞의 議會記事를 編輯하여 定期的으로 月 2回 刊行하였으므로 누구나 價値 있는 것이라고 認定은 하였으나 內容이 新聞의 複寫版같아 사람들로부터 興味를 잃음으로써 1850年代 中葉에는 破産의 徵候가 現 보였다. 이에 議會에서는 議會報道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1878년에는 議會 文書局豫算에서 補助金을 出할 것을 決議하고 新聞의 記事를 補充키 위해서 會議에 出席하여 記錄하는 速記士를 雇用할 것을 「헨서어드」紙에 勸告하였다.

이로서 「헨서어드」速記士 第1號가 登場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委員會는 「헨서어드」外에 「스태이트·오피시얼·리포트」(官公報告書)를 따로 만들지 않을 것을 決定한 것이다.

그러나 1890年 「T·C·헨서어드」는 그의 權利를 政府補助下에 運營하는 「헨서어드」印刷協會에 讓渡하였으나 記錄 및 編輯 能力의 不足과 文書局에서 오는 速記士의 給料을 「콘트랙터」(請負人)가 가로채는 등의 原因으로 破産하게 되고 1892년에는 「헨서어드」라고 하는 名稱은 表題에서 사라지고 「오소라이즈드·에디션」이라는 名稱으로 바뀌어 「타임스」紙의 速記士들에

의하여 꾸며졌다.

이것도 內容의 不充實로 文書局에 의하여 契約이 取消되고 「윌립브」의 印刷會社에 引繼되었는데 여기에서의 「리포트」作成業務는 6名의 速記士가 擔當하여 하루 15分交代로 5回정도 速記하고 譯文은 손으로 筆記하거나 「타이프라이터」로 打字하여 4~5週間마다 印刷되어 나왔다. 그러나 原稿는 發言者에게 보내져서 內容의 어떠한 訂正도 發言者에 의하여 行하여지게 되고 編輯者들은 編輯의 未熟으로 一般으로부터 蔑視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이 「오피시얼·리포트」는 一般 모든 사람이 거의 利用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의 發刊에는 莫大한 費用을 消費하였다.

이러한 「리포트」의 不健全性에 대해서 1892年 議會는 또다시 委員會를 召集하고 이에 대한 打開策을 討議하여 1907年에 이 委員會에서는 「速記錄은 政府가 作成하여야 할 것」이라는 決定이 내려졌고 政府는 이 勸告를 받아들여 當時의 財務相 「허브·하우스」氏에 의하여 具體案이 提示되었다.

即『下院에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10人의 速記士와 한 사람의 長을 둘 것, 討議가 行해진 다음날 午後 4時까지 速記錄이 配付될 것.

訂正은 內容의 문제에 限定할 것.』

이와같은 案이 提案되어 議會의 承認을 받았다.

한편 新聞界의 傾向은 過去와 같은 報道方法을 止揚하고 議會의 일에 대해서 깊게 報道하지 않고 간략하게 整理하여 表現하는 描寫的 記述方法을 擇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캐치」風의 報道로 因하여 議會로서도 이 報道의 方法과 「벳치」해야 한다고 「허브·하우스」氏는 主張하면서도 그 亦是 이런 方法은 議員들이 滿足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아직까지는 「후문트 벤치」의 議員을 除外한 議員의 發言은 3分之 1밖에 記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허브·하우스」氏는 以後 곧 『口述한 全文을 받아쓰면서 이에 대하여 無用한 말을 削除하고 明瞭하게 整理한 「리포트」를 作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915年 議會에서는 Press Association Agence의 議院出入記者인 「제임스·뉘트소우」氏에게 재모이 「오피시얼·리포트」의 陣容을 構成할 것을 要請하는 重大한 決定을 내렸다. 그는 이 要請을 받아들여 「오피시얼·리포트」를 正確

하고 公平한 姿勢로 確立시켰다. 卽 그는 速記士의 定員을 12名으로 增員하고 「타이피스트」 5名을 새로 採用함으로써 現在와같은 「햐셔어드·스텝」의 「테벨」에 到達하게끔 發展시킨 것이다.

1943年 11月 24日 當時 「에디터」인 「코놀류스」는 「오소라이즈드·에디션」 卽 「오피시얼·리포트」로 名稱이 바뀐지 約 40年만에 第395號의 맨 첫 「페이지」의 「議事」라고 하는 자리 밑에 적은 字로 「햐셔어드」라고 집어넣음으로써 「햐셔어드」의 名稱이 復活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햐셔어드·리포트」의 歷史的 過程을 살렸거니와 最近의 「햐셔어드·리포트」에 대하여 살펴보면 現在 「햐셔어드·리포트」에는 두가지가 있다. 會議時에 每日 公刊되는 「데일리 리포트」(Daily Report)와 1週日分을 綜合 編輯한 「위크리 햐셔어드」(Weekly Hansard)가 있다. 勿論 一字一句 빠지지않고 正確히 記錄된 速記錄입에는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들 「햐셔어드·리포트」를 作成하는 速記士들은 下院에 18名이 있으며 이 外에 「에디터」(editor) 2名 「어시스턴트 에디터」 1名 「서브 에디터」 1名 合計 22名과 6名의 「타이피스트」가 있는데 이 「에디터」들도 모두 速記士出身이며 또 모든 速記士들은 最低 40歲以上되는 사람들이고 「타이피스트」는 말 을 들으며 每分 80 乃至 100單語를 打字할 수 있는 能力者들이다.

이들 「햐셔어드·스텝」들은 모두 「웨스트민스터」 宮廷管理長官麾下에 있으며 議院內에서는 印刷 및 討議委員會(the Publications and Debates Committee)의 監督을 받고 있다.

그리고 「햐셔어드·스텝」의 業務過程은 速記士가 會議室에서 15分間씩 交代하여 記錄하고 이것을 한時間정도 讀讀하면 「타이피스트」가 打字하게 되고 打字한 原稿를 10分間 校閱하는 것이다.

速記業務에 있어서 特異한 點은 交代方法으로서 첫번 記錄하는 者가 正速記士(duty reporter)가 되고 다음차례의 速記士는 副速記士(check reporter)가 되어 正速記士는 發言內容을 記錄하고 副速記士는 같이 速記하면서 議員의 姓名이나 잘 알수없는 文字를 「체크」하여 正速記士에게 알려주는 役割을 한다. 卽後 交代時間이 되면 副速記士가 正速記士가 되며 먼저의 正速記士

는 退場하고 第3의 速記士가 副速記士가 되어 補助活動을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렇게하여 原文을 記錄한 「렌서어드」速記士는 翻譯할때 一般速記士와 달리 文法이나 말의 意味, 文脈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 그는 機械的으로 自身の 「노트」에 써있는 것 그대로를 읽어내는 것 外에는 議員이 發言한 것외의 發言事項에 대해서도 表現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發言가운데 들어난 明白한 「미스페익」(mistake, 잘못)은 신중한 注意力을 가지고 訂正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이들 速記錄의 正確性에 대하여 1949年 2月17日 「크리프톤·브라운」議長은 「「렌서어드」는 특히 正確無比한 것이다. 그들이 틀린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들은 단순히 速記할 뿐만 아니라 議員의 姓名을 알아야 하고 議事節次나 案件處理등에 있어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能力이 뛰어나더라도 누구나 「렌서어드」速記士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나는 마음으로부터 이들 速記士들에게 讚辭를 보낸다.」고 發言하여 이들의 能力을 認定하고 勞苦를 致賀하고 있다.

實로 「렌서어드」速記士가 重大하게 誤聽을 한 것이란 거의 없다.

다만 「타이프」過程에서 誤聽이나 綴字를 잘못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印刷가 끝나는 過程에서 거의 發見되어진다.

그러므로 「렌서어드」速記士의 權威는 下院의 內外를 不問하고 높이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모든 「리포터」(Reporter)中에서도 가장 重責을 맡아 激務를 치루고 있다는 것은 議員들이나 모든 記者들이 認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議會의 公式的인 눈」으로서의 議長의 重要性에 그 다음가는 「議會의 公式的인 귀」(the Official Ear of the House)라고 指稱되어 議員들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다.

이들 速記士들이 業務의 輻輳와 그 記錄의 重要性 그리고 어려움으로 因하여 겪은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速記士는 事務室밖 「덱스」江으로 速記「노트」를 내던져 翻文을 回避한 일도 있으며 「하리·아산단」이라는 速

記士는 臨終直前까지 完了하지 못한 業務를 그의 아우인 「프리메릭」에게 再口述 翻文케하여 任務를 完遂한 일도 있다. 이 「아산단」의 義務에 대한 忠實性은 感謝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에게 想起되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記者席에서 생생하게 傳하여 지고 있다.

이러한 「랜서어드」速記士들의 人員은 아직도 業務에 比較하여 不足하나 增員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缺員조차 補充이 어려워지고 있다.

원래 2次大戰前에는 下院의 新聞記者들中에서 缺員을 補充하였다. 그들은 議會에서 오랫동안 取材活動을 하는 동안에 議事節次를 全部 理解하게 되고 議事報道에 익숙하게 되므로 「오피시얼·리포트·스텝」이 될 素材로서 適當하다고 認定받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中에서도 더욱 信賴도와 熟練도가 높은 老練한 人들을 任命하기 위하여 40歲以上되는 速記士를 採用하는 方法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戰後에 있어서 議會記者들은 取材能力和 速記能力이 一致하지 않은뿐더러 「랜서어드」速記士의 業務에 比較하여 記者들의 業務樣相이 달라지게 되어 議會記者들로 「랜서어드」速記士의 增員乃至 缺員을 補充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議會에서는 速記士의 養成制度가 論議되었으나 아직은 實施되지 않고 있다.

「랜서어드」速記士들의 意見은 『優秀한 速記士는 눈치가 빠르고 行動이 敏捷하고 國語와 人들의 理論을 잘 理解하고, 發言內容을 어그러뜨림이 없이 翻文하고 또 調整하는데 있어 自由로이 用語를 驅使하고 高速度의 速記를 할 수 있는 職業的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랜서어드」의 速記士들은 速記力만을 重視하지 않으며 翻文에 있어서 批判的 判斷을 加할 수 있는 能力者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랜서어드·스텝」은 激務로 因한 人員의 增加와 缺員補充이 時急함을 느끼면서도 上述한 諸能力을 갖추어야 「랜서어드」의 權威를 維持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랜서어드」速記士를 採用함에 있어서 慎重을 기하고 있다.

第2節 白耳義(速記教育을 中心으로)

여기에 記述한 「白耳義의 速記教育」은 「日本의 速記」誌에 寄稿한 「유켄·프산」氏의 記事를 그대로 轉載한다.

나는 白耳義의 速記教育을 말하기 前에 내가 發起人이 되어 設立한 速記 者及 秘書의 「유니온」(C.B.S.S.C)의 25年의 事情을 말해 주고자 한다.

設立當初 우리들 「유니온」의 構成 「멤버」는 거의가 不完全한 狀態에 있는 各種團體의 代表者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戰後에 바로 速記 教育을 再開할 수 있었다는게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겠다.

終戰直後의 우리 速記界는 아주 貧血狀態로 議會事務局에서도 速記者를 찾기에 苦楚 애를 썼다. 어느 上院議員이 『거우 찾던 것(速記士)을 찾아냈다!』라고 말 했다는 예기는 當時 우리들이 埋沒되어 있던 凋落相을 바로 表現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優秀한 速記者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社會의 需要에 應하기에는 너무나 少數였다.

그러나 過去의 感傷은 그만두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現在는 滿足할만 하고 將來는 더욱 約束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白耳義의 教育制度

速記教育에 대한 예기의 前提로 먼저 白耳義의 教育制度 全般의 特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는 憲法上의 權利 卽 「教育自由」의 權利에 由來하고 있다. 때문에 몇가지 長點과 短點을 同時에 갖고 있는데 長點으로서는 各學校間의 自由競爭에 의해 끊임없는 向上이 圖謀되고 對抗에 의해 積極的인 教育意慾이 涵養되고 있다는 點 等이며 短點으로서는 누구든지 教育에 參加할 수 있기 때문에 補習같은 者들이 體育을 가르치고 [ʒ]를 [z]로, [ʃ]를 [s]로 이와같이 發音이 不正確한 者가 雄辯術을 가르치는 것도 可能케 하는 等의 모순이 있다.

둘째 우리 白耳義는 두種類의 國語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는 당연히

教育活動의 統一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佛語(와론方言)를 쓰는 國民은 佛蘭西에서 만들어진 「네소오드」를 主로 採用하고 우리들 「후라만」語(和蘭語方言)國民은 和蘭式의 것을 즐긴다. 그러나 이것이 統一的으로 確立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和蘭式에는 佛蘭西式도 많이 섞여있는 實情이다.

(註). 1963年 8월에 言語境界가 設定되었는데, 比率은 「후라만」語 55.4%(北部의 「후라들」地方 約 5백 26만名) 佛語 32.7%(南部「와보니에」地方 約 3백 10만名) 獨語 0.6%(東部) 併用 11.3%로 「후라만」人의 勢力이 늘어나고 있다.

세제로 몇가지의 教育形態가 共存하고 있다.

- ① 國, 道, 市, 洞, 村立의 이른바 公立學校.
 - ② 教會附屬學校
 - ③ 私立學校. 특히 國家의 認可를 받고 補助金(敎員의 俸給이나 經常費에 充當)을 交付받을 때에는 「認可學校」라고 한다.
 - ④ 學生의 事情에 應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適當한 時間에 공부하는 個人敎授「시스템」 또는 通信敎育方法도 있어서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 以上이 우리 白耳義의 敎育制度 概要이다.

나. 過去의 速記敎育

그러던 白耳義의 速記가 어떻게 普及되어 왔는가 그 背景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나라에 普及되어 있는 速記法式은 「에메·파리」式(Aimé Paris) 70% 「쁘레보·듀로네」式(Prévost-Delaunay) 15% 「듀우로와에」式及 「그루트」式(Duployét Groote) 10% 其他로 되어있다.

(註) 「에메·파리」式 「듀우로와에」式等 佛語諸方式은 「가펠스버거」式等の 草書派(cursive)와 區別해서 幾何線派(géométrique)라고 일컬어진다.

議會에서의 速記는 184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速記가 우리나라에 普及되기 始作한 것은 今世紀에 들어와서부터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民間人에게 맡겨져 있었다. 『偉大한 小說家는 死後에도 계속 사람들을 感化시키는 것이다』라는 「피테」의 말이 眞實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지난날 速記分野에 있어서 한 時代를 劃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影響을 미치

고 있는 몇先人들의 이름을 列記할 수 있다.

即「J·메스만」(1897년에 L'institut National de Sténographie를 創立. 「에메·파리」式), 「O·가렛」(에메·파리式), 「A·드·바엘드마크」(「듀푸로와에」式), 「G·로크니」(프레보·듀로네式)의 諸氏이다.

이들 開拓者中에서도 「J·메스만」은 그時代의 가장 熱烈한 啓蒙家였다. 그는 많은 學校에서 그의 法式을 가르치고 成功했다. 國家가 이 分野에 손을 대게 된 것은 그 훨씬 뒤의 일이다. 國立의 諸學校에서 速記를 授業科目에 넣은 날자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1910年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곧 速記教育은 經驗主義에 支配되어 教師各自가 되는대로 自己 나름의 方法을 取했기 때문에 素質이 있는 學生의 「에네르기」도 그 때문에 헛되히 消費하게 되어 速記教育者의 情熱은 消散하여 『速記教育界는 바야흐로 憲法없는 國家다』(「E·크잔」著「速記의 歷史」에서)라고까지 말해 왔다. 兩次大戰에 끼었던 時期는 또 「아마추어리즘」과 商業主義 때문에 資格免狀(diplôme)의 無秩序化를 가져온 때도 있었다. 그 無定見한 濫發은 速記自體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다. 使用者側에서도 곧 이 免狀의 無價値한 것에 눈치를 채게 되어 부득이 速記者代身 機械錄音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1946年 내가 速記教師大會의 司會를 맡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警告를 한 일을 지금도 記憶하고 있다. 『앞으로 10年 또는 15年 사이에 速記를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願한다면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하고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라고... 우리들의 苦惱은 결국 「베터런」速記教師의 殆不足이라는 點이었다. 國家에서는 그에 대한 措置로서 多少나마 速記를 알고있다 하면 一般敎科의 教師라도 在職한채로 速記教師로 돌렸으나 速記는 大部分의 學校가 選擇科目이었기 때문에 配當된 授業時間은 極히 적어 쉽게 想像될 수 있는 바와같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수는 없었다.

다. 오늘날의 速記教育

速記의 現在는 많은 中學校 實業學校 定時制商業科의 正規科目으로 들어가 있다. 實業學校에서는 과거에 選擇科目이었던 速記가 지금은 必須科目(大概 1週 2時間)으로 되어있다.

速記教師의 採用은 適性檢査에 의해서 施行되고 있다. 그것은 教師의 水準을 向上시키는 데에는 賢明한 措置였으나 志願者가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우리 「유니온」(協會)은 速記教師養成을 위한 標準「코오스」試案을 作成하여 提唱하였다. 이 試案은 곧 「익셀」郡(「부웃셀」近郊) 當局者의 贊同을 1次로 얻어 後援을 받았다(1945年 5月 25日) 그 「프로그램」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한 法式에 對하여 깊이 연구할 것.
- ② 普及 宣傳方法의 比較研究
- ③ 速記의 歷史와 進歩의 研究
- ④ 他法式의 研究
- ⑤ 選擇한 法式에 對하여 批判的으로 研究할 것.
- ⑥ 教師 及 專門家用의 技術.
- ⑦ 速記教育方法論.
- ⑧ 商業通信.
- ⑨ 商業文 商法 及 實務.
- ⑩ 心理學一般(選擇科目)

거기에서 受講者는 速記에 對하여 選擇한 題目으로 「리포트」를 作成하고 最後로 速記實技(分速 100 word=180「씨러블」)의 關門을 거쳐 速記教師의 資格免狀이 授與된다. 養成「코오스」의 年限은 2年 法式은 不問이다. 受講資格은 高等中學(12歲~18歲)에서 商學을 배운 學生 或은 國民學校의 人文科學教師로서 21歲以上の 者로 되어있다.

이러한 試案이 12年이 지난 1957年 10月 11日 勅令에 依하여 速記教師 資格에 關한 特別法으로 制定되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試案이 公認되어 우리들이 特別法에 의한 資格試驗 受驗者의 가장 有力한 供給源이 된 셈이다. 實際 우리들의 教育은 커다란 成果를 올려 少數의 例外를 除하고는 大部分의 受講者가 資格試驗에 「패스」하고 있다.

特別法에 의한 資格試驗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受驗者는 다음 法式中에서 하나를 選擇하게 되어있다. 「에메·파리」式 또는 그 派生的法式 「프레보·듀로네」式, 「듀루로와에」式 及 「그루트」式. 우리들

은 標準「코오스」의 講義要目を 編成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速記教育方法論은 가장 잘 整備되어 있어 이미 몇個 國家의 同志들이 이를 採用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速記教育의 概要를 客觀的으로 傳했다고 생각한다.

라. 來日을 위하여

우리들은 白耳義速記教育의 唯一한 權威者라고 主唱한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들이 言語, 思想, 法式을 不問하고 各方面의 同僚들과 같이 有益한 活動을 해 온 것만은 누구에게도 異論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活動은 앞으로도 끊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速記의 將來에 대해서 疑視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現在의 우리들에게는 團結만이 速記의 永續性을 保障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義務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參與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目的은 速記教師의 要求하는 物質的 利益을 保障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의 職業的 價値回復을 期하는 데에도 目的이 있다. 과거에는 速記「크라스」도 모자라고 教師도 모자라는 狀態였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經濟機構에 끼어 들어가는 젊은 學生들의 일이다.

마. 結 語

우리나라의 젊은 速記者의 實力은 E.E.C의 同僚들과 훌륭히 어깨를 겨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外國의 同僚들과 交流를 권장하는 중요한 理由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速記를 보다 깊이 연마할 必要를 느끼고 速記者가 決코 孤獨한 職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速記法의 根本이 綴字法과 一般教養에 있다고 할때 外國語의 공부가 오늘날의 緊急課題라는 것을 認識해 주었으면 싶어서 이다.

第3節 瑞 西

이 글은 「日本の 速記」雜誌에 掲載한 「안티·다소」의 寄稿內容을 轉載한 것이다

—ASSAP(瑞西「에메·파리」速記協會)의 歷史—

本誌(「르·스테노그라프」)創刊의 해 1845年當時即 19世紀末은 「라·베루·에포크」(太平時代)라고 보통 일컬어져 왔다. 그것은 이러한 時代였다. —사람들은 太平聖代를 謳歌하며 誇張된 書簡體의 詩가 流行하고 밀도 끝도 없는 文體가 팔리고 파고드는 즐거리의 小說이 愛好되었다. 商業通信文까지도 그러한 誇張된 빙빙도는 語套의 趣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饒舌體 全盛時代에 이어 나타난 것이 筆記技術 即 우리들이 從事하고 있는 分野 「速記」의 研究家들이었다.

歐羅巴에서는 古代에서부터 「타로」式 速記가 쓰여져왔다. (「시세로」가 그의 解放奴隸書生 「타로」에게 紀元前 63年頃 考案 使用시킨 「라틴」語의 速記法이며 그 紀元은 회답에서 찾을 수 있다. 뒤에 「쾨네키」에 의해 改良되어 主로 宗教關係에서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不完全한 것이었다.

歐羅巴諸國에 참으로 近代的인 速記法이 나타난 것은 19世紀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19世紀가 되어 佛語關係에서는 세가지의 方式이 일어났다. 即 「듀루로와에」, 「프레보·듀로네」, 「에메·파리」이다. 「에메·파리」式의 創案者 「에메·파리」(Aimé Paris)는 1798年에 西部 佛蘭西의 「감멜」에서 태어났다. 그는 「에콜·포리테크닉」(理工科大學)에 入學할 꿈을 품고 공부 계속했으나 中途에서 方針을 變更 辯護士가 되기 위해 「코레쥬」(人文系大學)에 入學 卒業後 辯護士가 되었다.

그러나 寡婦나 孤兒들이나 지키게 된 辯護士職을 그는 곧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그가 辯護를 해서 無罪가 된 窃盜가 辯護士「파리」에게 答禮人事次 찾아온 그자리에서 惡人「파리」의 모자를 훔쳐갔다. 이 일은 그로부터 辯護士라는 職業에 대한 情熱을 앗아갔다.

그때 유언히 그는 速記에 關心을 갖고 처음에 「네일러」式 이어서 「구데헤안」系의 「코난」式을 배우기 始作했다. 거기서 辯護士服을 벗어버린 後 그는 드디어 「쿠리에후판제」(佛蘭西通信社) 또 다음으로 「콘스티튜쇼널」社의 速記者로서 入社를 했다.

그의 速記에 의한 收入은 점점 그가 自力으로 完成시킨 速記方式의 宣傳

普及에 投入이 되어갔다.(그가 소위「에메·파리」式을 完成한 것은 1822年 그의 나이 25歲때라고 傳해지고 있다.)

1827年 그의 速記에의 情熱은 그를 瑞西의 「로잔느」及 「쥬네브」에 向하게 하였다. 瑞西各地에서 그는 講演會를 열었다. 그의 講演에 感銘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速記法을 배울 것을 希望했다. 그들은 瑞西의 佛語地方에 그것을 導入시키기 위해 研究會를 만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瑞西速記協會(L'Union Sténographique Suisse)에 대한 얘기를 記述해 두고자 한다. 이 團體는 1883年에 「듀프로와에」式 關係者에 의해 組織이 되었다. 따라서 87年까지는 瑞西速記協會의 會員이 使用하는 速記法式은 모두 「듀프로·와에」式이었다. 87年 7月 7日 이날을 期하여 協會는 各速記方式의 比較研究의 結果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에메·파리」式을 協會가 스스로 普及宣傳에 힘쓸만한 速記法式으로 選定할 것을 결정했다. 그것은 가장 單純, 가장 明快, 가장 容易, 가장 論理的이라는데 理由가 있었다.

우리들 「에메·파리」式 速記者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오귀스트·두이에=베버」(1858~1908)도 처음에는 「듀프로와에」式이었으나 그와 그의 同僚들은 途中에서 同式을 버리고 「에메·파리」式으로 옮겼다. 그는 가능한 모든 機會를 놓치지 않고 「에메·파리」式의 眞價를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努力을 했다. 「萬人이 받아들일 수 있는 唯一한 速記法」 그것이 바로 「에메·파리」式이다」라고 그는 썼다.

「쥬네브」에서 몇사람 有志의 손으로 雜誌 「에코·스테노그라픽」의 發行이 企劃된 것도 「에메·파리」式의 眞價를 世上에 널리 特히 佛語地方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雜誌의 第1號는 1894年 1月에 나왔다.(우리들은 그날로부터 세어서 75年제의 今年 이와같은 記念號를 내고 있다.)

雜誌의 初代編輯長은 누구였는지 유감스럽게도 그 記念할만한 創刊號를 읽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企劃者 起業者가 「쥬네브」사람들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1894年 5月 29日 瑞西速記協會는 「로잔느」에서 會舍를 열고 「에코·스테노그라픽」을 協會의 公式機關紙로 할 것을 決定했다.

1934년에 이르러 全國의 「에메·파리」式 速記者가 結集하여 「瑞西 에메·파리速記協會」가 發足되었다. 그와 同時에 機關紙로 綠色「마크」의 「에크·스테노그라픽」에서 灰青色의 「마크」인 「르·스테노그라프」로 名稱을 變更 오늘날에 이르렀다.

速記는 知識人 責任있는 職業人の ABC가 된다. 速記는 그들에게 있어 極히 實用價値가 높은 補助的 筆記法——文字로 代置되지는 않음는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75年째를 맞은 「르·스테노그라프」는 지금까지도 그했던 바와같이 가까운 將來에 提起된 諸問題에 關心을 계속갖고 또 그로써 速記에 關心을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膾炙될 것이다.

歐羅巴의 心臟部에 位置한 瑞西는 特히 저 有名한 赤十字(本部가 「주네브」에 있다)의 存在 及 教育機關의 數가 많은 것으로 世界에서도 確實히 有力한 國家로 있어왔다.

各各의 地方마다 네가지의 言語가 公用語로서 認定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速記教育은 그 搖籃期에 佛蘭西 及 獨逸의 速記 各流派의 影響을 받았다.

네가지의 言語란 卽 獨語(全人口의 70%) 佛語(19%) 伊語(10%) 「레트·로망」語(1% 世俗「라틴」語에서 派生하여 伊語와 섞인 「로망」語系의 말)이나 各地, 各市, 邑, 面마다 各各 無數한 方言이 쓰여지고 있다.

—各言語區에의 速記의 移入狀況—

獨逸語區·伊太利語區

其 耳 土 語 學

1854年頃 獨逸語區에 먼저 「가펠스버거」式 이어서 「슈틀케」式이 紹介되었다. 兩方式 共히 普通文字에 準하는 書法(「로마」字筆記體에 準하는 斜線을 使用)의 草書派이다. 1897年「슈틀케」式과 「슈라이」式이 合體했다. 當時에서 오늘날까지 獨逸語區에서 行해지고 있는 것은 이 「슈틀케=슈라이」式이다. 瑞西 「슈틀케=슈라이」速記協會는 同 速記法式을 瑞西 最南部의 「테시노」州(伊語區)에 普及시키기 위해서 獨逸速記를 伊語로 應用해 볼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極히 興味있는 것은 「슈틀케=슈라이」式 伊語速記學校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伊語區에 있어서 安定된 地位를 잡기에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佛蘭西語區

「에메·파리」가 瑞西에서 最初의 速記講習會를 開催한 것은 1830年頃の 일이다. 그로부터 40年쯤 지난 1870年頃 「에메·파리」式보다 大衆的인 佛語速記法인 「아베·뉴프로와에」式的 流行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多數의 速記者가 同法式的 教師가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에메·파리」式的 速記者들은 1887年以來 스스로의 法式的 熱烈的 擁護者 卓越한 布教者가 되어 「에메·파리」式 速記發展에 盡力했다.

그들은 그 眞摯한 活動을 통해서 速記者뿐만 아니라 教授者 거기의 行政當局의 信賴를 獲得하기에 足한 組織力을 發揮했다.

1934年이 되어 再編된 瑞西「에메·파리」速記協會(ASSAP)는 「뉴프로와에」式的 速記學校關係를 除外한 瑞西의 佛語速記關係者(大部分「에메·파리」式的 사람들)의 大多數를 ASSAP 밑에 糾合하는데 成功했다.

1941年 「말셀·라쉬누」氏(「인터스테노」事務總長, 「에메·파리」式速記教授)는 「슈톨케=슈라이」速記協會의 同僚들에게 示唆되어 速記教育과 實務에 關한 極히 活動的인 機關을 設立했다. 그것이 세가지 方式(「에메·파리」, 「뉴프로와에」, 「슈톨케=슈라이」)의 指導者들을 모두어 받은 瑞西速記評議會이다.

이 機關에 의한 사람들의 協助와 協력이 過去에 있어서 3方式間에 存在하던 軋轢을 解消시키는데 成功했다.

第4節 土 耳 其

다음에 掲載한 글은 「이외산·예필」이 「日本의 速記」雜誌에 寄稿한 內容을 譯載한 것이다.

623年間에 이르는 「오스만」帝國의 「슬탄」制가 廢止되고 「土耳其」에 共和制가 宣言된 것은 1923年 10月의 일이다.

共和國 發足과 同時에 初代大統領에 就任한 「무즈타파·케말·파샤」는 近代國家建設을 向해 모든 方面에 걸쳐 舊制度의 改革에 着手했다. 그 當時에 斷行된 여러가지 重要한 改革中에서 政治와 宗教의 分離等과 함께 特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1928년의 文字改革이다.

帝國時代의 言語(「오스만」語)에 代身하여 採用된 共和國語의 特徵은 우선 語彙가 隨지리 바뀐 것(佛語等の 유럽語를 많이 借用하고 死語를 復活시킨 다른지 새로운 複合語를 만든다든지 했다.)과 同年의 文字改革에 의하여 「아라비아」文字 대신 新「라틴」字母가 採用된 일이다. 共和國 國語의 定着 試驗 特히 後者の 文字改革은 완전히 成功하였다.

이 文字改革과 거의 같은 時期에 「이스탄불」사람 「아크람·베나로이야」는 土耳其에 近代의 速記法式을 導入하고자 「프레보·듀로네」式(佛語速記法)의 諸法則을 따오면서 「듀루로와에」式을 土耳其語에 適用하고자 試圖했다. 帝國 時代의 土耳其에는 國內에서 速記를 必要로 하는 社會的 條件이 具備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또는 「아라비아」文字가 말하자면 有効한 速記文字였다는 것 등 때문에 이 「베나로이야」의 試圖 以前에 土耳其에 近代의 速記法式이 일어날 條件은 없었다. 「베나로이야」의 企圖는 成功을 거두어 42년까지의 10 有餘年間에 그의 速記法式은 土耳其國民議會事務局에서 採用되고 또 國立의 各商業高等學校에서도 그 速記法式을 가르치도록 되었다.

「듀루로와에」式이 導入된 當初 土耳其語의 「라틴」字母表記의 形態에 맞추어서 速記符號의 쓰는 原則이 다음과 같이 定해졌다.

- ① 發音(an, en, in, ln)은 母音符號를 진하게 쓴다.(濃淡法)
- ② 말의 처음音節中の 連音(ar, er, ir, lr)은 母音符號를 擴大해서 表示한다.
- ③ 語尾의 連音(ar, er, ir, lr)은 그 말의 符號의 末尾를 擴大해서 表示한다.

여기에다 42년에 速記教授者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原則을 添加했다.

- ④ 語頭의 母音은 省略할 수가 있다. 語尾의 母音도 같다.(母音短縮法)
- 처음에는 土耳其語 獨特의 音이나 말에 맞추어 歐美의 速記法에 없는 特殊한 速記符號가 몇인가 使用되어 왔으나 배우기가 困難했기 때문에 4原則에 의거하여 점차 改良이 加해져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42년의 改良時 「깃트먼」式(英語速記法)의 速記符號가 얼마간 採用되어 55

년까지의 사이에 점차「릿트맨」식의 比重이 늘어나는 端緒를 만들었다. 또 最近에 와서는 새로이「그레그」式(美語速記法)의 採用이 檢討되어 現在 몇 군데 書記官養成所에서 實驗的으로「릿트맨」式을 主로 한 在來式方法에 添 加해서「그레그」式이 教授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兩方式에 대한 學生의 進 度 教育上의 問題點等의 科學的인 比較檢討가 계속되고 있다.

「그레그」식의 長點은 在來의 土耳其語速記法에 比해서 半草書體이기 때문 에 符號를 連續해서 쓸수가 있어「스피드」에 便乘할 수 있다는 點에 있다.

(註). 土耳其語=狹義의 土耳其語는 土耳其共和國의 言語를 말하지만 廣義의 土耳其 語(투르크語라함)는 소련,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외 랴, 유고, 키프로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中國(新疆省)에 居住하는 土耳 其人 乃至 土耳其系住民間에 使用되어 土耳其語人口는 土耳其共和國內의 2,400 萬人(人口의 約88%)외에 各地域에서 4,600萬人以上으로 推定되고 있다.

土耳其語는 「우랄 알타이」語族에 屬하여 日語, 蒙古語, 헝가리語 핀란드語 를 비롯 韓國語도 同系統의 言語로써 그 特徵으로서는

- ① 母音調和가 嚴密하고 整然하다.
- ② 自己의 經驗한 過去와 自己가 經驗하지 않은 過去를 別種의 動詞語尾로 區別하고 있다.
- ③ 進行을 表하는 動詞語尾가 있다.
- ④ 語彙의 大部分을 外來語가 차지하고 있다. 從來에는 아랍語, 페르시아語, 最近에는 佛語가 많다 等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土耳其國內의 言語分布는 土耳其語 88.3% 알브르語 7.8%以上 아랍語 1.3% 希臘語 0.4% 其他(알메니아, 헤브라이, 다즈等) 2.2%以下라고 한다.

第5節 日 本

다음에 記述하는 內容은 日本議會制度를 視察한 速記第1係長 金眞基氏의 視察報告中 重要한 것을 간추려 掲載한 것이다.

가. 日本速記의 發展過程

1969年으로서 日本速記發表 87週年이 된다.

1882年에 田鎖綱紀에 依해서 當時의 時事新報에 「傍聽記錄法」이라는 論文 을 發表하고 이어 同年 10月28日부터 第1回 速記講習會를 開催한것이 日本

速記의 最初이며 따라서 日本速記界에서는 每年 10月 28日을 速記發表記念日로 定하여 記念行事를 하고있다.

日本速記의 發展過程을 大體로 5期로 區分하여 그時代別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1期는

明治初年(1868年)부터 明治 23年(1890年) 帝國議會 成立과 同時에 速記가 採擇될때까지의 期間이다. 이 期間동안에 日本에 歐羅巴 等の 速記가 紹介되어 日本速記가 研究되기 始作하여 田鎖綱紀의 速記講習會가 열렸으며 速記實務者가 社會에 나오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이 期間을 日本速記의 成立期라고 할 수 있다.

② 第2期는

第1回 帝國議會에서 記錄을 始作한 때로부터 明治末年(1911年)까지의 期間이다.

이 期間동안에 日本速記는 帝國議會를 中心으로 하여 基盤을 鞏固히 하고 地方議會로의 進出로 次次 幅이 넓어지고 또한 새로운 利用分野로 新聞社의 電話速記가 始作되었으며 따라서 速記士의 數도 漸次로 늘어났다. 速記法式도 從來의 田鎖綱紀式 以外에 두서너가지가 考案 發表되었으며 速記實務가 순조로이 發展한 時期이다.

③ 第3期는

大正時代(1912年~1925年)인데 이 時期는 速記가 教育面으로 發展한 時代이다.

貴族院 衆議院 兩院에 各各 速記士의 養成機關이 생김으로써 速記教育이 一層 活潑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法式이 發展됨에 따라 速記의 一般에 대한 普及이 積極적으로 行해졌다.

한편 速記料金の 協定問題를 發端으로 日本速記協會가 생겼으며 이로써 日本速記界의 統一이 이루어진 時期라고 할 수 있다.

④ 第4期는

昭和初년부터 2次大戰까지(1926年~1945年)를 잡아본 時期이다. 이 期間

동양에 日本速記界는 裁判記録과 速記士法으로써 活路를 開拓하려고 했으나 成功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一般新聞이나 雜誌 系統에서 座談會가 盛行하여 速記의 커다란 需要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普及을 始作했으며 通信教育도 始作되었다.

日本速記協會에서도 技術試驗을 施行하여 技術水準의 向上에 努力하고 한편으로는 速記의 科學的 研究도 行하여 졌다. 이期間을 通하여 보면 速記界가 內部的 整理에 努力한 時期라고 볼 수 있다.

⑤ 第5期는

世界第二次大戰末期부터 今日까지(1945年~1968年)의 期間이다. 이期間에 日本速記界가 美國文化의 影響을 받아 크게 飛躍하게 되었다.

大望하던 裁判記録도 速「타이프」라는 機械速記를 採用하게 되어 實務를 하게 되었으며 그외에 速記教育의 擴大라든지 速記法式의 普及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時期보다도 많은 速記士가 活躍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速記關係에 機械가 積極的으로 活用된것이 이時期의 커다란 特色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日本速記文化 興隆의 時代라고 말할 수 있다.

나. 日本速記의 法式構成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걸어온 日本速記는 그種類에 있어서 現在 70餘 法式이 있다.

이를 流派別로 나누어보면 正圓派는 幾何學的인 線을 利用한 것으로서 最初로 實用化한 것이 田鎖式이 Pitman系의 Graham式을 基礎로 하였는바 그後 改正增加되어 왔다.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早稻田式, 衆議院式, 參議院式, 熊崎式, 中根式 등이 그것이다.

斜線派는 「로마」字의 筆記體를 整理하여 左下 右上의 斜線劃을 基礎로 하였다. 田鎖系의 若林系列에 依하여 一部 利用되어 毛利式에 이르러 全面的으로 採用되었다.

毛利式이 基礎로 한것은 Faulmann式(獨語)이다. 現在 實用化 하는것은 毛利式뿐이다.

楕圓派는 正圓派와 斜線派를 折衷한 것으로서 이派에 屬하는 것으로는 宅間式 酒井式 등이 있는바 이는 Gregg式(英)을 基礎로 하였다. 또한 正圓派의 系統에 屬하는 側에서도 積極적으로 使用하려 하여 田鎰系의 森山式 中根系의 口字式 등이 現在 이를 使用하고 있다.

다. 日本速記界의 現況

① 概 觀

日本全體의 速記人口를 보면 既成速記士가 大略 5千餘名으로 推算되며 全國 各種 教育機關에서 速記를 習得中인 者는 約 2萬餘名에 達하고 있다.

1967年度에 日本速記協會에서 實施한 第3回 檢定試驗의 志願者數는 3,403名이었고 이中에 合格者數는 1,258名에 達하였는데 이는 日本速記界의 急激한 發展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日本速記界는 速記의 社會的 評價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한 文化團體인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와 速記人의 地位向上과 福利增進을 圖謀하기 爲한 各地方의 速記士會와 이를 聯合한 全國速記士團體聯合會의 二元的인 速記團體의 組織을 中心으로 活動하고 있다.

② 速記利用分野

專屬速記士를 두고 있는 機關으로는 衆議院事務局, 參議院事務局, 東京地方裁判所 등에 各各 150餘名씩의 速記士가 있고 民間機關으로는 共同通信의 本사와 全國 各地의 支社 支局을 包含하여 總計 150餘名 其他 官廳에 있어서는 各地方裁判所, 高等裁判所, 都, 道, 府, 縣, 市議會等 地方議會와 民間에 있어서는 朝日 毎日 讀賣를 爲始한 各新聞社 放送局 등에 많은 專屬速記士가 活躍하고 있으며 自由速記士로서는 速記事務所를 두고있는 것이 普通이다.

速記事務所中에는 株式會社도 있으며 專屬印刷所를 가차고 있는 예도 있다. 그 需要의 筆頭는 雜誌關係와 各種團體의 總會等을 擔當하고 있으며 特別 醫學專門速記事務所라는 것이 있어서 速記의 專門化를 期하고 있다.

速記事務所의 代表的인 會社를 보면 共立速記印刷株式會社, 東京速記株式會社, 澤速記株式會社, 「아다고」速記株式會社 등이 있는데 이들 會社는 各各

20名内外의 速記士를 雇用하여 速記 依頼가 오면 全體人員이 動員되어 10分乃至 20分交代로 速記錄을 作成하고 協定된 速記料金を 받고 있다.

共立速記印刷株式會社の 境遇는 直接 孔版印刷施設까지 設備하여 需要者의 要請에 따라 速記錄을 印刷 納品하고 있다.

以上은 職業速記의 分野이나 實地 速記의 習得者가 모두 職業速記士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速記라는 길이 다른 職業보다도 日常生活에 餘力까지로 活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日本에 있어서도 歐美式 執務法의 採用으로 一般官廳이나 實業界에 있어서의 事務的 利用이 盛行하고 있다. 그것은 書類나 往復文書의 口述速記이며 「타임스프」를 兼한 文書作成事務가 넓어진 것이다.

秘書가 되면 電話나 傳言 或은 應接 交涉等の 「메모」에도 活用되고 있다.

③ 速記教育現況

專屬速記士養成機關을 가지고 있는 機關은 衆議院 參議院과 裁判所가 있다. 現在 參議院에서는 速記士의 公募를 하고 있지 않으나 衆議院에서는 一般公募의 길이 터있어 衆議院의 速記士는 養成所 出身만이 아니다.

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의 速記研修生은 卒業後 모두 裁判所速記官으로 採用되어 現在 裁判所速記官은 모두 研修所의 卒業生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것은 裁判速記의 執務法이 速記打字의 使用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民間速記學校로는 速記를 專門으로 하고 있는 곳이 東京에는 早稻田速記學校와 中根速記學校, 大阪에 山根速記學校, 神戶에 神戶速記學校, 弘田에 川村速記學校 등이 있다. 이들은 本科 1年과 研究科 1年の 課程을 두고 있다.

이중에 中根速記法式은 中根速記協會를 組織하여 全國에 支部를 두고 있으며 特히 一般學生에의 普及에 努力하고 있으며 文部省後援으로 全國高等學校 中根式速記競技大會를 열고 있다. 또한 早稻田速記法式에서는 早稻田速記普及協會에서 「早稻田速記講座」를 刊行하여 通信教育에 確固한 基盤을 가지고 있다.

最近에는 早稻田速記「라디오」講座에 依해서 「라디오」放送도 活用하고 있으며 早稻田速記의 通信講義受講志願者가 年間 100萬에 達하고 이중에 4~50

萬名이 繼續 受講하고 있다.

東京都內 9個 出版社에서 速記獨習書가 18種이 나왔는데 이들 獨習書가 67年度에 4萬 5千卷이 팔렸다.

其他 普及에 努力하고 있는 速記法式은 다음과 같다.

田鎖 76年式, 山根式, 石村式, 熊崎式, 牧式, 米田式 등이 있으며 이 중에는 成人學校의 科目인 秘書養成課程에서 教授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短期講習會나 私塾도 많다. 또 一般教育中에는 高等學校 商業科에 2個年間 每週 2時間의 選擇科目으로 速記가 採擇되고 있으며 中學校의 選擇科目中에서도 速記를 採擇하고 있는 學校가 많다.

④ 全國速記士人員數 및 就業分布(資料未備로 1965. 2. 4. 現在)

7. 全國速記士 人員數

手筆速記士 3,500餘名

法院從事打字速記士 600餘名

計 4,100餘名

(註). 國會速記者採用基準合格者와 同等以上의 速記技能을 가진者는 國會速記士를 包含하여 全體의 約 20%~30%의 程度로 推定됨.

ㄴ. 速記法式別就業比率(全國 70餘種)

衆議院式 14.9

參議院式 14.0

速記打字式(裁判所) 18.0

早稻田式 19.4

中根式 14.6

熊崎式 4.8

田鎖式 3.1

佃式 2.4

山根式 1.4

日速研式 0.4

其他(60餘種) 7.0

ㄷ. 職業別就業分布

議會關係(國會와 地方議會)	1,106名
裁判所關係	617名
新聞通信社·放送關係	857名
速記會社·事務所關係	218名
速記學校教授所關係	41名
一般會社·其他	576名
計	3,415名

라. 日本速記協會의 實態

① 沿革 및 概觀

日本速記協會는 國民의 書記能力을 增進하고 記錄事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速記의 普及 發達과 그利用分野의 開發에 힘쓰며 速記技能者의 技術 水準 및 社會的 評價의 向上에 供하는 諸事業을 行하여 日本의 文化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1920年 5월에 結成되었다.

1882年 田鎖綱紀에 依하여 日本速記가 最初로 發表된 以來 1920年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되기 까지의 速記團體의 興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89年 11月 速記者懇談會結成 1892年 7月 解散

1894年 10月 速記同志會結成 1903年 解散

1907年 9月 日本速記會結成 1912年 4月 活動停止

1918年 5月 中央速記會結成

1919年 4月 東京速記協會結成

1920年 5月 中央速記會와 東京速記協會가 合併하여 日本速記協會結成

1918년에 結成된 中央速記會는 衆議院의 少壯速記士가 中心이 되어 結成 하였으며 1919년에 結成된 東京速記協會는 貴族院의 有志速記士가 中心이 되어 結成하였던바 1920年 兩團體가 合併하여 現在의 日本速記協會가 結成 된 것이다.

當時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된 動機는 料金協定이 重要目的이었다. 當時의 速記料金は 一時間當 3圓이었는데 當時의 物價水準에 比하여 廉 價格이었는데

에도 速記士끼리 競合하는 者가 있어 이것을 解決하기 爲하여 1920年 4月 東京速記協會 主催로 全國速記士大會를 開催하였다. 그 當時 國會兩院과 新聞 通信社 其他 一般速記士等 30餘名이 모여 料金協定에 關하여 討議한 結果 全體速記士가 一致團結하여 速記界의 共同目的을 爲하여 活動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려 結成한 것이 卽 日本速記協會인 것이다.

現在の 日本速記協會는 純粹한 文化團體로 되어있으나 設立當時의 出發 目的은 速記士의 地位向上 共同利益의 增進 待遇改善等으로 되어 있어 同業者組合같은 形態이었다.

日本速記協會의 創立當時의 設立目的을 보면 技術研究 및 獎勵, 速記料金에 關한 協定, 業務 및 人事의 紹介, 雜誌發刊 功勞者의 表彰 其他 必要한 事項으로 되어 있다.

1920年 30餘名으로 結成된 日本速記協會는 2次大戰以後에 急激히 擴張된 速記需要로 말미암아 會員의 增加와 事業의 擴大를 이룩하게 되어 1965年 10月 純粹한 文化團體로서의 社團法人으로 設立變更하게 되었다.

現在の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의 會員은 1,300餘名에 達하고 있으며 全國 26個 重要都市에 支部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② 1968年度 日本速記協會 事業計劃

7. 速記에 關한 調查研究

○速記教育에 關한 實態調查

全國 高等學校와 速記教育機關等의 速記教育 또는 그 普及處의 實態調查를 行하여 今後 速記教育 普及向上을 爲한 指針의 資料로 整備한다.

○速記活用に 關한 實態調查

速記士의 實態調查 및 速記技術의 廣範한 活動分野의 開發을 爲한 資料를 準備한다.

○海外의 速記事情調查를 適切히 行한다.

1. 速記相談事務의 實施

速記學習 또는 利用에 對한 相談에 있어 前年度에 繼續해서 適切한 助言 指導를 行하여 더욱 相談事務에 萬全을 期한다.

㉔. 研修會, 講習會, 講演會, 紀念行事等の 開催
全國 議事記錄事務研修會를 前年度와 같이 都, 道, 府, 縣, 市 및 町, 村
議會를 包含하여 記錄事務 從事者의 參加를 要請 記錄事務從事者의 知識 技
能의 向上을 期한다.

講習會, 講演會, 紀念行事等を 必要에 依해서 行한다.

㉕. 月刊誌等の 刊行
月刊誌 「日本の 速記」를 年12回 編纂發行하며 「會議錄用字例」 「速記技能
檢定受験의 要領」 또한 「檢定試驗受験의 案内」 其他 速記關係 圖書의 出版
을 한다.

㉖. 技能檢定の 實施
文部省 後援에 依하여 全國 主要 8個 都市 以上에서 2回의 速記技能檢定
을 實施한다.

㉗. 競技會 및 獎勵試驗等の 實施
速記技能水準의 向上과 速記의 普及을 期하기 爲하여 競技會 또는 低速度
를 中心으로한 獎勵試驗을 實施한다.

㉘. 表彰
速記功勞者 競技會入賞者 또는 速記技能檢定 各級에 있어 「成績이」 優秀한
者에 表彰을 行한다.

③ 速記技能檢定試驗

日本速記協會의 最大事業의 하나인 速記技能檢定試驗에 있어 任意團體當
時에 實施한 例를 概括해 보면 1925년에 速記技術試驗要綱을 制定하여 檢定
試驗과 獎勵試驗으로 區分하여 實施하였다.

檢定試驗에 있어서는

A 級=(10分間 3,200字 翻文時間 13倍)

B 級=(10分間 2,900字 翻文時間 12倍)

C 級=(10分間 2,600字 翻文時間 10倍)等の 等級을 가지고 實施해 오다가
1965年 社團法人으로 發足한 以後부터는 文部省의 後援을 얻어 速記技能檢
定試驗을 全國 主要 8個都市 以上에서 實施함으로써 檢定試驗의 權威을 確

固히 함과 동시에 全國的體制 整備을 確立하게 된 것이다.

社團法人으로 發足된 以後 1966年과 67年 2年에 걸쳐서 3回의 檢定試驗을 實施한 結果 速記法式別 合格者의 統計는 다음과 같다.

第 1 回 ~ 第 3 回 檢定合格者法式別統計表

等級 速記法式	1	2	3	4	5	合計
	320字	280字	240字	180字	120字	
早稻田式	67	103	170	359	686	1,385
中根	41	77	128	103	207	556
山根	11	16	27	42	125	221
衆議院	20	2	—	—	3	25
參議院	9	11	1	5	9	35
日研	3	10	10	22	39	34
石田村	—	—	5	4	32	41
田鎖	1	—	2	5	19	27
熊崎	—	—	2	5	13	20
新崎	—	—	—	—	6	6
高崎	—	1	7	16	26	50
長商	1	1	1	8	12	23
飯高	—	—	—	7	10	17
宇高	—	—	—	10	11	21
J S A	—	—	—	2	5	7
泉	—	—	—	1	5	6
高樓	—	—	2	1	1	4
個	—	—	1	1	1	3
所澤	1	—	—	1	2	4
國宇	—	2	1	—	1	4
米田	—	—	2	—	1	3
荒浪	—	—	—	—	1	1
木村	—	—	—	—	1	1
毛利	—	—	1	—	—	—
酒井	—	—	1	—	—	1
略打	—	—	—	1	—	1
速宇	1	—	—	—	—	1
不	1	—	—	—	—	1
	156	223	351	593	1,216	2,549

④ 議事記錄事務研修會

速記士等 記錄事務에 從事하는 者의 知識技能의 向上 諸般 記錄樣式의 統一을 圖謀하기 爲하여 日本速記協會는 關係團體와 共同 主催로 年1回의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會를 開催하고 있다.

1967年度에 實施된 第19回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會는 全國에서 650名에 達하는 記錄事務從事者의 參席으로 10月 18日부터 3日間에 걸쳐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當時의 日程은 다음과 같다.

第19回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會日程

第1日 10. 18 (水)	10. 00	開講人事 全國都道府縣議會議長會事務局長 全國市議會議長會事務局長 全國町村議會議長會事務局長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理事長
		會의 進行方法에 對해서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研修部長
	10. 30	速記者에 對한 感想 講師 參議院前記錄部長 佐藤忠雄
	12. 00 13. 00	休 憩
		同音語와 類音語 講師·文部省國立國語研究所 田中章夫
	15. 00	議會事務에 對한 質疑應答 講師·國立國會圖書館 西澤哲四郎
	16. 00 16. 30	分科會가이던스
第2日 10. 19 (木)	10. 00 10. 15	人 事 參議院記錄副部長 羅地和正
		研究發表 테마·會議錄의 實的向上과 迅速한 作成 事例發表 (1) 三條市 古寺秀夫 私見發表 (2) 吳 市 中谷良通

		(3) 參議院 山邊和夫
	11.40	分科會 리더 決定
	12.00 13.00	休 息
		分科會 第1分科會(縣) 第2分科會(市) 第3分科會(町村) (研究發表에서 提起된 問題를 中心으로한 討議) (經驗交流 意見交換)
第3日	10.00	分科會報告(助言包含)
10.20	11.30	今回の 感想 次回への 希望
(金)	12.00	閉 會

研究員 山邊和夫
 研究員 山邊和夫
 研究員 山邊和夫
 研究員 山邊和夫

附		錄	
(附) 速記協會沿革	04-11		
(附) 速記協會章程	05-21		
(附) 速記協會會章	06-31		
(附) 速記協會會章	07-11		
(附) 速記協會會章	08-11		
(附) 速記協會會章	09-11		
(附) 速記協會會章	10-11		
(附) 速記協會會章	11-11		
(附) 速記協會會章	12-11		
(附) 速記協會會章	13-11		
(附) 速記協會會章	14-11		
(附) 速記協會會章	15-11		
(附) 速記協會會章	16-11		
(附) 速記協會會章	17-11		
(附) 速記協會會章	18-11		
(附) 速記協會會章	19-11		
(附) 速記協會會章	20-11		
(附) 速記協會會章	21-11		
(附) 速記協會會章	22-11		
(附) 速記協會會章	23-11		
(附) 速記協會會章	24-11		
(附) 速記協會會章	25-11		
(附) 速記協會會章	26-11		
(附) 速記協會會章	27-11		
(附) 速記協會會章	28-11		
(附) 速記協會會章	29-11		
(附) 速記協會會章	30-11		
(附) 速記協會會章	31-11		
(附) 速記協會會章	32-11		
(附) 速記協會會章	33-11		
(附) 速記協會會章	34-11		
(附) 速記協會會章	35-11		
(附) 速記協會會章	36-11		
(附) 速記協會會章	37-11		
(附) 速記協會會章	38-11		
(附) 速記協會會章	39-11		
(附) 速記協會會章	40-11		
(附) 速記協會會章	41-11		
(附) 速記協會會章	42-11		
(附) 速記協會會章	43-11		
(附) 速記協會會章	44-11		
(附) 速記協會會章	45-11		
(附) 速記協會會章	46-11		
(附) 速記協會會章	47-11		
(附) 速記協會會章	48-11		
(附) 速記協會會章	49-11		
(附) 速記協會會章	50-11		
(附) 速記協會會章	51-11		
(附) 速記協會會章	52-11		
(附) 速記協會會章	53-11		
(附) 速記協會會章	54-11		
(附) 速記協會會章	55-11		
(附) 速記協會會章	56-11		
(附) 速記協會會章	57-11		
(附) 速記協會會章	58-11		
(附) 速記協會會章	59-11		
(附) 速記協會會章	60-11		
(附) 速記協會會章	61-11		
(附) 速記協會會章	62-11		
(附) 速記協會會章	63-11		
(附) 速記協會會章	64-11		
(附) 速記協會會章	65-11		
(附) 速記協會會章	66-11		
(附) 速記協會會章	67-11		
(附) 速記協會會章	68-11		
(附) 速記協會會章	69-11		
(附) 速記協會會章	70-11		
(附) 速記協會會章	71-11		
(附) 速記協會會章	72-11		
(附) 速記協會會章	73-11		
(附) 速記協會會章	74-11		
(附) 速記協會會章	75-11		
(附) 速記協會會章	76-11		
(附) 速記協會會章	77-11		
(附) 速記協會會章	78-11		
(附) 速記協會會章	79-11		
(附) 速記協會會章	80-11		
(附) 速記協會會章	81-11		
(附) 速記協會會章	82-11		
(附) 速記協會會章	83-11		
(附) 速記協會會章	84-11		
(附) 速記協會會章	85-11		
(附) 速記協會會章	86-11		
(附) 速記協會會章	87-11		
(附) 速記協會會章	88-11		
(附) 速記協會會章	89-11		
(附) 速記協會會章	90-11		
(附) 速記協會會章	91-11		
(附) 速記協會會章	92-11		
(附) 速記協會會章	93-11		
(附) 速記協會會章	94-11		
(附) 速記協會會章	95-11		
(附) 速記協會會章	96-11		
(附) 速記協會會章	97-11		
(附) 速記協會會章	98-11		
(附) 速記協會會章	99-11		
(附) 速記協會會章	100-11		

1.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沿革
2. 國際速記 吳 打字聯盟概要
3. 速記用語解說
4. 速記關係 人名錄

I 級 節

革命黨組織條例 人定圖法

立 條 文

凡我革命黨人，均應遵守此條例，如有違犯者，定予嚴懲。此條例自公布之日起施行。

革命黨組織條例 人定圖法

條 文 第 一 條

本黨以救國為宗旨，凡我同志，均應遵守此條例。如有違犯者，定予嚴懲。此條例自公布之日起施行。

員 會 章 程

本會以救國為宗旨，凡我同志，均應遵守此章程。如有違犯者，定予嚴懲。此章程自公布之日起施行。

員 會 第 一 條

員 會 第 二 條

員 會 第 三 條

本會以救國為宗旨，凡我同志，均應遵守此章程。如有違犯者，定予嚴懲。此章程自公布之日起施行。

員 會 第 四 條

本會以救國為宗旨，凡我同志，均應遵守此章程。如有違犯者，定予嚴懲。此章程自公布之日起施行。

附 錄 1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沿革

△ 創 立

○1955. 11. 13 大韓速記學術協會創立, 國會速記士들이 主軸이 되어 金鎭基氏 (當時民議院事務處 速記課第3係長)를 委員長으로한 發起準備委員會의 周旋으로 國會豫算決算委員會에서 發起人大會와 아울러 大韓速記學術協會創立總會 開催

大韓速記學術協會憲章

第1章 總 則

- 第1條 本協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學術協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는 我國의 現存한 諸速記法式을 總網羅한 集結體이다.
第3條 本會의 本部는 首都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各支部를 둔다.
第4條 本會의 目的은 我國의 眞正한 速記文化를 正常的으로 向上發展시킴에 있다.

第2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3種으로 構成한다.
1. 正會員
2. 準會員
3. 名譽會員
- 第6條 本會 會規에 依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速記能力者가 아니면 本會의 正會員이 될 수 없다.
本會 總會決議에 依하여 認定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者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準會員이 될 수 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名譽會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7條 正會員이 아니면 本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行使를 할수 없다.

第8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本會 會員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한다.

第9條 會員은 憲章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의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3章 機 關

第10條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事會

第11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第12條 總會는 每年 4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4分之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必要한 時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그 要求한 날로부터 1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3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의 推戴

2. 會長과 副會長의 選舉

3. 理事會의 定足數 決定과 그 選舉

4. 監事의 選舉

5. 理事會所屬 各部署의 會務에 關한 報告處理

6. 理事會에 對한 權限委任에 關한 決定

7. 豫算 및 決算의 承認

8. 憲章의 改正

第14條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定한 理事로서 構成한다.

但 理事는 15名을 超過할수 없다.

前項의 理事選定에 있어서는 各法式에서 1名以上 選定되어야 한다.

第15條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職能은 다음과 같다.

1. 理事長 및 所屬 各部長의 選舉
2. 顧問의 推戴
3. 一切會務의 執行決議
4. 總會로부터의 受任事項의 處理
5.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와 總會에 對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6. 憲章改正案의 決定
7. 會則의 制定 및 改正
但 總會의 事後 承認을 얻어야 한다.
8. 總會 閉會期間에 있어서의 그 職能代行
但 代한 事項은 其後 召集된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9. 會員加入 承認의 決定

第16條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文化部
3. 研究部
4. 審査部
5. 事業部

第17條 前條 各部의 事務分擔은 다음과 같다.

1. 總務部
 - ① 印章, 文書, 什器, 其他 財產管理에 關한 事項
 - ② 庶務, 財產, 連絡, 組織에 關한 事項
 - ③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2. 文化部
 - ①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3. 研究部
 - ① 會務調査와 研究에 關한 事項
 - ② 速記學·術·研究에 關한 事項

4. 審査部

① 會員 懲戒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5. 事業部

① 委託 速記에 關한 事項

② 會員 就職斡旋에 關한 事項

③ 本會發展을 爲한 事業의 實踐事項

第18條 各部의 事務分擔에 關하여 相互異議가 生한 境遇에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19條 本會의 모든 會議는 在籍會員의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司會者가 決定한다.

第20條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爲한 手續以外의 効力은 發揮되지 않는다.

第4章 任 員

第21條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員 1人

2. 顧問 若干名

3. 會長 1人

4. 副會長 1人

5. 理事長 1人

6. 理事 15人

7. 各部의 部長 1人

8. 監事 3人

第2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各部의 部長은 理事中에서 選定하며 該當部의 所管 事務를 擔當한다.

監事는 總會에 提出할 決算報告를 監査하며 總會에 提出케 한다.

第23條 各種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서 充當한다.

第25條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6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末日 까지로 한다.

第6章 會員에 對한 賞罰

第27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은 總會의 議決로서 그 功勞에 相應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第28條 憲章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에 列記한 懲戒에 處한다.

1. 譴責
2. 停權
3. 除名

但 除名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第29條 이 憲章은 發起人大會에서 議決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第30條 本會 發起人 大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會員이 된다.



協會加入法式 및 會員數

正會員 逸波式 48名

高麗式 40"

서울式 5"

中央式 3"

準會員

20"

任 員

名譽會長 趙 瓊 奎 (國會副議長)

顧問 金 法 麟 (民議院文教委員長)

崔 珽 宇 (民議院事務總長)

徐 商 俊 (民議院議事局長)

葛 弘 基 (公報室長)

金 成 坤 (東洋通信社長)

郭 福 山 (서울新聞學院長)

朴 哲 在 (文教部技術教育局長)

會長 張 基 泰 (逸波式創案者)

副會長 金 天 漢 (高麗式創案者)

理事長 張 惠 根 (民議院事務處 速記課第2係

長)(逸波式)

柳 浩 龍 (逸波式) 金 星 漢 (高麗式)

李 柱 範 (高麗式) 宋 貞 浩 (逸波式)

韓 奉 永 (서울式) 楊 佑 鎮 (逸波式)

全 範 成 (逸波式) 尹 壽 鉉 (逸波式)

金 春 盛 (逸波式) 李 東 淳 (中央式)

韓 奎 勳 (逸波式)

監 事 吳 淵 玉 (逸波式) 具 然 東 (서울式)

全 炳 庸 (高麗式)

執 行 部 署

理事長 張 惠 根

總務部長 宋 貞 浩

文化部長 柳 浩 龍

研究部長 金 星 漢

審查部長 李 柱 範

事業部長 韓 奉 永

○1956. 1. 31 大韓速記學術協會 機關誌「速記文化」創刊號 發刊

○1956. 4. 29 第1回定期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70名, 準會員 20名

○1956. 5. 9 第8次 理事會를 開催하여 4月 29日 第1回 定期總會에서 選
任된 任員에 대한 部署를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理事長 金 鎮 基 (逸波式)

總務部長 黃 圭 鎮 (逸波式)

理事 金今勇 (金宗煥) (高麗式)

文化部長 金 宗 弘 (逸波式)

理事 金 哲 淳 (")

" 白 廷 鉉 (")

審査部長 鄭 源 道 (")

理事 韓 奉 永 (서울式)

事業部長 尹 炳 高 (")

理事 金 明 純 (逸波式)

研究部長 黃 重 秀 (高麗式)

理事 盧 元 鎬 (逸波式)

" 李 東 淳 (中央式)

○1956. 7. 21 第1回 速記競技大會開催

主 催 大韓速記學術協會

後 援 民議院事務處

文 教 部

韓 國 日 報 社

參加法式	級別及人員	
	正級	準級
逸波式	9名	7名
高麗式	6"	5"
東邦式	3"	1"
韓國式	1"	2"
世新式	1"	2"
計	20"	17"

朗讀種類	級別	正級	準級
		朗讀時間	5分間
演說體 (氏議院事務處 速記錄)	朗讀字數	1,500字	1,250字
	讀文時間	65分(13倍)	65分(13倍)
	朗讀時間	5分間	5分間
論說體 (韓國日報社說)	朗讀字數	1,250字	1,000字
	讀文時間	65分(13倍)	65分(13倍)

法式	姓名	等級	正確度
逸波式	宋貞浩	1等	97%
	崔嬰重	2等	96%
	徐萬福	3等	95%
備考	準級各成績未達入賞者姓名		

○1956. '8. 7 第1回夏季速記無料講習開催

教授法式 高麗式

場所 高麗速記學院

期日 20日間

對象 男・女 高校以上學生及一般人

受講人員 學大150名

○1956. 10. 1 大韓速記學術協會 機關誌「速記文化」第2號 發刊

○1957. 4. 25 大韓速記學術協會 機關誌「速記文化」第3號 發刊

○1957. 4. 27 第2回 定期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65名, 準會員 56名

主要討論事項

1. 「大韓速記學術協會」를 「大韓速記協會」로 名稱變更
2. 任員補選에서 金星漢氏를 追加選任하고 그 外任員은 全員留任 決議하였다.

○1957. 5. 2 第2回定期總會에서 留任된 理事 13名 全員이 參席하여 金星漢氏(高麗速記學院長)를 理事長으로 選任

○1957. 7. 21 第2回 速記 競技大會 開催

主 催 大韓速記協會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後 援 民議院事務處

場 所 文 總 會 館

法 式	姓 名	等 級	正 確 度
逸波式	崔 慶 重	1 等	97.5%
"	李 東 一	2 等	97%
高麗式	金 宗 煥	3 等	96.5%
備 考	準 級 未 詳		

○1957. 7. 23 第2回 夏季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逸波式

場 所 校洞國民學校

期 間 20日間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및 一般人

受講人員 137名

○1957. 8. 10 大韓速記協會 機關誌「速記文化」第4號 發刊

○1958. 4. 30 第3回 定期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68名, 準會員 57名

主要討議事項

任員改選에서 名譽會長에 李在錫氏(國會副議長)를 推戴하고 會長團은 留任, 鄭源道氏(逸波式, 前民議院事務處 速記課第1係長)外12名의 理事選出

○1958. 5. 6 第1次 理事會는 第3回 定期總會에서 選出된 13名의 理事 全員이 參席하여 部署決定 및 理事長 選出과 會員間 有機的 連絡關係, 機關誌의 發刊문제, 展示會開催에 대한 論議가 있었으며, 決議된 部署는 다음과 같다.

理事長 鄭 源 道(逸波式)

總務部長 徐 萬 福(")

" 理事 李 東 一(")

文化部長 金 星 漢(高麗式)

" 理事 金 仁 寧(逸波式)

" 安 敏 鍾(中央式)

研究部長 尹 炳 高(서울式)

" 理事 金 顯 祐(逸波式)

審査部長 李 圭 洪(逸波式)

" 理事 金 宗 煥(高麗式)

事業部長 韓 奎 勳(逸波式)

" 理事 金 泰 宣(")

" 崔 孝 燮(高麗式)

監 事 金 鎮 基(逸波式)

" 張 惠 根(")

" 韓 奉 永(서울式)

○1958. 7. 22 第3回夏季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서울式
場 所 德壽國民學校
期 日 20日間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및 一般人
受講人員 50名

○1958. 10. 1 第1回 展示會 開催
主 催 大韓速記協會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國會速記士養成所)
後 援 民議院事務處
贊 助 國會議員多數
期 間 1週日(10. 1~10. 7)
場 所 民議院議員 休憩室

參考: 速記 展示會는 制憲國會末(1950年 3月)國會速記課 主催
로 國會事務處(現中央廳) 복도에서 1次 實施한바 있음.

○1958. 12. 11 大韓速記協會 機關誌「速記文化」第5號 發刊

○1959. 4. 23 第4回 定期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73名, 準會員 72名

主要討議事項

1. 任員改選에서 現任員 全員留任 決議

○1959. 5. 2 第1次 理事會開催 金宗弘氏(民議院速記課 第4係長)를 理事長
으로 改選하고 各部署는 從前대로 留任기로 決議

○1960. 4. 19 4. 19 義舉直後 過渡政府의 布告令에 의한 社會團體 再登錄을
履行치 않아 事實上 大韓速記協會機能 停止

△ 協會의 再發足

4. 19義舉로 인한 大韓速記協會의 機能이 事實上 停止된 以來 5. 16軍事革命
으로 軍政을 거쳐 民政復歸後 國會의 成立과 더불어 國會에서 많은 數의 速

記士를 採用하게 되고 社會各分野에 速記士가 進出되었으나 隆치될 速記協會의 再起의 機會가 오지 않았고 速記人 누구나 速記協會의 再發足を 아쉽게 여기고 있던中 制憲國會以來 國會事務處의 速記業務와 우리나라 速記界에 대한 理解가 가장 깊은 國會事務處의 當時 議事局長인 權孝燮氏와 當時 速記課長 李弼鎔氏의 積極인 後援으로 1966. 6. 10 國會文教公報委員會會議室에 우리나라 速記界 元老級 人士들을 招請하여 「速記界懸案문제 論議를 위한 座談會」를 開催했고 이 座談會에 參席했던 人士들의 「우리나라 速記界의 沈滯狀態를 打開하기 위하여는 速記協會의 再建이 반드시 必要하다」는 意思에 힘입어 國會速記課 自體內에서 速記協會 再建을 위한 準備作業으로 國會速記士 78名을 對象으로 「速記協會再創立과 速記界發展을 위한 設問」을 낸 結果 다음에서 볼수 있듯이 速記協會 再創立에 대한 絶對多數課員의 贊成으로 速記協會再創立의 길은 確固히 트이게 되었다.

速記協會再創立과 速記界 發展을 爲한 設問應答에 對한 結果分析

(對象：國會速記士 78名)

1. 現在 우리나라의 速記界가 沈滯되었다고 보십니까?
 - 1) 沈滯되었다 57名
 - 2) 沈滯되지않았다 8名
 - 3) 其 他 8名
2. 沈滯되었다면 그 重要한 外的要因은 무엇이며 內的要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 가. 外的要因
 - 1) 速記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利用度不足 43名
 - 2) 似而非速記士의 「橫行」으로 不信招來 4名
 - 3) 5.16後 國會解散으로 速記人의 分散 4名
 - 4) 其 他 2名
 - 나. 內的要因

- 1) 速記界發展을 專擔할 機關이 없다 18名
 - 2) 速記人에 對한 待遇不足 17名
 - 3) 速記人의 劣等意識 12名
 - 4) 速記人 間의 派閥意識 8名
 - 5) 後輩速記人養成의 不振 6名
 - 6) 速記人 自體實力의 不足 2名
3. 萬一 沈滯되었다면 그 打開策은 무엇이겠습니까?
- 1) 速記協會結成과 宣傳強化 34名
 - 2) 速記士의 待遇改善 21名
 - 3) 速記士養成機關의 育成 強化 17名
 - 4) 速記士法制定 8名
 - 5) 年長速記士의 轉職保障 5名
 - 6) 人和團結 3名
4. 國會에 速記學校를 設立할 必要가 있겠습니까?
- 1) 必要하다 61名
 - 2) 必要없다 9名
 - 3) 其他 2名
5. 萬一 國會에 速記學校를 設置한다면 그 運營方法에 있어서 速記法式採擇은?
- 1) 單一法式採擇 32名
 - 2) 法式別로 科를 併設 19名
 - 3) 各法式의 輪番制 5名
 - 4) 國會速記法式의 創案 9名
 - 5) 其他 8名
6. 또한 國會速記學校의 教育期間은 얼마가 適當하겠습니까?
- 1) 1年 25名
 - 2) 2年 23名
 - 3) 1年以上 15名

- 4) 1年半 8名
7. 速記協會는 必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必要하다 70名
- 2) 必要없다 1名
- 3) 其他 5名
8. 必要하다면 過去의 大韓速記協會를 再建하는 것과 새로 創立하는 方法이 있는데 어떤 方法이 좋겠습니까?
- 1) 創立이 좋다 54名
- 2) 再建이 좋다 9名
- 3) 其他 8名
9. 過去의 大韓速記協會의 運營은 圓滑하였다고 보십니까?
- 1) 圓滑하지 못하였다. 30名
- 2) 圓滑하였다 7名
- 3) 모르겠다 11名
- 4) 其他 7名
10. 萬一 圓滑하지 못하였다면 그 原因은 무엇입니까?
- 1) 會員의 參與意識不足 15名
- 2) 速記人의 派閥意識 11名
- 3) 基金의 殆無 1名
- 4) 初期의 現象 1名
- 5) 其他 8名
11. 우리나라 速記의 基準速度를 10分間 몇字로 할이 妥當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3,000字 37名
- 2) 3,100字 2名
- 3) 3,200字 12名
- 4) 3,300字 3名
- 5) 3,500字 2名

6) 3,000字以上

11.

(특히 速記法式的 改良을 強調하였음)

12. 其他 速記界發展을 爲한 貴下의 意見을 記載해 주십시오.

- 1) 早速한 速記協會의 創設 35名
- 2) 速記人의 待遇改善 20名
- 3) 國會年長速記士의 轉職保障 13名
- 4) 國費速記學校의 設立運營 12名
- 5) 速記士法의 制定施行 8名
- 6) 速記人自體의 資質向上 6名
- 7) 速記研究機關設置와 速記法式的 改良研究 5名
- 8) 速記人 間의 人和團結 4名
- 9) 速記士資格의 國家考試制度化 1名
- 10) 速記展示會 速記競演大會開催 2名

○1966. 7. 26 權孝燮 當時 議事局長의 周旋으로 國會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에서 各速記法式 代表의 參席下에 創立準備委員會를 構成하고 姜駿遠氏를 委員長으로 選出하여 「定款草案」 「發起人選定基準案作成」等 協會發足 準備에 着手하였는데 選出된 協會創立準備委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協會創立準備委員長	姜	駿	遠 (서울式)
委員	李	東	一 (逸波式)
"	金	宗	煥 (高麗式)
"	李	康	賢 (東邦式)
"	申	昌	秀 (韓國式)
"	梁	源	龍 (世鍾式)

○1966. 8. 20 (假稱) 大韓速記協會 發起人大會開催

場 所 國會特別委員會會議室

速記法式別 發起人大會參加人員

速記法式	逸波式	東邦式	서울式	高麗式	韓國式	世宗式
人員	6名	6名	6名	7名	6名	3名

이 發起人大會에서 構成된 創立總會準備委員會任員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韓 奉 永

委員 安仁榮 河大煥 韓鍾烈 崔鎭洙 李康賢

金基英 申昌秀 김재삼 梁源龍 김형근

尹炳高

○1966. 9. 3 8月 24日부터 9月 3日까지 5次的 協會創立總會準備委員會를 개최하여 創立總會에 따른 諸般節次와 準備事項을 討議決定하였는데 決定된 主要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長推戴는 李源万(國會議員)氏로 內定
2. 創立趣旨文 및 事業計劃書採擇
3. 創立總會日字(12. 10)決定
4. 創立總會場所(新聞會館大講堂)決定

○1966. 12. 10 (假稱) 大韓速記協會創立總會開催

場 所 新聞會館大講堂

在籍會員 正會員 205名 準會員 30名

主要討議事項

1. 臨時議長 韓奉永氏 選出
2. 創立趣旨文 採擇
3. 定款採擇(別添)
4. 任員選出(名單別添)
5. 速記界有功者 張基奉(逸波式創案者), 姜駿遠(서울式創案者), 李東根(東邦式創案者), 權孝燮(國會議事局長), 黃重秀(高麗速記學院長), 李炳鎔(國會速記課長)에게 感謝狀授與.

大韓速記協會定款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協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이다.

第3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4條 本會의 目的은

1. 速記學·術의 研究發展
2. 速記人의 資質向上
3. 速記人의 權益擁護와 地位向上
4. 速記人의 相互協力과 親睦을 圖謀함에 있다.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3種으로 構成한다.

1. 名譽會員
2. 正會員
3. 準會員

第6條 正會員은 本會會規에 依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者로 한다.

本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準會員이 될 수 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 定한다.

第7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한다.

第8條 會員은 定款 또는 總會議決事項의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3章 機 關

第9條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事會

第10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第11條 總會는 每年 4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3分之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臨時總會를 召集한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그 要求한 날로부터 1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의 推戴
2. 指導委員의 推戴
3.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4. 理事 및 監事의 選出
5. 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會務에 관한 報告處理
7. 定款의 改正

第13條 理事會는 加入法式에서 3人以內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14條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理事長 所屬各部長 및 各支部長의 選出
2. 顧問 및 名譽會員의 推戴
3. 會務一切의 執行決議
4.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와 總會에 對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5. 定款改正案의 提出

6. 會規의 制定 및 改正

但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7. 會員加入承認의 決定

第15條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研究部

3. 宣傳部

4. 事業部

5. 資格審査委員會

第16條 各部의 事務分擔은 다음과 같다.

1. 總務部

① 印章·文書·什器·其他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② 庶務·會計·連絡에 關한 事項

③ 組織에 關한 事項

④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2. 研究部

① 會務調査 및 統計資料蒐集과 研究에 關한 事項

② 速記學·術 研究에 關한 事項

3. 宣傳部

①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4. 事業部

① 速記學·術 普及에 關한 事項

② 會員就業斡旋 및 福利增進에 關한 事項

③ 本會發展을 爲한 事業의 實踐事項

5. 資格審査委員會

① 會員懲戒 및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② 速記士資格檢定에 關한 事項

但 各部의 業務分擔에 關하여 相互 異議가 生할경우에는 理事會가 決定

한다.

第17條 本會의 모든 會議는 在籍會員의 過半數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司會者가 決定한다.

第18條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爲한 手續以外의 效力은 發生되지 않는다.

第4章 任 員

第19條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1人
2. 顧 問 若干名
3. 指導委員 若干名
4. 會 長 1人
5. 副 會 長 2人
6. 理 事 長 1人
7. 理 事 若干名
8. 監 事 3人

第20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該 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各部의 部長 및 資格審査委員長은 理事中에서 選定하며 所管事務를 擔當한다.

監事は 總會에 提出한 決算報告를 監査한다.

第21條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諮問役으로 顧問을 두고 學術指導를 爲하여 指導委員을 둔다.

第22條 各種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5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24條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末日까지로 한다.

第26條 本會의 會計監査는 年 1回를 原則으로 하되 會規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必要한 時는 隨時로 監査를 行할 수 있다.

第6章 會員에 關한 賞罰

第27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 및 本會에 有功한 人士는 總會의 決議로서 그 功勞에 相應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第28條 定款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에 列記된 懲戒에 處한다.

1. 譴 責
2. 停 權
3. 除 名

但 除名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第29條 이 定款은 創立總會에서 議決함으로써 그 效力이 發生한다.

第30條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任 員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名譽顧問	金 鍾 泌	(共和黨議長)
顧 問	袁 泳 鎬	(國會事務總長)
"	權 孝 燮	(國會議事局長)
"	李 鎬 辰	(國會專門委員)
指導委員	張 基 泰	(逸波式創案者)
"	黃 重 秀	(高麗速記學院長)
"	南 相 天	(南天式創案者)

會	長	李	源	萬(國會議員)					
副	會	長	姜	駿遠(서울式創案者)					
	"		李	東根(東邦式創案者)					
理	事	長	金	宗煥(高麗式)					
總	務	部	長	金基英(東邦式)					
研	究	部	長	崔龍植(韓國式)					
宣	傳	部	長	梁源龍(世鍾式)					
事	業	部	長	金允洙(逸波式)					
資	格	審	查	委	員	長	韓	奉	永(서울式)
理	事		郭	漢永(韓國式)	宋	基	喆(逸波式)		
	"		申	昌秀(韓國式)	尹	炳	高(서울式)		
	"		李	康賢(東邦式)	李	東	淳(中央式)		
	"		林	來炫(東邦式)	崔	龍	夏(逸波式)		
	"		崔	鎮洙(高麗式)	韓	鍾	烈(高麗式)		
監	事		金	永善(逸波式)	朴	明	守(東邦式)		
	"		全	永國(高麗式)					

○1967. 1. 30 第1回 冬季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東邦式
 期 間 1. 30~2. 20(3주간)
 場 所 東邦速記學院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및 一般人
 受講人員 500名

○1967. 4. 29 第1回定期總會

場 所 國會特別委員會會議室
 在籍會員 正會員 205名, 準會員 30名
 主要討議事項
 1. 1967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案 承認

2. 會規審議 確定

3. 任員改選

改選된 任員名單

新 任		辭 任	
理 事	金永善(逸波式)	理 事	郭漢永(韓國式)
"	河大煥(")	"	尹炳高(서울式)
"	李起同(")	"	李東淳(中央式)
"	崔孝燮(高麗式)	"	金允洙(逸波式)
"	李龍洙(")	"	崔龍夏(")
		"	宋基喆(")
		"	韓鍾烈(高麗式)
		"	李康賢(東邦式)

○1967. 5. 1 機關誌「速記文化」創刊號 發刊

○1967. 8. 1 第2回 夏季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서울式

期 日 8. 1~8. 20(20日間)

場 所 東邦速記學院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및 一般人

受講人員 450名

○1967. 12. 9 國會運營委員會 및 豫算決算委員會에 「速記士待遇改善을 위한 建議書」提出

○1968. 1. 13 第3回 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東邦式

期 日 1. 13~2. 4 (3週間)

場 所 東邦速記學院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및 一般人

受講人員 500名

○1968. 4. 27 第2回 定期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151名 準會員 30名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主要討議事項

1. 1968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案承認
2. 定款改正案審議通過
3. 資格審查 및 技能檢定規程審議 通過
4. 任員 改選(名單別添)

定款改正案

第13條中「各法式에서 3人以內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하며…」를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하되 加入法式에서 3人以內로 選出 되어야 하고……」로

第15條中「研究部」를 「研究委員會」로 改稱

第18條를 新設

①會員이 定款改正案을 提出하러 할때에는 會員 20人以上の 署名捺 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②定款의 改正은 出席會員의 3分之2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한다」

改選된 任員名單

新 任	辭 任
顧問 劉龍珪 (國會速記課長)	指導委員 張基泰 (逸波式創案者)
指導委員 姜駿遠 (서울式創案者)	副會長 姜駿遠 (서울式創案者)
副會長 張基泰 (逸波式創案者)	理事長 金宗煥 (高麗式)
理事長 安仁榮 (逸波式)	理事 金基英 (東邦式)
理事 全海成 (")	" 河大煥 (逸波式)
" 韓鍾烈 (高麗式)	" 李起同 (")
" 柳智永 (")	" 崔孝燮 (高麗式)
" 宋博文 (東邦式)	" 林來炫 (東邦式)
" 韓東春 (")	" 申昌秀 (韓國式)

監 事 金仁寧(逸 波 式)

” 高在欽(高 麗 式)

” 金基英(東 邦 式)

○1968. 5. 20 第3回臨時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151名, 準會員 25名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主要討議事項

1. 社團法人 設立決議
2.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設立을 위한 諸般準備 및 節次 討議
3. 現在 任員陣을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準備委員會 로 代替構成 決議
4. 大韓速記協會條件附 解體決議

○1968. 6. 4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151名, 準會員 25名

主要討議事項

1. 創立趣旨文 採擇(別添)
2. 定款(案)審議確定
3. 任員選出(名單別添)

◇
創 立 趣 旨 文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은지 23年!

解放以後 우리 速記界는 이 나라 民主發展의 肅은 役軍으로서 立法議院에 이어 歷代國會의 記錄을 우리의 손으로 남기왔으며 言論機關을 비롯한 各界의 需要에 卽應하여 文化發展의 一翼을 擔當해 왔다는 矜持를 지니고 斯界

의 發展에 盡力하여 왔다.

그러나 事變과 革命을 거치는 不安定된 社會與件가운데에서 우리 速記界는 數次의 陣痛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研究와 普及面에 오늘과 같은 沈滯狀態를 가져오게 되었다.

多幸히도 這間 政局의 安定과 意慾的인 國家發展에 힘입은 우리 速記界는 一大轉機를 마련코자 1966年末에 大韓速記協會 創立을 보았고 그後 1年6個月餘에 이르는 오늘까지 沈滯되었던 速記界의 새로운 發展을 爲한 整地作業을 마치고 이제 名實共히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를 創立하는 大會를 갖게 되었다.

이에 現存하는 全速記法式을 網羅한 우리 速記人은 總團合하여 式閱意識을 排除하고 相扶相助하는 氣風위에 우리의 맡은바 文化的 使命을 達成코자 速記學·術의 研究發展과 速記人의 權益擁護 및 資質向上을 爲하여 다음 事項의 實踐을 다짐하는 바이다.

1. 速記士의 資格을 制度化하여 速記人의 資質向上과 社會的地位의 確立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速記士法의 制定을 爲한 基盤을 造成한다.
1. 速記學의 學問으로서의 體系를 確立하고 加速하는 言語速度에 凌駕하는 速記法의 研究發展을 圖謀함과 아울러 速記術의 向上을 期한다.
1. 速記의 無料公開講座等 各級學校를 對象으로 한 巡廻講座를 實施하여 速記의 大衆化를 期한다.
1. 速記需要의 擴大를 爲한 社會雰圍氣 造成策을 講究하고 速記人口의 增大를 圖謀한다.

1968年 6月 4日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任 員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會 長 李 源 万 (國會議員)

副會長	張	基	泰 (逸波式創案者)
"	李	東	根 (東邦式創案者)
理事長	安	仁	榮 (逸波式)
理事	柳	智	永 (高麗式)
"	李	龍	洙 (")
"	全	海	成 (逸波式)
"	李	康	賢 (東邦式)
"	韓	奉	永 (서울式)
"	金	永	善 (逸波式)
"	韓	鍾	烈 (高麗式)
"	宋	博	文 (東邦式)
"	韓	東	春 (")
"	梁	源	龍 (世鍾式)
"	崔	龍	植 (韓國式)
監事	金	仁	寧 (逸波式)
"	高	在	欽 (高麗式)

○1968. 8. 2 第4回 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高麗式

場 所 明知大學

期 間 8.2~8.21 (3週間)

對 象 男・女 高校, 大學生 及 一般人

受講人員 451名

○1968. 8. 21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許可申請(文化公報部)

○1969. 1. 13 第5回 速記無料講習會開催

教授法式 東邦式

場 所 明知大學

期 間 1.13~2.3 (3週間)

受講人員 980名

○1969. 4. 14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許可得(文化公報部 法人體 許可)

番號 138號(문화 2~1))

○1969. 4. 18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法院登記單(番號 1509號)

○1969. 5. 1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 臨時總會

在籍會員 正會員 158名, 準會員 30名

主要討議事項

1. 1969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承認
2. 1968. 6. 4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創立總會에서 通過된 定款을 社團法人 許可過程에 있어 文化公報部 準則에 依한 改正部分 追認(定款別添)
3. 資格審査規程 및 技能檢定規程, 會規承認(別添)
4. 任員改選에서 安仁榮 理事長의 身病關係로 鄭源道會員을 新任 理事長으로 選出하고 該의 任員은 全俱 留任 決議

○1969. 6. 4 第2次 理事會

會規에 依해서 다음과 같이 名譽會長과 顧問을 推戴決議하였다.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顧問	張	炯	淳 (國會副議長)
"	裒	泳	鎬 (國會事務總長)
"	李	鎬	販 (國會運營委員會 專門委員)
"	任	哲	淳 (國會文教公報委員會 專門委員)
"	權	孝	燮 (國會議事局長)
"	劉	龍	珪 (國會速記課長)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속기인의 총집결체로서 속기문화의 연구발전 및 보급과 속기인의 자질향상, 상호협력,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2. 속기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 각계의 속기분야에 관한 사항
4. 속기문화의 선진출판에 관한 사항
5. 속기기능 검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속기문화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언론보도분야에 있어서의 속기에 관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자로 한다.

1. (명예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이해하고 물질양면으로 후원하는 인사로 이사회의 결의로서 명예회원에 추대된 자
2. (정회원) 본 협회의 회규에 의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서 정한다)
3. (준회원) 본 협회에 가입된 속기법식을 습득한자나 습득중에 있는자중 이사회의 결의로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명예회원) 본 협회 운영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정회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준회원) 총회에서 의사표시만을 할수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①회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때

②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결 처
3. 자격정지

제3장 임 원

제10조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부 회 장 2 인
3. 이 사 장 1 인
4. 이 사 12 인(이내)
5. 감 사 2 인

제11조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전항의 임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 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사항 감사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전 2호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결의 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이사회와 결 의로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재적이사 4인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회후 최초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정추수) 이사회는 제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집행부서

제25조 (부서) 이사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회에 부장, 위원장 1인을 둔다.

1. 총무부
2. 선전부
3. 사업부
4. 연구 위원회
5. 자격심사위원회

제26조 (각부서의 업무 분담) 각 부서의 업무분담은 회규로서 정한다.

제27조 (각부장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 각부장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장 재 정

제28조 (재정) ① 본 협회의 재산은 이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세입등)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 비
2. 보 조 금
3. 찬 조 금
4. 기타수입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9장 사무국

제32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약간인을 둘수있다.

제34조 (사무국장등)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변경) ① 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얻어 총회에 제출할수 있다.

② 정관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문화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 ① 본 협회는 대한속기협회 해산과 더불어 일체의 그 업무를 인수한다.
 - ②(경과조치) ①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의 허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창립총회에서 보고 접수된자는 본 협회의 최초의 정회원이 된다.
- 위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속기 협회 정관을 작성함.

1969년 4월 14일

자력심사 및 기능검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회원의 자력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속기기능 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조 (구성) 자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력심사위원장 및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장이나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징계결의) 위원회는 자격심사 이외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징계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장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제8조 (회원자격) 속기기능 2급이상으로서 협회소정의 의무를 수락한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그러나 회장은 이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징계 및 제명) 회원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한자 또는 회비를 3월이상 납부하지 않은자는 3월이상의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속기기능검정

제10조 (속기기능검정목적) 속기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상응하는 능력을 인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검정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정하고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2조 (검정방법) 검정시험은 실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공고) 시험시행 20일전에 공고하여 일반이 알수있게 하여야한다.

제14조 (시험시행) 검정시험은 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시험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경과조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 1회 임시총회 당일 정회원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이상 속기실무에 종사한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급 자격증을 수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69. 6.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	속도	빈문시간	정확도
1 급	3,200자이상(10분간)	150분이내	95점이상
2 급	3,000자이상(")	"	"
3 급	2,700자이상(")	"	"
4 급	2,400자이상(")	"	"
5 급	2,000자이상(")	"	"

회 규

제 1 호 사무집행규정

제 1 조 이 회규는 대한 속기협회의 원만한 사무집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총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이사회에서 처리하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각부장이 처리하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이사장은 결재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회의 본부 설치에 관하여는 총회결의에 의하고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하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심사는 따로 자격심사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전에 회원각자에게 다음 사

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소집일시
- (2) 소집장소
- (3) 소집목적

제7조 예산의 편성은 각 장이 제출하되 사업부장이 이를 종합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집행은 각부장의 신청을 받아 총무부장이 처리하되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본회의 수입금은 각부장이 총무부장에게 납입하고 총무부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는 회장의 명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감사를 행할수 있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부는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집행에 있어서 각부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하고 다음 소집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지방회원이 총회출석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양식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각종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로부터 기산하여 2년후의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후 다음 정기총회까지를 1년으로 간주한다.

제2호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정관 제5조 제1항의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세분 규정한다.

- (1) 명예회장
- (2) 고문
- (3) 지도위원

제3호 각부서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

제1조 정관 제26조의 각부서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1) 인장·문서·집기·기타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2) 서무·회계·연락에 관한 사항
- (3) 조직에 관한 사항
- (4) 타 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항

2. 선전부

- (1) 선전·출판에 관한 사항
- (2) 속기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 (1) 회원·취업알선 및 부리증진에 관한 사항
- (2)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실천 사항

4. 연구위원회

-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격심사위원회

- (1) 회원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2) 기능검정에 관한 사항

단 연구위원회와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회 본회 가입법식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규정은 정관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본협회에 가입된 속기법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 2 조 본협회에 가입된 속기법식은 정회원을 가진 속기법식을 말한다.

제 5 호 입회금과 회비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정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회금은 정회원 300원이상 준회원 100원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회비는 정회원 월 100원으로 한다.

단 회장단과 속기법식장안자는 면제한다.

제 4 조 입회금은 입회와 동시에 납입하고 회비는 매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6 조 본회 사업부를 통한 위탁속기에 있어서는 속기로 전액의 20%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회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附 錄 2

國際速記 및 打字聯盟概要 (INTERSTENO)

速記人の 國際的組織이 胎動한 것은 1887年으로서 「티모다·브라이트」(近代速記方式의 始祖) 300年祭 및 「릿트맨」(19世紀英國人, 릿트맨式創案者) 50年祭를 紀念하여 「런던」에서 第1回國際速記會議을 開催하여 國際速記委員會를 組織, 그뒤 이 委員會가 1931年에 萬國速記者聯盟으로 改編되었다가 1955年에는 다시 國際速記 및 打字聯盟(INTERSTENO)으로 改編되었는마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性格이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速記와 打字의 不可分性을 認定하여 速記職과 打字職을 網羅한 記錄分野의 惟一한 國際機構로 登場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實際로 1969年 8月 2日부터 「플랜드」에서 開催된 第28回大會에 「유서버」로 參加한바 있는 日本速記人들의 報告에 의하면 (「日本의 速記」에서) 國際速記 및 打字聯盟이라는 名稱에서 풍기는 印象과는 달리 INTERSTENO의 幹部들은 全部 速記關係者뿐이고 이 機構에 打字가 끼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速記業務의 補助的 機能으로서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時代的 要請에 의한것 같다.

이 聯盟은 每2年 또는 3年마다 順番대로 會員國觀光地에서 大會가 열리며 速記 및 打字競技大會를 通하여 各國會員間의 親睦과 技術向上을 꾀하고 있다. 1967년에는 「스위스」의 「네른」에서 第27回大會가 開催되었으며 1969년에는 8月 2日부터 8日까지 7日間 「플랜드」의 「와르샤와」에서 第28回大會가 열렸는데 主催國인 「플랜드」는 1957年以來 그 會員國이다. 이번 會議에는 全會員國(團體會員國 22個國, 個人會員, 4個國, 計 26個國)이 參加하고 「유서버」로서 日本이 參加하였다.

總會에서의 討議事項은 主「테마」가 「職業病」으로서 速記士以外에 言語學者, 速記學者, 醫師等の 專門家들이 많이 參加하여 3日間에 걸쳐 討議가 進行되었다. 討議는 매우 學問的이고 專門的이었는데 이러한 傾向은 批判하는 會員도 있었다.

國際速記競技大會와 世界「타이프」選手權大會의 兩競技大會는 8月 3, 4, 5日에 「와르사와」 工科大学講堂에서 열렸다. 速記競技大會는 14個國 100名의 選手가 10個國語를 가지고 各者가 지닌 技倆을 겨루었다. 勿論 이選手들은 各己 그 나라에 있어서 有數한 「페데런」들이라 한다. 「타이프」選手權大會의 參加者는 14個國 134名으로서 「루마」와 「투니지아」가 처음으로 參加했고 競技에 있어서는 12個國語에 의하여 行하여졌다.

來明年의 第29回大會는 「벨기」의 「부랴셀」에서 開催하기로 되어있는데 다음 「부랴셀」大會의 「테마」로서 「폴란드」는 「人類가 月世界를 征服한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速記方式이 가장 妥當한가 라는 點이다」라고 말하고 速記方式統一의 문제를 檢討하도록 要請하였다. 이 문제는 이번 大會에서도 多少 論議가 되었으나 來明年에는 主「테마」로 採擇될 可能性이 있다. 現在 이 聯盟의 加入國은 團體會員으로서 22個國 個人會員으로서 4個國이 加入되어 있는바 個人會員이 團體會員으로 加入되도록 督促하고 있다.

團體會員은

오스트리아·벨기·불가리아·덴마크·스페인·필란드·프랑스·英國·헝가리·이태리·북셀부르크·모나코·네덜란드·폴란드·西獨·東獨·스웨덴·스위스·터키·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투니지아(이상 22個國)

個人會員國은

알제리아·부라질·에쿠아돌·美國으로 되어있다.

定款에 의하여 이들 會員中에서 1國 1名씩으로 中央委員會가 組織되어 있으며 委員의 職業은 技術者, 辯護士, 著述家, 企業家, 科學者, 軍人, 國會議員 그리고 速記專門家로 各分野의 「에리트」들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다.

定款을 보면 「會員」은 各國의 全國的規模의 速記關係者의 團體라고 定하

고 있지만 中央委員會委員의 職業을 가지고 逆으로 類推한다면 歐羅巴 各國의 速記關係者의 國內團體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速記術을 習得하였으나 直接 速記를 職業으로 하지않는 他 職業階層의 많은 사람들이 參加하고 있는 것이다.

同聯盟의 定款은 本文18條 附則 1條로서 目的, 組織, 任員, 解散等 細部의 規程이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서 重要한것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第1條 名稱·目的

本聯盟은 國際速記 및 「타이프라이터」聯盟(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Sténographie et de dactylographie, INTERSTENO)이라고 稱하고 法人格을 갖는 同業組合으로 組織된 團體로서 다음 目的을 갖는다

1. 全世界의 速記士와 「타이프리스트」가 하나로 團結한다
2. 情報의 蒐集 交換 또는 應報
3. 會員間의 團結과 親睦을 圖謀한다
4. 實務關係의 研修를 共同으로 行한다
5. 物心兩面으로 職業的利益을 擁護한다

단 政治的 또는 宗教上의 討論을 行하여서는 안된다.

第2條 會員

本聯盟은 各國의 速記士와 「타이프리스트」의 國內團體를 會員으로 한다.

國內團體가 組織되어있지않은 國家에 대해서는 그것이 組織되도록 聯盟으로서 助力한다. 또한 國內團體가 組織될때까지는 個人 또는 「그들」이 聯盟이 行하는 諸事業에 表決權없이 參加하는 것을 聯盟事務局은 許可할 수 있다.

各國內團體는 1國의 全團體 意向을 代辯할수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3條 本部의 所在地(略)

第4條 組織

聯盟의 組織은 다음과 같다.

1. 總會
2. 中央委員會
3. 事務局

4. 書 記 局

5. 會 計 監 查 委 員 會

第 5 條 加 盟 (略)

名譽會員의 推薦 (略)

第 6 條 脫 退 (略)

第 7 條 總 會

總會는 團體會員으로 構成한다. 總會는 聯盟의 最高機關으로서 通常 國際大會時 召集된다. 總會에 出席해서 表決權을 갖는 代表는 各團體會員에서 各各 3各 나머지는 人口 5百萬에 1名式 最高 12名까지의 代表를 보낼수있다. 代表는 各各 한票의 表決權을 갖는다.

第 8 條 中央委員會

同委員會는 1國 1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事務局의 要請 또는 5個國以上의 團體會員의 要請이 있으면 召集된다.

第 9 條 事務局

事務局은 聯盟會長, 副會長(5名), 事務總長으로 構成되며 各各 總會에서 選任한다. 會長은 次期大會開催地의 團體會員中에서 選出한다.

第 10 條 會 計 監 查 委 員 會 (略)

第 11 條 定期大會

2年 또는 3年마다 大會를 開催한다. 이때 各種의 國際行事務를 가지며 各行事는 中央委員會가 決定하는 特別規定에 따라서 行하여진다. 不意의 事態에 있어서는 事務局이 中央委員會를 代行한다.

第 12 條 財 政

聯盟의 收入源은 다음과 같다.

1. 分擔金
2. 出版收入
3. 寄付, 遺贈

團體會員은 分擔金으로서 年間 30「프랑」(스위스貨)을 離出한다.

第 13 條 經費의 支出

會長 또는 事務總長의 旅費등의 派遣費用은 聯盟이 負擔하고 事務局員 또는 中央委員會委員은 團體會員의 分擔으로 한다.

第14條 責任의 免除(略)

第15條 定款의 改正(略)

第16條 解散 또는 清算方法(略)

第17條 不意의 事態(略)

第18條

本定款은 1955年 8月 1日 「모나코」에서 採擇되고 1956年 8月 1日 西獨 「핀헨」에서 一部 改正되었다.

附 則 個人會員

國內團體가 組織되어있지않은 國家에 대해서 聯盟은 個人, 學校, 商社, 事業所單位의 加盟을 許可할 수 있다.

個人會員은 總會에 出席할수있으나 討論 또는 表決에 參加할 權利를 갖지 않는다. 分擔金은 年間 25부랑(스위스貨)으로 한다.



여기서 參考로 1967年 7月 22日부터 28日까지 21個國이 參加 「스위스」의 「베른」에서 열린 第27回大會의 進行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日 速記 및 타이프競技會審査委員會, 中央委員會, 大會開會式.

23日 世界타이프選手權大會, 市內見學.

24日 國際速記競技大會.

25日 中央委員會主催 晚餐會.

26日 大會第1部

討論 「近代的인 事務處理와 秘書의 實務」=報告

「事務合理화와 人間」

「白耳義의 秘書」

「近代的인 事務處理技術」

「技術革新과 職業教育」

大會第2部

討議, 「議會・一般・個人에 있어 今後10年の 速記發達에 대해서」

27日 大會第3部

討議, 「速記 및 「타이프」의 計劃教育」=報告

「計劃教育의 基礎와 實際」

「速記의 計劃教育의 諸觀點」

「計劃教育發達の 特殊性」

「速記의 計劃教育의 實際」

午後부터 總會, 「스웨덴」의 加盟承認, 決算報告, 任員選任等
大會閉會式, 兩競技大會入賞者表彰式

晚餐會・夜會・舞蹈會

28日 觀光



그런데 우리가 注目한 國際速記競技大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競技의 實施細則은 1966年 4月 5日 東獨 「와이마르」에서 開催된 聯盟
中央委員會에서 正式으로 承認된 것으로 雜多한 言語에 대한 競技인 관계로
細密하게 神經을 쓴 흔적은 規程內容에서 엿볼수있다.

○試驗問題, 朗讀方法

試驗問題는 各國語「그들」의 各審査責任者가 10分間 朗讀物을 準備하게 되
어 있고 그 內容은 主로 經濟問題이며,

朗讀하는 方法은 各國語別로 規定된 初速(表2 參照)에서 每分 25音節씩 加
速되어 8分제에서는 最高速度에 達하도록 읽는다. 말하자면 좃아올라가는 朗
讀法이다. 8分에서 10分까지의 速度는 變하지 않는다.

肉聲朗讀 대신 錄音機를 使用할수도있다. 朗讀에 있어 他國語「그들」의 審
査委員 1名이 競技室에 立會하여야 한다.

競技는 非公開로서 寫眞을 찍는다든가, 라디오, 텔레비取材는 競技終了後
許可된다.

○譯文.

競技者は 審査委員의 信號를 기다려 一齊히 翻文을 시작한다.

速記用紙는 各自 持參한 것을 使用(但 事前에 審査委員의 檢査를 받는다)
하지만 翻文用紙는 審査委員會가 配付한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

速記用의 筆記具는 鉛筆 또는 펜, 翻文用은 「타이프라이터」, 「펜」, 萬年
筆, 어느것도 좋다. 「타이프」使用者는 스스로 器械를 持參하여 別室에서 翻
文한다.

翻文에 있어서 辭典使用은 禁止되며 萬一 「컨닝」을 하였다고 判定되면 그
答案은 無効이고 翻文時間은 一律의으로 4時間以內로서 그 時間內에 各自가
自己能力에 따라서 可能한 限의 量을 翻文한다.

朗讀이 初速을 起點으로 加速되는 方式이므로 自信이 없는 者는 速度가 낮
은 最初의 몇分間 것을 翻文하면 된다.

그런데 67年度의 第4回競技大會 成績을 보면 (表3參照) 많은 量을 翻文한
사람일수록 失點數가 도리어 적다는 것을 알수있다.

○授賞, 參加證授與

優勝은 各國語「그룹」마다 最少의 翻文時間으로 最大分量을 翻文하고 失點
이 가장 적은 者에게 그 名譽를 준다.

한편 現在로서는 各國語「그룹」마다의 優勝者만 決定하고 世界「챔피언」의
稱號는 누구에게도 授與하지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競技參加證은 INTERSTENO大會 開催國의 國語로 作成되며 聯盟會長,
事務總長, 審査委員長이 署名한다. 參加證에는 다음 事項이 記入 確認된다.

1. 實質翻文時間
2. 朗讀速度(語 또는 音節單位)
3. 失點數
4. 成績順位

優勝은 組織委員會가 競技狀況을 點檢하고 同意를 받아 審査委員會가 決
定한다. 審査委員長이 優勝者의 姓名을 朗讀하고 聯盟會長이 賞狀과 參加證
을 授與한다.

第4回 速記競技大會의 參加國別 參加者數와 同競技大會에서 使用한 國語는

表 1과 같다.

○競技大會의 參加方法

競技大會參加希望者는 그 國家가 聯盟에 加入되어있는 때에는 그 나라의 國內團體를 通해서 그리고 未加入의 경우는 個人的으로 直接 聯盟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와 參加料 및 寫眞을 添附해서 申請한다.

參加料는 어느 경우이든 30프랑(스위스貨)이며 「Swiss Bank Co.」에 내야 한다. 中央委員會·組織委員會·審査委員會·試驗委員會의 各委員은 競技에 參加할 수 없다.

〈表 1〉

第 4 回 競技大會參加狀況表

國 語 名	人員	國 名
獨 逸 語	40名	西 獨·東 獨·오 스트리아·스위스
불 가 리 아 語	3名	불 가 리 아
세 르 비 아·구 르 아 치 아 語	7名	유 고 스 라 비 아
스 페 인 語	2名	스 페 인
핀 련 드 語	3名	핀 련 드
프 랑 스 語	10名	프 랑 스
이 태 리 語	10名	이 태 리
폴 랜 드 語	3名	폴 랜 드
스 로 마 키 아 語	4名	체 크
체 크 語	4名	코 코

〈表 2〉

初 速(單位：音節)

獨 逸 語	250	헝 가 리 아 語	300
英 語	250	이 태 리 語	200
불 가 리 아 語	355	폴 랜 드 語	200
구 르 아 치 아 語	250	세 르 비 아 語	250
핀 련 드 語	275	스 로 메 니 아 語	250
프 랑 스 語	225	스 로 마 키 아 語	300
네 덜 랜 드 語	200	체 크 語	300

〈表 3〉

第 4 回 競技會成績表(拔萃)

핀랜드語

順位	姓 名	國 籍	翻 文 量 (分)	失 點 數
1	S. Veikko	핀랜드	10	39
2	A. Allan	"	7	51
3	H. Pirkko	"	5	28

프랑스語

1	P. Jeannine	프랑스	4	1
2	R. Christane	"	4	19
3	G. Yvonne	"	4	25
4	V. Paulette	"	3	36
5	O. Marie	"	3	22
6	B. Julienne	"	3	23

速記用語解説

- 速記：다른 사람의 發言이나 自己意思를 特定の 符號文字로서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正確하게 記錄하고 一般文字化하는 活動의 總稱.
- 速記學：速記符號를 研究하는 學問으로 그 內容은 速記의 歷史, 原理, 實用을 比較, 分析研究하여 將來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다.
- 速記術：速記方式에 依하여 速記를 하는 技術.
- 速記方式：速記活動에 使用하는 手段을 말하며, 速記形態 또는 速記形式 이라고도 한다.
速記方式에는 手筆速記方式과 機械速記方式이 있다.
- 速記法式：速記文字構成原理에 依하여 採擇된 一團의 符號體系.
- 手筆速記方式：速記文字를 利用하여 손으로 筆記하는 方式.
- 機械速記方式：打字速記機, 錄音速記機等 機械를 利用하여 記錄하는 方式.
- 速記士：速記術을 習得하여 速記를 業으로 하는 사람.
- 速記文字：線(曲, 直과 長, 短 또는 細, 太), 點 및 位置와 附屬物(大圓, 小圓等)로 構成되어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말을 記錄할 수 있도록 組織된 符號文字, 速記符號 또는 速記記號라고도 한다.
- 一般文字：速記文字아닌 一般 常用文字.
- 原理圖, (案出圖, 分出圖)：速記文字의 線이 나오게 된 形態를 그린 圖表.
- 基本文字：速記法式構成上 根幹이 되는 速記文字로서 그 數와 形態는 方式에 따라 各기 다르다.
- 略法：記錄速度를 올리기 위하여 一定한 體系 밑에서 應用을 前提로 줄여 쓰는 方法.
- 略字：頻度數가 많은 單語를 그單語에 局限하여 賦與한 符號文字.
- 字頭：速記文字의 머리.

- 字尾：速記文字의 꼬리.
- 字中間：速記文字의 中間.
- 線：速記符號의 直線, 曲線과 長線, 短線 또는 細線, 太線의 總稱.
- 圓：速記符號의 正圓, 橢圓과 大圓, 小圓의 總稱.
- 位置：速記符號上의 位置. 같은 符號라도 位置에 따라 달리 읽음.
- 加點：位置에 點을 적은 것.
- 잘고리：速記符號文字에 있어 잘고리진 모양
- 原文：速記符號로 記錄된 또는 速記打字機로 打字한 原本.
- 翻文：速記原文을 一般文字로 옮기는 活動. 反文이라고도 함.
- 翻讀：速記原文을 朗讀하는 것.
- 對照：2人以上이 同時에 速記하는 경우 原文을 서로 읽어서 맞추어 보는것.
- 誤聽：잘 못 듣는 것.
- 誤譯：翻文을 그릇되게 함.
- 脫字：記錄하지 못하였거나 翻文하지 못하여 빠진 글자.
- 添字：記錄上의 錯誤나 誤譯으로 因하여 翻文함에 添加된 글자.
- 正確度：總記錄글자 數와 總誤字에 대한 百分率.
- 速記席：速記하는 座席. 대개 聽取가 容易한 司會席 앞 또는 會議席 中央에 設置된다.
- 速記錄：速記로 記錄하여 一般文字化시켜 놓은 文書. 會議錄이라고도 함.

附 錄 4

速 記 關 係 人 名 錄

外 國 篇

- 티로(Marcus Tullius Tiro一紀元前 1世紀). 로마인 「시세로」의 解放奴隸弟子, 「티로」의 略記法 創案(紀元前63年), 速記術의 創始者.
- 세네카(Seneca一紀元前 4年~65年). 로마인, 哲學者, 「로마」速記의 表記法改良
- 스케링거(Scalinger).
「티로」, 「세네카」등의 速記文字를 蒐集 「야누스·그루테루수(Janus Gruterus)大作에 挿入(1606年).
- 티모더·브라이트(Timothy Bright-1550~1615). 英國人, 醫師, 牧師, 考右學者로서 「記號: 記號에 의한 簡略 迅速 秘密速記法」(브라이트式)創案(1588年).
- 윌리스(Willis). 英國人 國教派牧師
「윌리스」式 創案(1602年)
- 토마스·셸톤(Thomas Shelton). 英國人.
「셸톤」式 創案(1626年).
- 토마스·거니(Thomas Garney). 英國人.
「거니」式 創案(1750), 英國에서 가장 體系的으로 整理되고 오배된 現存速記法式.
- 필립·기브스(Phillip Gibbs). 英國人 牧師
從來의 「알파베트」式 速記方式을 表音速記方式으로 創案(1736年).
- 바이롬(Byrom). 英國人.
「바이롬」式 創案(1767年).
- 매로우(Maror). 英國人.

- 「메로우」式 創案(1780年).
- 테일러(S. Taylor). 英國人. 「옥스포드」大 哲學教授
「테일러」式 創案(1786年), 가장 成功的으로 佛蘭西, 獨逸, 스페인, 이태리, 폴류갈等 大陸諸國에 應用된 速記法式.
- 코사루(Jacques Cosard). 佛蘭西人
「코사루」式 創案(1651年).
- 베르망(Bertin). 佛蘭西人
「테일러」式을 應用하여 「베르망」式 創案(1790年).
- Thévenot. 佛蘭西人
「타키·그라피」(迅速速記) 創案(1787年).
- 프레페앙 C.Prépéan). 佛蘭西人
從來 速記法式의 長點만 取하여 創案(1813年).
- 에메·파리(Aimé Paris). 佛蘭西人, 辯護士
「에메파리」式 創案(1822).
- 프레보(Prevost). 佛蘭西人
「테일러」式을 應用 「프레보」式 創案(1826年).
- 람자이(Ramsay). 獨逸人
「람자이」式 創案(1679年), 獨逸에서 가장 오래된 速記法式.
- 단자루(Danzar). 獨逸人
「테일러」式을 應用 「단자루」式創案(1801年).
- 프란츠·샤빌·가벨스버거(Franz Xaviel Gabelsberger). 獨逸人
「바바리아」州長官秘書, 기록글자 筆記體를 利用한 速記法式 創案(1834年).
벨지움, 오스트리아, 덴마크, 놀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등에 傳播되어 使用되었다.
- 데이비드·로버트슨(David Robertson). 美國人
美合衆國 憲法批准을 審議하기 위하여 召集된 「버지니아」會議에서 速記錄을 作成한 사람 (1788年).
- 토마스·로이드(Thomas Louyd). 美國人, 作家, 軍人, 美國速記界의 始祖.

下院公式速記士, 美國初代國會 第一次會議記錄者.

○마티(marti). 스페인인, 「마드리드」大學教授.

「테일러」式을 應用 「마티」式 創案(1800年).

「마티」의 子孫에 의하여 「이테리」語 및 「폴듀갈」語에 應用 創案(1828年).

○아만티. 「이테리」人

「테일러」式을 「이테리」語에 應用 創案(19世紀初) 그후 「델피노」에 의하여 改良.

○페레이라(Pereira). 폴듀갈人

「테일러」式을 「폴듀갈」語에 應用 創案(19世紀初).

○이사크·핏트맨(Isaac Pitman). 英國人

「表音速記術」(핏트맨式) 創案(1837年).

速記術創案의 功績으로 1894年 「빅토리아」女王에 의하여 騎士爵位授受.

美國을 비롯하여 英語國家群,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日本, 韓國등에 應用되고 있으며 「엘리아스·롱그레이」式 「앤드류·J·그라함」式, 「제임스·E·먼슨」式, 「벤·핏트맨」式 등이 「핏트맨」式을 應用한 速記法式이다.

○에드워드·젠티릿트(Edward Gantlett).

「핏트맨」式을 應用 「日本語表音速記法」(젠티릿트式) 創案(1902年).

○나비나(Navina). 印度人 「판잡」大學教授

「핏트맨」式을 「힌두」語에 應用 創案.

○윌리엄·퀵킹함. 英國人

「簡略速記」(Brachy-graphie post-write) 創案(1920年).

○벤·핏트맨(Benn Pitman). 英國人

「벤·핏트맨」式 創案(1853年) 「핏트맨」의 弟

美國 「신시내티」에 速記學院設立.

○에리아스·롱그레이(Elias Longley). 美國人

「핏트맨」式을 應用 「에리아스·롱그레이」式 創案(1849年).

○제임스·E·먼슨(James E. Munson). 美國人

- 「핏트맨」式을 應用 「먼슨」式創案(1867年).
- 앤드류·J·그라함(Andrew J Graham), 美國人
「핏트맨」式을 應用 「그라함」式創案(1853年)
- 린즈리(Lindsley), 美國人
「린즈리」式 創案(1864年)
- 번즈(Burnz), 美國人
「번즈」式 創案(1871年).
- 존·로버트·그레그(Jhon Robert Gregg), 美國人
「輕線速記法」(Light Line Phonography—「그레그」式)創案(1888年)
美國의 많은 學校에서 採擇 教授.
表音대로 單語를 表示하며 輕線表記.
- 쥬리어스·양자인·록크웰(Julius Ensign Rockwell), 美國人
1602年 「윌리스」創案의 速記文字로부터 1882年 「피닌」에 의해 應用된 「듀프로이」式에 이르기까지 112個速記法式의 速記文字를 그의 著書에 收錄,
이것은 美國 文教省回報 第1號(Washington 1893年)에 실려져 있다.
- 빌헬름·스톨제(Wilhelm Stolze), 獨逸人
「스톨제」式 創案(1841年).
- 統一式(Einheitskurz Schrift)
獨逸統一式으로 1924年創案 草書形.
- 알베르트 듀로네(Albert Delauney), 佛蘭西人
「브레보」式에 修正을 加한 「브레보-듀로네」速記法 創案(1878年).
- 듀프로이(Abbe Duploye), 佛蘭西人
「듀프로이」速記法 創案(1862年).
- 델피노, 「이태리」人
「테일리」式을 改良 創案(19世紀初) 伊太利의 下院에서 使用.
- 노에(Noë), 「이태리」人
「가벨스버거」式을 應用 創案하였고 그後 修正되어 널리 使用.
- 아브람 메나로이야, 「터키」人

- 「브레보-듀로네」式과 「듀프로이」式을 「터키」語에 應用 創案(1928年).
- 田鎖綱紀(1854~1938). 日本人 하느님
「깃트맨」系의 「그라함」式을 應用 創案(1882. 10. 28).
東京에서 日本傍聽筆記法講習會開催
1894年 藍綬褒章授受, 1896年 終身年金 300圓
- 若林珪藏(1857~1938). 日本人
田鎖의 講習會修了生 日本最初の 新聞談判速記.
- 熊崎健一郎. 日本人
熊崎式 創案(1906)
- 中根正親. 日本人
中根式 創案(1914)
- 川口涉. 日本人
早稻田式 創案(1931) 한글
- 川上晃. 日本人
速「타이프」發明(1944) 日本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에서 採擇.
- 蔡錫勇. 中國人
中國語速記法式 創案 政府에서 採擇(1910. 4. 15).
- 一般筆記法速記法式
- | | | |
|------------------------------|---------------------|----|
| 略語速記法(Abbreviatix) | 1945年發表 | |
| 「에인」式速記法 | 1917年 | 〃 |
| 「카터」式速記法 | 1957年 | 〃 |
| 「윅커」式 「알파벳트」速記法 | 1955年 | 〃 |
| 「게르스텐」(Gersten)式 「알파벳트」速記法 | 1949年 | 發表 |
| 高速의 普通쓰기法(Hy Speed Longhand) | 1932年 | 〃 |
| 速筆法(Quick hand) | 1953年 | 〃 |
| 速筆法(Speed hand) | 1952年(「씨·티·두터윅트」創案) | 〃 |
| 速筆法(Speed writing) | 1923, 1951年 | 〃 |
| 速記法(Stenoscrypt) | 1955年 | 〃 |

速記法(Steno speed) 1953年 發表

「지문」式速記法 1950年 //

○「코노」速記「타이프」, 佛蘭西式 1827年 //

○「스테노타이프」, 美國式 1911年 //

國內篇

○朴如日

1904年 「하와이」로 移住 1909年 우리나라 처음으로 當地의 「신한민보」에 「朝鮮速記法」創案發表.

○金××

1923年 亡命地 上海에서 「날적말적기」를 創案.

○方翼煥

1920年 渡日 田鎖式을 研究. 1925年 李源祥氏와 「朝鮮語速記術」創案. 時代 日報에 發表.

○李源祥

1925年 方翼煥氏와 共同으로 「朝鮮語速記術」創案發表.

○金한터

1927年 1月 月刊 「新朝鮮」에 「우리말 速記法」發表.

○嚴正友

1927年 7,8月 月刊 「東光」에 「朝鮮速記術」發表.

○金勇虎

1934年 2月 東萊高普校友誌에 「朝鮮語速記法」發表.

○姜駿遠

1935年 6月 18日부터 7月 28日까지 東亞日報에 「朝鮮語速記術講解」發表.
「서울式」으로 1948年 4月 서울速記專門學館設立.

○張基泰

1946年 6月 20日 서울신문등에 逸波式速記法 創案發表.

1951年 12月 逸波式이 國會의 國費速記士養成所인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에서 採擇 教授함. 現役速記士中 逸波式出身이 가장 많음.

初代大韓速記學術協會長, 1946年 9月 10日 「인파식 우리말 속기사양성소」
設立.

○朴 松

「學生新聞」主幹, 1946年 10月 19일부터 10月 25일까지 「學生新聞」에 「朝
鮮語速記에 관한 研究」라 하여 朝鮮式 創案發表. 後에 韓國式으로 改稱.

○朴鍾浣

1946年 12月 25日 「朝鮮速記」出版.

○朴寅泰

1947年 7月 中央式創案, 「中央速記學院」設立.

○金天漢

1946年 高麗式創案, 「고려속기학원」設立.

○李東根

1948年 2月 解放速記創案, 「해방속기학원」設立, 後에 東邦式으로 改稱.

○金世鍾

1950年 2月 3日 「세종속기법」創案, 主로 湖南地方에서 養成.

○南相天

1956年 3月 20日 南天式 發表.

參考文獻 目錄

書名	著者	發行處	發行年度
○Americana 百科辭典(第24卷)	(美)社團法人Americana		1951
○Britannica 百科辭典(13, 20, 23卷)	(英)William Benton		1968
○Our Hansard or the True mirror of Parliament	(英)William Law		1950
○世界大百科辭典(第18卷)	(日)平凡社		1960
○國語速記概說(上・下)	(日)衆議院速記士養成所		1955
○日本の速記(月刊)	(日)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		
1967年11月號~1969年10月號			
○會議錄事務提要	(日)佐藤忠雄		1968
○日本速記80年史	(日)日本速記80周年紀念會		1963
○日本速記年表	(日)日本速記80周年紀念會		1966
○STEPS	(日)日本Data Processing協會		1966
○中國人名大辭典	(中)台灣商務印書館		1960
○世界大百科事典(5, 7, 8卷)	(韓)學園社		1966
○國語大辭典	(韓)東亞出版社		
○國語大辭典	(韓)李熙昇		1963
○法律學辭典	(韓)責任編輯 金會漢		1964
○世界文化史(2~5卷)	(韓)學園社		1964
○國會法解說	(韓)國會事務處(李鎬振)		1968
○國史大觀	(韓)李丙燾		
○憲法	(韓)韓泰淵		1964
○國語基本語彙의 研究	(韓)徐廷國		1968
○文字改革과 言語政策	(韓)金芳漢(文化批評)		1969, 2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빈도조사	(韓)文教部		
○第6代國會2年誌	(韓)國會事務處		1965

書名	著者	發行處	發行年度
○立法參考資料(第59號)		(韓)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國會會議錄		(韓)國會事務處(制憲國會~第7代國會 69回)	
○逸波式實用速記	(韓)張 基 泰		1969
○日本國速記界視察報告書	(韓)金 鎮 基		1968
○速記文化(第1卷第1號)	(韓)朝鮮速記文化協會		1949
○速記文化(創刊號~第5號)	(韓)舊大韓速記協會		1956~1958
○速記文化(創刊號)	(韓)大韓速記協會		1967
○議會速記法式研究資料集	(韓)國會速記士養成所		1969
○大韓速記協會會議錄	(韓)大韓速記協會		

<監修>

議事局長 河 在 鳩
委員局長 權 孝 燮
速記課長 劉 龍 珪

<編輯>

金 鎮 基 鄭 源 道
安 仁 榮 李 東 一
金 永 善 崔 錫 模
孫 弘 基 楊 澈 在
李 龍 基 洙 敬 萬
鄭 宇 鎔

禁無斷轉載複製

速 記 概 觀

1969年 12月 25日 印刷
1969年 12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 會 事 務 處
議 事 局 速 記 課

印 刷 大 韓 公 論 社

非 賣 品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美商亞細亞火油有限公司

亞細亞火油有限公司

100, 222 Hill Street
New York, N.Y. 10021

總經理 亞細亞火油有限公司
總經理 亞細亞火油有限公司
總經理 亞細亞火油有限公司

亞細亞火油有限公司

